



본 보고서는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인쇄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사업

2024년도 제2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2024년도 제2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사업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사업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2024년도 제2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사업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사업』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 영



< 연구진 >

■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 김평식 부연구위원(연구총괄)

홍병진 부연구위원

박선영 책임연구원

김종원 선임연구원

이남주 선임연구원

김달유 연구원

검토위원 :

김미복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순병민 부교수(충남대학교)



## 목 차

요약 .....	1
<b>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b>	<b>105</b>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105
가. 사업의 추진 배경 .....	105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106
2.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	106
가. 사업의 추진근거 .....	106
나. 사업의 추진경위 .....	107
3. 사업의 주요 내용 .....	109
가. 지원 대상 .....	109
나. 사업 절차 .....	110
다. 지원 내용 .....	113
라.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116
마. 사업 추진체계 .....	122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	124
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수행절차 .....	124
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분석방법 .....	125
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범위 .....	127
<b>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b>	<b>129</b>
1. 기초자료 분석 .....	129
가. 개식용 관련 법령 현황 .....	129
나. 개식용 업계 현황 .....	145
다. 개식용종식 운영 신고 접수 현황 .....	178

라. 구조 및 보호 동물 관리 시설 현황	184
마. 개식용 관련 여론 현황	189
2. 유사사례 검토	199
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199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폐업지원	204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207
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211
마. 조류독감 사전방역 관련 사육제한 제도 및 보상	214
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218
3.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225
가. 관련 법률	225
나. 국정과제	228
다. 상위 및 관련 계획	229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	237
가. 사업설계 적정성의 쟁점	237
나. 비용 추정의 쟁점	238
다. 정책성 분석의 쟁점	239
<b>Ⅲ.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b>	<b>242</b>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242
가.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242
나.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244
다.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	245
라.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50
2. 사업설계의 적절성	251
가.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합성	251
나. 수요의 충분성	253
다. 비사업대상의 수혜 가능성 및 사업대상의 비수혜 가능성	253

---

3. 추진방법의 적절성 .....	255
가. 사업추진방법 설계의 적정성 .....	255
나. 사업추진 주체 간 역할 구분의 명확성 .....	256
다. 유사제도와의 정책조합 가능성 .....	257
4. 전달체계의 적절성 .....	259
가. 전달체계의 명확성 및 구체성 .....	260
나. 수혜자 접근 용이성 .....	269
다. 집행기구의 적절성 .....	270
IV. 비용 추정 .....	272
1. 비용 추정의 개요 .....	272
2. 부처가 제시한 비용의 개요 .....	273
가. 총사업비 개요 .....	273
나. 개사육농장주의 폐·전업 .....	274
다. 개식용 도축상인의 폐·전업 .....	276
라.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 .....	277
3. 비용의 추정 .....	278
가. 개사육농장주의 폐·전업 .....	279
나. 개식용 도축상인의 폐·전업 .....	294
다.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 .....	295
4. 비용 추정 결과 .....	296
가. 총사업비 종합 .....	296
나. 비용 변동 가능성 .....	300
다. 주요 모수에 대한 검토 .....	301
V. 정책성 분석 .....	303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	303

---

2. 사업추진 여건 .....	304
가. 내부여건 .....	304
나. 외부여건 .....	306
VI.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309
1. 종합결론 .....	309
2. 정책제언 .....	310
참고문헌 .....	312
[부록] 조사의뢰 공문 .....	314

---

---

## 표 목차

〈표 Ⅰ-1〉 사업의 추진경위 .....	109
〈표 Ⅰ-2〉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110
〈표 Ⅰ-3〉 총사업비 내역 .....	116
〈표 Ⅰ-4〉 연도별 예산 내역 .....	117
〈표 Ⅰ-5〉 사업의 주요 내용 .....	123
〈표 Ⅱ-1〉 개 식용 금지 관련 해외 사례 요약 .....	144
〈표 Ⅱ-2〉 조사 농가 개요 .....	146
〈표 Ⅱ-3〉 연도별 농가당 개 사육 마릿수 .....	147
〈표 Ⅱ-4〉 식용견 구매 현황 .....	148
〈표 Ⅱ-5〉 식용견 출산 현황 .....	148
〈표 Ⅱ-6〉 먹이별 급여 비율 .....	148
〈표 Ⅱ-7〉 먹이별 급여량 및 단가 .....	149
〈표 Ⅱ-8〉 연간 출하 현황 .....	149
〈표 Ⅱ-9〉 잔반 수거 수입 .....	150
〈표 Ⅱ-10〉 개 사육시설 형태별 현황 .....	150
〈표 Ⅱ-11〉 개 사육 형태 .....	151
〈표 Ⅱ-12〉 개 사육 형태별 규모 .....	151
〈표 Ⅱ-13〉 농장 투입인력 현황 .....	152
〈표 Ⅱ-14〉 고용인력 인건비 .....	152
〈표 Ⅱ-15〉 연간 수도광열비 현황 .....	153
〈표 Ⅱ-16〉 연간 약품 및 첨가제 투입 및 지출 현황 .....	154
〈표 Ⅱ-17〉 자동차 및 대농구 보유 현황, 사용 연수, 구매 금액 .....	154
〈표 Ⅱ-18〉 토지 보유 및 임차 현황 .....	155
〈표 Ⅱ-19〉 연간 기타 비용 .....	155
〈표 Ⅱ-20〉 육건 주·부산물 및 생산비 계산단위 .....	156

---

〈표 II-21〉 생산비 및 수익성 산정을 위한 주요 계산 산식 .....	156
〈표 II-22〉 육견 생산비 비목 구성 .....	157
〈표 II-23〉 생산비 및 수익성 분석 농가 사육 현황 .....	158
〈표 II-24〉 육견 마리당 사육비 .....	158
〈표 II-25〉 개고기 생체 1kg당 생산비 .....	160
〈표 II-26〉 육견 마리당 총수입 .....	161
〈표 II-27〉 사육규모별 육견 마리당 수익성 .....	162
〈표 II-28〉 품종별 육견 마리당 수익성(출하 체중으로 환산) .....	162
〈표 II-29〉 개 도축장 응답자 일반 현황 .....	163
〈표 II-30〉 개 도축장 형태 .....	164
〈표 II-31〉 개 도축장의 시설구조 형태 .....	164
〈표 II-32〉 용도별 시설 보유 현황 및 시설면적 .....	165
〈표 II-33〉 1일 평균 계류 및 도축 현황 .....	165
〈표 II-34〉 도축 가동시간 및 가동일수 .....	165
〈표 II-35〉 도축 비율 .....	166
〈표 II-36〉 연도별 반입 및 반출 두수 .....	166
〈표 II-37〉 반입 및 반출 지역별 두수 현황 .....	166
〈표 II-38〉 개 마리당 도축 수수료 .....	167
〈표 II-39〉 연도별 매출 현황 .....	167
〈표 II-40〉 주요 매출 항목 .....	167
〈표 II-41〉 주요 항목별 비용 및 비중 .....	168
〈표 II-42〉 고용인력 현황 .....	168
〈표 II-43〉 유형자산 가치 .....	169
〈표 II-44〉 주요 항목별 신규 투자 및 투자 금액 현황 .....	169
〈표 II-45〉 육견 관련 검업 현황 .....	169
〈표 II-46〉 유통업체 응답자 일반 현황 .....	170
〈표 II-47〉 매출액 현황 .....	171
〈표 II-48〉 주요 항목별 비용 및 영업이익 비중 .....	171

---

〈표 II-49〉 재료 취급 및 재료 취급 후 가공 현황 .....	172
〈표 II-50〉 결제 수단별 매출액 비중 .....	172
〈표 II-51〉 개고기 구매 현황 .....	172
〈표 II-52〉 개고기 구매 주기, 구매량, 구매금액(유통업체) .....	173
〈표 II-53〉 개고기 구매 경로 .....	173
〈표 II-54〉 개고기 판매현황 .....	173
〈표 II-55〉 개고기 판매량 및 판매금액 .....	174
〈표 II-56〉 음식점 응답자 일반 현황 .....	174
〈표 II-57〉 매출액 현황 .....	175
〈표 II-58〉 주요 항목별 비용 및 영업이익 비중 .....	176
〈표 II-59〉 식재료비 비중 .....	176
〈표 II-60〉 메뉴별 평균 단가 현황 .....	176
〈표 II-61〉 결제 수단별 매출액 비중 .....	177
〈표 II-62〉 개고기 외 조리·판매 메뉴 재료 현황 .....	177
〈표 II-63〉 개고기 구매 현황 .....	178
〈표 II-64〉 개고기 구매 주기, 구매량, 구매금액(음식점) .....	178
〈표 II-65〉 개고기 주 구매처 .....	178
〈표 II-66〉 업계별 신고 수리건수 및 이행계획서 접수 현황 .....	179
〈표 II-67〉 개사육 농장업 세부 통계 .....	180
〈표 II-68〉 개식용 도축업 세부 통계 .....	181
〈표 II-69〉 개식용 유통업 세부 통계 .....	182
〈표 II-70〉 개식용 식품접객업 세부 통계 .....	184
〈표 II-71〉 동물보호센터 현황 .....	186
〈표 II-72〉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2014~2023년) .....	186
〈표 II-73〉 보호·관리 형태별 구조 동물 수(2014~2023년) .....	187
〈표 II-74〉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현황(2016~2023년) .....	188
〈표 II-75〉 지자체 동물보호관 처분 실적 현황(2016~2023년) .....	188
〈표 II-76〉 지자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현황(2016~2023년) .....	189

---

〈표 II-77〉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	191
〈표 II-78〉 개 식용에 대한 인식 .....	193
〈표 II-79〉 연령별 개 식용에 대한 인식 .....	195
〈표 II-80〉 폐업지원금 산출 방법 .....	202
〈표 II-81〉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	204
〈표 II-82〉 폐업지원금 산출 방법 .....	206
〈표 II-83〉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218
〈표 II-84〉 2024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요 .....	218
〈표 II-85〉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사업화 지원금 구성 예시 .....	220
〈표 II-86〉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세부 지원 내용 .....	222
〈표 II-87〉 재창업지원 사업화자금 총사업비 구성(예시) .....	223
〈표 III-1〉 폐업시기 구간별 지원단가 .....	244
〈표 III-2〉 사업 관련 법령 및 하위 계획과의 연계성 .....	249
〈표 III-3〉 사업의 성과지표 .....	251
〈표 III-4〉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축종별 지원단가 .....	258
〈표 III-5〉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업종별 지원한도 .....	259
〈표 III-6〉 개 식용 종식 지자체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	267
〈표 IV-1〉 사업대상별 3개년 지원예정액 .....	273
〈표 IV-2〉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의 지급 방식 .....	274
〈표 IV-3〉 전업 시 축종별 지원단가 .....	276
〈표 IV-4〉 전업 시 업종별 지원한도 .....	277
〈표 IV-5〉 사업대상별 3개년 지원예정액 및 2025년 예산확정액(총사업비) .....	278
〈표 IV-6〉 개 종류별 마릿수 현황 .....	281
〈표 IV-7〉 개사육농장 관련 법령별 위반행위 확인 시 폐업지원 불이익 사항 .....	283
〈표 IV-8〉 이행계획서상 구간별 개사육 농가 폐업예정 시기 .....	284
〈표 IV-9〉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검토안·대안 설정 .....	287

---

〈표 IV-10〉 연도별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추계(검토안) .....	288
〈표 IV-11〉 연도별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추계(대안) .....	288
〈표 IV-12〉 시도별 폐업 완료 시기 분포 현황(2024년 말 기준) .....	289
〈표 IV-13〉 사육설비 세부항목당 단가 .....	291
〈표 IV-14〉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검토안·대안 설정 .....	292
〈표 IV-15〉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추계 결과(농장주) .....	292
〈표 IV-16〉 잔여건 관리비용 추계 결과(농장주) .....	293
〈표 IV-17〉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추계 결과(도축상인) .....	294
〈표 IV-18〉 도축상인 관계 법령별 위반행위 확인 시 폐업지원 불이익 사항 .....	295
〈표 IV-19〉 행정비용 관련 사업계획서와 이후 제출자료 비교 .....	296
〈표 IV-20〉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 추계 결과 .....	296
〈표 IV-21〉 비용 추정 결과 .....	297
〈표 IV-22〉 국비·지방비 비용 추정 결과 .....	298
〈표 IV-23〉 연도별 비용 추정 결과(검토안) .....	298
〈표 IV-24〉 연도별 비용 추정 결과(대안) .....	299
〈표 V-1〉 정책성 분석의 세부평가항목 .....	304
〈표 V-2〉 수해집단의 인구 및 사회적 특성 .....	307

---

## 그림 목차

[그림 I-1] 단계별 사업 추진체계 .....	122
[그림 I-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흐름도 .....	124
[그림 II-1] 농장주 및 가족 구성원의 주요 항목별 노동시간 .....	153
[그림 II-2]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체계 .....	221
[그림 II-3]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 .....	221
[그림 II-4]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지원절차 .....	222
[그림 II-5]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지원 체계 .....	223
[그림 II-6] 「동물복지 강화 방안」의 비전 및 전략 .....	231
[그림 II-7]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234
[그림 II-8]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추진 일정 .....	235
[그림 III-1] 사업 집행절차(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업자 전업·폐업 지원) .....	257
[그림 III-2] 사업 집행절차(교육·홍보 등) .....	257
[그림 IV-1] 개 식용 전체 유통 단계 모식도 .....	272
[그림 IV-2] 개사육농장 사육 규모별 폐업 현황 .....	286
[그림 V-1]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자료 .....	307

---

## 요 약

---

### 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가. 사업의 추진 배경

###### □ 사업 추진 배경

- 과거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음
- 국내 반려견 양육 가구 수의 증가와 함께 최근 국민인식조사 결과<sup>1)</sup>에 따르면 개고기 식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동물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국정과제<sup>2)</sup> 중 하나로 채택되어 추진됨
- 2024년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24년 2월 6일 공포되었으며 2024년 8월에는 개식용 종식 예산이 2025년 정부안에 반영됨
-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에서 규정한 2027년 개식용 종식 목표 달성을 위해 육견 농가, 도축업자의 폐·전업 지원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8호(법령상 추진)에 부합하여 2024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 제2항에 의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의뢰(타당성심사과-798(2024. 8. 28.))됨

---

1)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2024.

2) 국정과제 48,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

##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 사업의 목적

- 개 식용 종식 이행 과정에서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육건농가 및 도축상인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 폐업시설 철거비용, 폐업시설물 잔존가액 등 폐·전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임

### □ 사업의 기대효과

- (직접효과) 개 식용을 조기에 종식하고, 관련 농가 및 도축업자에게 업종 전환을 유도함
- (간접효과) 개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통한 국격을 제고함

## 2.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 가. 사업의 추진근거

#### □ 근거법령

- 「개식용종식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제12조(전업의 지원)
  -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폐·전업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6조(폐업지원의 대상),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
  - 폐·전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신고),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
  - 농장주 및 개식용도축상인의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를 규정

#### □ 국정과제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48번,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내에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이라는 과제목표와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동물복지 강화'에 관한 내용이 본 과제에 해당함

#### □ 상위 계획

#####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2024. 9.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2024. 9.)
- 기본계획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라는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과제 및 이행 수단을 제시함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 사육·도살 및 유통·소비 종식 등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둘째, 전·폐업 컨설팅,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및 종식 이행 점검 등 차질 없는 개 식용 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
  - 셋째, 개 식용 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

#### 나. 사업의 추진경위<sup>3)</sup>

##### □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전: 1970년대~2024. 2.

- 1978년 6월: 「축산물위생처리법」(現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였다가 국내외 동물단체 등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반발로 인해 가축 범위에서 개를 제외함
-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개고기 식용에 대한 국내외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개 도살 방법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이 제정됨

3) 『개 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2024. 7.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7~11.

- 2005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개 등 동물의 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함
  - 2007년 1월: 동물 학대 금지행위의 범위 구체화 및 위반에 따른 벌칙 강화, 동물등록제 도입 등을 포함하여 「동물보호법」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짐
  - 2016년 5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으로써 개고기의 식품 원료 사용을 불법화함
  - 2021년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함
  - 2021년 12월 ~ 2022년 6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17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함
-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2024. 2. 이후
- 2024년 1~2월: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4. 1. 9.) 및 공포(2024. 2. 6.)
  - 2024년 1월: 농림부는 정부지원 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T/F)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2024. 1. 22.)
  - 2024년 4월: 농림부는 개 식용 종식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개 식용 종식 추진단’)를 정식 출범
  - 2024년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2024. 8. 6.) 및 시행(2024. 8. 7.)
  - 2024년 8월: 2024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되어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뢰(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798(2024. 8. 28.))
  - 2024년 9월: 농림부는 ‘2027년 개식용종식 달성’을 추진목표로 하여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
  - 2024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착수
  - 2024년 12월: 2025년도 정부안이 국회 본예산으로 통과
  - 2025년 5월: 2025년도 예비비 추가 편성 국무회의 심의·의결

〈표 1〉 사업의 추진경위

연월	내용
2021.11.	•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 논의
2021.12.	•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2021. 12.~2022. 6., 17차 회의)
2024. 1.	• 「개식용종식법」 국회 본회의 의결
2024. 1.	• 「개식용종식법」 이행 전담조직(T/F) ('개식용종식추진단')발족
2024. 2.	• 「개식용종식법」 제정·공포(2024. 2. 6.)
2024. 8.	•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2024. 8. 6.)·시행(2024. 8. 7.)
2024. 8.	• 개식용 종식 예산(550억 1,300만원)이 2025년도 정부안 반영 - 농림축산식품부 544억 1,3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6억원
2024. 2.~ 2024. 9.	• 육견업계(육견농가,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실태조사
2024. 8.	• 2024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요구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798(2024. 8. 28.)
2024. 9.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
2024. 9.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착수
2024.12.	• 2025년도 정부안이 국회 본예산 통과
2025. 5.	• 예비비 추가 편성 국무회의 심의·의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2024. 9. 및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2024. 7.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7~1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3. 사업의 주요 내용

#### 가. 지원 대상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신고서 및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 및 도축상인
- 지원 조건: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 이행(농장주 전체 출하 이행 필수)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확인, 시설물 평가 및 철거 완료 후 지원금 지급

## 나. 사업 절차

### □ 사업 신청 및 접수 단계

- 농장주(도축상인)는 이행계획서에 따라 폐업 이행 및 사육(계류) 중인 개를 모두 출하(폐업 이행을 완료)한 후 개사육농장, 도축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전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

### □ 신청서 확인 및 대상자 선정 단계

- 시군구 '지원금 평가반'이 구성되어, 폐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규모를 결정

### □ 자금 요청 단계

- 현지조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결과서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으로 통보

### □ 자금 배정 단계

- 지자체(시군구)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농장주를 대상으로 철거대행 업체를 통해, 사육 관련시설(축사 등)을 철거·폐기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철거, 시설물 폐기 완료 등을 확인한 후 폐업지원금(농장주만 해당),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 이행 점검 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 다. 지원 내용<sup>4)</sup>

##### □ 개사육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 ①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농장주에 한정하여 '사육 마릿수(신고기준, 연평균)'당 폐업 시기 구간별 22.5~60만원 지원

\* 단, 「가축분뇨법」(배출시설 미신고) 및 「건축법」(시설물 무허가·미신고) 위반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기준: 사육 마릿수×폐업 시기별 지원단가×조정률

- (사육 마릿수)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 기준(단, 적정 사육두수\*를 상한으로 적용)

\* 적정 사육두수: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면적(㎡)×면적당 적정 두수(1.2마리/㎡)

- (지원단가) 폐업 시기 구간별 지원단가(30만원×지원기간) 차등 적용

폐업구간	2024. 2. 7. ~2025. 2. 6*	2025. 2. 7. ~2025. 8. 6.	2025. 8. 7. ~2025. 12. 21.	2025. 12. 22. ~2026. 5. 6.	2026. 5. 7. ~2026. 9. 21.	2026. 9. 22. ~2027. 2. 6.
지원단가 (지원기간)	60만원 (2년)	52.5만원 (1.75년)	45만원 (1.5년)	37.5만원 (1.25년)	30만원 (1년)	22.5만원 (0.75년)

- (조정률)

법률	「건축법」	「가축분뇨법」	「농지법」
사유	시설물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농지 전용 미신고
지원대상	배제	배제	50% 감액 적용

- ② 폐업시설 철거비: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대행 지원

- 지원기준: 시군구가 용역 계약을 맺은 철거업체에서 농장(도축장) 내 건축물, 설비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함

\* 단, 「건축법」(시설물 무허가·미신고), 「농지법」(농지 전용 미신고), 「가축분뇨법」(배출시설 미신고) 위반 확인 시 지원 배제 및 자부담 철거를 원칙으로 함

- ③ 폐업시설물 잔존가액: 폐업지원 신청일 이후 시군구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개 사육·도축장(건축물, 설비 등) 잔존가액 지급

- 지원기준: 사전 철거 등 감정평가 불가 시 지원이 불가하고, 잔존가액 산정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 평가 금액 산술평균으로 산정

- 평가 대상: 육견의 사육 및 도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영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함

4)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2024. 9. 농림축산식품부), V. 과제별 추진계획에서 발췌

④ 개사육농장주 소유권 포기건의 보호·관리비용

- 지원기준: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유권 포기건을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관리·분양 등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

□ 교육·홍보, 연구조사 및 컨설팅 수행

- ① 교육비: 지자체 담당자 교육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 ② 홍보비: 정책 추진 상황 홍보,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다매체(언론·방송·현수막 등) 상시 홍보
- ③ 연구용역·실태조사비: 정책 추진 관련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수행
- ④ 전업컨설팅비: 농가 전업지원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및 사육 전반 현장관리·지도
- ⑤ 일반수용비: 이해관계자(육견단체·동물보호단체)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소요

라.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사업기간: 2025~2027년(3년)

□ 총 사업비: 3,562억원

- 재원분담: 국고 1,797억원(50.5%), 지방비 1,765억원(49.5%)

□ 총사업비 내역

〈표 2〉 총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VAT 포함)

구분	금액	산출근거
<b>총사업비</b>	<b>356,238</b>	
<b>A. 농장주 폐·전업 지원</b>	<b>320,438</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197,438	[2025년] • (3년치 지원) 91,125백만원 1) 합법(3년치) 60,750백만원[(30만원/두×45만두×30%×1/2)×3년] 2) 불법 30,375백만원[(30만원/두×45만두×30%×1/2×조정률 50%)×3년] [2026년] • (2년치 지원) 70,875백만원 1) 합법(2년치) 47,250백만원[(30만원/두×45만두×35%×1/2)×2년] 2) 불법 23,625백만원[(30만원/두×45만두×35%×1/2×조정률 50%)×2년] [2027년] • (1년치 지원) 35,438백만원 1) 합법(1년치) 23,625백만원[(30만원/두×45만두×35%×1/2)×1년] 2) 불법 11,813백만원[(30만원/두×45만두×35%×1/2×조정률 50%)×1년]
2. 폐업시설 철거비	21,000	[2025년~2027년] 21,000백만원 [(200농가×35백만원)×3개년]
3. 폐업시설물 잔존가액	91,500	[2025년~2027년] 91,500백만원 [(500농가×61백만원)×3개년]
4. 잔여권 관리비용	10,500	[2025년] 3,500백만원(3.5만두/3×30만원/두) [2026년] 3,500백만원(3.5만두/3×30만원/두) [2027년] 3,500백만원(5만두×7만원/두)
<b>B. 도축상인 폐·전업 지원</b>	<b>32,500</b>	
1. 폐업시설 철거비	12,500	[2025년~2027년] 12,500백만원[(125개소/3×100백만원)×3개년]
2. 폐업시설물 잔존가액	20,000	[2025년~2027년] 20,000백만원[(125개소/3×160백만원)×3개년]
<b>C. 교육·홍보 등</b>	<b>3,300</b>	
1. 교육·홍보비	960	[2025년~2027년] 960백만원 [(1식×320백만원×국비 100%)×3개년]
2. 연구용역비	780	[2025년~2027년] 780백만원 [(1식×260백만원×국비 100%)×3개년]
3. 감정평가비	1,500	[2025년~2027년] 1,500백만원 [(1식×500백만원×국비 100%)×3개년]
4. 일반수용비	30	[2025년~2027년] 30백만원 [(1식×10백만원×국비 100%)×3개년]
5. 업무추진비	30	[2025년~2027년] 30백만원 [(1식×10백만원×국비 100%)×3개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2024. 9. 및 (별첨1) 산출근거(부처안 기준) 수정, 2024. 9.

〈표 3〉 연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VAT 포함)

구분		2025	2026	2027	계
<b>합계</b>		<b>144,058</b>	<b>123,808</b>	<b>88,371</b>	<b>356,238</b>
중앙 정부	<b>국비(50.5%)</b>	<b>72,579</b>	<b>62,454</b>	<b>44,735</b>	<b>179,769</b>
	<b>A. 농장주 폐·전업지원</b>	<b>66,063</b>	<b>55,937</b>	<b>38,219</b>	<b>160,219</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45,563	35,437	17,719	98,719
	2. 폐업시설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8,750	18,750	18,750	56,250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도축상인 폐·전업지원</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	5,416	5,416	5,416	16,248
	<b>C. 교육·홍보 등</b>	<b>1,100</b>	<b>1,100</b>	<b>1,100</b>	<b>3,300</b>
	<b>지방비(49.5%)</b>	<b>71,479</b>	<b>61,354</b>	<b>43,635</b>	<b>176,468</b>
지방 정부	<b>A. 농장주 폐·전업 지원</b>	<b>66,063</b>	<b>55,937</b>	<b>38,219</b>	<b>160,219</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45,563	35,437	17,719	98,719
	2. 폐업시설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8,750	18,750	18,750	56,250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도축상인 폐·전업 지원</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폐업시설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416	5,416	5,416	16,24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2024. 9. 및 (별첨2) 사업설명서\_수정, '연차별 투자계획', 2024. 9.

[참고] 2025년 확정된 예산 자료

□ 예산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비고
		요구안	확정(B)		
개식용종식 전업, 폐업지원	-	54,413	54,413	54,413	순증

□ 기능별, 목별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예산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b>기능·비목별분류(합계)</b>							54,413	
•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48,597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48,597	
•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지원							5,416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5,416	
• 교육·홍보 등							400	
- 일반수용비(210-01)							10	
- 민간 경상보조(320-01)							390	

자료: 농림부 3차 질의 및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자료(2025. 1.), 요청자료 9 예산 관련자료

□ 사업내용

- (개식용종식 전업, 폐업지원) ① 개식용 관련 업계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한 이행촉진지원금, 시설 철거비용,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② 원활한 개식용 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용역·실태조사 수행
  -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해 이행촉진지원금, 시설 철거비용,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지원) 개식용 도축업자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해 시설 철거비용,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 (교육·홍보 등) 원활한 개식용 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용역·실태조사 추진

[참고] 2025년 예비비 추가 편성 자료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예산	2025년 수정안	증감(예비비)
<b>합계</b>		<b>54,413</b>	<b>137,823</b>	<b>83,410</b>
소계		48,597	132,007	83,410
이행촉진		28,097	84,475	56,378
1 구간	합법	8,100 5.4만두×50%×60만원/두 ×국비 50%	50,144 17.4만두×96.2%×60만원/두 ×국비 50%	42,044
	불법	4,050 5.4만두×50%×30만원/두 ×국비 50%	1,004 17.4만두×3.8%×30만원/두 ×국비 50%	△3,047
	계	12,150	51,148	38,998
2 구간	합법	10,632 8.1만두×50%×52.5만원/두 ×국비 50%	32,682 13.0만두×96.2%×52.5만원/두 ×국비 50%	22,050
	불법	5,315 8.1만두×50%×26.3만원/두 ×국비 50%	645 13.0만두×3.8%×26.3만원/두 ×국비 50%	△4,670
	계	15,947	33,327	17,380
농장	시설가액	15,250	33,945	18,695
	1구간	6,100 200호×61백만원×국비 50%	21,855 611호×71백만원×국비 50%	15,755
	2구간	9,150 300호×61백만원×국비 50%	12,090 338호×71백만원×국비 50%	2,940
	감평비	250	474	224
	1구간	100 200호×1백만원×국비 50%	305 611호×1백만원×국비 50%	205
	2구간	150 300호×1백만원×국비 50%	169 338호×1백만원×국비 50%	19
	철거비	3,500	11,613	8,113
	1구간	1,400 200호×40%×35백만원 ×국비 50%	7,472 611호×70%×35백만원 ×국비 50%	6,072
	2구간	2,100 300호×40%×35백만원 ×국비 50%	4,141 338호×70%×35백만원 ×국비 50%	2,041
	보호비용	1,500	1,500	-
	소계	5,416	5,416	-
	도축장	시설가액	3,333 42개소×160백만원×국비 50%	3,333 42개소×160백만원×국비 50%
철거비		2,083 42개소×100백만원×국비 50%	2,083 42개소×100백만원×국비 50%	-
행정		400	400	-

자료: 농림부 6차 질의 및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자료(2025. 6. 10.)

## 마.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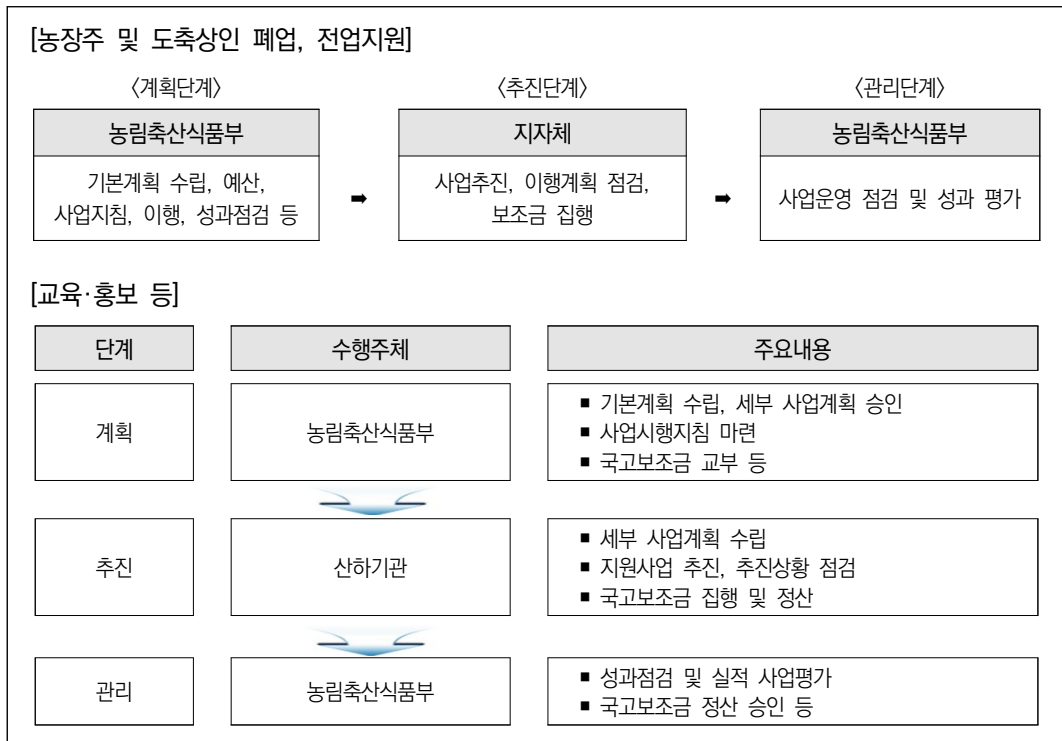
### □ 농장주 및 도축상인 폐·전업 지원

- 계획 단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 수립, 해당 예산편성 및 사업지침 마련
- 추진 단계: 지자체가 기본계획과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이행계획 점검 및 보조금 집행
- 관리 단계: 사업 종료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운영 점검 및 성과 평가

### □ 교육·홍보, 연구조사 등

- 계획 단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 수립, 세부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추진 단계: 산하기관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추진 상황 점검
- 관리 단계: 사업이 종료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운영 점검 및 성과 평가

[그림 1] 단계별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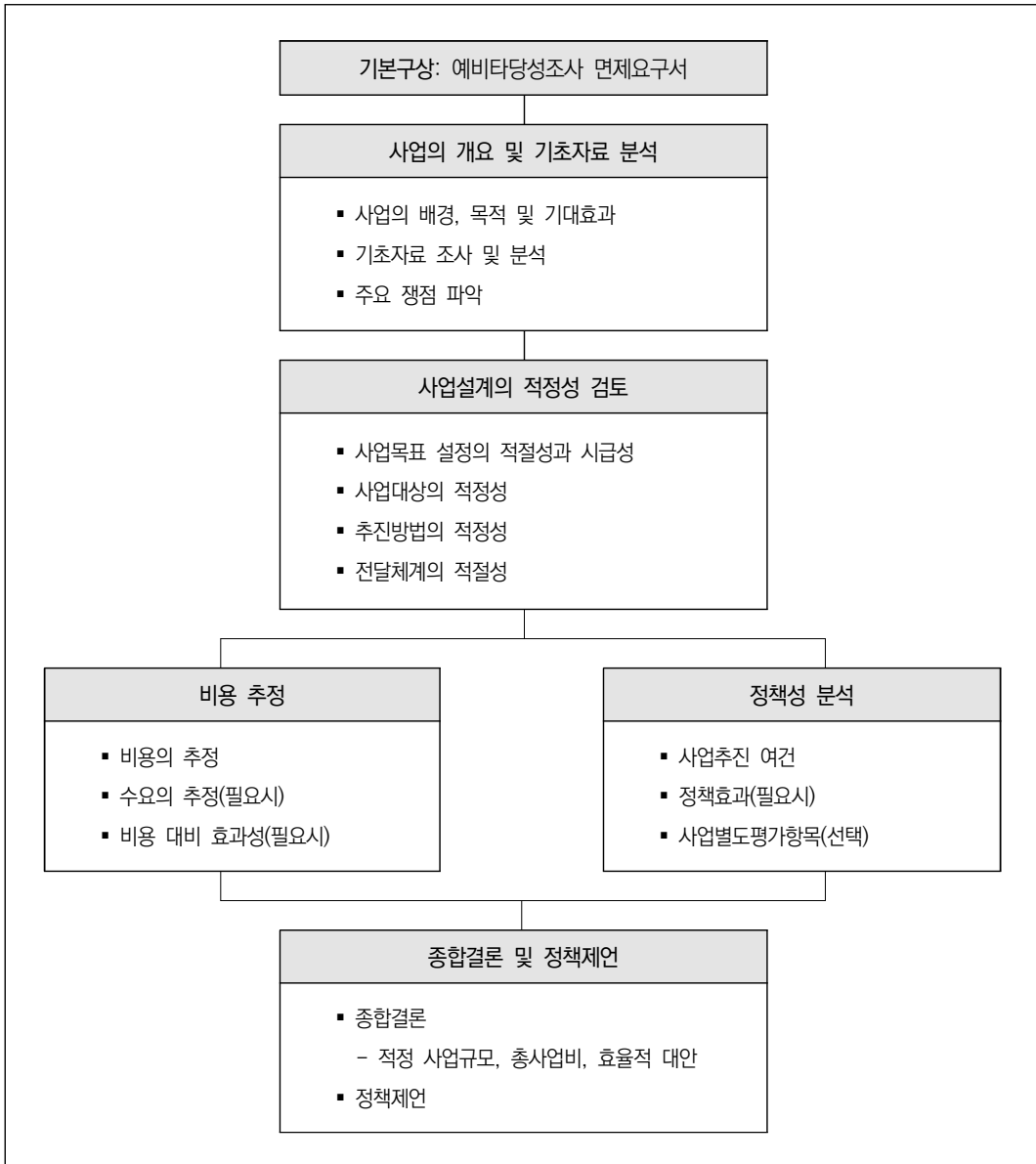


자료: 「개식용종식 폐업, 전업지원 2025 정부예산안」(2024. 11.), '7 사업 집행절차'

####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수행 흐름도

□ 기타 재정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 비용 추정, 정책성 분석,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이루어짐

[그림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흐름도



자료: 기획재정부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내용을 재구성함

##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1. 기초자료 분석

#### 가. 개식용 관련 법령 현황

##### 1) 국내 개식용 관련 법령 현황

###### 가) 식용견 사육단계

- 식용견 사육과 관련된 법령에는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음
-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및 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 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유통 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가축에는 소와 돼지 등 주요 동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이 포함되며 동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에 따르면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됨
-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 건강 유지, 그리고 국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가축의 정의에는 소, 돼지, 닭과 같은 주요 가축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개도 포함되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광견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적절히 관리하고 자원화하거나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가축에는 소, 돼지, 말, 닭 등 주요 가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육동물이 포함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에서는 개가 사육동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폐기물관리법」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 사육 농가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통해 타인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이를 사육 중인 개의 먹이로의 재활용이 가능함
- 식용견 사육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개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법령상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나) 도축 관련 법령

- 식용견의 도축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있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향상을 통해 가축 사육에서부터 도살, 처리, 가공, 유통, 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가축과 축산물을 정의하면서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이 포함하나 가축의 범위에 개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고기도 축산물로 간주되지 않음
-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동물을 책임감 있게 사육하고 관리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에게 생명 존중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
  - 동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이를 어길 시, 동법 제7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동법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제2항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도살할 때 가스법이나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함

-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동물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법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금지)에 의거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 사체 및 식육 또는 이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음
  - 동법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도살·처리하거나 이를 원료로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시설, 그리고 개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와 운영을 금지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7조(벌칙)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동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제5조와 제17조에 명시된 조항은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
  
- 식용견의 도축과 관련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동물보호법」과 상충되며,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은 식용 목적의 개 도축 행위 금지를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도 서로 충돌함

#### 다) 유통 및 판매 관련 법령

- 식용견의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이 있음
  
-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 목적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 기준과 성분 규격을 정하여 고시해야 함

- 동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이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해야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진열할 수 없음
-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동물성 원료에 개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고기를 식품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함

〈표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의 동물성 원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목
축산물	-	식육류	식육류/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 등
	-	우유류	우유, 산양유 등
	-	알류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기타동물	-	파충류 및 양서류	식용자라, 식용개구리 등
	-	-	식용달팽이 등
	-	곤충류	메뚜기,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24. 7. 1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4-35호.

## 2) 해외 개식용 관련 법령 현황

### □ 미국

- 2018년 9월 「개 및 고양이 거래 금지법」(The Dog and Cat Meat Trade Prohibition Act, DCMTPA)이 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농업법(2018 Farm Bill)의 일부로 통과되어 제정됨
-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종교 의식을 제외한 식용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거나, 이들의 신체 일부를 운송, 수령, 소유, 구매, 판매,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 대만

- 대만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개 식용을 금지한 나라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법률 개정을 통해 개와 고양이의 도살, 판매, 식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함
- 2017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나 고양이를 도살하거나 사체를 판매, 구매, 식용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20만에서 200만 TWD의 벌금이 부과됨

## □ 홍콩

- 1950년 영국의 정치적 지배와 문화적 영향으로 「개와 고양이에 관한 조례」와 「개와 고양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 개 식용을 금지했음
- 1997년 개정을 통해 개와 고양이의 도축 및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천 홍콩달러의 벌금에 처함

## □ 필리핀

- 필리핀에서는 1982년 마닐라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판매·보관·운송 금지 조례」를 제정해 개를 식용 또는 허가받지 않은 목적을 위해 도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특정 장소에서 개고기를 저장·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 1998년에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소, 돼지, 염소, 양, 가금류, 토끼, 필리핀산 물소, 말, 사슴, 악어 등 특정 동물 이외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막음
- 2007년에는 「광견병통제법」이 제정되어 개를 식용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전기로 감전사시키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마리당 1,000페소 이상의 벌금과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이 병과됨

## □ 태국

- 2014년에 태국 최초의 동물보호법인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에는 동물 소유자가 동물에게 적절한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불법 육류 거래를 금지하며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함
- 이를 위반할 경우 4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국

-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고기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20년 4월, ‘국가 가축·가금 동물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여 개 섭취를 금지하였으며 광둥성 선전시, 주하이 시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2020년 5월 29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국가 가축 유전자원 목록’을 발표하면서 가축 목록에서 개를 제외했으며, 선전시는 개고기 식용자에게 1인당 해당 가격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치를 시행함

〈표 5〉 개 식용 금지 관련 해외 사례 요약

국가	주요 내용	근거 규정	벌칙(도살 시)
미국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 및 판매 등 금지 (사람이나 동물의 소비를 위한 고기나 고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개·고양이를 도축하는 것은 위법)	Dog and Cat Meat Trade Prohibition Act, 2018	(위반 건당) 5천 달러 이하의 벌금
대만	개·고양이를 도살하거나, 그 사체, 내장 등을 팔거나 사거나 먹거나 소유하는 행위 금지	Animal Protection Act, 2017	20만 TWD 이상 200만 TWD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병과
홍콩	개·고양이를 도축하는 것과 그 고기를 판매·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	Dog and Cat Ordinance, 1997	5,000 홍콩달러 벌금형과 6개월 이하의 징역
필리핀	죽일 수 있는 동물(소, 돼지, 염소, 양, 닭, 토끼, 말, 사슴, 악어)의 종류를 열거, 그 이외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위법으로 규정(개·고양이는 죽일 수 있는 동물에 포함되지 않음)	THE ANIMAL WELFARE ACT OF 1998	(식용거래 시) 개의 마리 당 1,000페소 이상의 벌금과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병과
태국	정의 조항에서 반려동물과 식용동물을 구분하였고, 식용 동물 외에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	The Cruelty Prevention and Welfare of Animal Act, 2014	4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중국	개를 「국가가축·가금유전자원목록」에서 제외하여 식용 등 상업적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2020.5월)	중화인민공화국 목축법	(식용 목적 생산, 거래 시) 상품 가치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2024. 7. 24. 중간보고

## 나. 개식용 업계 현황

### 1) 육견농가

□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의 202호 농가의 표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기준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1.2세이며, 육견 사육 경력은 평균 18.5년으로 농가당 평균 육견 사육 마릿수는 758.1마리로 확인됨

#### □ 개 사육 및 출하 현황

- 육견농가의 연평균 개 사육 마릿수는 2021년 745.9두, 2022년 765.7두, 2023년 758.1두로 매년 증가하다가 2024년 1분기 701.4두로 감소함
- 2023년 기준, 종견 구매율은 21.3%으로 평균 구매 마릿수는 10.5마리이고, 비육견(자견)의 구매율은 5.0%로 평균 75.2마리를 구매하였음
- 번식용 모견은 1회 출산 시 평균 산자 수는 7.5마리이며, 2023년 기준 평균 번식용 모견 수는 107.5마리, 출산한 자견 수는 평균 725.5마리임
- 먹이 급여 비율은 잔반이 81.8%, 축산 부산물 14.3%, 기타 2.3%, 육견 사료 1.2%, 가축 사료 0.5% 순이며 연간 먹이 급여량은 잔반이 589,865kg, 축산 부산물 70,331kg, 육견 사료 914kg, 가축 사료 113kg 순으로 집계됨
- 연간 평균 출하 마릿수는 637마리였으며, 출하 시 평균 중량은 43.0kg, kg당 평균 판매 단가는 9,935원, 마리당 평균 판매 수익은 355,021원으로 나타남
- 개 사육 농가의 하루 평균 잔반 수거량은 1,616kg으로 집계되었으며, kg당 잔반 수거 단가는 146원임

#### □ 시설 및 운영 현황

- 개 사육시설은 판넬(43.1%)과 비닐하우스(40.6%)가 주를 이루며, 79.71%의 농가가 케이지 사육 방식을 사용함
- 개 사육 농가의 평균 사육 면적은 875.0㎡로, 이 중 케이지 사육 면적은 681.9㎡, 평사 사육 면적은 193.1㎡임. 면적(㎡)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1.2마리로 나타남
- 개 사육을 위한 평균 노동 투입인력은 1.06명, 이 중 가족 인력(경영주 제외)은 0.64명, 고용비용은 6,149,208원, 1일 평균 노동시간은 4시간 13분임

- 연간 수도광열비는 약 1,173만 5,000원이며 백신과 구충제 사용 비율은 각각 100%와 99.5%임
  - 개 사육과 관련된 장비들의 평균 사용 기간은 8~11년이며 잔반 및 사료 저장고의 평균 구매 비용은 약 1,186만원임
  - 농가의 70.9%는 자가 보유한 토지에서 사육하며 평균 부채액은 54,739,604원으로 대부분 금융 부채액이 차지함
- 경영수지 분석
- 육견 마리당 평균 사육비는 평균 167,790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감소함
  - 평균 총수입은 478,619원으로 집계되었음. 이 중 육견 판매 수입은 355,021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
  - 마리당 평균 소득은 410,964원, 순수익은 310,828원이며 육견 농가의 소득률은 85.9%, 순수익률은 64.9%로 확인됨

## 2) 개 도축장

-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의 129개 도축장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61.8세이며, 개 도축업 평균 종사 기간은 19.7년임
- 도축장 및 시설 구조 형태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시설을 갖춘 비율은 73.6%, 간이시설 형태는 26.4%임
  - 시설 구조로는 (철골) 샌드위치 판넬 형태 47.3%, 철근 콘크리트 구조 33.3%, 비닐 하우스가 10.1%, 컨테이너 형태가 3.9% 순임
  - 도축장 시설 중 도축실 보유 비율이 98.4%로 가장 높으며 용도별 시설 중 평균 면적은 계류장이 287.5㎡로 가장 큼
- 도축실적 현황
- 개 도축장의 1일 평균 계류 능력은 2023년에는 74.6두이며, 도축 능력 대비 도축 실적은 연간 약 30% 수준임
  - 1일 평균 가동시간은 약 4시간, 연평균 가동일수는 도축일수를 기준으로 연간 약 80%의 가동률(약 290일)을 보임

- 최근 3년간 도축 비율은 자체 구매(판매) 물량이 약 76%임
- 2023년 기준 개 도축장의 반입 두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1,912두로 도내 반입 두수는 1,055두였으나 반출 두수는 1,201두로 더 많음
- 2023년 기준 육견 한 마리당 도축 수수료는 46,094원으로 상승 추세에 있음

□ 개 도축장 운영 현황

- 2023년 개 도축장의 총매출은 약 3억 2,604만원, 총비용은 2억 4,962만원, 영업이익은 7,642만원임
- 매출 구성 비율은 지육 판매가 65.8%, 도축 수수료는 31.6%, 기타 수익(개소주, 탕약 등 가공 수수료)은 2.6% 순임
- 비용은 시설 운영비(58.6%)와 시설 유지보수비(17.4%)에서 주로 발생함
- 도축장의 전체 고용인력은 93명이며 도축장 중 63.6%는 1인 경영체로 운영됨
- 개 도축장이 보유한 유형자산 가치 중 1억원 이하의 유형자산이 2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최근 3년간 도축 설비에 투자한 도축장은 전체 도축장의 44.2%이며, 신규 투자 금액은 부지 구입이 1억 1,667만원으로 가장 높음
- 도축장 외에 육견 사육 농가로서 겸업 중인 비율은 41.1%임

3) 유통업 현황

- 개고기 유통업체 현황조사에 참여한 106개 업체의 응답자 분석 결과, 평균 연령은 61.7세, 유통 및 판매 경력은 평균 18.7년임

□ 유통업체 운영 현황

- 2023년 개고기 유통업체의 총매출액은 1억 7,671만원으로, 이 중 개고기 판매 매출은 1억 4,367만원, 영업이익률은 24.9%로 확인됨
- 재료비 구성에서는 개고기가 70.9%, 개고기 외 축산물이 29.1%로 구성됨
- 매출액에서 현금 결제의 비중이 69.8%로 가장 높았으며, 카드 결제가 29.7%, 지역 화폐 결제가 0.6%를 차지함

□ 구매 및 판매 현황

- 2023년 기준 유통업체의 연평균 개고기 구매금액은 1억 5,710만원으로 하절기(6~8월, 3개월) 구매금액은 6,265만원, 하절기 외 기간(9개월)은 9,445만원임
- 유통업체의 개고기 주요 구매 경로는 농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비율이 45.3%임
- 연평균 개고기 판매금액은 2억 3,186만원으로 집계되며 하절기(6~8월) 판매금액은 9,342만원, 하절기 외(9개월)는 1억 3,844만원으로 확인됨
- 하절기(6월~8월)에는 하절기 외 기간보다 개고기 거래가 활발하며 가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음
  - 하절기에 월평균 구매 주기는 10.2회, 월평균 구매량은 2,061kg, 월평균 kg당 구매 가격은 12,111원, 월평균 판매량은 2,097kg, 월평균 kg당 판매금액은 18,579원으로 조사됨
  - 하절기 외 기간에는 월평균 구매 주기는 5.8회, 월평균 구매량은 1,055kg, 월평균 kg당 구매가격은 11,465원, 월평균 판매량은 1,054kg, 월평균 kg당 판매금액은 17,749원으로 나타남

4) 음식점 현황

- 개고기 조리음식점 조사에 참여한 300개 업체의 일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 연령은 63.4세로 평균 개고기 판매 기간은 20.8년, 평균 신고면적은 128.5㎡으로 조사됨

□ 음식점 운영 현황

- 2023년 개고기 조리음식점의 총 매출액은 2억 447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개고기 매출액은 1억 5,631만원(76.4%), 영업이익 비율은 26.6%임
- 비용에서 식재료비가 47.8%를 차지하며, 식재료비 중 개고기가 64.3%를 차지함
- 개고기 조리음식점의 전체 매출 중 카드 결제 비율이 88.9%로 가장 높음

□ 구매 및 판매 현황

- 개고기 외 조리·판매 메뉴 재료로는 닭이 75.0%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염소(47.7%), 오리(19.0%), 돼지(6.0%), 미꾸라지(5.0%), 기타(4.0%), 소(3.7%) 순임

- 2023년 기준 연평균 개고기 구매금액은 총 8,113만원으로 이 중 하절기(6~8월) 구매금액은 3,849만원, 하절기 외(9개월)에는 4,264만원으로 조사됨
- 하절기에 월평균 구매금액이 1,283만원, 월평균 구매 주기는 14.7회, 월평균 구매량은 842kg, 월평균 kg당 구매금액은 15,014원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거래가 활발함
- 개고기 조리음식점의 주요 개고기 구매처는 상인(유통·판매업자)이 50.3%, 농장 45.0%, 도축장 2.3%, 직접 사육(농장 운영) 2.0%, 기타 0.3% 순임

#### 다. 개식용 종식 운영 신고 접수 현황

- 「개식용 종식법」에 의거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공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각 지자체에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공포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24년 11월 중순 기준으로 모든 지자체는 총 5,898건의 신고를 수리했고 이들로부터 모든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음
  - 이행계획서 제출 결과, 개식용 농장은 1,537건, 도축업은 221건, 유통업은 1,788건, 식품접객업은 2,352건으로 나타남

〈표 6〉 업계별 신고 수리 및 이행계획서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농장	도축	유통	식품접객	
수리 건수	5,898	1,537	221	1,788	2,352
이행계획서	5,898 (100%)	1,537 (100%)	221 (100%)	1,788 (100%)	2,352 (100%)

자료: 업계(농장주, 도축상인,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2024년 11월 중순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2024년 9월)이 발표됨에 따라 '25. 2.까지 이행계획서는 수정될 수 있음.

#### 라. 구조 및 보호 동물 관리 시설 현황

- 동물보호 관점에서 잔여견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개사육 농장주들의 편중된 폐업·전업 시점, 개식용 소비 감소 및 도축장 미운영으로 인한 도축 불가, 농장주의 잔여견 유기 또는 소유권 포기 등이 요인으로 예상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하여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동물보호센터, 구조 동물 보호·관리,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및 활동 현황을 매년 발표함
  - 2023년 기준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한 동물보호센터는 22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민간 위탁의 동물보호센터는 157개소(68.9%),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31.1%)임
  - 같은 기간, 구조된 유실 또는 유기동물은 총 113,072마리로 개는 전체 71.2%인 80,467마리임
  - 구조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형태의 비중은 자연사가 27.6%로 가장 높으며, 입양(24.2%), 인도적 처리(안락사)(18.0%), 보호중(13.3%), 반환(12.1%), 기증(2.9%) 순으로 나타남
  - 정부 및 지자체가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해 동물보호관을 지정하고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하는데, 2023년 기준 765명의 동물보호관이 1,146건의 직무 실적을 기록했으며 644명의 명예동물보호관이 4,068건의 직무 활동을 수행함

#### 마. 개식용 관련 여론 현황

##### 1) 동물복지·개식용 관련 국민 인식 현황

- 동물복지 및 개식용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실시하였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살펴봄
- 동물의 법적 지위 마련, 기본적인 관리 제공 의무화 그리고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 및 권리 박탈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공감대가 형성됨
  -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에 높은 긍정률(96.1%)를 보임
  - 기르는 동물의 종류에 따른 동의율은 개를 키우는 응답자가 97.4%로 가장 높음
  -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 명시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94.1%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섭취한 경험이 없는 비율은 94.2%(‘22년), 94.5%(‘23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음
  -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정서적 거부감이 53.5%, 사육 및 도살 과정의 잔혹성(18.4%), 비위생적인 생산 및 유통 과정(8.8%), 사회적 비난(7.1%) 등의 순임
  - 연령, 성별, 지역, 직업군에 따라 개고기 취식 경험이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개고기 섭취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육, 도살, 판매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며 정부의 관리 및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짐
  - 2023년 조사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상 개고기 판매·취급 불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56.5%(2023년)로 전년 대비 16%p 증가함
  -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육·도살·판매 행위 금지에 대한 동의는 2022년 72.8%에서 2023년 82.4%로 9.6%p 증가함
  - 도살 및 판매 행위 금지가 가져올 효과로 학대받는 개들이 감소할 것이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함
  - 개 식용 산업 대상 정부 현행법 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93.5%임
  
-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은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취식 이유가 다름
  - ‘호기심 때문에’라는 응답은 20대에서, ‘회식 등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하여’라는 응답은 50대에서,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는 60대에서 가장 두드러짐
  - 회식 등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하여’라는 응답은 도시 지역(17.6%)에서 더 높은 반면, ‘가족/친구/동료 등의 권유로’라는 응답은 농어촌 지역(35.0%)이 도시보다 높음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 비율이 93.4%로 전년도(88.6%)에 비해 4.8%p 증가함
  - ‘먹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에서 9.3%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에서는 5.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먹을 의향이 있다’의 응답률은 남성(10.1%)이 여성(3.0%)보다 높음

## 2) 관련 법령 및 로드맵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여론

- 대한육견협회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강제적인 조치에 대해 반대해 왔으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된 후에도 해당 법안의 부당함과 보상 기준의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있음
  - 2023년 6월 대한 육견협회와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가 고령화되고 개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마리당 일정 금액의 보상금, 도축 및 유통업체에는 생계안정자금, 음식점에는 전업을 위한 비용 보조 등을 요구함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후 2024년 3월 26일, 대한육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음
  - 2024년 9월 26일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이 발표되었지만, 사전 논의의 부족과 짧은 유예기간, 업계 종사자에게 불리한 계획안의 발표 시점, 타 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해당 계획의 불합리함과 위법성을 지적하였음
  
- 동물보호단체들은 과거에도 개고기 소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민들의 인식을 근거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지지하고 있음
  - 한 동물단체에서 진행한 ‘2023년 개고기 소비 및 태도 조사’를 토대로 일반인들의 개 식용 여부 및 의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에 대한 태도, 적절한 종식 시기 등을 조사하여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함을 알림
  - 2024년 6월 여러 동물보호단체들이 연대하여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합헌성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위법성, 짧은 유예기간 등의 대한육견협회의 의견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힘

## 2. 유사사례 검토

### 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 폐업지원금은 2019년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ASF의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의 자발적 폐업에 따른 2년간의 영업손실액을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됨
  - 2020년 11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지원대상, 기준, 상한액, 사후관리 규정 등의 세부절차를 규정함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의 농가의 폐업을 장려하고 이후 4년간 동일 가축을 재사육하지 않게끔 사후관리하여 안전한 국내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자발적으로 폐업한 돼지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법」 제22조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마친 농가여야 함
  - 상속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제외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후 축사나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직전 1년 이상 돼지를 기르지 않거나 이미 축사를 철거·폐업하여 사실상 사육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 방역 측면에서 ‘온전한 폐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 축사 중 일부만 철거·폐기한 형태로 돼지 사육을 유지하는 부분 폐업 농가에는 지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 타인의 축사를 빌려 사육하는 농가는 원칙상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허가 또는 등록 명목이 임차인이고, 임대인의 폐업 동의를 충족된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함
  - 중복 보상이 불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농가는 보조금을 받거나 용자를 전액 상환하지 않는다면 지원자격을 얻지 못함
  - 지원대상에 선정된 농가는 폐업신고와 함께 축사를 철거 또는 용도 변경 및 4년간 같은 축종 재사육 금지의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된 폐업지원금이 전부 환수됨

- 폐업지원금은 농가가 최근 1년간 실제 돼지 출하·판매 마릿수와 마리당 순수익액을 기반으로 2년치의 영업손실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며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유형별 기준에 따라 책정된 서로 다른 마리당 순수익 단가에 해당 농가의 1년간 출하실적과 2년치를 곱한 금액을 계산됨
  - 연간 출하 마릿수는 사업공고에 공지된 기준연도의 실제 출하 실적을 근거로 산정하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사 면적을 활용하여 마릿수를 환산함
  - 마리당 순수익액은 일반적으로 연도 직전 5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뺀 나머지 3년간의 평균 순수익으로 결정되거나 실제 사업공고 시 이미 확정된 단가가 공지된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없이 이 금액을 적용받음
  -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아 ASF나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농가는 지원대상자에 선정되었더라도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폐업지원금이 산출함
  - 폐업지원금의 상한이 존재하며 「축산법 시행령」에 정해진 마릿수 환산 기준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제시한 사육면적(2,880㎡)이 기준이 됨

〈표 7〉 폐업지원금 산출 방법

사육 형태		산출 공식
양돈농가	일관사육	연간 비육돈 출하 마릿수×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2년
	번식전문	연간 자돈 출하 마릿수×자돈 마리당 순수익액×2년
	비육전문(자가)	연간 비육돈 출하 마릿수×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2년
	비육전문(위탁)	연간 비육돈 위탁사육 마릿수×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액×2년
종돈장	GGP	연간 총출하 마릿수×출하 마리당 순이익×2년
	GP	연간 총출하 마릿수×출하 마리당 순이익×2년
돼지인공수정(AI)센터		연간 총정액 판매 팩수×정액 1팩당 순이익×2년

주: 1. 출하 마릿수(판매 수량)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사육(생산)하여 출하한 마릿수(판매수량)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판매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함.  
 2.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연도 직전 5년간의 마리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으로 마리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함.  
 3. 양돈농가(번식, 비육), 종돈장, 돼지인공수정(AI)센터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11. 16.),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020-91호.

- 폐업지원금의 지급 절차는 사업공고를 통한 농가의 지원 신청, 지자체의 신청 농가 검토, 지자체의 예산 배정 요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지급대상자 결정, 농가의 사육 중단 및 폐업 이행, 지자체 확인 후 지원금 입금, 사후관리의 순서를 따름

- 자발적 폐업을 결정한 농가는 관할 지자체의 사업공고를 통해 요건들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담당 공무원 또는 현장조사위원회가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함
-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예산 규모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요청받은 자금 배정을 검토·조정한 후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연도에 지원할 농가를 확정하여 각 농가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발송함
- 결정서를 받은 농가는 돼지 사육을 중단하고 폐업을 이행해야 하며 지자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폐업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최종 검토를 진행하여 지원금 지급을 확정함
- 지급이 확정된 농가의 계좌로 산출된 지원금이 입금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를 수행함

####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폐업지원

-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직접피해지원대책의 하나로 한·중국 FTA 발효를 기준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종료된 제도임
- 직접피해지원대책이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경영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한·중국 FTA 발효를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제는 10년, 폐업지원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
- 폐업지원제의 지원대상은 지원대상 품목 요건과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원대상 품목 요건을 충족하려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것 중, 재배·사육에 필요한 투자비용이 크거나, 2년 이상 장기간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품목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로 폐업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품목이어야 함

-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자격은 해당 FTA 발효일 이전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정당한 소유,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해 온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등록된 농업경영체,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폐업 이행을 입증해야 함
- 폐업지원금은 지원대상 품목(경종, 일반 축종, 낙농, 산란계, 양봉)에 따라 지원 금액의 산출 방식이 다름
- 경종(과수·원예) 품목은 실제 재배 면적과 최근 5년간의 평균 순이익을 고려하여, 약 3년간의 예상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책정함
    -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작물을 재배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재배면적도 일정 기준(예: 1천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일반 축종(한우·돼지 등)은 실제 사육·출하 마릿수를, 낙농은 농가별 평균 납유량을, 산란계는 사육 마릿수를, 양봉은 봉군 수와 부산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며, 공통적으로는 최근 5년간의 마리(혹은 리터, kg)당 순수익액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값을 적용함
    - 출하 마릿수나 납유량, 부산물 생산량 등은 농가별로 실제 사육 현황 및 납유실적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시·군·구의 현장 조사와 서류 검증이 이루어짐
-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 폐업 후 신고 및 현장조사 요청,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 농업인의 지원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지원금 결정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상태에서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실제로 해당 품목을 재배·사육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농업인 등은 해당 시·군·구에 폐업 후 그 사실을 알리고 현장 조사를 요청하면 지자체 담당자는 시설과 자원이 완전히 철거·폐기되었는지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 농업인 등은 확인서와 함께 폐업지원금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지원 신청을 접수하는데 때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열려 철거·폐기 상태나 폐업 지원 사유를 점검하기도 함

- 확인된 결과는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되며 각 품목별로 산정된 순수의액과 농가별 철거 면적·사육 규모 등을 종합해 최종 지원금을 결정함
- 최종 확정된 지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를 통해 시·군·구로 내려가며, 시·군·구는 심사를 마친 농가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함

####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본인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취득·수용당하거나 영업공간과 생산수단이 편입되어 계속적인 사업이나 생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상 대상은 공익사업 추진으로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며 구체적으로는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 법적으로 권리를 설정해 둔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해당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거나 근로를 하던 사람들, 농지나 축사,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농·축산·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분묘(묘지) 소유자 등이 해당함
  -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던 건축물이나 영업장, 불법적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 등은 보상 범위가 제한되거나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감정평가할 때 사실상 이용실태와 투자비용 등을 일부 고려하기도 함
-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 금액이 지급되며, 건축물은 이전이 가능하면 이전비용을, 이전 자체가 어렵거나 이전비가 시설물 가치보다 더 클 경우에는 건축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
  -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거주하던 소유자나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의 지원을 받음
  - 영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와 그 근로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휴업·폐업 보상이나 휴직·실직 보상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농지의 농작물은 수확 시기나 성장 정도 등을 감안해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축사나 사육시설은 시설 이전 비용과 가축 운송비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양식장이나 어장은 생산량 감소나 양식시설 철거·이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평가 대상으

로 인정받음

- 분묘(묘지)가 있는 경우는 이장에 필요한 비용과 석물·비석 이전을 위한 경비가 포함되어 보상금이 책정됨
  - 이 밖에 공익사업 대상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만 편입되어 남은 잔여지·잔여건물의 경우 실제 사용이 어려운 상태라면 추가 편입을 신청해 나머지 부분도 함께 매수하도록 할 수 있음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의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의 토지·건축물 정보 조사, 관련 정보 열람 및 정정,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마련,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 협의취득 계약 체결 또는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순임
-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한 후 이 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함
  - 조사와 열람·정정 절차가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마련하여 열람 공고하고 소유자나 권리자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함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면, 소유자나 권리자는 해당 보상안에 동의하거나 재평가를 요구하여 금액 조정 가능성을 확인함
  - 제시된 금액과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시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
  -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양측 의견을 살핀 후 보상금과 수용·사용 범위를 결정해 재결서를 통보하는데, 만약 재결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
  - 협의취득 방식일 때에는 대개 보상 협의가 끝난 직후부터 계약서에 적시된 기간 내에 실제 보상금이 지급되며, 수용재결 방식일 때에는 재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정한 기한 이내에 지급되거나 공탁됨

## 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운영 중인 축사는 이전이나 위해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동법 제8조 4항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정당한 보상이 이행
  - 시행령 제5조는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만약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 비용이 시설물 가치보다 크면 해당 시설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축사 이전 보상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은 축산농가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여러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를 원료로 비료나 토양 개량제 등 재활용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사업자, 친환경 축산물 인증(무항생제, 유기축산 등)을 받은 축산농가나 시설 운영자, 액비 살포와 운송, 장비 임대 등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유통센터나 공동살포단 등이 있음
  
- 「가축분뇨법」을 통한 지원은 재정적 지원, 전문 기술 자문 및 컨설팅, 교육·홍보사업 지원, 유통 마케팅 부문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짐
  - 축산농가나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개·보수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나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축분뇨를 원료로 비료나 토양 개량제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를 도입하거나 개선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 축산농가나 사업자에게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 자문 또는 컨설팅 지원이 제공됨
  -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화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사업도 지원함
  -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 제품 홍보나 판촉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며 이외에도 살포 장비나 운송 차량을 확충·보강받을 수 있음

- 「가축분뇨법」에 따른 지원은 지원 신청과 종합검토, 지원 대상자 선정, 사업 협약 체결, 예산 교부, 사업 수행,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의 사후확인의 과정으로 진행됨
  - 축산농가나 관련 단체·사업자가 가축분뇨 처리·자원화 사업계획을 마련해 관할 시·군·구청(환경·축산 부서 등)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지자체에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
  -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보조금(또는 용자금) 교부 결정과 함께 사업 추진 범위, 예산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이후 시설·장비 설치나 운영비 사용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교부됨
  - 사업을 수행한 다음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준공 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검증 및 점검을 통한 사후 확인이 이루어짐

#### 마. 조류독감 사전방역 관련 사육제한 제도 및 보상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조류독감’)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농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부와 지자체는 해당 농가의 경영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서는 가축의 사육 밀집도가 높아 질병 확산 위험이 큰 지역이나, 철새 도래지 인근과 같이 야생 조류를 통한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사육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제한 조치 시행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해당 농가의 경영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서는 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서는 사육제한 보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 산정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제한 보상금 사업 지침(2024~2025)」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철새 도래지 인근의 가금류 농가, 이동제한 명령을 받은 지역 내 농가,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받은 농가, 그리고 자발적 휴업 또는 일시적 사육중단에 참여하는 농가가 지원의 대상이 됨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류독감 사전방역 관련 사육제한 보상 대상은 주로 오리 사육농가로, 사업 지침에 따르면 오리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매개체로 작용하여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하거나 과거 조류독감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의 오리 농가, 또는 사육 밀도가 높아 질병 확산 위험이 큰 농가들이 우선적인 지원 대상이 됨
    - 오리 외에도 산란계나 육계와 같은 가금류 농가 중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해 이동제한 명령을 받은 지역 내 가금류 농가도 인근 지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받은 농가는 살처분된 가축의 가치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음
  - 자발적 휴업 또는 일시적 사육중단에 참여하는 농가도 고위험 시기에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입식을 중단하거나 사육 규모를 축소할 경우 소득 감소분을 보전받을 수 있음
-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농가에 대한 경영 손실 보상금 지급을 핵심으로, 방역시설 개선 및 현대화 지원, 소득 다각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지원, 저위험 지역으로의 농장 이전 비용 지원,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서비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됨
- 조류독감 사전방역을 위한 가금류 사육제한제도의 핵심 지원 내용은 재정적 보상으로, 「가축 제한 보상금 사업 지침(2024~2025)」에 따르면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오리 농가는 기존 사육규모와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음
    - 평균 사육일수, 사육 마릿수, 표준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가별 보상액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제한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의 80~100%를 보상받을 수 있음
  - 가금류 농가의 방역시설 개선이나 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며, 사육제한 조치 이후 재입식을 위해 축사 시설을 개선하거나 차단 방역 시설을 강화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시설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사육제한 기간 동안 농가의 소득 다각화나 대체 소득원 발굴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지원도 제공되며, 경영 컨설팅이나 대체 소득원 발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저위험 지역으로 농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며, 철새 도래지 인근이나 가금류 사육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조류독감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농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과 신규 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육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도 제공
- 농가가 관할 시·군·구 농축산 부서에 사육 현황과 예상 손실액 등이 포함된 보상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현장 조사와 서류 심사를 통해 보상 대상 및 금액이 결정되어 지급되며, 장기 사육제한의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하고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방역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조류독감 사전방역을 위한 사육제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관할 시·군·구의 농축산 부서에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농장 정보, 사육 현황, 제한 조치 내용, 예상 손실액 등의 정보와 함께 사육 규모와 수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현장 조사와 서류 심사를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심의함
  - 보상금 청구 시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표준 청구서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항목과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사육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추가 발생한 방역 비용이나 가축 관리 비용 등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사육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과 분할 지급도 가능하며, 3개월 이상의 장기 사육제한 조치를 받은 농가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농가는 방역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보상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사육제한 조치 해제 후에도 강화된 방역 관리 의무를 가지고 정기적인 방역 점검과 교육에 참여해야 함
  -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는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사업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채무 문제를 해소하고, 재취업·재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폐업부터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함
- 희망리턴패키지는 크게 경영개선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경영개선지원 대상은 일차적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매출·신용·지역적 요인 등을 고려해 폭넓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소상공인은 경영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 기회를 가짐
  -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폐업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채무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함
  - 재취업지원은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도우며 취업교육(기초·심화·특화 과정을 선택), 구직활동 지원, 전직장려수당 등의 혜택을 지원함
  - 재창업지원은 재창업 의지와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기준, 업종 제한 등을 충족하면서 전문 평가 절차를 거쳐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멘토링과 함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
- 희망리턴패키지의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과 세부적인 지원 내용이 다름
  - 경영개선지원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최근 3년간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직 사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 실무역량 강화와 함께 실행계획에 따라 최대 2천만원(정부와 자부담 매칭)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
  - 원스톱 폐업지원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거나 이미 폐업을 진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의 필요 절차와 비용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최대 250만원의 점포 철거비용 보조, 법률 자문 제공, 공

적·사적 채무조정 연계 등을 지원함

- 재취업지원은 만 69세 이하 소상공인과 이미 폐업한 경우 그 배우자까지 대상을 넓혀 임금근로자로의 수월한 전환을 위해 취업 관련 기초교육, 구직 현장 관련 심화교육과 특화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내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함
  - 재창업지원은 다시 창업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재창업 기본교육, 사업화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가르치고 사업모델 구체화 및 준비 과정에서 업종에 따라 최대 2천만원(정부와 자부담 매칭) 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
-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용 누리집(hope.sbiz.or.kr)에서 통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 프로그램에 따라 선발과 협약 체결, 사업 수행, 그리고 비용정산과 지급 방식이 조금씩 다름
- 경영개선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매출 감소나 저신용 여부를 확인받고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과하면, 소진공과 협약을 체결해 세부 계획을 확정 후 교육·컨설팅 수수료 및 점포 리뉴얼, 광고·홍보 등 사업화 자금 사용 실적을 제출한 다음, 공단에서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정부 지원금이 최종 지급됨
  - 원스톱 폐업지원에 신청한 소상공인은 폐업일 또는 폐업 예정일을 비롯해 임대차계약 현황 등을 제출한 뒤, 점포철거비나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등 필요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됨
  - 재취업지원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면, 매칭된 교육기관에서 기초교육, 심화교육, 특화교육을 순서대로 이수하며 이후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했을 때 취업 여부 및 근속 기간(고용보험 가입) 확인을 거쳐 100만원 한도로 분할지급(40만원+60만원) 또는 일괄지급(100만원)의 형태로 장려수당이 지급됨
  - 재창업지원은 신청 후 재창업 교육을 이수, 사업화 계획 수립, 멘토링을 차례로 진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재창업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 종료 시에는 집행 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소진공에 제출하여 적격성을 인정받으면 사업화 비용을 지급함

### 3.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가. 관련 법률

##### □ 폐·전업 지원 근거

- 「개식용종식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제12조(전업의 지원)
  -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폐·전업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6조(폐업지원의 대상),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제9조(전업 지원의 대상), 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
  - 폐·전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규정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신고),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
  -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의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규정

##### □ 폐·전업 지원금 산정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 개사육농장의 축사가 「건축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개사육농장이 「농지법」 제35조 전단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나, 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경우는 50% 감액

#### 나. 국정과제

- 본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의 이행과제로 추진

□ 과제목표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 주요 내용

-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 학대 및 개물림 사고 방지 제도 강화
  -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법정형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다. 상위 및 관련 계획

1) 「동물복지 강화 방안」(2022. 1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2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동 방안에는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1.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2.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및 ‘3.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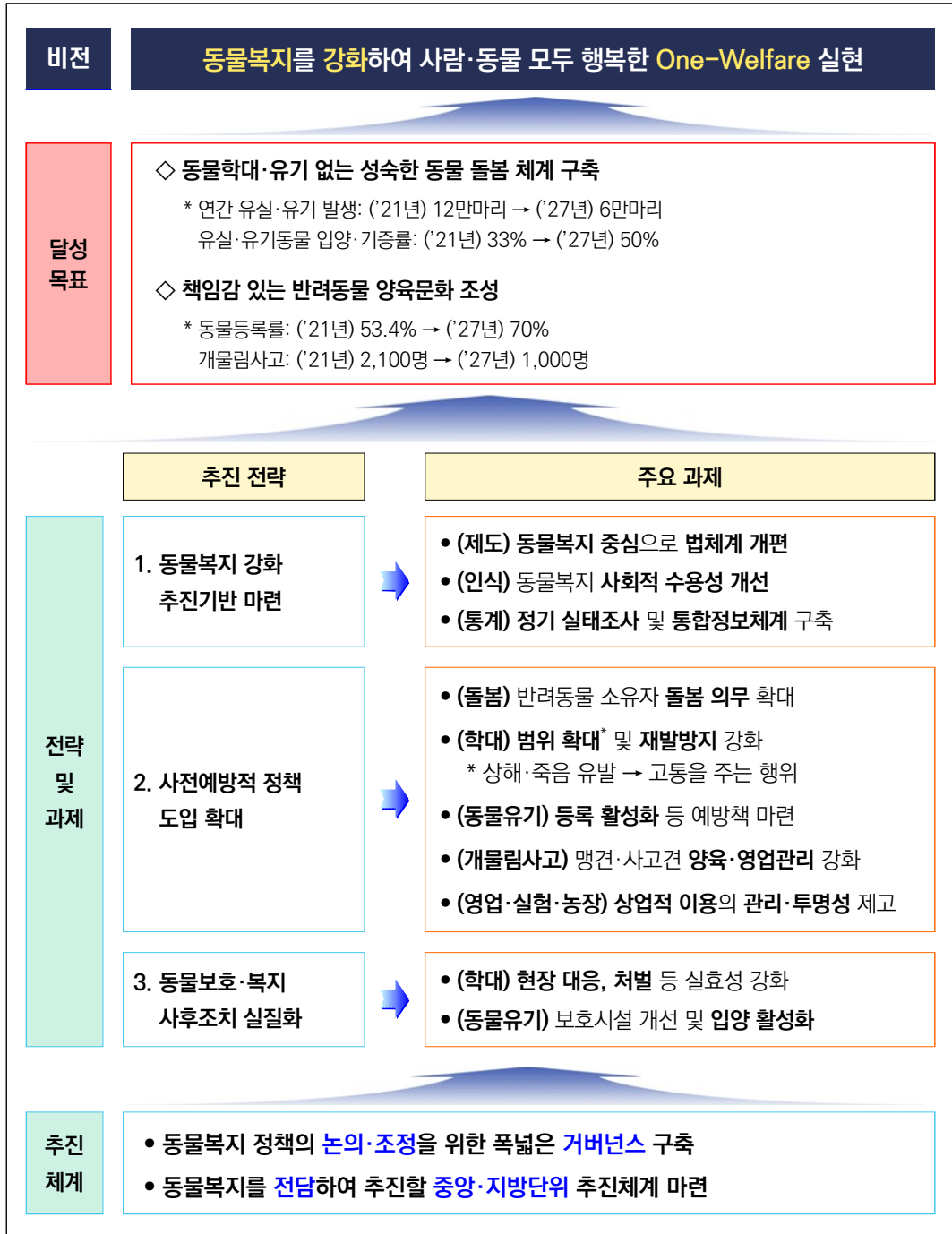
□ [전략 1]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 강화
-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 사업 추진
-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면서 조사방식·대상을 개선하고(23, 통계청 협업), 기관·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구축

- [전략 2]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양육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
  -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높여 나감
  -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확대
  -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
  -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 행위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
  
- [전략 3] 동물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 강화
  -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 체계 구축
  -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격상(차관급, '23. 4., 법) 및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

□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

[그림 3] 「동물복지 강화 방안」의 비전 및 전략



## 2)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2024. 9.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목표: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

□ 추진전략

1.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2.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3. 사회적 공감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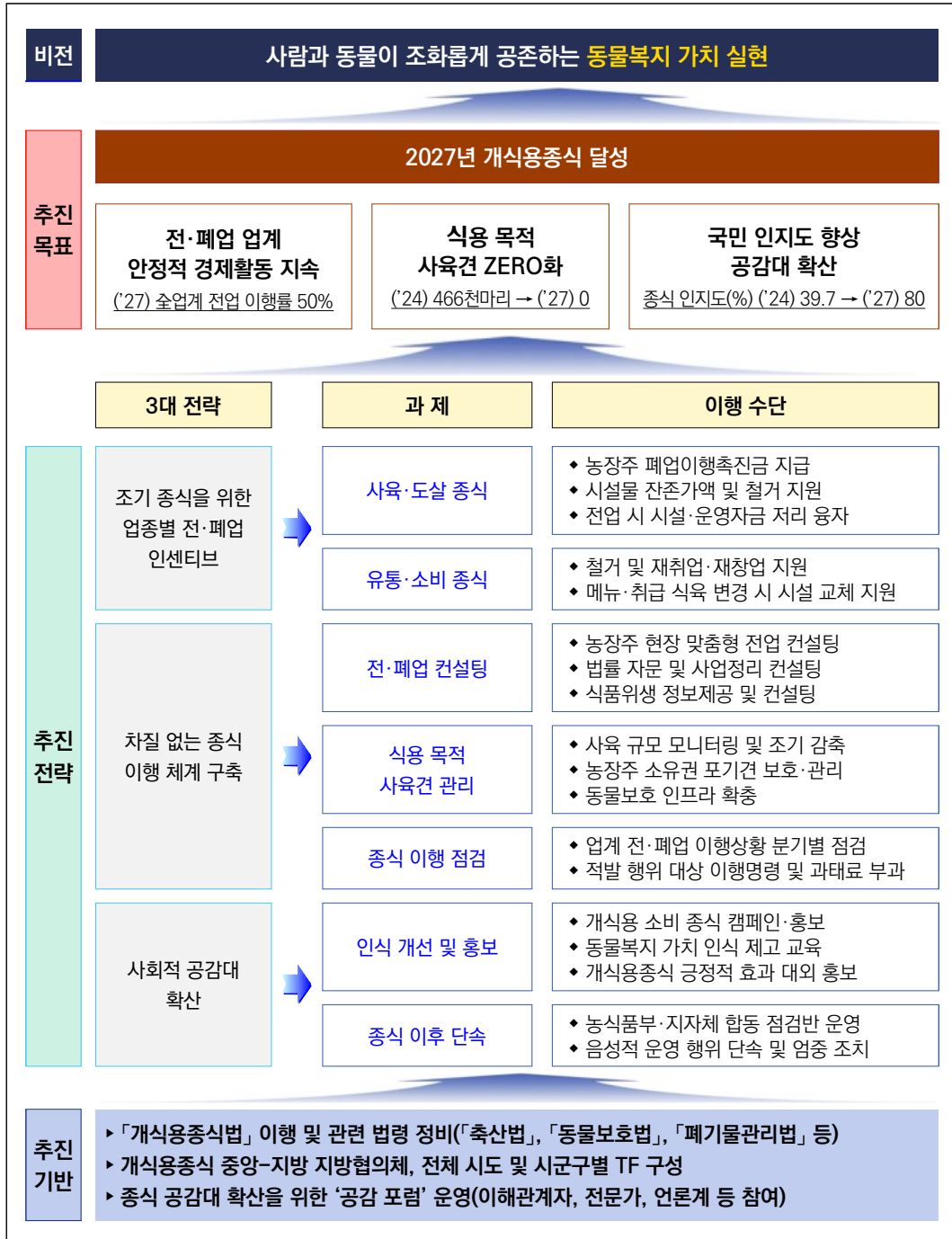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첫째, 개 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계 5,898개소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정부는 업계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
  -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 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5만원을 지원
  -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용자 지원
- 둘째, 차질 없는 개 식용 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
  - 현재 약 46.6만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

- 셋째, 개 식용 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
  -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 식용 소비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하여 개 식용 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
  -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2027. 2.)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는 등 「개식용종식법」을 포함한 여타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

□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림 4]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추진일정

[그림 5]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추진일정

정책과제	일정	주관
<b>1.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b>		
<b>가.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b>	2025~	농식품부
• 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원	2025. 1. ~ 2027. 2.	
•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2025. 1. ~ 2027. 2.	
•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저리용자	2025~	
<b>나.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점객업자 전·폐업 지원</b>	2024~	관계부처
•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2024~	중기부
•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재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2025~	
• 전업 시 시설·물품 교체 지원	2025. 1. ~ 2027. 2.	
<b>2.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b>		
<b>가. 전·폐업 컨설팅</b>	2024 ~	관계부처
• 전업 희망 농장 대상 현장 맞춤형 컨설팅	2024 ~	농식품부
• 전업 업종 관련 식품 위생 정보제공 및 컨설팅	2025 ~ 2027	식약처
• 폐업 소상공인 지원	2024 ~	중기부
<b>나.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b>	2024 ~	농식품부
• 농장주 사육규모 감축 등 이행 점검	2024. 9. ~ 2027. 2.	
• 소유권 포기건 보호·관리	2024. 9. ~	
•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2024 ~	
<b>다. 종식 이행점검</b>	2024 ~	
• 개식용종식법 위반행위 분기별 현장점검	2024 ~ 2027. 2.	
<b>3. 사회적 공감대 확산</b>		
<b>가.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b>	2025 ~	농식품부
• 개식용 소비 종식 캠페인 및 홍보	2025 ~	
• 동물복지 가치 인식 제고 교육	2025 ~	
<b>나. 종식 이후 단속 강화</b>	2027. 2. ~	
• 종식 이후 식용 목적 운영행위 단속 및 조치	2027. 2. ~	

3)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서」  
(2024. 1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서」를 발표
  - 동 지침은 「개식용종식법」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근거로 사업시행을 위한 지침서로서, 이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추진단임
  - 주요 내용: 1.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3. 지원형태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 절차 및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의 역할을 제시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서」(2024.12.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I. 사업 개요

- 목적: 「개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
- 근거법령 및 기본계획
  - 「개 종식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II. 2025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 지원 대상자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자 중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 도축상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제한 사항 제시
- 지원 내용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개사육농장·도축장의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개사육농장주 소유권 포기건의 보호관리 비용
- 지원형태 및 기준: 생략

III.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
- 신청서 확인 및 대상자 선정 단계
- 자금요청 단계
-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 이행점검 단계

별지 서식

##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

### 가. 사업설계 적정성의 쟁점

#### □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근거한 업계의 전·폐업 지원과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목표가 정부의 정책 기조 및 기본계획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면밀히 평가해야 함
- 현재 성과지표가 '전업·폐업 농가 수'라는 단순 산출지표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정부의 동물복지 강화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함

#### □ 사업설계의 적정성

- 정책 수혜의 형평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수혜 대상의 명확한 규정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758개소의 개사육 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에 대한 대상 선정의 기준과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개고기 가격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 가능성 및 사업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적 장치들의 충분성을 점검하고, 지원금 수령 후 불법 영업 재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검토

#### □ 추진방법의 적절성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 시설물 철거 대행으로 구성된 세 가지 핵심 지원체계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평가
- 사후관리 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 등 관리 방안의 실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축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검토

□ 전달체계의 적정성

- 농림축산식품부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는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각 단계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졌는지 평가
- 사업의 신청 방식이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적절성 여부와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장 지원체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 지역별 사업 대상의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인력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검토
- 각 단계별 실행 절차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점검하고,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여부를 평가하며,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운영 가능성을 검토

나. 비용 추정의 쟁점

□ 최초 비용 추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마련 필요

- 사업계획에서 추정한 비용이 실제 비용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농가 수 증가, 시설 철거비용 상승, 행정비용 추가 발생 등이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시설 철거비용 증가, 잔여건 관리 비용, 추가 행정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총사업비 356,238백만원(국비 179,769백만원)의 적정성을 재검토
-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나 사업대상자의 확대에 대비해 재정 계획을 어떻게 조정할지, 비용 변동 농가 수 증가, 시설 철거비용 상승, 행정비용 추가 발생 등이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원단가가 현재 「개 사육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폐업시기 구간별 지원단가를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지원단가와 기본 지원단가(30만원) 간 차이를 야기할 수 있음
- 「농지법」 위반자의 숫자가 수요 재추정 시 바뀔 수 있으며, 이는 평균 지원단가 및 철거비용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지원 금액 적절성

- 1인당 지원금이 농가의 폐업 및 전업을 유도하는 데 충분한지, 사업목표(농가의 폐업

및 전업)를 달성하기에 적정한 금액인지 논의가 필요함

- 지원금이 과도하거나 부족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부담 도입 여부에 대해 비용 추계 필요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혜자에게 어느 정도 자부담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음

- 자부담 도입이 실효성을 높일지,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 위험성 검토

○ 인구 및 산업 변화에 따른 재정 리스크 고려 필요

- 인구 고령화와 농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원 대상자나 재정 소요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변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으로 다뤄져야 함

○ 장기 재정 계획의 적정성

- 사업 기간 이후에도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 계획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다. 정책성 분석의 쟁점

□ 내부여건

○ 본 사업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나 상위 계획(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정책적 목표와 현장 상황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논의 필요

- 특히 반려동물 생명보장 및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국정과제와의 일관성을 확인해야 함

○ 상위·관련 계획의 관련성

-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사업이 국가 계획 및 정책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나 중앙정부 계획, 지자체 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 설정의 적절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해외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부여건

- 이해당사자의 사업 수용성: 개사육농장주 및 도축업자들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함
  - 사업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특히, 업종 전환에 대한 농가들의 태도와 준비 상태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농가, 도축업자, 동물권단체,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음

□ 정책효과

- 사업 추진 이후 기대되는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달성 가능한지, 정책 목표와 실제 결과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긍정적 및 부정적 정책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측정 체계를 구축
- 사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 효과가 구체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업 및 폐업을 통한 농가와 도축업자의 감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함

### Ⅲ.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

####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 가.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주무부처가 제시한 사업목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통과로 인한 ‘관련 업계의 전·폐업 지원을 통해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소’하는 것임
  -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폐업에 대한 보상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사회적 문제 인식은 구체적임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전·폐업 지원을 위한 이행촉진지원금, 시설철거비용,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이와 함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본 사업의 지원기간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확정함
-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중 폐업을 완료한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를 수혜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함
  - 수혜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사육농장주’에게는 이행촉진지원금, 시설철거비용 및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과 전업을 지원하고, ‘개식용 도축업자’의 경우 기존의 법에 의거하여 불법성이 명확하기에 이행촉진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만을 제공함
- 그러나 사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산출(output)지표인 ‘폐업 농가(육견) 수’에만 초점을 맞춰 ‘개사육농장주’만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폐업을 지원했는지만 알 수 있음
  - ‘폐업 농가(육견) 수’는 해당 사업이 다루는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의 ‘전·폐업 지원’을 통해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소’가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함
  - 이러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는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에서 다룸

## 나.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 본 사업은 개 식용 종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사육농장주와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전·폐업과 관련하여 농가 상황에 적합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사업목표와 사업내용 간 높은 논리적 연결성을 보여줌
  - 이와 함께 다른 재정사업들과 연계한 전업 컨설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사업계획은 사업목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한 측면에서 긍정적임
  
- 개사육 업계에 대한 조사·분석과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으로 지원 방식과 지원금의 수준을 논의하고 폐업시기별 마리수당 이행촉진지원금의 지원단가를 차등 적용함
  -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된 마리수당 '순수익액'을 고려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에서와 같이 조기 폐업 유도를 목적으로 지원단가를 차등 적용함
  - 사업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사업의 실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음
  
- 다만, 아래와 같은 요인으로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함
  - 현재 제시된 사업 내용에서는 평균 무게 산정을 통한 마리당 단가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농장주는 상품 가치가 낮은 것만 신고하고 가치가 높은 것은 암시장으로 거래할 유인이 존재함
    - 현 사업계획하에서는 개체의 상품 가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평균 대비 무게가 낮은 개체만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을 유인이 큼
  - 무게별 또는 월령별로 나누어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이러한 부작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 정부 정책방향,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

-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설정한 정책방향 및 상위 계획과 높은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 본 사업은 정부가 설정한 정책 방향 중 국정과제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에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 강화'와 관련 있음

- 2024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포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3대 전략과 7대 과제 중 '업계 전·폐업 지원' 추진전략의 세부과제인 '사육·도살 종식'과 관련하여 본 사업 내용이 제시됨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은 2024년에 제정된 「개식용 종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종식 기한(2027년 2월) 내 원활한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수립되었고 본 사업도 이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됨
  - 본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동법 제3조(국가 등 책무),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제12조(전업의 지원)를 근거로 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공식 인정되고, 상위 계획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본 사업의 정책적 정당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요소임

## 라.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는 단순히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 수준을 넘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outcome)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로서 프로그램이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도 단기간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지만,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드시 설정해야 함
  - 사업 진행 후 특정 시점에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함
  - 데이터 수집과 측정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계획서에는 데이터 수집 주체, 수집 대상, 수집 주기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사업의 성과지표를 ‘전업·폐업지원 육견 농가 수’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2025년 목표치를 200개소로 정함
  - 이 성과지표는 지자체의 신청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단순 산출지표에 불과
  
-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정량적 수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표인 ‘개 식용 종식’에 해당 사업이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로 설정되어야 함
  - 예를 들어, 2024년 전체 육견농가 대비 전·폐업 지원을 받은 농가의 비율을 활용한다면 지원사업이 육견농가의 전·폐업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
  - 또한, 간접적으로 외식업체의 타 가축 비율을 높이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는 지원대상 중 육견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부족함
  - 주무부처도 2차 질의응답(2024. 12. 21.)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인정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임
  -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육견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업자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성과지표 산정이 필요함

## 2. 사업설계의 적절성

### 가.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합성

- 사업의 수혜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또한 수혜대상이 앞서 검토한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0조 제6항과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에서, 이행계획서에 따라 폐업을 완료한 ‘개 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로 구체적으로 설정됨

- 「'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안)(2024. 12.)」에 따르면 '이행 계획서 제출기한인 '24. 8. 5.까지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함
- 한편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법에 명시된 자진신고 기간에 제출하였음에도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서 개 식용 종식 기한으로 삼고 있는 2027년 2월까지 개사육 농장과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농장주들이 이행계획서에 따라 증식 및 입식을 중단하고, 사육견의 개체 관리 현황과 사육 규모를 감축하여 전업 또는 폐업을 이행하는지 등을 평가함
  - 이때, 이행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아 폐업이나 전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사업계획서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구체화하였음
-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본 사업의 수혜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목표와 비교적 잘 부합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수혜대상을 한정된 것은 사업대상이 관련 법에 의거하여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적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수성에서 기인함
  - 이를 극복하고자 보다 구체적인 대상 설정과 현황 파악을 위해서 운영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주들에게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과정에서 대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기존의 불법으로 영업하던 농가들 또한 수용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 중에서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업 또는 폐업을 완료한 농가들로만 지원대상을 제한한 것은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개 식용 종식과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나. 수요의 충분성

-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는 각각 1,537개소와 221개소, 총 1,758개소로 이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전업 또는 폐업을

완료할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에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개고기 가격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 시점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 문화적, 전통적 요인 또는 특정 집단의 지속적인 수요로 법적 규제만으로 소비 패턴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
  - 만약, 「개 식용 종식 특별법」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개고기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하여 기존 수요자들의 반발적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개고기 가격이 상승한다면, 개사육 업체는 지원금 수혜를 포기하거나 최대한 미루고 개 식용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함
  - 이와는 반대로 개고기 가격이 일정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원금을 주는 시기에 몰릴 수 있어 부처에서 제시한 예상 사업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고기 가격과 이에 따른 행동 변화를 고려한 예산 설정과 대응 전략이 요구됨

#### 다. 비사업대상의 수혜 가능성 및 사업대상의 비수혜 가능성

-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설정된 목표를 적절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누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실제 사업 대상에 해당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본 사업은 수혜대상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수급과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고려하고 있어 사업대상 외의 인원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수혜대상은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전업 및 폐업을 완료한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로 한정함
  -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4년 2월 6일 이후 개 식용 관련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추가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원금 수령 후 개 식용 영업을 재개하거나 확장하는 등의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

- 2024년 2월 6일 기준 직전 1년간(2023년 2월 7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실제 영업 실적이 없거나 이미 폐업·전업한 것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수용이나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 다른 국가사업으로 인한 폐업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 보상을 방지함
- 다만, 본 사업은 일회성 지원 사업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중 일부가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24년 10월에 공포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운영신고서는 2024년 5월 7일까지, 이행계획서는 2024년 8월 5일까지 제출한 농가들만을 지원대상으로 고려함
  - 3차 질의응답(2025. 1. 20.)에서 주무부처가 제시한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안)」(2024. 12.)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24. 8. 5.까지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일원화됨
  - 하지만 3차 질의응답에서도 주무부처가 해당 사안을 인지하여,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상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나, 관련 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신고기한이 종료된 경우라도 신고 접수를 허용하여 이행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함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관리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향후 주무부처는 신고 요건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3. 추진방법의 적절성

#### 가. 사업추진방법 설계의 적정성

- 본 사업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 시설물 철거 대행의 세 가지 핵심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사육 마릿수와 폐업 시기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며, 시설물

잔존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실제 사육·도축시설의 가치를 보상하며, 시설물 철거 대행은 농장주의 추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킴

- 직접적인 현금 지원체계는 개 식용 산업 종식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 농장주의 자산과 생계 전환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짐
    - 폐업 시기별로 차등화된 지원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조기 폐업을 유도하면서도,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보상하고 철거비용까지 지원하여 농장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때문임
  -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적용하고 불법시설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함
- 폐업 이행 직후 해당 연도 내 보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 폐업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지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 연도 지급이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 상황을 고려해 시·도별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단계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음
- 폐업 이행 직후 해당 연도 내 보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농장주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공백기간을 최소화함
  - 또한 폐업 신청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연차별 지원계획을 통해 순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지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어 농장주들의 안정적인 생계 전환을 도모함
- 단발성 현금지원 사업들은 일회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정수급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본 사업은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4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연 1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폐업 농가의 사업장에 식용견 재사육 불허를 명시한 표지판과 부착물을 설치하도록 함
-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로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폐업보상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이중 보상 방지 규정은 사업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함

- 다만, 해당 제한은 특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 수준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자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언급이 없기에 중복수혜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나. 사업추진 주체 간 역할 구분의 명확성

- 집행기구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각자 담당하는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 보이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업무 지침과 서식이 마련되어 실무 수행의 일관성과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 수립, 운영지침 마련, 정책 결정, 예산확보 등의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보고받은 폐업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의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며, 사업시행 다음 연도 2월까지 최종 정산보고서를 제출함
  - 시·군·구는 폐업지원금 지급 전 신청인 및 농장주 관련 현장 확인을 통한 점검, 철거 대행 업체를 통한 사육 관련 시설 철거·폐기, 관련 증빙자료 보관, 폐업지원금 지급 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

#### 다. 유사제도와와의 정책조합 가능성

- 본 사업과 기존의 유사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각 사업들은 지원 목적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여 정책 중복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사업이 가진 고유한 정책 목표와 차별화된 수혜자 범위를 고려할 때, 사업 간 중복 지원의 우려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존 사업들과 다음 세 개의 사업과 연계되어 운영되며 이를 통해 농장주와 도축상인들의 원활한 전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개 사육 농장주들이 다른 축종으로 전환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축종별로 정해진 지원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농업종합자금지원(원예·축산생산업) 사업은 농장주가 원예업 등 농업으로 전업하고자 할 때 지원받을 수 있음
  - 도축가공업체지원 사업은 도축상인이 타 축종의 도축·가공 시설로 전환할 때 활용이 가능함
  - 단,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 여건을 갖추고 사업시행 지침상 지원 기준에 부합해야 함
- 다만, 본 사업과 연계된 지원제도들은 개 식용 종식만을 위한 전용 사업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함
- 위의 세 가지 지원 사업은 일반 농·축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 예산과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연계 사업을 통한 지원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4. 전달체계의 적절성

##### 가. 전달체계의 명확성 및 구체성

-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 배정부부터 지자체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및 시설물 잔존가액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실행 주체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됨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시·군·구와 시·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후관리 및 환수 체계도 상세하게 마련됨
- 사업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관 부서 및 담당자 지정이 명확히 이루어짐
- 현장 확인부터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설정함
  - 더불어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관리책임자 지정과 연 1회 이상의 현장 점검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나. 수혜자 접근 용이성

- 주무부처는 개사육농장주와 도축업자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해 지자체를 통한 직접 신청 방식을 채택하고, TF 운영을 통한 현장 지원, 홍보 및 교육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
  - 본 사업의 주요 대상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신청 방식보다 지자체를 통한 직접 서류 신청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업 홍보와 지원 절차 교육을 위한 별도의 예산 확보와 함께, TF 구성으로 담당 부서 교육과 현장 업무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음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발급, 시설물 철거 및 폐기 증빙, 사후관리를 위한 각종 서류 준비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와 구비서류가 요구되는데 이는 다소 복잡해 보임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현장 지원과 교육을 계획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황임
  - 특히, 사업 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임을 고려할 때,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 다. 집행기구의 적절성

- 본 사업의 집행과정은 명확한 업무 지침과 표준화된 서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농장주나 도축상인이 제출하는 폐업지원 신청서부터 시작하여, 시군구의 지원금 평가반 구성, 서면조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상세한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표준화된 서식으로 시·군·구는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신청서」, 「개식용 도축상인 (폐업, 전업)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지원금 평가반의 서면·현장조사, 확인 결과 통보 (별지 제4호 서식, 「폐업지원금 등 신청 산정 결과서」), 이의신청 처리(별지 제4-2호 서식, 「폐업지원금 등 신청 산정 이의 신청서」), 심사위원회 심의(별지 제4-3호 서식,

「폐업지원금 등 신청 산정 이의 신청 반영 결과서」까지 모든 과정에 활용하며, 시·도의 시·군·구의 결과 처리는 별지 제5호 서식(「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심사 결과서」)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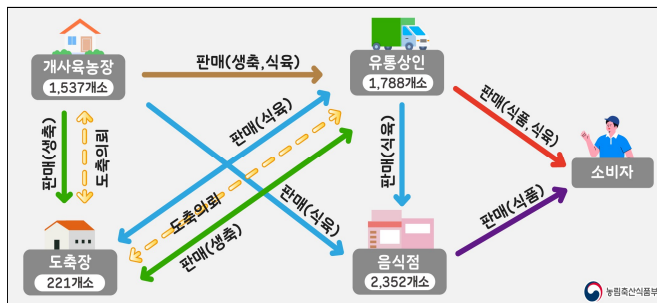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지방 실무협의체 회의와 권역별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핵심 업무 이해도 제고와 실무 수행 역량 강화로 전반적인 사업 수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지방 실무협의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장, 식약처, 17개 시도 담당 부서가 참여하며, 대면과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관련 주요 동향 공유, 지자체 협조 사항 전달, 시도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다룸
    - 사업 진행 단계별로 초기에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 중반에는 실태 조사와 전업 컨설팅, 후반에는 기본계획 설명 등에 중점을 두어 체계적으로 진행함
  - 권역별 설명회는 보다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개식용종식추진단과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업무 가이드라인 안내,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설명, 전업 컨설팅 안내, 기본계획 설명 등을 진행함
  - 실무협의체의 회의와 권역별 설명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인 업무 지침을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체계적인 교육과 소통 체계를 제공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실무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인적 자원 측면에서 사업대상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할 경우 집행기구의 인력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임
  - 현재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는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 대상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할 때 각 부서의 가용 인력이 적절하게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현장 확인과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업무의 특성상, 지역별 개식용 농장 및 도축장의 분포에 따른 적정 인력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시 인력 보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자체별 가용 인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업무를 조정하거나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함

## IV. 비용 추정

### 1. 비용 추정의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사육농장주(육견농가)·도축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고자 2025~2027년 3년간 총사업비를 제시한 바,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육견농가와 도축상인을 구분하여 폐업 및 전업 내역을 검토하고, 교육·홍보 등 행정 비용도 포함하여 분석
  - 비용 추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과 사업시행지침서(2025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안))의 지원기준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추가적으로 관련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24. 2. 7. 중간보고)』 용역 자료와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비용 추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
- 개 식용 관련 업계의 구조와 개소수는 부처가 제시한 자료에 따라 2024년 8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그림 6] 개 식용 전체 유통 단계 모식도



<업계 개소수>

(2024. 8. 기준)

구분	개소
개사육농장	1,537
도축상인	221
유통상인	1,788
식품접객업	2,352
전체 업계	5,89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p. 2.

## 2. 부처가 제시한 비용의 개요

### 가. 총사업비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2025~2027) 총 3,562억원을 투자할 예정임
  - 사업시행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이고,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지급함
    - 단, 행정비용은 국비 100%로 지원
  -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해 총 3,204억원을, 개식용 도축업자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해 총 324억원을,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으로 33억원을 지원할 예정

〈표 8〉 사업대상별 3개년 지원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계
<b>합계</b>		<b>144,058</b>	<b>123,808</b>	<b>88,371</b>	<b>356,237</b>
중앙정부	<b>소계</b>	<b>72,579</b>	<b>62,454</b>	<b>44,735</b>	<b>179,769</b>
	<b>A. 개사육농장주</b>	<b>66,063</b>	<b>55,937</b>	<b>38,219</b>	<b>160,219</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45,563	35,437	17,719	98,719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8,750	18,750	18,750	56,250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개식용 도축상인</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416	5,416	5,416	16,248
	<b>C. 교육·홍보 등</b>	<b>1,100</b>	<b>1,100</b>	<b>1,100</b>	<b>3,300</b>
	<b>소계</b>	<b>71,479</b>	<b>61,354</b>	<b>43,635</b>	<b>176,467</b>
지방정부	<b>A. 개사육농장주</b>	<b>66,062</b>	<b>55,937</b>	<b>38,219</b>	<b>160,219</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45,563	35,437	17,719	98,719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8,750	18,750	18,750	56,250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개식용 도축상인</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416	5,416	5,416	16,24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2024. 9. 및 (별첨2) 사업설명서\_수정, 연차별 투자계획, 2024. 9.

## 나. 개사육농장주의 폐·전업

### 1) 폐업 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장주가 폐업 시 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잔여권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1,602억원을 배정함
- 이행촉진지원금 지급을 위한 폐업시기는 1~6구간으로 구분되며, 구간별로 지원단가가 감액되는 구조로 조기 폐업·전업 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됨(先厚後薄)
  - 단, 사육 시설이 「가축분뇨법」(분뇨배출시설 미신고) 및 「건축법」(시설물 무허가·미신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표 9〉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의 지급 방식

	1구간 <sup>1)</sup>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폐업시기	2024. 2. 7. ~2025. 2. 6.	2025. 2. 7. ~2025. 8. 6.	2025. 8. 7. ~2025. 12. 21.	2025. 12. 22. ~2026. 5. 6.	2026. 5. 7. ~2026. 9. 21.	2026. 9. 22. ~2027. 2. 6.
지원기간	2년	1.75년	1.5년	1.25년	1년	0.75년
지원단가	60만원	52.5만원	45만원	37.5만원	30만원	22.5만원

주: 1) 법 공포일(2024. 2. 6.) 이후 부터 법 시행일(2024. 8. 7.) 이전에 폐업한 농가 포함

2) 지원단가는 폐업 시기 구간별 지원단가(30만원×지원기간) 차등 적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2024. 10. p. 6.

-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사육 마릿수와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 조정률의 곱(사육 마릿수×폐업 시기별 지원단가×조정률)으로 산출됨
- 사육 마릿수는 농장주가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되, 분뇨배출시설 신고면적인 사육면적에 따라 환산한 적정 사육두수 1.2마리/㎡를 상한으로 설정하여 지급함
  - 만약, 사육시설 면적이 60㎡ 미만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사육시설 신고 면적 기준을 환산한 적정 사육두수를 상한으로 설정하여 지급함
- 지원단가는 폐업시기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며, 폐업일은 전량 출하가 완료된 폐업지원 신청일로 정하며, 「개식용종식법」 공포(24. 2. 6.) 이후 법 제11조(폐업 등의 지

원) 시행(24. 8. 7.) 이전까지 폐업한 농가도 포함

- 조정률은 농지전용 미신고 등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농장주에 대해 지원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자 설정된 값으로 부처는 50%를 제시함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 또는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위반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 폐업 이행으로 활용이 어려워진 개 사육 관련 시설물은 잔존가액을 지원함

- 폐업을 희망하는 농장주는 폐업지원 신청일 이후 시군구가 의뢰한 감정평가로 산출한 개 사육시설(건축물, 설비 등) 잔존가액을 지급받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규정」 등에 따른 타 폐업 지원사례를 준용하여 금액을 산정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을 지원함

□ 개사육 시설물의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함

- 폐업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농장주에게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되, 지자체가 철거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지급함
  - 철거 대행 지원 이전에 자력으로 철거 시 지원이 불가하며, 「건축법」상 시설물 무허가·미신고인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 미신고인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미신고로 위반 확인 시 지원에서 배제하고 철거비용은 자부담하게 됨

## 2) 전업 시 지원사항

□ 농장주가 개 사육업 이외 농축산업으로 전업 희망 시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흑염소 등 전환을 희망하는 축종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지침」상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음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규정된 축종별로 지원단가가 적용되며, 이자율은 고정금리로 1~2%가 적용되며 자부담은 20%임

〈표 10〉 전업 시 축종별 지원단가

(단위: 천원/㎡)

흑염소 양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육계	양계		
					종계	부화장	산란계
456	380	380	967	662	680	1,684	1,182
오리			양봉	사슴 (엘크)	말	메추리	토끼
육용오리	종오리	부화장					
662	680	1,684	883	380	648	1,182	7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증식 기본계획」, 2024. 10.

- 원예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사업시행 지침」상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시설의 신축·개보수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용자받을 수 있음
  - 시설자금(고정 2.0%)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용자 가능하고, 운영자금(고정 2.5%)은 대출기관이 산출한 1회전 소요자금을 상한으로 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한편, 농가가 전업할 경우 동 사업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으므로 총사업비 추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농가가 폐업 대신 전업을 선택할 경우 기존의 사육설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철거비는 감소할 수 있으나, 지원규모가 큰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전업 시에도 지급되므로 총사업비에 소폭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후 추계에서는 전업 농가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3) 잔여건 관리비용

- 개사육농장주들의 잔여건 유거나 소유권 포기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유예기간 이후에도 잔여건 처리 문제가 이어질 수 있어 잔여건 관리비용이 책정됨

## 다. 개식용 도축상인의 폐·전업

### 1) 폐업 시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 「개식용 증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폐·전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도축상인 중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 철거비를 지

원할 예정이며, 3년간 162억원이 배정됨

- 시군구가 폐업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도축상인은 지원대상이나, 폐업 지원 신청일 이전에 자체 철거·처분 등으로 시설물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에서 배제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법」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규정」 등에 따른 타 폐업 지원사례를 준용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잔존가액으로 지급함
- 폐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도 지원하나, 잔존가액 지원과 달리 철거비는 위법사항 발생 시 지원 배제함
  - 「건축법」상 시설물의 무허가·미신고인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 미신고 등 위반사항 확인 시 지원에서 배제되고 철거비는 자부담하여야 함
  -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계약한 용역업체가 대행하므로 철거 대행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력으로 철거 시에는 지원이 불가함
-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제2항에 따르면,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는 시설물 잔존가액은 지원하나, 시설 철거비에 대한 근거는 부재함에도 부처는 관련 예산을 배정함
  - 부처는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도축상인에 대한 철거비 지원이 의결되었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혀 추후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전업 시 지원사항

- 한편, 개 이외 타 축종 도축업으로 전업 희망 시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음
  - 희망 축종 및 업종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지침」상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도축상인이 타 축종 도축을 위한 건축물이나 시설의 신축, 개보수 시 융자할 수 있으며, 업종별 지원한도는 <표 11>과 같음

〈표 11〉 전업 시 업종별 지원 한도

(단위: 억원)

구분	동물복지 지정	기타 가축	기타 가축	기타 가축	식육즉석판매	소규모	
	도축업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가공업	도계장	
지원한도	신축	50	20	10	10	5	10
	개보수	10	10	-	-	3	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2024. 10.

### 라.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용역·실태조사 수행 등 행정비용을 국비로 확보
  - 교육·홍보비 중 교육비는 지자체 담당자와 교육·소통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등이고, 홍보비는 정책 추진상황 홍보,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다매체(언론, 방송, 현수막 등) 상시 홍보로 사용
  - 연구용역비는 정책 추진과 관련된 연구용역, 실태조사 수행 비용 및 농가 전업 지원을 위한 희망농가 축종별 전문기술 교육 및 전업농가 입식 축종에 대한 사육 전반의 현장관리·지도 등 컨설팅비로 사용
  - 일반수용비는 육견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3. 비용의 추정

- 이번 소절에서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출된 총사업비의 각 세부항목별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 사업대상별로 세부항목별 지원규모는 〈표 12〉와 같음
    - 개사육농장주에게는 총 3,204억원이, 개식용 도축상인에게는 32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동 사업의 교육·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33억원이 책정되어 3개년간 총 3,562억원이 집행될 예정
    - 교육·홍보비를 제외하고 동 사업은 중앙과 지자체가 50:50의 비율로 사업비를 배정함

- 각 세부항목별 예산이 도출된 가정과 산식을 점검하고 추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함
- 2025년 예산은 국비 544억원이 확정되어 개사육농장주 지원에 486억원, 도축상인 지원에 54억원,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에 4억원이 배정됨
  - 이후 폐업 신청 농가 수가 앞 구간에 몰리면서 2025년 5월, 예산수정안을 검토하여 예비비를 추가 편성함

〈표 12〉 사업대상별 3개년 지원예정액 및 2025년 예산확정액(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A)	2025 (예산)	2025 (예산 수정안)	2026(B)	2027(C)	계 (A+B+C)	
<b>합계</b>	<b>144,058</b>	<b>108,426</b>	<b>275,246</b>	<b>123,808</b>	<b>88,371</b>	<b>356,237</b>	
중앙 정부	<b>소계</b>	<b>72,579</b>	<b>54,413</b>	<b>137,823</b>	<b>62,454</b>	<b>44,735</b>	<b>179,769</b>
	<b>A. 개사육농장주</b>	<b>66,063</b>	<b>48,597</b>	<b>132,007</b>	<b>55,937</b>	<b>38,219</b>	<b>160,219</b>
	<b>1. 폐업이행촉진지원금</b>	<b>45,563</b>	<b>28,097</b>	<b>84,475</b>	<b>35,437</b>	<b>17,719</b>	<b>98,719</b>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8,750	19,000	46,032	18,750	18,750	56,250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500	1,500	1,750	1,750	5,250
	<b>B. 개식용 도축상인</b>	<b>5,416</b>	<b>5,416</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416	5,416	5,416	5,416	5,416	16,248
	<b>C. 교육·홍보 등</b>	<b>1,100</b>	<b>400</b>	<b>400</b>	<b>1,100</b>	<b>1,100</b>	<b>3,300</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416	5,416	5,416	5,416	5,416	16,248
	지방 정부	<b>소계</b>	<b>71,479</b>	<b>54,013</b>	<b>137,423</b>	<b>61,353</b>	<b>43,635</b>
<b>A. 개사육농장주</b>		<b>66,063</b>	<b>48,597</b>	<b>132,007</b>	<b>55,937</b>	<b>38,219</b>	<b>160,219</b>
<b>1. 폐업이행촉진지원금</b>		<b>45,563</b>	<b>28,097</b>	<b>84,475</b>	<b>35,437</b>	<b>17,719</b>	<b>98,719</b>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8,750	19,000	46,032	18,750	18,750	56,250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500	1,500	1,750	1,750	5,250
<b>B. 개식용 도축상인</b>		<b>5,416</b>	<b>5,416</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416	5,416	5,416	5,416	5,416	16,248

자료: 「2025년 확정 예산 및 면제요구서, '개 식용 종식 지원 예비비 세부내역' 참고

- 본 검토의 총사업비 추정은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으로 구분하여 검토를 수행
  - '사업계획안'은 사업수행주체가 요구한 안임
  - '검토안'은 주무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비교해 사업 관련 근거자료들을 활용하여 지원단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재추정한 안임

- ‘대안’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폐업 1구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여 재추정한 안임
- 본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연구 기간에 이미 본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등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검토안과 대안을 도출함

## 가. 개사육농장주의 폐·전업

###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 부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국비 기준으로 2025년 456억, 2026년 354억, 2027년 177억원 등 총 987억원으로 추정하였음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추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① 지원 마릿수, ② 개 한 마리당 지원액, ③ 연차별 폐업 비율, ④ 합법 농가 비율, ⑤ 조정률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지원 마릿수 45만두를 대상으로 마리당 순수익을 30만원으로 추정
- 각 연도 폐업률은 1년 차인 2025년에 30%, 2·3년 차에 각각 35%를 가정하였고, 「농지법」 합법농가 비율은 50%, 「농지법」 위반 농가는 지원금 삭감을 위해 50%의 조정률을 적용함
  - 1년 차 30%는 소규모 농가 위주의 폐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3년 차에 비해 적게 집계된 측면이 있음
- 부처는 각 연도의 국비 및 지방비를 합한 1,974억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추정함
  - 2025년에 합법 농가일 경우  $30\text{만원/두} \times 45\text{만두} \times 30\% \times 1/2^5 \times 3\text{년}$ 으로 계산하여 608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조정률 50%를 적용하여 304억원으로 추정하여 총 911억원으로 추산
  - 2026년에 합법 농가일 경우  $30\text{만원/두} \times 45\text{만두} \times 35\% \times 1/2 \times 2\text{년}$ 로 계산하여 473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조정률 50%를 적용하여 236억원으로 추정하여 총 709억원으로 추산
  - 2027년에 합법 농가일 경우  $30\text{만원/두} \times 45\text{만두} \times 35\% \times 1/2 \times 1\text{년}$ 로 계산하여 236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조정률 50%를 적용하여 118억원으로 추정하여 총 354억원으로 추산

---

5) 농지법 합법, 불법비율을 1/2로 가정

가) 지원대상 마릿수

- 지원대상이 되는 마릿수 추정 규모 적정성 여부는 자료의 한계로 판단이 어려움
  - 사육 마릿수 45만두는 농가 제출 운영신고서 ① 연평균 사육 마릿수 데이터와 ②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면적 값을 감안하여 산출
    - 부처는 ① 연평균 사육 마릿수 503천마리와 ② 배출시설 면적 464천㎡을 기준(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 896농가 기준)으로 적정 사육두수를 상한으로 적용해 농가별 지원 마릿수를 45만마리로 도출하였다고 밝힘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23 기타 가축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개 종류별 마릿수'에서 애완종을 제외하고 진돗개와 기타종을 합하면 31만 3,892마리임
    - 기타 가축통계 조사에서는 개의 연령별·성별·종류별 마릿수만을 조사할 뿐 사육 목적은 조사되지 않아 31만여 두가 식용견인지 확정할 수는 없음
    - 다만, 비애완종인 경우 식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부처가 제시한 45만 두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표 13〉 개 종류별 마릿수 현황

(단위: 마리)

구분	애완종	진돗개	기타	계
2020년	115,261	19,270	345,219	479,750
2021년	140,060	11,283	357,780	509,123
2022년	221,953	12,480	317,558	551,991
2023년 12월	402,235	30,032	283,860	716,1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 기타 가축통계」 p. 29. 발췌

- 폐업이행촉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연평균 사육 마릿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연구진은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부처가 미제출하였고, 비교 가능한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처 자료를 토대로 추계하는 한계가 있음

## 나) 마리당 지원액

### □ 개 한 마리당 지원액 산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대한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순이익을 40만원으로 추산하며, 마리당 200만원으로 주장<sup>6)</sup>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육견농가 두당 평균 순수익 세부 산출자료에 따르면, 마리당 순수익이 31만원으로 이에 준해 지원액을 산정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업계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견농가의 경영수지분석 결과, 육견 사육 마리당 연평균 소득은 410,964원, 순수익은 310,828원으로 나타난바, 이를 준용
  - 유사사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FTA 폐업지원사업에서 폐업지원금 지급 시 마리당 순수익액을 적용한 바 있음
- 다만, 6구간의 경우 지원액이 마리당 순수익에 미달하므로 이에 대한 육견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방안 필요
  - 뿐만 아니라, 구간별 시기가 예산 회기와 불일치하여 예산지급 시기상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존재함
  - 예를 들어 3구간 시기는 2025. 8. 7.~2025. 12. 21.이나 2025년 8월 초에 폐업한 개사육농장주에게 지급될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지급이 가능해지므로 농장주의 반발이 우려되는바, 구간을 예산 순기에 맞춰 조율하거나 조정이 어렵다면 농장주에게 최대한 공지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

## 다) 합법 농가 비율

### □ 합법 농가 비율 추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가 부족함

- 농장 1,537개소 중 ① 「가축분뇨법」상 합법 농가, ② 「건축법」상 무허가 농가, ③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 대상<sup>7)</sup> 아닌 시설 농가, ④ 「농지법」 위반농가(농지전용신고 누락) 수에 대한 구분 자료를 부처에 요청

6) <https://news.nate.com/view/20240513n02007>(검색일자: 2025. 1. 15.)

7)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에 의거, 개사육시설의 면적이 60㎡ 이상인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임

- 그러나 부처는 위법 사항을 판단하는 시점을 농장주가 폐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으로 하고 있어 농가가 신청서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 여부 수치 등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함
    - 「농지법」 위반의 경우 행정당국이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사전적으로 파악하기에 애로사항임을 밝히기도 함
    - 다만, 2차 질의 및 요구자료 답변(2024. 12. 20.)에서 「가축분뇨법」상 합법적으로 신고한 농가는 896개소(58.3%) 3차 질의 및 요구자료 답변(2025. 1. 7.)에서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는 427개소로 답변한 바, 「가축분뇨법」 신고의무가 없는 60㎡ 미만 농가는 214개소로 예측되며, 「건축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가축분뇨법」 위반만으로도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농지법」 위반 사례(농지전용신고 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부족하므로 검토안에서는 부처가 동 금액 산정 시 적용한 합법 농가의 비율 50%를 그대로 준용
    - 대안에서는 폐업 1구간에서 나타난 「농지법」에 관한 합법률이 향후에도 전 구간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합법률을 96.2%로 적용
-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가축분뇨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한 농가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농지법」 합법 농가 비율이 가정된 50%보다 많을 경우 필요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농지법」 위반 농가에는 조정률이 적용되므로 각 법령별 위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537개소 중 427개 농가는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법 농가로서 27.8%에 달하며, 「건축법」 위반 농가는 소수인 것으로 보이며 「농지법」 위반 사례(농지전용신고 누락)도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함
  -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농가는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책정 시에는 반영되지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상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표 14〉 개사육농장 관련 법령별 위반행위 확인 시 폐업지원 불이익 사항

법령	위반행위	폐업이행 촉진금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비용
「건축법」	• 농장이 무허가 또는 미신고(제11조, 제14조, 제20조) 건축물인 경우 • 농장이 사용승인(제22조)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지원 배제	지원	지원 배제
「가축분뇨법」	• 신고(제11조제3항 전단)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지원 배제	지원	지원 배제
「농지법」	• 농장이 농지전용신고(제35조 전단)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	50% 감액	지원	지원 배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2024. 9.)

### 라) 조정률

- 「농지법」 위반 농가 비율에 적용되는 조정률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 역시 부처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충분하지 않음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시 농지 부서에서 「농지법」 위반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될 수 있음
  - 위반 농가의 다수가 생계 안정이 필요한 소농으로 분류되며, 「농지법」 위반은 50% 감액 지원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정률을 낮추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를 비교할 수 있겠으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시점상 한계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sup>8)</sup>에 따르면, 1,537개소 중 300두 이하 소농은 999개소로 65%를 차지하며, 300~1,000두의 중농이 457개소(30%), 1,000두를 초과하는 대농이 81개소(5%)
    -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되고 있는바, 사업시행 도중에 조정률 변경 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이를 신뢰한 개사육 농가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2025. 2. 9.

마) 연차별 폐업 비율

□ 연차별 폐업률이 달라질 경우 예산규모에 변동이 발생하는바, 부처는 농장주를 대상으로 폐업시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3차례 실시하였음

○ 각 구간별로 지원단가가 차등 적용되므로 이를 토대로 연도별 지원금의 규모를 추정

〈표 15〉 이행계획서상 구간별 개사육 농가 폐업예정 시기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합계	폐업(100% 감축) 완료 시기						
		1구간 (‘24. 2. 7. ~‘25. 2. 6.)	2구간 (‘25. 2. 7. ~‘25. 8. 6.)	3구간 (‘25. 8. 7. ~‘25. 12. 21.)	4구간 (‘25.12. 22. ~‘26. 5. 6.)	5구간 (‘26. 5. 7. ~‘26. 9. 21.)	6구간 (‘26. 9. 22. ~‘27. 2. 6.)	
당초 (2024년 8월)	합계	1,537	204	63	56	139	124	951
	전업	662	87	29	19	63	61	403
	폐업	875	117	34	37	76	63	548
	전업률	43.1	5.7	1.9	1.2	4.1	4.0	26.2
	폐업률	56.9	7.6	2.2	2.4	4.9	4.1	35.7
	<b>전·폐업률</b>	<b>100.0</b>	<b>13.3</b>	<b>4.1</b>	<b>3.6</b>	<b>9.0</b>	<b>8.1</b>	<b>61.9</b>
변경 (2024년 12월)	합계	1,537	329	69	59	118	114	848
	(증감)	(-)	(+125)	(+6)	(+3)	(-21)	(-10)	(-103)
	전업	657	144	32	21	49	55	356
	폐업	880	185	37	38	69	59	492
	전업률	42.7	9.4	2.1	1.4	3.2	3.6	23.2
	폐업률	57.3	12.0	2.4	2.5	4.5	3.8	32.0
<b>전·폐업률</b>	<b>100.0</b>	<b>21.4</b>	<b>4.5</b>	<b>3.8</b>	<b>7.7</b>	<b>7.4</b>	<b>55.2</b>	
2차 변경 (2025년 2월)	농가수	1,537	623*	212	61	57	74	510
	(증감)	(-)	(+294)	(+143)	(+2)	(-61)	(-40)	(-338)
	두수	468,229	150,357*	85,889	26,445	18,539	16,996	170,003
	<b>폐업률 (농가수)</b>	<b>100.0</b>	<b>40.5</b>	<b>13.8</b>	<b>4.0</b>	<b>3.7</b>	<b>4.8</b>	<b>33.2</b>
	<b>폐업률 (두수)</b>	<b>100.0</b>	<b>32.1</b>	<b>18.3</b>	<b>5.6</b>	<b>4.0</b>	<b>3.6</b>	<b>36.3</b>

주: 1. 2차 변경자료는 전업률은 미제시되고 폐업률만 제출되고, 사육두수 정보는 최초 제시되었으나,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의 사육 두수는 총 468,229두이지만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은 450,000두임에 주의할 필요

2. \* 는 1구간의 폐업 실적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차 제출자료(2025. 1. 17.)」, 「5차 제출자료(2025. 5. 15.)」를 토대로 연구진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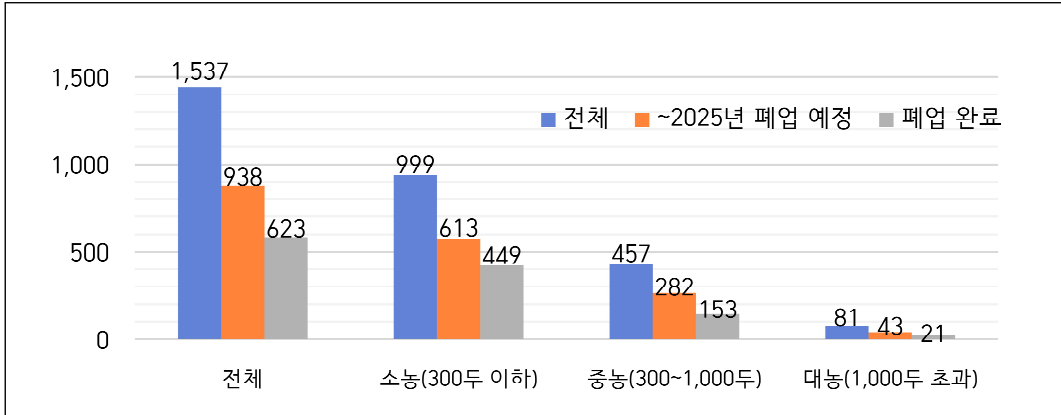
- 2024년 8월 당초 조사와 12월 변경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폐업 이행계획서 변경 조사 결과, 1~2구간(24. 2. 7.~25. 8. 6.)인 사업 1년 차) 전·폐업률이 25.9%로 나타남
    - 당초 조사의 17.4%에서 8.5%p 증가한 결과이며, 폐업·전업 희망 농가 수가 사업 초기인 1구간에서 특히 증가하였음
    - 이는 개식용 관련 업종의 추세적 하락이 개사육 농가의 전·폐업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이러한 추세는 실제 1구간 폐업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2차 이행계획서 변경(2025년 2월)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1년 차(2025)인 1~2구간의 전·폐업률은 농가 수 기준 54.3%로 '24년 12월에 조사한 값(25.9%)보다 28.4%p 증가한 수치이며, 당초 이행계획서상의 17.4% 및 부처의 사업계획안에 반영된 예상 폐업률 3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경우 3차례 제출된 이행계획서상 수치보다 2, 3구간에서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이전 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던 사육두수도 1차년도에 50.4%에 달하고 있어 기본계획 발표 이전의 당초 사업계획 시의 수요 예측과 차이가 있음
  - 2년 차(2026)인 3~5구간의 전·폐업률은 12.5%로 '24년 8월(20.7%), '24년 12월(18.9%)보다 감소하여 3~5구간 폐업을 희망한 농장주들이 폐업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 3년 차(2027)인 6구간은 33.2%로 '24년 8월(61.9%), '24년 12월(55.2%)보다 감소하여 당초 대비 28.7%p 감소함
    - 6구간 폐업률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와 비교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농장주들이 조기 폐업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해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힘

---

9) 부처에 확인한 결과, 2025년은 1~2구간, 2026년은 3~5구간, 2027년은 6구간임

[그림 7] 개사육농장 사육 규모별 폐업 현황

(단위: 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2025. 2. 9.

바) 이행촉진지원금의 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sup>10)</sup>×연평균 사육 마릿수”로 계산되며, 「농지법」 위반 농가인 경우 조정률 50%가 반영됨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2024. 10.)에 따르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사육 마릿수×폐업 시기별 지원단가×조정률”로 산정되어야 하나, 부처는 구간별 지원대상 사육 마릿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sup>11)</sup> 검토안과 대안 추정 시 부처가 사업계획안에서 적용한 방식을 준용함
- 검토안과 대안에서는 농지법 합법 농가 비율, 구간별 폐업률을 상이하게 봄
  - 검토안은 사업계획안을 준용하여 농지법 합법 농가 비율을 50%로 적용하였으나 대안에서는 1구간 경과 후 집계된 결과를 토대로 합법 농가 비율을 96.2%, 불법 농가 비율은 3.8%로 반영하여 추정함
  - 검토안에서는 사업계획안의 연차별 폐업률과 2025년도 정부안을 준용하여 1차년도(1~2구간) 농가 폐업률을 30%, 2차년도(3~4구간) 농가 폐업률을 35%, 3차년도(5~6구간) 농가 폐업률을 35%로 하여 추정하였고, 대안에서는 2025년 2월 이행계획서 자

10) 지원단가에 폐업구간별 지원액과 지원기간이 반영되어 있음

11) 부처에서 2025년 2월에 제출한 2차 변경 이행계획서에서 구간별 사육두수 정보를 처음 제공하였으나, 지원 대상의 연평균 사육두수가 아닌 실제 사육두수로 확인함

료를 기준으로 예산회기를 고려하여, 1차년도(1~2구간) 폐업률을 54.3%, 2차년도(3~5구간) 폐업률을 12.5%, 3차년도(6구간) 폐업률을 33.2%로 하여 추정

- 지원단가는 검토안과 대안 모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서의 “30만원/두×지원기간” 계산방식을 토대로 한 구간별 단가를 준용함
  - 사업계획안은 검토안·대안과 비교하여 지원기간이 길게 반영되어 있어 지원단가가 검토안·대안 대비 높게 나타남

〈표 16〉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검토안·대안 설정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지원대상 마릿수	총 45만 두	준용	준용
폐업률	'25년 30%, '26년 35%, '27년 35%	<b>(‘25년) 30% (1-2구간)</b> * 1구간: 12%, 2구간: 18% <b>(‘26년) 35% (3-4구간)</b> * 3구간: 14%, 4구간: 21% <b>(‘27년) 35% (5-6구간)</b> * 5구간: 14%, 6구간: 21%	<b>(‘25년) 54.3% (1-2구간)</b> * 1구간: 40.5%, 2구간: 13.8% <b>(‘26년) 12.5% (3-5구간)</b> * 3구간: 4.0%, 4구간: 3.7%, 5구간: 4.8% <b>(‘27년) 33.2% (6구간)</b>
지원단가 (30만원/두× 지원기간)	'25년 30만원/두×3년 '26년 30만원/두×2년 '27년 30만원/두×1년	*기본계획 준용	
		1구간: 30만원/두×2년 2구간: 30만원/두×1.75년 3구간: 30만원/두×1.5년	4구간: 30만원/두×1.25년 5구간: 30만원/두×1년 6구간: 30만원/두×0.75년
농지법 합법률	50%	준용	96.2% (1구간 실적치)
농지법 위법농가 조정률	50%	준용	준용

자료: 연구진 작성

- 검토안과 대안의 총사업비 추정치는 아래와 같음
  - 검토안의 경우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3년간 총 1,34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업 계획안상 1,974억원보다 632억원 감소함
    - 1년 차에 합법 농가일 경우 1~2구간에서 375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187억원으로  
합계 562억원으로 추산
    - 2년 차에 합법 농가일 경우 3~4구간에서 319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159억원으로  
합계 478억원으로 추산

- 3년 차에 합법 농가일 경우 5~6구간에서 201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100억원으로  
 합계 301억원으로 추산

〈표 17〉 연도별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추계(검토안)

(단위: 만원, 만두, %, 백만원)

구분	지원 단가	사육 마릿수	폐업률	합법률	불법 조정률	폐업이행촉진금			계	총계	
						계	합법 농가	불법 농가			
1년차	1구간	60	45	12.0	50	50	24,300	37,463	18,731	56,194	134,156
	2구간	52.5	45	18.0	50	50	31,894				
2년차	3구간	45	45	14.0	50	50	21,263	31,894	15,947	47,841	
	4구간	37.5	45	21.0	50	50	26,578				
3년차	5구간	30	45	14.0	50	50	14,175	20,081	10,041	30,122	
	6구간	22.5	45	21.0	50	50	15,947				

자료: 연구진 계산

- 대안의 경우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3년간 총 1,927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업계  
 획서상 1,974억원보다 48억원 감소함
  - 2025년에 합법 농가일 경우 1~2구간에서 1,366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27억원  
 으로 합계 1,393억원으로 추산
  - 2026년에 합법 농가일 경우 3~5구간에서 200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4억원으로  
 합계 204억원으로 추산
  - 2027년에 합법 농가일 경우 6구간에서 323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6억원으로 합  
 계 330억원으로 추산

〈표 18〉 연도별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추계(대안)

(단위: 만원, 만두, %, 백만원)

구분	지원 단가	사육 마릿수	폐업률	합법률	불법 조정률	폐업이행촉진금			계	총계	
						계	합법 농가	불법 농가			
1년차	1구간	60	45	40.5	96.2	50	107,272	136,558	2,698	139,256	192,660
	2구간	52.5	45	13.8	96.2	50	31,984				
2년차	3구간	45	45	4.0	96.2	50	7,946	20,032	396	20,428	
	4구간	37.5	45	3.7	96.2	50	6,126				
	5구간	30	45	4.8	96.2	50	6,356				
3년차	6구간	22.5	45	33.2	96.2	50	32,976	32,338	638	32,976	

자료: 연구진 계산

## 2)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는 농가의 위법 사항에 따라 달리 지원될 예정임
  - 철거비는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자부담이 원칙이며, 시설물 잔존가액은 종전 판례에 따라 모든 농가에 지급됨
    - 잔존가액 지급은 건축·시설물의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권 침해로 보는 판례 입장 및 타 보상 사례를 고려할 때, 차등 없이 지원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이 되는 개사육농장주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1,537개소임
  - 부처는 이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 농장주만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다만, 부처는 자진 신고기간을 놓친 농가, 도축상인 대상으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신고기한이 종료된 경우라도 신고 접수를 허용하여 이행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페널티(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식인지, 추가 지원(총사업비 증가 부담 요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인지에 대해 언급이 없음
    - 기한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별도 폐업 등 지원은 없으나, 2027년 2월까지 원활한 종식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 정도만 밝힘

〈표 19〉 시도별 폐업 완료 시기 분포 현황(2024년 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폐업(100% 감축) 완료 시기					
		1구간 (‘24. 2. 7. ~’25. 2. 6.)	2구간 (‘25. 2. 7. ~’25. 8. 6.)	3구간 (‘25. 8. 7. ~’25. 12. 21.)	4구간 (‘25. 12. 22. ~’26. 5. 6.)	5구간 (‘26. 5. 7. ~’26. 9. 21.)	6구간 (‘26. 9. 22. ~’27. 2. 6.)
합계 (전업)	1,537 (657)	329 (144)	68 (32)	59 (21)	118 (49)	114 (55)	849 (356)
경기	313	52	11	13	33	16	188
강원	87	21	3	5	6	8	44
충북	196	50	16	5	9	15	100
충남	168	55	3	8	5	21	76
전북	127	24	5	9	9	7	73
전남	135	51	9	4	9	18	44
경북	255	30	16	9	19	11	170
경남	102	14	2	5	7	11	63
제주	42	8	1	-	3	1	29
서울	-	-	-	-	-	-	-
부산	9	-	-	1	1	2	5
대구	18	10	-	-	2	2	4
인천	35	1	1	-	3	1	30
광주	9	4	1	-	3	-	1
대전	19	8	-	-	2	-	9
울산	10	-	-	-	3	1	6
세종	12	1	-	-	4	-	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차 제출자료」, 2025. 1. 17.

□ 시설물 잔존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

- 농가당 평균 시설물 잔존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의 산술평균 단가인 6,100만원으로 계산된바, 이는 사육설비 1,100만원/호, 건축물 5,000만원/호로 구성

-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부처에서 3차 제출자료에서 산출된 1,151.5만원/호를 내림하지 않고 검토안에서는 그대로 적용

- 주요 사육설비 조사 항목 중 이전 및 중고판매가 불가한 항목에 대해 50%의 감가 상각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였음
- 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은 20%, 간이양축시설은 80%를 반영함

○ (일반건축물) 150백만원  
 \* 평균규모농가 평가건적 222백만원(사육면적 576㎡, 내용연수 30년, 경과연수 7년)×15/23(평균농가 경과연수 15년 반영)≈150백만원

○ (간이양축시설) 25백만원  
 \* 500㎡(농가 평균시설면적) \* 5만원/㎡(비닐하우스·콘크리트 타설시 감정평가액)  
 → (산출식) 150백만원\*20%+25백만원\*80%= 50백만원

〈표 20〉 사육설비 세부항목당 단가

명칭	신품가(천원)	보유수량	용도	추계(천원)
전기설비(kW당 106천원)	106	10	보일러 및 연계 공사비	1,060
전기스팀보일러	25,000	0.05	스팀가열	1,250
석유스팀보일러	6,000	0.01	스팀가열	60
보온용 탱크(개)	1,000	1	개별보온	1,000
배풍기(600mm)	850	0.02	환풍	17
환풍기(대)	850	0.02	환풍	17
지하수 관정	800	8	인허가 및 개발비용	6,400
물탱크 5톤	850	0.3	용수저장탱크	255
물펌프	450	0.4	용수	180
액상저장탱크	2,500	0.4	사료보관	1,000
원자섭비(비닐하우스)	1,000	5	내외벽 및 철재 제거기	5,000
액비저장시설(톤)	800	8	퇴비사 침출액 배 보관	6,400
정착조(대)	1,500	0.2	정착조 설비	300
냉온조	1,800	0.2	냉난방	360
힐보로워(10hp)	1,800	0.2	송풍용도(퇴비사)	360
분사노즐 및 탱크	2,500	0.3	액상사료분사	750
분사노즐 프레스시설(대)	2,500	0.3	분뇨청소 및 집하	750
분뇨처리시설	8,000	0.1	분뇨처리	800
운송차량	3,500	0.1	액상사료운송	350
공기콤프레셔(10hp)(대)	2,500	0.3	공기압축	750
총액				23,030
감가상각 50% 반영				11,51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차 제출자료」, 2025. 1. 17.

- 철거비는 합법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육견단체 자체조사를 통해 40%로 추정되었음
  - 「건축법」상 시설물 무허가·미신고인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 미신고인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미신고로 위반 확인 시 지원에서 배제하고 철거비용은 자부담
    - 위법시설 철거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며, 철거·폐쇄 명령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해당 의무자에게 징수
  - 농가 1,537개소 중 합법 농가 비율이 40%라면, 철거비 지급대상 농가는 614개소임
    - 철거비 지급대상 농가는 약 614개소로 추산되며, 부처가 제시한 농가 면적당 단가 70,000원/㎡ 및 농가당 평균 배출시설 면적 500㎡를 적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철거비를 산출
    - 따라서 철거비 지급대상과 지원금 지급대상 농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 위법 농가 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표 21〉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검토안·대안 설정

		사업계획안	검토안·대안
지원대상	시설물잔존가액	총 1,500농가	총 1,537농가
	철거비	총 600농가 (합법 농가 비율 40% 적용)	총 614농가 (합법 농가 비율 40% 적용)
지원단가	시설물잔존가액	6,100만원/호	6151.5만원/호
	철거비	3,500만원/호	준용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2〉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추계 결과(농장주)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계획서(A)				검토안·대안(B)				(B-A)
	2025	2026	2027	계(A)	2025	2026	2027	계(B)	
시설물 잔존가액	30,500	30,500	30,500	91,500	31,516	31,516	31,516	94,548	3,048
철거비	7,000	7,000	7,000	21,000	7,172	7,172	7,172	21,518	518
총계	37,500	37,500	37,500	112,500	38,688	38,688	38,688	116,066	3,566

자료: 연구진 계산

### 3) 잔여권 보호관리비용

□ 개사육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보호권에 소요될 비용 추정의 적정성

- 1년에 1만두로 예측한 근거 및 두당 3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함
  - 잔여권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장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잔여권, 특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장주 소유의 잔여권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 다만 이행계획서 변경 가능성<sup>12)</sup> 등으로 현시점에서 연차별 소유권 포기권 예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부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비용에 반영
  - 부처는 지원대상은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 중 불가피하게 잔여권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농장 적발 시, 현행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표 23〉 잔여권 관리비용 추계 결과(농장주)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계획서(A)				검토안·대안(B)				(B-A)
	2025	2026	2027	계(A)	2025	2026	2027	계(B)	
잔여권 관리비용	3,500	3,500	3,500	10,500	3,500	3,500	3,500	10,500	0

자료: 연구진 계산

□ 잔여권이 과다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법 농가가 잔여권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음
  - 해당 농가는 최대한 폐업을 늦춰 사육 중인 식용견을 시장에 판매하려고 예상할 수 있으나, 식용견의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마리당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유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 사업의 수혜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개사육 농가의 경우 역시 시장 논리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여 판로가 줄어들면

12)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라 개사육농장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행령 공포(2024. 8. 6.) 후 6개월 이내(2025. 2.까지)에 수정·보완 가능

잔여건을 포기할 것으로 우려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 질의 답변서(2025. 6. 10.)에서도 여전히 “지원대상은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 중 불가피하게 잔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농장 적발 시, 현행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외신에서도 「개식용종식법」 실시 이후 발생한 잔여건이 안락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언급하기도 함<sup>13)</sup>
  -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현재 농장의 실사육 마릿수가 아닌, 농가가 연간 사육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출하 내역 등 거래장부, 입출금 내역 등 증빙)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실사육 마릿수가 더 많다면, 폐업과정에서 소유권 포기로 잔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

#### 나. 개식용 도축상인의 폐·전업

-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도축상인 중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 철거비(3년간 325억원) 지원
  - 2025년 기준 시설물 잔존가액과 철거비는 108억 3,200만원으로, 시설물 잔존가액(152개소/3×160백만원=66억 6,600만원)과 철거비(152개소/3×100백만원=41억 6,600만원)를 합산하여 산출되었음
  - 개식용 종식 이행 과정에서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식용 도축상인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철거비용과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표 24〉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추계 결과(도축상인)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계획서(A)				검토안·대안(B)				(B-A)
	2025	2026	2027	계(A)	2025	2026	2027	계(B)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10,832	10,832	10,832	32,496	10,832	10,832	10,832	32,496	0

자료: 연구진 계산

13) BBC, “South Korea banned dog meat. So what happens to the dogs?,” <https://www.bbc.com/news/articles/c20r7lkel68o>, (검색일자: 2025. 7. 17.)

- 「개 식용 종식법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에서는 ① 농장주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산정한 금액,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시설물 철거 지원의 의무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부여하나, ② 개식용 도축상인에게는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만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처는 도축상인에게도 철거비를 지원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2024년 9월 개식용 종식위원회에서도 의결하였고, 2025년 예산 수립 시 재정당국 협의, 예산 국회 심의를 완료하여 사업시행 지침을 통해 집행 중에 있다고 밝힘
  - 도축상인 철거비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25〉 도축상인 관계법령별 위반행위 확인 시 폐업지원 불이익 사항

법령	위반 행위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이 무허가 혹은 미신고(제11조, 제14조, 제20조) 건축물인 경우</li> <li>• 도축장이 사용승인(제22조)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li> </ul>	지원	지원 배제
농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이 농지전용신고(제35조 전단)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li> </ul>	지원	지원 6배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2024. 9.)

#### 다.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용역·실태조사 수행 등 행정비용 연간 4억원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됨
- (교육비) 지자체 담당자 교육·소통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등(40백만원)
- (홍보비) 정책 추진 상황 홍보,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다매체(언론·방송·현수막 등) 상시 홍보(120백만원)
- (연구·조사비) 정책 추진 관련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수행 비용(170백만원)
  - 170백만원=2건×85백만원(용역기간 10개월, 연구원 총 6명 규모) 국비 100%
- (컨설팅비) 농가 전업 지원을 위한 희망 농가 축종별 전문 기술 교육, 전업농 가입식 축종에 대한 사육 전반 현장관리·지도(사양, 질병관리 등) (60백만원)
  - 60백만원=30회(4개 주요 축종×7개 권역)×2백만원(강사 수당, 대관료, 교재 제작비, 원고료 등)×국비 100%
- (일반수용비) 이해관계자(육견단체·동물보호단체) 협의 및 의견수렴 소요비용(10백만원)

- 10백만원=50회(이해관계자별 월 2회)×20만원(대여료·인쇄비 등)×국비 100%

〈표 26〉 행정비용 관련 사업계획서와 이후 제출자료 비교

(단위: 백만원)

행정비용	사업계획서				부처 자료 <sup>1)</sup>			
	2025	2026	2027	소계	2025	2026	2027	소계
소계	1,100	1,100	1,100	3,300	400	400	400	1,200
교육홍보비(1식)	320	320	320	960				
연구용역비(1식)	260	260	260	780				
감정평가비(1식)	500	500	500	1,500				
수용비(1식)	10	10	10	30				
업무추진비(1식)	10	10	10	30				
교육비					40	40	40	120
홍보비					120	120	120	360
연구조사비					170	170	170	510
컨설팅비					60	60	60	180
일반수용비					10	10	10	30

주: 1) 주무부처 사업설명회 자료

〈표 27〉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계획서(A)				검토안·대안(B)				(B-A)
	2025	2026	2027	계(A)	2025	2026	2027	계(B)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	1,100	1,100	1,100	3,300	400	400	400	1,200	△2,100

주: 전체 사업비 중 국비 50%에 대한 검토안

자료: 연구진 계산

## 4. 비용 추정 결과

### 가. 총사업비 종합

- 부처가 제시한 총사업비 개요를 바탕으로 비용 추정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부처가 제시한 당초 사업계획서는 356,237백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검토안에서는 294,418백만원으로 조정되어 총 61,819백만원이 감소함
  - 검토안 기준으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개사육농장주 부문에서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 197,438백만원에서 134,156백만원으로 63,282백만원 감소했고, 철거·시설물 잔존가액은 112,500백만원에서 116,066백만원으로 3,566백만원 증가
  - 반면 잔여건 관리비용은 10,50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음
  - 개식용 도축상인 관련 비용(철거·시설)은 사업계획안과 검토안에서 모두 32,496백만원으로 유지
  - 마지막으로 교육·홍보 비용은 3,300백만원에서 1,200백만원으로 2,100백만원 감소하며 전체 비용 절감에 기여함
  
- 동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간 동안 이미 사업이 시행되었으므로, 1구간 폐업률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재추계한 결과,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 192,660백만원으로 사업계획안 대비 4,778백만원 감소
  - 그 외 세부항목은 검토안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추정 결과, 총사업비는 356,237백만원에서 352,922백만원으로 3,315백만원 감소함
  
- 사업계획안보다 검토안의 규모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총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임
  
- 대안은 조기 폐업으로 인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확대 영향과 2026~2027년 감소 영향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사업계획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검토안과 같이 지원단가 감소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감소로 작용하였으나, 「농지법」 합법 농가 비율 증가와 폐업률 1구간 확대 등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1구간 폐업률 실적이 높게 나타나 1구간 폐업률이 검토안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2025년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2026~2027년의 경우 조기 폐업에 따른 폐업률 감소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안보다 적은 규모로 추계됨

〈표 28〉 비용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A)	검토안		대안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b>합계</b>	<b>356,237</b>	<b>294,418</b>	<b>△61,819</b>	<b>352,922</b>	<b>△3,315</b>
<b>A. 개사육농장주</b>	<b>320,438</b>	<b>260,722</b>	<b>△59,716</b>	<b>319,226</b>	<b>△1,212</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197,438	134,156	△63,282	192,660	△4,778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12,500	116,066	3,566	116,066	3,566
3. 잔여건 관리비용	10,500	10,500	-	10,500	-
<b>B. 개식용 도축상인</b>	<b>32,496</b>	<b>32,496</b>	<b>-</b>	<b>32,496</b>	<b>-</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32,496	32,496	-	32,496	-
<b>C. 교육·홍보 등</b>	<b>3,300</b>	<b>1,200</b>	<b>△2,100</b>	<b>1,200</b>	<b>△2,100</b>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9〉 국비·지방비 비용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A)	검토안		대안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b>합계</b>	<b>356,237</b>	<b>294,418</b>	<b>△61,819</b>	<b>352,922</b>	<b>△3,315</b>	
중앙정부	<b>소계</b>	<b>179,769</b>	<b>147,809</b>	<b>△31,960</b>	<b>177,061</b>	<b>△2,708</b>
	<b>A. 개사육농장주</b>	<b>160,219</b>	<b>130,361</b>	<b>△29,858</b>	<b>159,613</b>	<b>△606</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98,719	67,078	△31,641	96,330	△2,389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6,250	58,033	1,783	58,033	1,783
	3. 잔여건 관리비용	5,250	5,250	-	5,250	-
	<b>B. 개식용 도축상인</b>	<b>16,248</b>	<b>16,248</b>	<b>-</b>	<b>16,248</b>	<b>-</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6,248	16,248	-	16,248	-
	<b>C. 교육·홍보 등</b>	<b>3,300</b>	<b>1,200</b>	<b>△2,100</b>	<b>1,200</b>	<b>△2,100</b>

〈표 29〉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A)	검토안		대안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지방정부	<b>소계</b>	<b>176,467</b>	<b>146,609</b>	<b>△29,858</b>	<b>175,861</b>	<b>△606</b>
	<b>A. 개사육농장주</b>	<b>160,219</b>	<b>130,361</b>	<b>△29,858</b>	<b>159,613</b>	<b>△606</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98,719	67,078	△31,641	96,330	△2,389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6,250	58,033	1,783	58,033	1,783
	3. 잔여건 관리비용	5,250	5,250	-	5,250	-
	<b>B. 개식용 도축업자</b>	<b>16,248</b>	<b>16,248</b>	<b>-</b>	<b>16,248</b>	<b>-</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6,248	16,248	-	16,248	-

자료: 연구진 작성

□ 비용 추정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0〉 연도별 비용 추정 결과(검토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계	
<b>합계</b>	<b>109,614</b>	<b>101,260</b>	<b>83,542</b>	<b>294,418</b>	
중앙정부	<b>소계</b>	<b>55,007</b>	<b>50,830</b>	<b>41,971</b>	<b>147,809</b>
	<b>A. 개사육농장주</b>	<b>49,191</b>	<b>45,014</b>	<b>36,155</b>	<b>130,361</b>
	1. 이행촉진지원금	28,097	23,920	15,061	67,078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9,344	19,344	19,344	58,033
	2-1. 시설물 잔존가액	15,758	15,758	15,758	47,274
	2-2. 철거비	3,586	3,586	3,586	10,759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개식용 도축업자</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	5,416	5,416	5,416	16,248
	<b>C. 교육·홍보 등</b>	<b>400</b>	<b>400</b>	<b>400</b>	<b>1,200</b>
지방정부	<b>소계</b>	<b>54,607</b>	<b>50,430</b>	<b>41,571</b>	<b>146,609</b>
	<b>A. 개사육농장주</b>	<b>49,191</b>	<b>45,014</b>	<b>36,155</b>	<b>130,361</b>
	1. 이행촉진지원금	28,097	23,920	15,061	67,078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9,344	19,344	19,344	58,033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개식용 도축업자</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	5,416	5,416	5,416	16,248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1〉 연도별 비용 추정 결과(대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계
합계		192,676	73,848	86,396	352,922
중앙정부	소계	96,538	37,124	43,398	177,061
	A. 개사육농장주	90,722	31,308	37,582	159,613
	1. 이행촉진지원금	69,628	10,214	16,488	96,330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9,344	19,344	19,344	58,033
	2-1. 시설물 잔존가액	15,758	15,758	15,758	47,274
	2-2. 철거비	3,586	3,586	3,586	10,759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 개식용 도축업자	5,416	5,416	5,416	16,248
	1. 철거·시설	5,416	5,416	5,416	16,248
	C. 교육·홍보 등	400	400	400	1,200
지방정부	소계	96,138	36,724	42,998	175,861
	A. 개사육농장주	90,722	31,308	37,582	159,613
	1. 이행촉진지원금	69,628	10,214	16,488	96,330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9,344	19,344	19,344	58,033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 개식용 도축업자	5,416	5,416	5,416	16,248
1. 철거·시설	5,416	5,416	5,416	16,248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비용 변동 가능성

### □ 폐·전업 지원 추계액의 과소 비용 추정 가능성

- 지원금이나 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 폐·전업 의사를 표명하는 농가가 실제 수요보다 많아지는 등 폐·전업 희망 농가가 조기에 증가할 수 있음
  - 1구간 경과 결과를 토대로 「농지법」 위반 농가 비율이 적을수록, 사업 초기에 폐업이 집중될수록 총사업비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이는 동 사업이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가 잘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다만, 총사업비 변동이 크다면 예비비 산정 등 예산의 배정 및 집행상 어려움이 발생되는바, 개사육농장주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적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운바, 이는 초기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거나, 암시장이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조기 폐업을 유도하는 지원금 차등 구조로 인해 초기 예산 집행이 집중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폐업 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될 경우, 후속 연도에 필요한 추가 예산 부족 상황 발생
  - 이처럼 초기 예산 배정이 부족할 경우, 중기적으로 행정 부담 및 추가 지원금 필요
  - 또는 법령 위반 시 페널티가 크지 않다면, 6구간에 위치한 농가들이 암시장으로 이전하여 사업 비용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위법 시설물 관련 비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비용 추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농지법」, 「건축법」,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의 실제 수가 과소 집계될 경우,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추가 발생 가능
    - 위법 시설물은 철거 비용과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필요한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 있음

#### 다. 주요 모수에 대한 검토

- 도축업자는 경제학 모형에 따라 폐업 시기 및 폐업 여부를 결정 가능
  - 최적 결정 이론(Optimal Decision Rule)에 따라 이론적으로 도축업자들이 해당 제도를 언제 이용할지를 예측
    - 먼저  $R$ 은 해당 업자가 식당이나 도축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1년 동안 발생하는 순수익(운영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값)으로 정의
    - $\pi$ 은 정부의 법안이 도입되어 단속이 시작되는 4년 차 이후의 적발 확률이며, 도축업자가 개 사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위반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 혹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의미
    - $P$ 는 이와 같은 적발 시 부과되는 제재 수준 혹은 페널티 금액

-  $B_1, B_2, B_3$  각각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폐업 보상금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제도의 조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B_1 > B_2 > B_3$ 의 관계가 성립

○ 이때 도축업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1년 차에 바로 폐업을 선택하거나, 3년간 업을 유지한 뒤 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법 시행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음

□ 해당 모형에 따르면 단속 확률( $\pi$ ), 페널티( $P$ )를 높이거나  $B_1, B_2, B_3$  차등 폭을 키워 1년차 조기 폐업을 유도할 경우, 도축업자의 조기 폐업을 유도할 수 있음

## V. 정책성 분석

###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 정책성 분석의 근거 및 개요

○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중 계량화는 어렵지만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분석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별표 3]에 따라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사업별도평가항목을 검토함

○ (사업추진 여건) 상위 계획 반영 여부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과 지역 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 여부 등 외부여건 등을 검토함

○ (정책 효과) 기본항목(일자리 효과, 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과 선택항목(안전성 평가)을 검토하고 사업 부처에서 제시하는 사업특화항목을 검토함

○ (사업별도평가항목) 자원조달 위험성 또는 문화재 가치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영함

〈표 32〉 정책성 분석의 세부평가항목

중분류	세부평가항목	수행 여부
사업추진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li> <li>•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li> </ul>	검토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효과</li> <li>• 생활여건 영향</li> <li>• 환경성 평가</li> <li>• 안전성 평가(선택)</li> <li>• 사업특화항목</li> </ul>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생략 가능
사업별도평가항목 (선택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조달 위험성</li> <li>• 문화재 가치</li> </ul>	미포함

자료: 「에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별표 3]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 2. 사업추진 여건

### 가. 내부여건 검토 결과

- 상위·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24년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서는 각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
  -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의 중앙-지방 실무협의체(월 1회) 및 권역별 설명회(분기별)가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작동하고 있으며, 정책 시행 초기부터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정부(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농가 현황 조사, 전업 컨설팅, 잔여권 보호 등 실질적 이행을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도 잘 이루어짐
- 다만, 지방정부의 참여가 미진할 경우 사업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
  - 재정지원 체계 차원에서 개사육 농장과 도축업에 대해 약 3,000억원의 재정 투자가 계획되었으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재정 자립도가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참여가 미진할 수 있음
  - 다만,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중앙-지방 실무협의체 및 권역별 설명회(11회 정례회의, 3회 권역별 설명회) 등 부처의 노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

## 나. 외부여건 검토 결과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짐
  - 2021년 12월 사회적 논의 기구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하여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법률, 갈등관리, 식품), 정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음
    - 위원회 내 국민인식조사 소위원회('22. 1.~) 및 개 식용 종식 합의문 작성 소위원회('22. 4.~)가 별도 구성이 되어 있음
  - 농가의 연령과 업력이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 개사육 전업 및 폐업 희망자가 높을 것으로 판단
    - 개사육농장주의 평균 연령은 64.3세, 평균 종사기간 17.6년으로 사업을 장기간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부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폐업 희망 비율은 56.3%, 전업 희망 비율은 43.7%로 예상과 달리 사업에 반대하는 농장주들이 존재할 위험도 있음
  - 농가 분류 및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농가 반발도 예상 가능
    - 합법 농가와 불법 농가(「건축법」, 「가축분뇨법」 위반) 간 지원 차등 지급으로 농가의 반발 심화 가능성 존재

## VI.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짐
  - 2021년 12월 사회적 논의 기구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하여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법률, 갈등관리, 식품), 정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음
    - 위원회 내 국민인식조사 소위원회('22. 1.~) 및 개식용 종식 합의문 작성 소위원회('22. 4.~)가 별도 구성이 되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계획 수립
  - 정부는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을 제정·공포하고, 2027년까지 모든 개 사육농장과 도축업의 폐업 또는 업종 전환을 법적으로 요구함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농가와 업자의 원활한 생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사업'을 수립하여 업자들의 조기 폐업 유도과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
  
- 사업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본 사업은 법 시행에 따른 필수 정책 수단으로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지원대상의 정의, 지원 항목의 구성 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설계됨
  - 지원대상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 사육농장주, 도살업자, 유통업자 등으로 적절하게 설정됨
  - 주요 지원 항목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 철거 및 잔존가액 보상, 잔여권 보호·관리비, 전업 컨설팅 및 홍보·교육이며, 재정적 보상과 비재정적 지원을 모두 포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부합함
  - 사업 추진체계는 중앙정부가 제도 설계 및 예산 확보를, 지방정부가 현장 이행과 점검을 담당하는 구조로 적절하게 역할 분담이 되었음
    - 다만, 지방비 50% 매칭 부담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조기 폐업 농가가 집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차별 예산 배분의 탄력적 조정과 조기 소진 시 추가 재정 확보 대책이 필요함
  - 잔여권 처리 문제, 지원 제외 농가의 이탈 가능성, 이행계획 심의의 공정성과 일관성 확보, 중복수급 방지 대책 등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과제 존재
  
- 총사업비는 부처 계획안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초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신청이 몰린 탓으로 비용 추정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움
  - 총사업비는 검토안 기준 약 2,944억원, 대안 기준 3,529억원으로 재산정되었으며, 부처 계획안 대비 약 33억~618억원 감소함
  - 사업계획안보다 검토안의 규모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총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임
  - 대안의 경우 검토안과 같이 지원단가 감소가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감소로 작용하였으나, 「농지법」 합법 농가 비율 증가와 폐업률 1구간 확대 등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총사업비 규모는 부처 계획안 대비 소폭 감소함
  - 다만, 다양한 비용 변동요인(실제 사육 마릿수 및 폐업 의향 추계 오차, 개고기 가격 변동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예산 추정 필요
  
- 종합적으로 본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이 높고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됨
  - 사업 추진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목표 연도까지 원활히 개 식용 종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총사업비는 최신 이행계획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산정됨
  
- 정책제언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유인 강화 필요
    - 교육·홍보 등을 제외한 사업비 절반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는 구조에서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 참여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조기 폐업 증가 대응을 위한 예산 집행 탄력성 확보 필요
    - 예상보다 많은 농가가 1년 차에 폐업할 경우, 당초 계획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부족 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분기별 폐업 신청 동향 모니터링 및 연차별 소요 예산 재예측을 통한 선제 대응 필요

- 잔여건 보호·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지원대상 제외, 계획 변경 등으로 남은 개 처리 불가 사례 발생 가능
  - 지자체와 협력한 유기견 보호센터 확충, 민간 입양 연계 프로그램 마련, 유기·도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동물보호법」 등에 따른 무허가 불법 영업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 병행
- 이해관계자와의 투명·지속적 소통 필요
  - 민관 합동위원회·전문가 자문단 활용, 현장 의견 반영, 갈등 요인 선제 해소
  - 보상 수준 불만, 지역사회 반발 등에 대한 공개 토론·설명회 개최
  - 국민 대상 홍보 강화, 언론·SNS를 통한 성공사례 공유로 정책 지지 확대
- 맞춤형 전업 지원 내실화 필요
  - 기술 교육, 창업자금 연계, 판로 개척 지원 등 종합 지원 제공
  - 농촌 지역 특성 반영한 대체 소득원 발굴과 성공 모델 확산
  - 폐업 지원금 수령 농가의 재개업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및 필요 시 추가 컨설팅·취업 지원 제공

#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사업

- 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III.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
- IV. 비용 추정
- V. 정책성 분석
- VI.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가. 사업의 추진 배경

과거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국내 반려견 양육 가구 수의 증가와 함께 최근 국민인식조사 결과<sup>14)</sup>에 따르면 개고기 식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동물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국정과제<sup>15)</sup> 중 하나로 채택되어 추진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2024년 1월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4년 2월 6일 공포되었으며, 이후 2024년 8월에는 개 식용 종식 예산이 2025년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7년 개 식용 종식 목표 달성을 위해 육견 농가, 도축업자의 폐·전업 지원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개 식용 종식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개사육농장주 등 관련 사업자들의 폐업과 관련된 생계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지원’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대상으로 신청하였고, 본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제8호(법령상 추진)<sup>16)</sup>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2024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해당 조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제2항<sup>17)</sup>에 따라 원

14)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2024.

15) 국정과제 48,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진정한 반려문화 조성’

16) 「국가재정법」 제3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칙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이를 의뢰(타당성심사과-798(2024. 8. 28.))하였다.

##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본 사업은 개 식용 종식 이행 과정에서 폐·전업이 불가피한 관련 개사육농장주 및 도축상인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 폐업시설 철거비용, 폐업시설물 잔존가액 등 폐·전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사업을 통해 개 식용을 조기에 종식하고, 관련 농장주 및 도축상인에게 업종 전환을 유도하여 개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통한 국격을 제고하는 것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다.

## 2.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 가. 사업의 추진근거

본 사업의 추진은 「개식용종식법」(법률 제20195호, 2024. 2. 6., 제정)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04호, 2024. 8. 6., 제정),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2호, 2024. 4. 26., 일부개정), 그리고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2024. 9. 농림축산식품부)에 근거하며, 국정과제와도 연계된다.

「개식용종식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및 제12조(전업의 지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사육 등 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신고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도축상인에게 폐·전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조(폐업지원의 대상) 및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에서는 폐업지원의 대상 요건과 폐업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및 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에서는 전업지원의 대상 요건과 전업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17)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안을 분석함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신고) 및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에서는 농장주 및 도축상인의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의 제출기한, 제출처 및 제출 신고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4년 9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의 추진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과제 및 이행 수단이 제시되었다. 주된 내용으로 첫째, 개 사육·도살 및 유통·소비 종식 등 개 식용 업계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둘째, 전·폐업 컨설팅,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및 종식 이행 점검 등 차질 없는 개 식용 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개 식용 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한편 윤석열정부에서는 국정과제 48번,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내에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이라는 과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 중 ‘동물복지 강화’에 관한 부분이 본 과제에 해당한다.

## 나. 사업의 추진경위<sup>18)</sup>

### 1)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전: 1970년대~2024. 2.

1975년 「축산물위생처리법」(現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였다가 국내외 동물단체 등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반발로 인해 1978년 6월 「축산물위생처리법」 내 가축 범위에서 개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축산법」상으로 여전히 가축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지속적인 혼란이 존재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개고기 식용에 대한 국내외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국내 ‘개 도살 방법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이 1991년에 제정되었다. 2005년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개 등 동물의 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고, 2007년 1월

18)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2024. 7.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7~11.

에는 동물 학대 금지행위의 범위 구체화 및 위반에 따른 벌칙 강화, 동물등록제 도입 등을 포함하여 「동물보호법」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6년 5월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으로써 개고기의 식품 원료 사용을 불법화하였다. 2021년 11월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하였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하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17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 2)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2024. 2. 이후

2024년 1월에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에 공포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4년 1월에 전담조직(T/F)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하였고, 같은 해 4월에는 개 식용 종식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개 식용 종식 추진단’)를 출범시켰다. 또한 2024년 8월에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예산을 2025년도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신청하였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제8호(법령상 추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2024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제2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뢰((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798(2024. 8. 28.))하였다. 2024년 9월에는 2027년 개식용종식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2025년도 정부안이 국회 본예산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폐업 농가 수가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2025년 5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추가 편성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표 1-1〉 사업의 추진경위

연월	내용
2021. 11.	•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 논의
2021. 12.	•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2021. 12. ~ 2022. 6., 17차 회의)
2024. 1.	• 「개식용종식법」 국회 본회의 의결(2024. 1. 9.) • 「개식용종식법」 이행 전담조직(T/F) ('개식용종식추진단') 발족(2024. 1. 22.)
2024. 2.	• 「개식용종식법」 제정·공포(2024. 2. 6.)
2024. 7.	•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2024. 2. 7.)」, 중간보고
2024. 8.	•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정(2024. 8. 6.)·시행(2024. 8. 7.) • 개식용 종식 예산(550억 1,300만원)이 2025년도 정부안에 반영 - 농림축산식품부 544억 1,3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6억원
2024. 2.~ 2024. 9.	• 육견업계(육견농가,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점영업자) 실태조사
2024. 8.	• 2024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요구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798(2024. 8. 28.)
2024. 9.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착수
2024. 12.	• 2025년도 정부안이 국회 본예산 통과
2025. 5.	• 예비비 추가 편성 국무회의 심의·의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2024. 9. 및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2024. 7.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7~1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3. 사업의 주요 내용

#### 가. 지원 대상

본 사업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신고서 및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 및 도축상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른 2027. 2. 6일까지 폐업 이행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확인, 시설물 평가 및 철거 완료 후 지급한다.

## 나. 사업 절차

### 1) 사업 신청 및 접수 단계

농장주 및 도축상인은 이행계획서에 따라 폐업 이행 및 사육 중인 개를 모두 출하한 후 개사육농장, 도축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전업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지원 신청 시 제출할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 1-2〉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대상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농장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출하 마릿수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장부 등)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축분뇨법」, 「농지법」, 「건축법」 등 위반사항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공부 등 관련 자료
	임대·임차 관계가 있는 경우 타인의 토지 및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상호 협의하에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지주확인서 등)
도축상인	사업자 등록증 등 영업·도축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농지법」, 「건축법」 등 위반사항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공부 등 관련 자료
	임대·임차 관계가 있는 경우 타인의 토지 및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상호 협의하에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지주확인서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안)」, 2024. 12.

### 2) 신청서 확인 및 대상자 선정 단계

#### [시·군·구]

##### ① 지원금 평가반 구성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지원신청서 접수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지원규모 결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원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개식용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② 농장주(도축상인) 폐업지원신청 자격 확인(서면조사)

평가반에서는 농장주 및 도축상인의 폐업지원 신청 자격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확인 사항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인지 여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영업 사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영업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지원배제·감액 요건이 되는 관계법령(「건축법」·「농지법」·「가축분뇨법」) 위반 여부 등이다.

### ③ 현지조사

농장주 및 도축상인의 지원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평가반 또는 시·군·구 개식용종식 업무 담당 공무원(평가반을 별도 구성하지 않은 경우)이 조사주체가 되어 서면조사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진위 여부를 조사한다. 이때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운영신고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폐업의 이행 여부, 폐업지원금 감액·지급 배제요건 관련 사항, 잔여건 발생 및 소유권 포기의 불가피성 등을 확인한다.

### ④ 지원규모 결정(지급심사)

평가반은 서류·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지원 항목 및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등의 지급규모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 ⑤ 조사결과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별도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산정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고, 지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농장주·도축상인]

지자체로부터 받은 「폐업지원금 등 신청 산정 결과서」를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 신청 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장주·도축상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이의신청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 3) 자금 요청 단계

#### [시·군·구(지자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장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이의 신청)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폐업지원금 신청내용 확인 결과서를 바탕으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 심사 결과서(농장주/도축상인)」 및 엑셀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시·도(지자체)]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심사 결과서를 취합·검토하여 취합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 심사 결과서(농장주/도축상인)」와 엑셀자료를 농식품부의 개식용 종식추진단으로 통보한다.

### 4)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심사 결과서(농장주/도축상인)」와 엑셀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별 배정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한다.

#### [시·도, 시·군·구(지자체)]

##### ①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 계획,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통보한다.

##### ② 철거·폐기

지자체(시군구)는 결정서를 받은 농장주를 대상으로 철거 대행업체를 통해, 사육 관련 시설(축사 등)을 철거·폐기한 후 서면(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으로 자료를 보관한다.

##### ③ 폐업이행촉진지원금(농장주만 해당), 시설물 잔존가액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철거, 시설물 폐기 완료 등을 확인한 후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 ④ 지급 결과 보고

시·도지사는 시·군·구로부터 보고받은 폐업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최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시행 익년도 2월까지 보고한다.

### 5) 이행 점검 단계

#### ① 사후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에 표지판, 부착물 등을 설치하여 해당 축사에서 식용견 재사육이 불허됨을 공시하고,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 입식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 결과를 4년간 기록·관리한다.

#### ② 지원금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식용종식법」 제8조에 따라 지급받은 신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급받은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폐업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이 잘못 지급된 경우
- 폐업한 농가가 폐업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급받은 후, 육견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

### 다. 지원 내용

####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자체장이 산정하고 검토한 금액으로 '사육 마릿수(신고기준, 연평균)'당 폐업 시기 구간별로 차등하여 지원한다. 이때, 「건축법」상 시설물 무허가 또는 미신고,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미신고 위반 확인 시 지원을 배제하고, 「농지법」상 농지 전용 미신고의 경우에는 50% 감액한다.

지원기준: 사육 마릿수×폐업 시기별 지원단가×조정률

가) 사육 마릿수: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 기준(단, 적정 사육두수\*를 상한으로 적용)

\* 적정 사육두수: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면적(㎡)×면적당 적정 두수(1.2마리/㎡)

나) 지원단가: 폐업 시기 구간별 지원단가(30만원×지원기간) 차등 적용

〈폐업시기 구간별 두당 지원단가〉

폐업구간	2024. 2. 7. ~2025. 2. 6.	2025. 2. 7. ~2025. 8. 6.	2025. 8. 7. ~2025. 12. 21.	2025. 12. 22. ~2026. 5. 6.	2026. 5. 7. ~2026. 9. 21.	2026. 9. 22. ~2027. 2. 6.
지원단가 (지원기간)	60만원 (2년)	52.5만원 (1.75년)	45만원 (1.5년)	37.5만원 (1.25년)	30만원 (1년)	22.5만원 (0.75년)

주: 지원단가는 구간별 “30만원×지원기간”으로 산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2024. 10.

#### 다) 조정률

- ① 개사육 농장의 축사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허가 혹은 신고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 ② 개사육 농장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 ③ 개사육 농장이 「농지법」 제35조 전단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나, 전용 신고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경우 50% 감액한다.

#### 2) 시설물의 철거 대행

농장 및 도축장 내 건축물·설비를 시·군·구가 용역계약을 맺은 철거업체에서 철거 및 폐기 처리하고, 필요시 토지를 원상 복구한다.

철거 대상은 육견의 사육 및 도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영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한다. 이때, 「건축법」(시설물 무허가·미신고), 「농지법」(농지 전용 미신고), 「가축분뇨법」(배출시설 미신고) 위반 확인 시 철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농장주 및 도축상인이 철거 및 토지 원상 복구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3) 시설물 잔존가액(감정평가비 포함)

시설물 잔존가액은 시·군·구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 2개소에서 개 사육·도축시설(건축물·설비) 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된다. 감정평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농가의 폐업(전두수 출하)이 확인된 후 실시하나, 농가가 동의하고 이행계획서상 폐업예정일 전에 개가 모두 출하되는 것이 확실 시될 경우 폐업예정일 이전에 조기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평가 대상은 육견의 사육 및 도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영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며 사육·도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 수목, 울타리, 펜스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소유권 포기권의 보호·관리 비용

개사육농장주가 불가피하게 소유권을 포기하는 개를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관리·분양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소유권 포기의 불가피성은 농가의 종식 이행노력 여부와 업계·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확인·판단하여 결정한다.

### 5) 교육·홍보, 연구용역 및 컨설팅 수행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관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원활한 개 식용 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연구용역 및 컨설팅 등 행정 사항을 수행한다. 이에 대한 항목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 ① 교육비: 지자체 담당자 교육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 ② 홍보비: 정책 추진 상황 홍보,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언론·방송·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에 상시 홍보
- ③ 연구용역·실태조사비: 정책 추진 관련 연구용역 및 실태 조사 수행
- ④ 컨설팅비: 농가 전업지원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및 사육 전반 현장관리·지도
- ⑤ 일반수용비: 이해관계자(육견단체·동물보호단체)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소요

## 라.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1) 사업기간: 2025~2027년(3년)

2) 총사업비: 3,562억원(국고 1,797억원(50.5%), 지방비 1,765억원(49.5%))

〈표 1-3〉 총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b>총사업비</b>	<b>356,238</b>	
<b>A. 농장주 폐·전업 지원</b>	<b>320,438</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197,438	[2025년] • (3년치 지원) 91,125백만원 1) 합법(3년치) 60,750백만원[(30만원/두×45만두×30%×1/2)×3년] 2) 불법 30,375백만원[(30만원/두×45만두×30%×1/2×조정률 50%)×3년] [2026년] • (2년치 지원) 70,875백만원 1) 합법(2년치) 47,250백만원[(30만원/두×45만두×35%×1/2)×2년] 2) 불법 23,625백만원[(30만원/두×45만두×35%×1/2×조정률 50%)×2년] [2027년] • (1년치 지원) 35,438백만원 1) 합법(1년치) 23,625백만원[(30만원/두×45만두×35%×1/2)×1년] 2) 불법 11,813백만원[(30만원/두×45만두×35%×1/2×조정률 50%)×1년]
2. 폐업시설 철거비	21,000	[2025년~2027년] 21,000백만원[(200농가×35백만원)×3개년]
3. 폐업시설물 잔존가액	91,500	[2025년~2027년] 91,500백만원[(500농가×61백만원)×3개년]
4. 잔여권 관리비용	10,500	[2025년] 3,500백만원(3.5만두/3×30만원/두) [2026년] 3,500백만원(3.5만두/3×30만원/두) [2027년] 3,500백만원(5만두×7만원/두)
<b>B. 도축상인 폐·전업 지원</b>	<b>32,500</b>	
1. 폐업시설 철거비	12,500	[2025년~2027년] 12,500백만원[(125개소/3×100백만원)×3개년]
2. 폐업시설물 잔존가액	20,000	[2025년~2027년] 20,000백만원[(125개소/3×160백만원)×3개년]
<b>C. 교육·홍보 등</b>	<b>3,300</b>	
1. 교육·홍보비	960	[2025년~2027년] 960백만원[(1식×320백만원×국비 100%)×3개년]
2. 연구용역비	780	[2025년~2027년] 780백만원[(1식×260백만원×국비 100%)×3개년]
3. 감정평가비	1,500	[2025년~2027년] 1,500백만원[(1식×500백만원×국비 100%)×3개년]
4. 일반수용비	30	[2025년~2027년] 30백만원[(1식×10백만원×국비 100%)×3개년]
5. 업무추진비	30	[2025년~2027년] 30백만원[(1식×10백만원×국비 100%)×3개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2024. 9. 및 (별첨1) 산출근거(부처안 기준) 수정, 2024. 9.

〈표 1-4〉 연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계
<b>합계</b>		<b>144,058</b>	<b>123,808</b>	<b>88,371</b>	<b>356,237</b>
국 안 정 부	<b>국비(50.5%)</b>	<b>72,579</b>	<b>62,454</b>	<b>44,735</b>	<b>179,769</b>
	<b>A. 농장주 폐·전업지원</b>	<b>66,063</b>	<b>55,937</b>	<b>38,219</b>	<b>160,219</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45,563	35,437	17,719	98,719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8,750	18,750	18,750	56,250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도축상인 폐·전업지원</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	5,416	5,416	5,416	16,248
	<b>C. 교육·홍보 등</b>	<b>1,100</b>	<b>1,100</b>	<b>1,100</b>	<b>3,300</b>
지 방 정 부	<b>지방비(49.5%)</b>	<b>71,479</b>	<b>61,354</b>	<b>43,635</b>	<b>176,468</b>
	<b>A. 농장주 폐·전업 지원</b>	<b>66,063</b>	<b>55,937</b>	<b>38,219</b>	<b>160,219</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45,563	35,437	17,719	98,719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8,750	18,750	18,750	56,250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도축상인 폐·전업 지원</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416	5,416	5,416	16,24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2024. 9. 및 (별첨2) 사업설명서\_수정, '연차별 투자계획', 2024. 9.

[참고] 2025년 본 예산 확정

□ 예산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비고
		요구안	확정(B)		
개식용 종식 전업, 폐업지원	-	54,413	54,413	54,413	순증

□ 기능별, 목별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예산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b>기능·비목별분류(합계)</b>							54,413	
•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48,597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48,597	
•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지원							5,416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5,416	
• 교육·홍보 등							400	
- 일반수용비(210-01)							10	
- 민간 경상보조(320-01)							390	

자료: 농림부 3차 질의 및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자료(2025. 1.), 요청자료 9 예산 관련자료

□ 사업내용

- (개식용 종식 전업, 폐업지원) ① 개식용 관련 업계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한 이행촉진지원금, 시설 철거비용,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② 원활한 개식용 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용역·실태조사 수행
  -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해 이행촉진지원금, 시설 철거비용,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지원) 개식용 도축업자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해 시설 철거비용,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 (교육·홍보 등) 원활한 개식용 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용역·실태조사 추진

□ 20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1.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지원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b>계</b>	<b>48,597</b>
<b>① 폐업이행촉진지원금 28,097백만원</b>	<b>28,09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구간) [45만두×30%(2025년 폐업률)×40%×0.6백만원/두×1/2(합법률)+45만두×30%(2025년 폐업률)×40%×0.6백만원/두×1/2(불법률)×50%(조정률)]×국비 50%</li> <li>• (2구간) [45만두×30%(2025년 폐업률)×60%×0.525백만원/두×1/2(합법률)+45만두×30%(2025년 폐업률)×60%×0.525백만원/두×1/2(불법률)×50%(조정률)]×국비 50%</li> </ul>	28,097
<b>② 철거비·시설물 잔존가액·감정평가비 19,000백만원</b>	<b>19,00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거비: 35백만원×500농가×40%(합법률)×국비 50%</li> <li>• 시설물 잔존가액: 61백만원×500농가×국비 50%</li> <li>• 감정평가비: 1백만원×500농가×국비 50%=250백만원</li> </ul>	3,500
	15,250
	250
<b>③ 잔여건 보호관리비용 1,500백만원</b>	<b>1,50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백만원(보호관리비)×1만두×국비 50%</li> </ul>	1,500

2. 개식용 도축상인 폐업·전업지원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b>계</b>	<b>5,416</b>
<b>① 철거비·시설물 잔존가액·감정평가비</b>	<b>5,41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거비: 100백만원×(125개소/3년)×국비 50%</li> <li>• 시설물 잔존가액: 160백만원×(125개소/3년)×국비 50%</li> </ul>	2,083
	3,333

3. 교육·홍보 등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b>계</b>	<b>400</b>
<b>①. 교육, 홍보비 (160백만원)</b>	<b>16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홍보비: (1식×40백만원+1식×120백만원)×국비 100%</li> </ul>	160
<b>②. 연구용역 등 (230백만원)</b>	<b>23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 1식×85백만원×국비 100%</li> <li>• 실태조사: 1식×85백만원×국비 100%</li> <li>• 전업컨설팅: 1식×60백만원×국비 100%</li> </ul>	85
	85
	60
<b>③. 일반수용비 (10백만원)</b>	<b>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수용비: 1식×10백만원×국비 100%</li> </ul>	10

□ 사업계획안과 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차이

	사업계획안(2025년)	2025년도 예산안
<b>A. 농장주 폐·전업 지원</b>		
폐업이행촉진 지원금(국비 50%)	45,563백만원	28,097백만원
지원단가 (30만원/두 ×지원기간)	(2025년) 90만원/두 = 30만원/두×3년 (2026년) 60만원/두 = 30만원/두×2년 (2027년) 30만원/두 = 30만원/두×1년	※ 기본계획안 적용 (1구간) 60만원/두 = 30만원/두×2년 (2구간) 52.5만원/두 = 30만원/두×1.75년 (3구간) 45만원/두 = 30만원/두×1.5년 (4구간) 37.5만원/두 = 30만원/두×1.25년 (5구간) 30만원/두 = 30만원/두×1년 (6구간) 22.5만원/두 = 30만원/두×0.75년
지원물량 (전체지원두수× 예상폐업률)	(2025년) 13.5만두 = 45만두×30% (2026년) 15.75만두 = 45만두×35% (2027년) 15.75만두 = 45만두×35%	2025년 예상 폐업률 사업계획안과 동일 (1구간) 5.4만두 = 45만두×30%×40% (2구간) 8.1만두 = 45만두×30%×60%
감정평가비 (국비 50%)	-	250백만원 = 1식×500백만원
잔여건 관리비용 (국비 50%)	1,750백만원	1,500백만원
지원단가	30만원/두	30만원/두
지원물량	(2025년) 1.16만두 = 3.5만두/3년	(2025년) 1만두
<b>C. 교육·홍보 등 (국비 100%)</b>		
1. 교육·홍보	1식×320백만원	1식×160백만원
2. 연구용역 등	1식×260백만원	1식×230백만원
3. 감정평가비 <sup>1)</sup>	1식×500백만원	-
4. 일반수용비	1식×10백만원	1식×10백만원
5. 업무추진비	1식×10백만원	-

주: 1) 감정평가비는 '사업계획안'에서는 "C.교육·홍보 등" 부문에 속해 있으나, 2025년 예산안에서는 "A.농장주 폐·전업지원" 부문에 들어가 있음

자료: 연구진 작성

[참고] 2025년 예비비 추가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예산		2025년 수정안	증감(예비비)	
<b>합계</b>	<b>54,413</b>		<b>137,823</b>	<b>83,410</b>	
농장	소계	48,597	132,007	83,410	
	이행촉진	28,097	84,475	56,378	
	1 구간	합법	8,100 5.4만두×50%×60만원/두 ×국비 50%	50,144 17.4만두×96.2%×60만원/두 ×국비 50%	42,044
		불법	4,050 5.4만두×50%×30만원/두 ×국비 50%	1,004 17.4만두×3.8%×30만원/두 ×국비 50%	△3,047
		계	12,150	51,148	38,998
	2 구간	합법	10,632 8.1만두×50%×52.5만원/두 ×국비 50%	32,682 13.0만두×96.2%×52.5만원/두 ×국비 50%	22,050
		불법	5,315 8.1만두×50%×26.3만원/두 ×국비 50%	645 13.0만두×3.8%×26.3만원/두 ×국비 50%	△4,670
		계	15,947	33,327	17,380
	시설가액	15,250	33,945	18,695	
	1구간	6,100 200호×61백만원×국비 50%	21,855 611호×71백만원×국비 50%	15,755	
	2구간	9,150 300호×61백만원×국비 50%	12,090 338호×71백만원×국비 50%	2,940	
	감평비	250	474	224	
	1구간	100 200호×1백만원×국비 50%	305 611호×1백만원×국비 50%	205	
	2구간	150 300호×1백만원×국비 50%	169 338호×1백만원×국비 50%	19	
	철거비	3,500	11,613	8,113	
	1구간	1,400 200호×40%×35백만원 ×국비 50%	7,472 611호×70%×35백만원 ×국비 50%	6,072	
	2구간	2,100 300호×40%×35백만원 ×국비 50%	4,141 338호×70%×35백만원 ×국비 50%	2,041	
	보호비용	1,500	1,500	-	
	도축장	소계	5,416	5,416	-
시설가액		3,333 42개소×160백만원×국비 50%	3,333 42개소×160백만원×국비 50%	-	
철거비		2,083 42개소×100백만원×국비 50%	2,083 42개소×100백만원×국비 50%	-	
행정	400	400	-		

자료: 농림부 6차 질의 및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자료(2025. 6. 10.)

## 마.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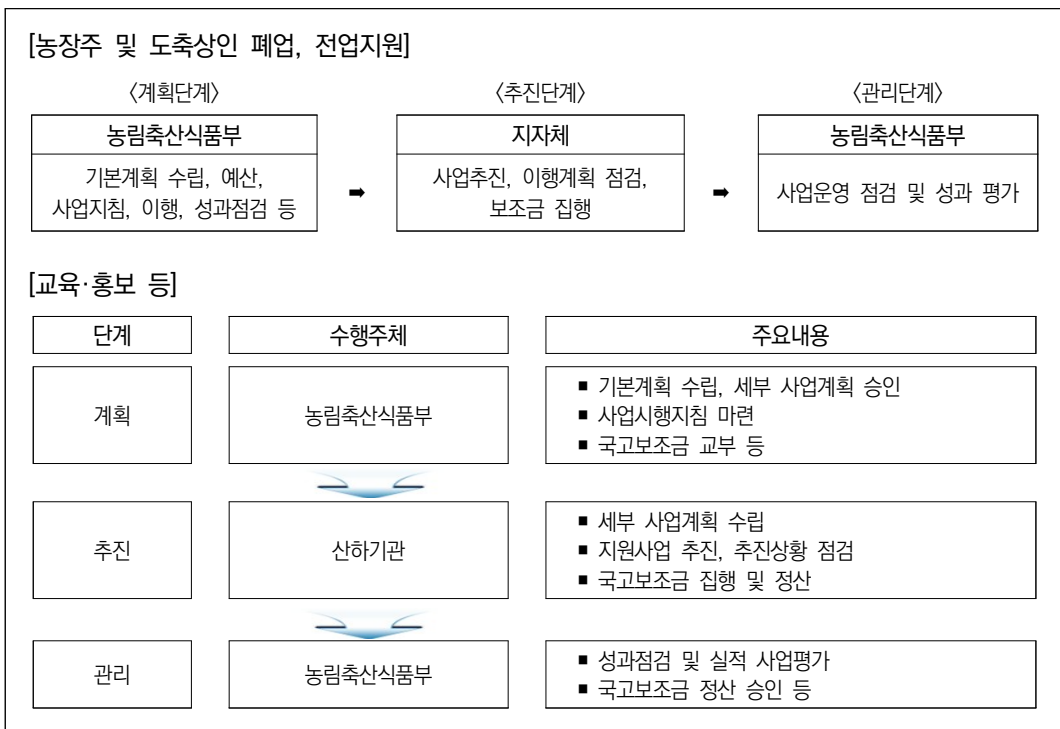
### 1) 농장주 및 도축상인 폐·전업지원

- ① 계획 단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 수립, 해당 예산편성 및 사업지침 마련
- ② 추진 단계: 지자체가 기본계획과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이행계획 점검 및 보조금 집행
- ③ 관리 단계: 사업 종료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운영 점검 및 성과 평가

### 2) 교육·홍보, 연구용역 및 컨설팅 수행

- ① 계획 단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 수립, 세부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 ② 추진 단계: 유관기관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추진 상황 점검
- ③ 관리 단계: 사업이 종료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운영 점검 및 성과 평가

[그림 1-1] 단계별 사업 추진체계



자료: 「개식용종식 폐업, 전업지원 2025 정부예산안」(2024. 11.), '7 사업 집행절차'

〈표 1-5〉 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사업계획
지원대상	운영신고서 및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 및 도축상인
사업절차	1) 지원 신청 및 접수 2) 신청서 확인 및 대상자 선정(평가단 구성, 폐업지원신청 자격 확인, 현지조사, 지원규모 결정, 결과통보) 3) 자금 요청(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개식용종식추진단)) 4) 자금 배정(자금대상자 결정 통지 → 철거·폐기 → 폐업이행촉진지원금(농장주만 해당), 시설물 잔존가액 지급) 5) 이행 점검(사후관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시 지원금 환수)
지원내용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 지원기준: 사육 마릿수×폐업 시기별 지원단가×조정률 2) 시설물의 철거 대행 * 육견의 사육 및 도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건축(공작)물, 영업용 고정자산에 한정 3) 시설물 잔존가액(감정평가비 포함) * 시·군·구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 등 2개소의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4) 소유권 포기건의 보호·관리 비용 5) 교육·홍보, 연구용역 및 컨설팅 수행
사업기간	2025년~2027년 (3년)
사업 추진체계	* 계획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단계: 지자체(시·군·구, 시·도) / 유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3,562억원
재원분담	* 국고: 1,797억원(50.5%) * 지방비: 1,765억원(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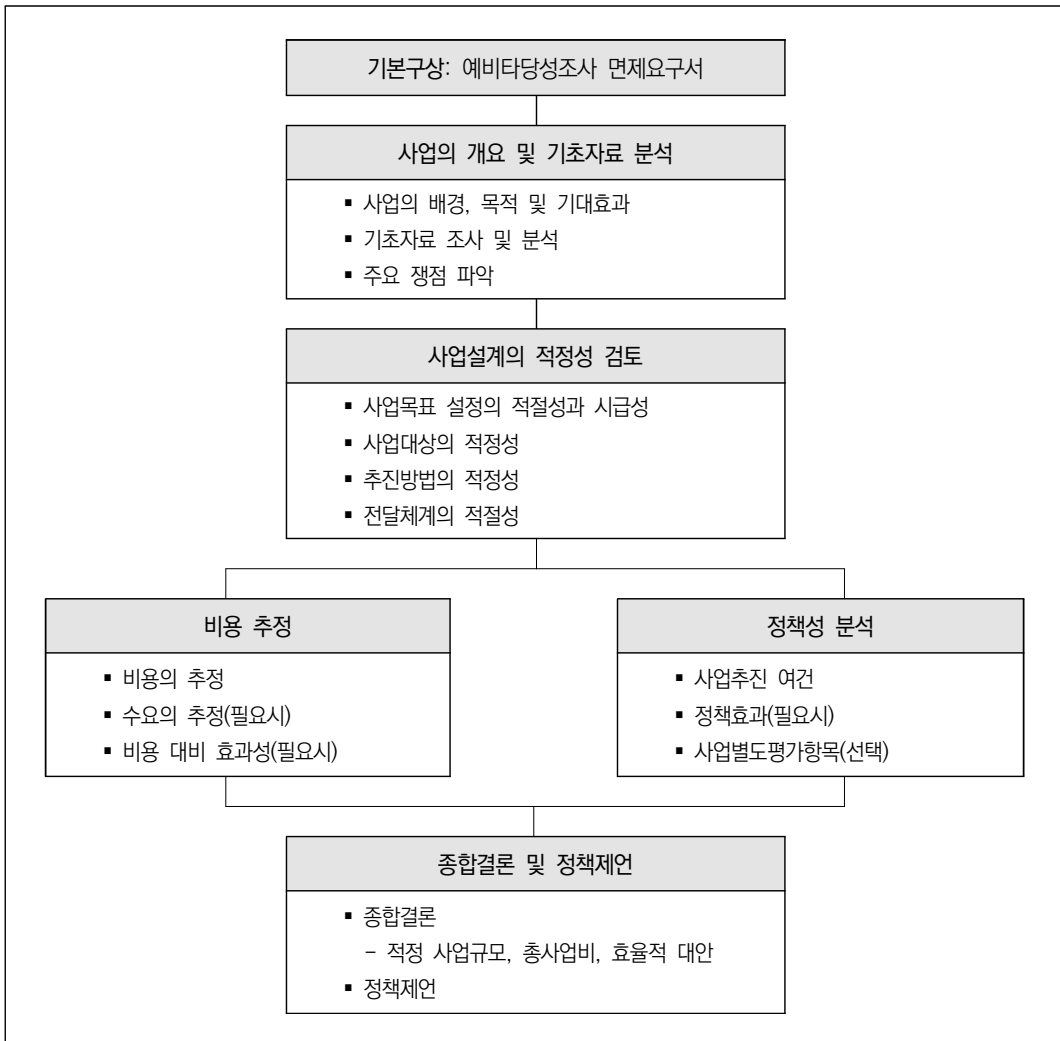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2024. 9.;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안)」, 2024. 12. 등을 참조하여 연구진 재구성

##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 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수행절차

기타 재정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그림 1-2]와 같이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 비용 추정, 정책성 분석,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흐름도



자료: 기획재정부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내용을 재구성함

## 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분석방법<sup>19)</sup>

### 1) 사업의 개요 분석

예비타당성조사는 향후 사업추진 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와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한다.

연구진은 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에서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사업의 내용(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검토하면서 사업의 개요를 파악한다. 사업내용(사업기간, 사업범위 등)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검토의 내용과 검토 과정에서 부처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불일치하면 공문을 통해서 부처로부터 재확인한다. 만약, 사업계획서가 구체화되지 못하여 조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주무부처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도출

기초자료 분석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현황, 관련 업계 현황, 여론 현황 및 제반 관리 현황 등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본 사업의 특성에 부합한 유사 사업 및 관련 분야의 현황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본 사업이 국가 차원의 계획방향, 즉 국정과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추진 및 시행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계획의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보다는 각 계획에 사업의 위상, 우선순위,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을 분석·기술한다.

이상의 사업의 개요 파악 및 기초자료 분석 이후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 추정 및 정책성 분석 등 분석 단계별로 쟁점을 사전적으로 부각시키고, 그 쟁점에 대한 해답을 이후의 각론에서 제시한다.

---

19)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 부분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5.)를 참조하여 정리함

### 3)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에서는 ①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② 사업대상의 적정성, ③ 추진방법의 적정성 및 ④ 전달체계의 적절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에서는 사업목표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 위주나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사업내용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이 성과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정부 정책방향,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높은 연계성과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지표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둘째, 사업대상의 적정성에서는 사업대상이 연령·소득·재산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지, 사업대상 설정이 앞서 검토한 사업목표에 부합하는지 등 사업대상의 명확성 및 적합성을 검토한다. 또한 본 사업이 사업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사업대상이 아닌 집단이 혜택을 받지 않도록 차단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검토하며, 사업대상에 속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확인한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지급절차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에 속하지만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셋째, 추진방법의 적정성에서는 현물, 현금, 바우처, 보조금, 직접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방법 중 사업목표·사업대상을 고려한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되었는지, 다양한 사업방법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추진 방법이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재원 분담 및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추진 주체 간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었는지, 집행기구의 평가 방법과 사업추진 주체(공공/민간, 중앙/지방)의 역할 구분이 명확한지 검토한다. 또한 동일한 분야 및 부문의 다른 사업과 적절한 정책조합으로 상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검토하고 사업목적은 동일하나 사업방법이 다른 정책수단들 간의 역할 및 효과를 확인한다.

넷째, 전달체계의 적절성에서는 부처부터 사업대상자까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검토하고, 사업대상자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전달방식이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사업집행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또는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등 집행기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4) 비용 추정

연구진은 부처가 제시한 총사업비 추정치가 합리적인 가정과 근거에 기반하여 도출되었는지 검토하여 비용을 추정한다. 예를 들면, 지원단가의 적정성,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 등 총사업비 산정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검토한다. 향후 사업대상 규모의 변화 또는 사업대상별 지원금액 변동 등에 따른 비용의 증감 범위를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 시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

#### 5) 정책성 분석

정책성 분석은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중 계량화가 곤란하여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정책적인 쟁점을 평가한다. 정책성 분석의 세부평가항목은 ① 사업추진 여건, ② 정책효과(선택), ③ 별도평가항목(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평가항목별로 연구진의 검토의견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본 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3. 12. 27.)에 따라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그 밖에 사업추진 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검토한다. 정책효과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생략이 가능하고,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자원조달 위험성,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평가항목(선택)으로 반영할 수 있다.

#### 6)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종합결론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근거, 경위,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비용 추정 및 정책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를 종합한다. 정책제언에는 예산부처 또는 주무부처에서 유의할 사항을 기술하고, 본 조사의 한계점과 사업 추진상의 개선사항 및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제언한다.

### 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범위

본 검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2024. 9.)와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

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한국 개발연구원, 2021. 5.)에서 제시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방식에 따라 사업규모를 검토 한다. 본 조사에서 제시한 검토 결과는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 1. 기초자료 분석

#### 가. 개식용 관련 법령 현황

본 소절에서는 개식용 업계와 관련된 국내외의 다양한 법령들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 우선, 개식용 유통구조의 핵심 축을 이루는 사육, 도축, 유통 및 판매 업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들을 자세히 검토한다. 이러한 법령들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개식용 업계의 법적 기반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서, 미국,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각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규제 방안과 법적 기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제적인 시각에서 개식용 업계의 법적 환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 1) 국내 개식용 관련 법령 현황

##### 가) 사육 관련 법령

식용견 사육과 관련된 주요 법령에는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르면 개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법령상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 (1) 「축산법」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및 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 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유통 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단순히 축산업의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축산법」은 대한민국 농업과 축산업이 급속히 변화하던 시기에 제정되었고, 국내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축산업의 근대화와 생산성 향상이 주요 목표였지만, 이후 환경문제와 동물복지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면서 법률의 범위와 내용이 점차 확장되었다. 1970년대 이후 가축의 품종 개량과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0년대에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항이 강화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가축의 범위를 정하면서 사회적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하기 위해 몇 차례 개정을 거쳤다.

「축산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가축에는 소와 돼지 등 주요 동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이 포함된다.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개가 사육 목적에 따라 식용, 반려, 특수 목적(탐지견, 안내견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개식용 종식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sup>20)</sup>

###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2017. 3. 21., 2018. 12. 31., 2020. 3. 24.>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 제2조 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20) 가축으로서의 개의 지위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논란이 계속있음.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축산법」에서 가축의 정의에 포함된 개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및 법률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개 사육업은 식용 목적 외에도 반려견과 특수 목적견의 생산이라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므로, 이러한 법적 변경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 건강 유지, 그리고 국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가축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공중보건 위험을 최소화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 법은 가축 질병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가축전염병이 국민 건강과 농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국내 발생 전염병 방지와 기본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으나, 20세기 후반부터는 국제화와 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성 전염병의 유입 방지도 중점을 두었다. 2000년대 이후 구제역(FMD)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대규모 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이 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방역체계 강화, 법 적용 범위 확대, 감염병 분류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수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가축의 정의에는 소, 돼지, 닭과 같은 주요 가축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개도 포함된다. 이 법은 가축을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며, 동물보호와 더불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둔다. 제2조 제2호에서는 광견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광견병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임을 반영한 것이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12. 31., 2020. 2. 4.>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규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媾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적절히 관리하고 자원화하거나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가축분뇨를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이 제시되었고, 이후 2004년 「가축분뇨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다. 이 법은 축산업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형 농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자원화를 강조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제2조에 따르면, 가축에는 소, 돼지, 말, 닭 등 주요 가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육동물이 포함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개가 사육동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특히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 이상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육시설이 적절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가축분뇨법」은 단순히 분뇨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퇴비나 액비로 활용하는 자원화 방식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를 농업 생산에 재활용하며,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가축분뇨에서 바이오가스과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도 도입되어 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있다.

개 사육시설이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개 사육의 합법적 관리와 동물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식용 종식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개 사육시설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가 「가축분뇨법」상 사육동물로 포함되는 것이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분류는 개를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육동물로 취급함으로써, 개의 도살과 식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 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가축분뇨법」의 이러한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령의 재검토와 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의 수정 및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 2016. 12. 27.>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1. 4. 13.>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젓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젓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양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젓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1960~70년대에는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환경오염과 위생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법적 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해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폐기물의 처리뿐만 아니라 자원화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에 초점을 맞췄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과 친환경적 처리가 강조되면서 관련 규정들이 점차 구체화되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재활용 등 전 과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개 사육 농가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통해 타인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이를 사육 중인 개의 먹이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폐기물 문제 해결과 자원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 식용 종식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개 사육 농가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 개 식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4.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등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 나) 도축 관련 법령

식용견의 도축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있으며, 이에 상충되는 법령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도살 행위는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개 도축 행위 금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어 두 법령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향상을 통해 가축 사육에서부터 도살, 처리, 가공, 유통, 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 자리 잡고 있다.

1960~70년대 대한민국은 축산업의 대규모화와 식량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축산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위생 관리 부족으로 인한 식품 안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축산물의 위생 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1962년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제정되어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와 관리에 대한 초기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후 시대적 요구와 국제 위생 기준에 맞춰 1997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가공부터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과 함께 축산물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 및 축산물의 가공, 유통, 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 기준 강화를 증점적으로 다룬다. 동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가축과 축산물을 정의하면서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법에서 가축의 범위에 개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고기도 축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는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으려는 법적 관점과 개고기 소비를 제한하려는 사회적 논의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 (2)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동물을 책임감 있게 사육하고 관리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에게 생명 존중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이 법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동물학대 방지를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마련되었다. 이후 2007년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동물학대 금지 범위가 확대되며, 사육 환경과 동물 도살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최근에는 동물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동물보호와 복지 기준 강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21년 개정안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동물등록제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가 시행되어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으로,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제2항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도살할 때 가스법이나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매몰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거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개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법으로 판단한다.

####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판례(2018년 4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적용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한 농가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 (3)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동물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개를 단순히 식용 대상으로 보던 기존 관행을 전환하고, 개의 생명권을 보장하며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 식용 문제가 오랜 기간 사회적, 문화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배경에서 탄생했다. 전통적으로 개 식용은 일부 국가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개 식용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커졌다. 2020년대 들어 반려동물로서의 개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개 식용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개 식용을 비윤리적 관행으로 간주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24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동물복지와 국민 정서 변화를 반영한 법적 조치로 평가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 사체 및 식육 또는 이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제5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7조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서는 개 식용의 확산 방지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9조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도살·처리하거나 이를 원료로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시설, 그리고 개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제5조와 제17조에 명시된 조항은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이는 기존 사육농가와 관련 업계가 전업 또는 폐업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는 조치이다.

#### 다) 유통 및 판매 관련 법령

식용견의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이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 목적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 기준과 성분 규격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또한, 제7조 제4항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이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해야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진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동물성 원료에

개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고기를 식품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2. 6. 10.>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의 동물성 원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목
축산물	-	식육류	식육류/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 등
	-	우유류	우유, 산양유 등
	-	알류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기타동물	-	파충류 및 양서류	식용자라, 식용개구리 등
	-	-	식용달팽이 등
	-	곤충류	메뚜기,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뎡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24. 7. 1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4-35호.

**2) 해외 개 식용 관련 법령 현황**

가) 미국

미국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관습이 일반적이지 않지만, 하와이 주, 펜실베이니아 주, 뉴욕 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드물게 발생해 왔다. 2010년대 말부터 미국 내 비영리 동물구조단체(AHWF, Animal Hope and Wellness Foundation)와 같은 동물보호단체들은 중국, 한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개 식용 문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개의 식용 목

적 도살과 식용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주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의 도살 및 식용 목적 판매 등을 금지한 주에는 캘리포니아 주, 조지아 주, 하와이 주, 미시간 주, 뉴저지 주, 뉴욕 주, 버지니아 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각 주마다 금지 행위와 처벌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개인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개를 죽이거나 죽은 개를 식용하는 경우, 동물 학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9월 「개 및 고양이 거래 금지법」(The Dog and Cat Meat Trade Prohibition Act, DCMTPA)이 발의되었다. 이 법은 2018년 12월 「농업법」(2018 Farm Bill)의 일부로 통과되어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거나, 이들의 신체 일부를 운송, 수령, 소유, 구매, 판매,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종교 의식은 예외로 인정된다.

**PROHIBITION ON SLAUGHTER OF DOGS AND CATS FOR HUMAN CONSUMPTION**  
**(인간의 소비를 위한 개와 고양이의 도축 금지)**

- (a) 일반적으로 제(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식용을 목적으로 고의로 개나 고양이를 도살하는 행위
  - (2) 고의로 수송, 운송, 이동, 배송, 수령, 소유, 구매, 판매 또는 기부하는 행위
    - (A)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되는 개 또는 고양이
    - (B)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또는 고양이의 일부
- (b) 범위 - 제(a)항은 다음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1) 주간 상거래 또는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행위
  - (2) 미국의 특별 해상 및 영토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
- (c) 인디언 부족에 대한 예외 - 제(a)항의 금지는 종교적 의식을 목적으로 제(a)항에 기술된 활동을 수행하는 원주민(제25편 제5304조에서 정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d) 벌칙 - 제(a)항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하여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 주법에 미치는 영향 - 이 조항의 어느 것도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는 주·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을 제한한다.
  - (2) 주 또는 지방정부 단위가 이 조항보다 더 엄격한 동물복지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고 집행하는 것을 차단한다.

자료: 미국 연방의회(<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6720/text>), 검색일자: 2024. 7. 8.

## 나) 대만

대만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개 식용을 금지한 나라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법률 개정을 통해 개와 고양이의 도살, 판매, 식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했다. 과거 대만에서도 개 식용 문화가 존재했으나, 1990년대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8년 「동물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까지 개 식용 금지 관련 법률의 총 6회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8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장소에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였다. 이어서, 2001년에는 개와 고양이 및 기타 반려 동물을 식용 또는 모피 등 경제적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 후 2003년에는 반려동물을 경제적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금지하여 법적 규제를 강화하였다. 2007년에는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거나 도체를 판매하는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5년에는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이에 해당하는 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10만에서 100만TWD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개와 고양이를 도살, 식용, 판매, 구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체 또는 그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보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였다. 2017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제 12조, 제25조, 제27조, 제33조 등을 통해 개 식용 금지의 세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하거나 사체를 판매, 구매, 식용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20만에서 200만TWD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자에게는 반려동물 소유와 동물보호센터에서의 동물 입양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에서 1만 5천TWD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할 당국은 동물을 압수할 수 있다.

#### 다) 홍콩

홍콩은 1950년 영국의 정치적 지배와 문화적 영향으로 「개와 고양이에 관한 조례」와 「개와 고양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 개 식용을 금지했다. 「개와 고양이에 관한 조례」는 개와 고양이의 사육, 규제, 통제 및 도살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 승인을 통해 개와 고양이의 도살과 고기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와 고양이에 대한 규칙」은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다룬다.

특히, 1997년 개정을 통해 개와 고양이의 도축 및 식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조례는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 식용과 관련된 조항은 제2부(개와 고양이의 통제) 및 「개와 고양이에 대한 규칙」의 제22조(도살 금지)와 제23조(벌칙)에 명시되어 있다.

## 「개와 고양이에 관한 조례」

### 제2부 개와 고양이의 통제

#### 3. 규정

- (1) 행정구의 최고 책임자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b) 개와 고양이의 도축과 개와 고양이의 고기 판매 및 사용 금지
- (2) 이 섹션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은 다음과 같다.
  - (d) 규정 조항의 위반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10만홍콩달러 및 6개월 징역형을 초과하지 않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경우에 변호를 명시하며, 그러한 범죄에 대한 모든 소송 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다.

## 「개와 고양이에 대한 규칙」

### 제22조 식용을 위한 개·고양이 도살 금지 및 입증 책임

- (1) 사람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식용으로 개나 고양이를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누구든지 개와 고양이의 고기를 식용으로 판매,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사용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 (3) 본 규정을 위반하여 개·고양이가 도축되거나 또는 판매, 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판관이 실제로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납득하지 못할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유죄가 된다.

### 제23조 벌칙

제22조 제1항과 제2항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천홍콩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홍콩 법령정보(<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67>), 검색일자: 2024. 7. 8.

## 라) 필리핀

필리핀에서는 1982년 마닐라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판매·보관·운송 금지 조례」를 제정해 개 식용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했다. 이 조례는 개를 식용 또는 허가받지 않은 목적을 위해 도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특정 장소에서 개고기를 저장·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조). 또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운송하거나 반입해 보관 또는 환적하는 행위도 금지되며(제2조), 이를 위반할 경우 100페소 이상 2,000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1998년에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전국적으로 금지했다. 이 법률은 소, 돼지, 염소, 양, 가금류, 토끼, 필리핀 산 물소, 말, 사슴, 악어 등 특정 동물 이외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종교의식, 수의사의 안락사, 사람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동물 개체 수 조절 목적, 공인된 연구·실험 후의 안락사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2007년에는 「광견병통제법」이 제정되어 개를 식용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전기로 감전사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거래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마리당 1,000페소 이상의 벌금과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다. 감전사

를 안락사 방법으로 사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공화국법 제8495호, 「The Animal Welfare Act of 1998」 An Act To Promote Animal Welfare in the Philippines**

**제6조** 동물을 고문하거나, 적절한 보살핌, 유지(sustenance) 또는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동물을 학대(maltreat)하거나, 개 또는 말을 개싸움 또는 말싸움에 처하게 하거나,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또는 적절한 보살핌, 유지 또는 은신처를 주지 않도록 원인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동물복지위원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연구 또는 실험에서 학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 돼지, 염소, 양, 가금류, 토끼, 필리핀산 물소(carabaos), 말, 사슴, 악어 이외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 (1) 토착문화공동체의 부족 또는 민족적 관습이 요구하는 기성 종교 또는 종파의 종교 의식의 일부로서 행하는 경우. 다만, 지도자는 동물복지위원회와 협력하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2) 반려동물이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수의사가 판정·인증한 난치성 전염병에 걸린 경우
- (3) 동물의 고통을 끝내기 위하여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수의사가 죽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한 경우
- (5) 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목적으로 한 경우
- (6) 동물이 공인된 연구 또는 실험에 사용된 후 죽임을 당한 경우
- (7) 결정되고 인증된 수의사로서 전술한 것과 유사한 다른 사유로 소, 돼지, 염소, 양, 가금류, 토끼, 필리핀산 물소, 말, 사슴, 악어를 포함하여 위에 언급된 모든 경우에서 동물 도살은 항상 인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인도적 절차는 위원회가 결정하고 승인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 도살에는 위원회가 승인한 절차만 사용할 수 있다.

자료: 이형주(2022), 「개식용 관련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환경법과 정책』, 제36호, pp. 91~116.

## 마) 태국

태국은 전통 불교국가로, 개 식용이 금기시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자국 내에서 개고기를 소비하는 수요는 낮지만,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를 포획해 베트남, 중국 등 개고기 소비가 활발한 국가로 불법 거래하는 관행이 있었다. 태국수의학협회는 매년 약 50만 마리의 개가 태국에서 중국과 베트남으로 불법 거래된다고 추정한다.

태국에서는 1956년 「동물풍토병법」(the Animal Epidemic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9년과 2015년에 개정되었다. 이 법은 동물 또는 동물 사체를 수입, 수출, 운송하려는 자가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동물에게 표식을 부착하며 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4년에는 태국 최초의 동물보호법인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동물 소유자가 동물에게 적절한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불법 육류 거래를 금지하며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에서는 동물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하는 행위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4만바트 이하

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비록 법에서 개 도살을 명확히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식용동물 외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으로 인해 개 도살도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 바) 중국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고기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개 식용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같은 해 4월, ‘국가 가축·가금 동물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여 개고기 섭취를 금지했다. 이어 광둥성 선전시는 2020년 5월 1일, 중국 지방정부 최초로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했으며, 이후 주하이시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020년 5월 29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국가 가축 유전자원 목록’을 발표하면서 총 33종의 가축 목록에서 개를 제외했다. 농업농촌부는 개를 전통적인 가축에서 반려동물로 ‘특화’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지 않는 추세에 따라 중국도 개를 가축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선전시 조례에 따르면, 개고기 식용자는 1인당 해당 가격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표 II-1〉 개 식용 금지 관련 해외 사례 요약

국가	주요 내용	근거 규정	벌칙(도살 시)
미국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 및 판매 등 금지 (사람이나 동물의 소비를 위한 고기나 고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개·고양이를 도축하는 것은 위법)	Dog and Cat Meat Trade Prohibition Act, 2018	(위반 건당) 5천달러 이하의 벌금
대만	개·고양이를 도살하거나, 그 사체, 내장 등을 팔거나 사거나 먹거나 소유하는 행위 금지	Animal Protection Act, 2017	20만TWD 이상 200만TWD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병과
홍콩	개·고양이를 도축하는 것과 그 고기를 판매·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	Dog and Cat Ordinance, 1997	5,000홍콩달러 벌금형과 6개월 이하의 징역
필리핀	죽일 수 있는 동물(소, 돼지, 염소, 양, 닭, 토끼, 말, 사슴, 악어)의 종류를 열거, 그 이외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위법으로 규정(개·고양이는 죽일 수 있는 동물에 포함되지 않음)	THE ANIMAL WELFARE ACT OF 1998	(식용거래 시) 개의 마리당 1,000페소 이상의 벌금과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병과

〈표 II-1〉의 계속

국가	주요 내용	근거 규정	벌칙(도살 시)
태국	정의 조항에서 반려동물과 식용동물을 구분하였고, 식용동물 외에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	The Cruelty Prevention and Welfare of Animal Act, 2014	4만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중국	개를 「국가가축·가금유전자원목록」에서 제외하여 식용 등 상업적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2020. 5월)	중화인민공화국 목축법	(식용 목적 생산, 거래 시) 상품 가치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벌금을 부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2024. 7. 24., 중간보고

## 나. 개식용 업계 현황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사업이 적절한 형태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지원에 대한 비용 산출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 소절에서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 2024년에 실시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를 검토하고, 추후 분석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주요 부분들을 소개한다.

### 1) 육견농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배출시설 신고 합법 농가 880호의 육견 사육 농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sup>21)</sup> 육견농가 조사는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육견 농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현장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은 권역과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모집단을 반영하여 비례 할당 방식으로 202호의 육견 사육 농가를 추출하였다.<sup>22)23)</sup> 육견농가 실태조사에 참여한 202호의 기본 현황은 다음과

21) 해당 설문은 현장조사 방식으로 글로벌리서치에서 진행함. 설문조사는 2024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30일간 진행됨

22)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육견 농장 모집단인 880호를 기준으로 조사된 202호 농가의 신뢰수준 95%에서 ±6.06%의 표본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육견농장 조사를 100회 실시할 경우 95회의 결과가 ±6.06%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23) 육견농가 208호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불성실 응답을 소거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 수는 총 202호임

같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1.2세이며, 육견 사육 경력은 평균 18.5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농가당 평균 육견 사육 마릿수는 758.1마리로 확인되었다.

〈표 11-2〉 조사 농가 개요

(단위: 건, %)

구분	사례 수	비율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202)	100.0	전체	(202)	100.0	
연령	50세 미만	(23)	사육 마릿수	300두 미만	(27)	13.4
	50~60세 미만	(43)		300~499두	(40)	19.8
	60~70세 미만	(105)		500~999두	(81)	40.1
	70세 이상	(31)		1,000두 이상	(54)	26.7
권역	수도권	(55)	사육 경력	15년 미만	(55)	27.2
	충청권	(51)		15~20년 미만	(54)	26.7
	경상권	(50)		20~25년 미만	(61)	30.2
	전라/제주권	(46)		25년 미만	(32)	15.8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가) 개 사육 및 출하 현황

#### (1) 개 사육 마릿수 현황

연도별 농가당 개 사육 마릿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765.7마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에는 758.1마리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다. 2024년(1분기 기준)에는 701.4마리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특성별 분석 결과, 전체 권역별로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경상권에서 2023년 631.4마리에서 2024년 552.5마리로 12.5% 감소하여 다른 권역에 비해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2023년 기준 사육 마릿수 분포를 보면, 500~1,000두 미만이 전체의 4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1,000두 이상(26.7%), 300~500두 미만(19.8%), 300두 미만(13.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000두 이상 사육 농가 비율이 수도권(34.5%)과 충청권(3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11-3〉 연도별 농가당 개 사육 마릿수

(단위: 마리)

구분		사례 수	2021	2022	2023	2024
전체		(202)	754.9	765.7	758.1	701.4
권역	수도권	(55)	984.3	985.2	973.0	899.3
	충청권	(51)	682.8	724.2	717.9	678.7
	경상권	(50)	652.4	643.4	631.4	552.5
	전라권	(46)	671.9	682.0	683.4	651.6
사육 마릿수	100두 미만	(1)	60.0	70.0	80.0	100.0
	100~300두	(26)	213.6	210.8	196.3	169.7
	300~500두	(40)	427.2	408.0	392.1	343.4
	500~1,000두	(81)	695.0	687.9	670.9	618.2
	1,000두 이상	(54)	1,360.9	1,427.4	1,443.0	1,358.4
개 사육업 종사 기간	15년 미만	(55)	819.0	819.6	818.7	779.5
	15~20년	(54)	689.5	684.9	699.2	629.8
	20~25년	(61)	765.4	793.0	790.9	715.3
	25년 이상	(32)	735.0	757.3	741.3	661.2
개 관련 총 수입	2억 미만	(68)	379.4	365.7	358.2	319.3
	4억 미만	(62)	619.5	633.5	623.6	561.6
	4억 이상	(72)	1,226.1	1,257.5	1,251.5	1,182.5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2) 식용견 구매현황

2023년 기준으로 개 사육 농가의 종견 및 비육견(자견) 구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견 구매율은 전체 202개 농가 중 21.3%(43호)로 확인되었다. 평균 구매 마릿수는 10.5마리였으며, 구매 시 평균 월령은 13.0개월, 평균 체중은 62.5kg, 평균 구매 비용은 918,372원으로 조사되었다. 비육견(자견)의 구매율은 5.0%(10호)로 나타났으며, 평균 구매 마릿수는 75.2마리, 구매 시 평균 월령은 7.4개월, 평균 체중은 27.0kg, 평균 구매 비용은 302,000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대부분의 농가는 농장 내에서 모견을 통해 직접 자견을 생산하고 출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4〉 식용견 구매 현황

(단위: %, 두, 개월, kg, 원)

구분	사례 수	도사 구매율	구매 두수	구매 월령	구매 체중	구매비용
도사 종견	(202)	21.3	10.5	13.0	62.5	918,372
도사 비육견(자견)	(202)	5.0	75.2	7.4	27.0	302,000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3) 출산 현황

개 사육 농가의 번식용 모견 1회 출산 시 평균 산자 수는 7.5마리로 확인되었으며, 2023년 기준 평균 번식용 모견 수는 107.5마리, 출산한 자견 수는 평균 725.5마리로 조사되었다. 농가 특성별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의 개 사육 농가가 다른 권역에 비해 모견 출산당 산자 수, 번식용 모견 수, 출산 자견 수 모두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사육 마릿수와 개 관련 총수입이 많을수록 번식용 모견 수와 출산 자견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5〉 식용견 출산 현황

(단위: 마리)

구분	사례 수	모견 출산당 산자수	번식용 모견 마릿수	출산 마릿수
전체	(202)	7.5	107.5	725.5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4) 급여 현황

먹이 종류별 급여 비율을 보면, 잔반이 8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축산 부산물 14.3%, 기타 2.3%, 육견 사료 1.2%, 가축 사료 0.5% 순으로 나타났다. 개 관련 총수입이 높은 농가일수록 잔반 급여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잔반이 구매가 필요한 다른 먹이와 달리 수거비를 받고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6〉 먹이별 급여 비율

(단위: %)

구분	사례 수	잔반	육견 사료	가축 사료	축산 부산물	기타	합계
전체	(202)	81.8	1.2	0.5	14.3	2.3	100.0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먹이 종류별 급여량은 잔반이 연간 589,865kg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 부산물 70,331kg, 육견 사료 914kg, 가축 사료 113kg 순으로 집계되었다. 먹이 종류별 kg당 단가는 잔반 수거 단가가 146원/kg으로 가장 높았으며, 축산 부산물 구매 단가는 36원/kg, 육견 사료는 13원/kg, 가축 사료는 12원/kg으로 조사되었다. 농가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사육 마릿수와 개 관련 총수입(식용견 판매수입 + 잔반 수거 수입)이 많은 농가일수록 잔반과 축산 부산물의 급여량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7〉 먹이별 급여량 및 단가

(단위: kg/년, 원/kg)

구분	사례 수	잔반		육견 사료		가축 사료		축산 부산물		기타	
		급여량	구매 단가	급여량	구매 단가	급여량	구매 단가	급여량	구매 단가	급여량	구매 단가
전체	(202)	589,865	146	914	13	113	12	70,331	36	14	-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5) 개 관련 총수입

2023년 기준 개 사육 농가의 출하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평균 출하 마릿수는 637마리였으며, 출하 시 평균 중량은 43.0kg, kg당 평균 판매 단가는 9,935원, 마리당 평균 판매 수익은 355,021원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연간 출하 마릿수는 761마리로 타 권역보다 많았으며, 마리당 출하 중량은 경상권이 46.1kg으로 가장 많았다. kg당 판매 단가는 충청권(10,380원/kg)과 수도권(10,004원/kg)이 가장 높았으며, 마리당 판매 수익도 충청권이 387,361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8〉 연간 출하 현황

(단위: 마리, kg/마리, 원/kg, 원/마리)

구분	사례 수	출하 두수	출하 시 중량	판매 단가	사육 마리당 판매 수입(합계)
전체	(202)	637	43.0	9,935	355,021

주: 1. 2023년 기준, 황구를 출하한 농가 수가 13개로 매우 적어, 통계 해석에 유의해야 함.

2. 마리당 출하 수익 = 출하 시 중량 × kg당 판매단가

3. 사육 마리당 판매수익 = 품종별 출하 두수 × 출하 시 중량 × kg당 판매단가 / 2023년 사육 마릿수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개 사육 농가의 하루 평균 잔반 수거량은 1,616kg으로 집계되었으며, kg당 잔반 수거 단가는 146원이다. 이에 따라 농가당 연간 잔반 수거 수익은 96,701,293원, 사육 마리당 잔반 수거 수익은 123,598원으로 나타났다.

〈표 II-9〉 잔반 수거 수입

(단위: kg/일, 원/kg, 원/년, 원/마리)

구분	사례 수	잔반 수거량	잔반 수거단가	농가당 잔반 수거 수입	사육 마리당 잔반 수거 수입
전체	(202)	1,616	146	96,701,293	123,598

주: 무상 수거 농가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나) 시설 및 운영 현황

### (1) 개 사육시설 현황

콘크리트(벽돌)로 지어진 개 사육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전체의 20.3%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97.6%가 건축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콘크리트(벽돌) 시설의 평균 동수는 4.7동이며, 평균 면적은 2,538.2㎡(약 768평)로 확인되었다. 시설의 평균 노후도는 15.3년이었다.

패널(판넬) 구조의 개 사육시설을 보유한 농가의 비중은 43.1%로 나타났으며, 이 중 건축물 허가를 받은 비율은 86.2%로 조사되었다. 패널 시설의 평균 동수는 4.9동이며, 평균 면적은 5,130.8㎡(약 1,552평)로 확인되었고, 평균 노후도는 14.8년이었다.

비닐하우스 형태의 개 사육시설을 보유한 농가의 비중은 40.6%로 나타났으며, 건축물 허가를 받은 비율은 85.4%로 확인되었다. 비닐하우스 시설의 평균 동수는 3.6동이며, 평균 면적은 2,047.1㎡(약 619평), 평균 노후도는 13.1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0〉 개 사육시설 형태별 현황

(단위: %, 동, ㎡, 년)

구분	사례 수	시설보유율	시설 동수	허가율	건물 면적	노후 정도
콘크리트(벽돌)	(41)	20.3	4.7	97.6	2,538.2	15.3
패널(판넬)	(87)	43.1	4.9	86.2	5,130.8	14.8
비닐하우스	(82)	40.6	3.6	85.4	2,047.1	13.1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운영신고서를 제출한 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로 인해 위법 상태인 농가는 420개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한 농가는 880개(58.2%)이며, 소규모 농가(60㎡ 미만)는 212개(14.0%)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해당 수치는 2024년 6월 20일 기준이다.

개 사육 방식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케이지 사육(79.7%)을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사에 서만 사육하는 농가는 0.5%(1개 농가), 평사와 케이지를 혼합하여 사육하는 농가는 19.8%로 확인되었다. 혼합 사육 농가의 사육 면적 기준으로는 평사 사육이 55.5%, 케이지 사육이 44.5%를 차지했다.

〈표 II-11〉 개 사육 형태

(단위: %)

구분	사례 수	평사 사육	케이지 사육	혼합 사육	혼합 사육		
					사례 수	평사 사육	케이지 사육
전체	(202)	0.5	79.7	19.8	(40)	55.5	44.5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개 사육 농가의 평균 사육 면적은 875.0㎡로, 이 중 케이지 사육 면적은 681.9㎡, 평사 사육 면적은 193.1㎡이다. 면적(㎡)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1.2마리로 나타났다. 분뇨 처리 시설의 면적은 퇴비사가 169.7㎡, 분 저장고가 69.1㎡, 뇨 저장고가 99.8㎡로 조사되었다.

〈표 II-12〉 개 사육 형태별 규모

(단위: ㎡, 마리)

구분	사례 수	사육면적					분뇨처리시설			
		케이지			평사	사육 면적 (합계)	면적당 마릿수	퇴비사	분 저장고	뇨 저장고
		1.2×2.4	1.2×2.4	기타						
전체	(202)	529.1	68.1	84.8	193.1	875.0	1.2	169.7	69.1	99.8

주: 기타 케이지의 면적에는 0.9m×1.0m, 0.9m×1.8m, 1.0m×1.0m, 1.0m×2.0m, 1.2m×1.8m, 1.2m×2.0m, 1.2m×3.0m, 2.0m×2.4m, 2.0m×3.0m, 2.4m×2.4m, 3.0m×14.0m 등이 포함됨.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2) 농장 투입인력 현황

개 사육을 위한 평균 노동 투입인력은 1.0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가족 인력(경영주 제외)은 0.64명, 일반 고용인력은 0.42명으로 나타났다. 일반 고용인력 0.42명 중 상시 고용인력은 내국인 0.13명, 외국인 0.0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 고용인력은 내국인 0.15명, 외국인 0.05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3〉 농장 투입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사례 수	가족	고용인력				소계	합계
			상시 고용인력		임시 고용인력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체	(202)	0.64	0.13	0.09	0.15	0.05	0.42	1.06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총 인건비는 6,149,208원으로 이 중 상시 고용인력에 드는 비용은 4,895,050원, 임시 고용인력에 1,254,158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14〉 고용인력 인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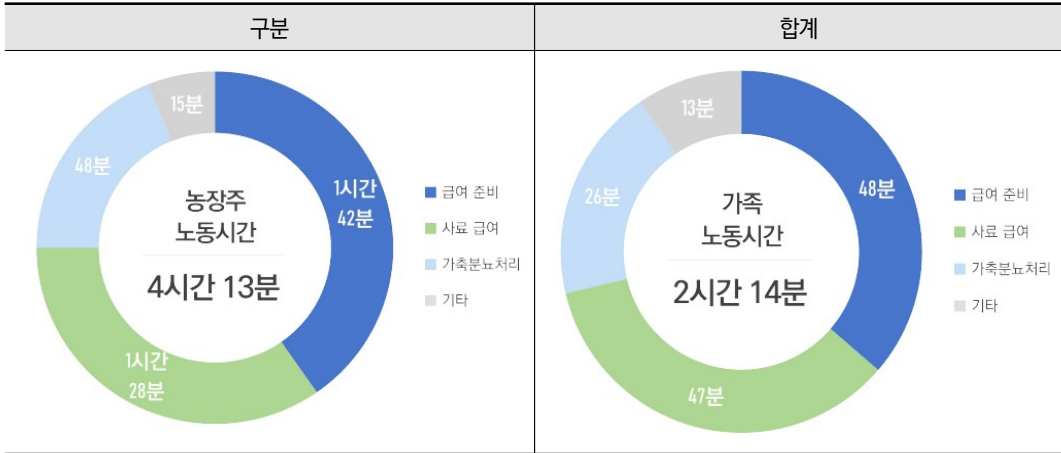
(단위: 원)

구분	사례 수	상시 고용인력	임시 고용인력	합계
전체	(202)	4,895,050	1,254,158	6,149,208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농장주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4시간 13분으로 나타났고, 가족 구성원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2시간 14분으로 조사되었다. 농장주와 가족 구성원 모두 노동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작업은 잔반 처리 등 먹이 준비 작업으로, 각각 1시간 42분과 48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 농장주 및 가족 구성원의 주요 항목별 노동시간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3) 수도광열비 현황

개 사육 농가의 연간 수도광열비는 약 1,173만 5,00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유류비가 5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기세는 41.6%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I-15〉 연간 수도광열비 현황

(단위: 원)

구분	사례 수	전기세	수도세	유류비	합계
전체	(202)	4,879,485	138,453	6,717,446	11,735,384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4) 약품 및 첨가제 현황

2023년 기준으로 구충제는 전체 농가의 99.5%(1개 농가 제외)가 사용하였고, 백신은 전 농가(100.0%)가 투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방역제 84.2%, 영양제 66.8%, 첨가제 66.3%, 항생제 50.5% 순으로 사용 비율이 나타났다. 약품 및 첨가제 관련 지출에서 백신 비용이 약 29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영양제 약 152만원, 구충제 약 100만원, 첨가제 약 74만원 순으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6〉 연간 약품 및 첨가제 투여 및 지출 현황

(단위: %, 회, 원)

구분	사례 수	구충제		백신		영양제	첨가제	방역제	항생제	기타	합계
		투여율	횟수	투여율	횟수						
투여 여부	(202)	99.5	4.8	100.0	3.1	66.8	66.3	84.2	50.5	12.9	-
지출 현황	(202)	1,002,743		2,916,077		1,521,733	738,045	301,525	419,262	41,163	6,940,547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5) 자동차 및 대농구 현황

개 사육 농가에서 사용하는 주요 장비로는 운반용 자동차, 분뇨처리 전동차, 잔반 및 사료 저장고, 이물질 제거 장치, 스팀 보일러, 액상 급여기, 분뇨 펌프, 축사용 냉난방 기기 등이 있다. 전체 장비의 평균 사용 기간은 8~11년으로 확인되었으며, 잔반 및 사료 저장고의 평균 구매 비용은 약 1,186만원, 운반용 자동차는 약 913만원, 액상 급여기는 약 829만원으로 다른 장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7〉 자동차 및 대농구 보유 현황, 사용 연수, 구매 금액

(단위: 대, 년, 원)

구분	사례 수	운반 자동차	분뇨처리 자동차	잔반 및 사료 저장고	이물질 제거기	스팀 보일러	액상 급여기	분뇨 펌프	축사용 냉난방 기구
보유 현황	(202)	1.2	0.5	1.6	0.2	0.6	1.8	1.1	20.0
사용 연수	(202)	8.9	9.9	11.4	9.9	9.3	9.8	9.4	8.6
구매 금액	(202)	9,130,302	3,336,000	11,862,051	621,393	2,072,222	8,290,556	1,455,905	4,121,956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6) 토지 보유 형태 및 임차 현황

개 사육 농가의 70.9%는 자가 보유한 토지에서 사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차 중인 농가는 전체의 20.3%(41개 농가)로 조사되었다. 임차 농가의 평균 보증금은 6,158,537원, 평균 월세는 213,286원으로 나타났다.

〈표 II-18〉 토지 보유 및 임차 현황

(단위: %, 원)

구분	사례 수	보유	임차	보증금	월세
전체	(202)	70.9	20.3	6,158,537	213,286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개 사육을 위한 기타 비용 중 금융 부채(토지 및 시설 관련)는 54,198,02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사료·약품·기자재 등 외상으로 인한 부채는 541,584원으로 나타나 총부채액은 54,739,604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농가당 연간 분뇨처리비는 3,626,901원, 농장 수리·보수비는 2,049,604원, 보험료는 1,325,961원, 기타 소모품비는 1,144,604원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9〉 연간 기타 비용

(단위: 원)

구분	사례 수	부채			분뇨처리비	농장 수리 보수비	보험료	기타 소모품비
		금융 부채액	외상 부채액	소계				
전체	(202)	54,198,020	541,584	54,739,604	3,626,901	2,049,604	1,325,961	1,144,604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다) 경영수지 분석

##### (1) 생산비 및 수익성 산출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에서는 육견 농가의 폐업보상금 산정을 위한 여러 분석들을 제시하고 있다.<sup>24)</sup> 해당 연구에서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육견 농가의 생산비 및 수익성을 산출하였다.

육견 생산비는 육견 사육 과정에서 일정 단위의 축산물(개고기)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재화와 용역의 단위당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연구에서 사육에 직접 투입된 사료, 동물약품 등의 재화와 노동력, 토지, 영농시설, 농기구 등의 용역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산비 조사 대상은 개고기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육견으로,

24) 해당 연구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수행됨

비육용(비육견)과 번식용(중견, 모견)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생산비 산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통합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육견 농가의 주요 생산물은 비육 완료견이며, 부산물은 잔반 수거 수입이다. 생산비 산정 단위는 육견 출하 체중을 고려하여 1kg으로 설정하였고, 수익성과 생산성은 비육견 1마리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표 II-20〉 육견 주·부산물 및 생산비 계산단위

구분	주요 내용
경영비	사료비, 가축비,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감가상각비(자동차), 감가상각비(농구비), 감가상각비(영농시설비), 수리유지비, 기타재료비, 차입금이자, 토지임차료, 고용노동비, 분뇨처리비, 기타비용
내급비	자가노동비, 고정자본용역비, 유동자본용역비
수입	식용견 판매수입(주요 생산물), 잔반수거 수입(부산물)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에서 생산비 및 수익성 산정을 위한 주요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비는 총비용에서 부산물 수입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비용은 가축 구입비, 사료비, 감가상각비, 기타 제비용과 자가 노동비, 자본 용역비, 토지 용역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어서 경영비는 생산비에서 자가 노동비, 자본 용역비, 토지 용역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소득은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값으로 산출되며, 순수익은 총수입에서 생산비(총비용에서 부산물 수입을 제외한 금액)를 뺀 값으로 구해진다.

〈표 II-21〉 생산비 및 수익성 산정을 위한 주요 계산 산식

구분	계산 산식
생산비	총비용[(가축 구입비+사료비+감가상각비+기타 제비용)+(자가 노동비+자본 용역비+토지 용역비)]- 부산물 수입
경영비	생산비-(자가 노동비+자본 용역비+토지 용역비)
소득	총수입-경영비[생산비-(자가 노동비+자본 용역비+토지 용역비)]
순수익	총수입-생산비(총비용-부산물 수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2024.

〈표 11-22〉 육건 생산비 비목 구성

비목		주요 내용
가축비		종건 구입비(구입 부대 비용 포함) 또는 자가 편입 시 평가액, 육성비, 자건 구입비 등
사료비		육건 사료 구입비 및 구입 제비용, 부산물·기타 사료첨가제 등 구입비 및 구입 제비용
수도광열비		축산 경영에 소요된 수도료, 전기료, 난방 및 동력기계용 연료대(유류비)
방역치료비		가축 치료 및 소독약품대, 수의사진료비, 주사기 등 진료 장비 구입비
자동차·농구비	감가상각비	화물차, 승용차, 모터싸이클 등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트랙터, 경운기 절단기 등 대농기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자동차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대농구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영농시설비	감가상각비	축사, 농기구사, 창고, 퇴비사 등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영농시설물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기타재료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비닐, 톱밥, 왕겨, 깔짚, 수도꼭지 등 재료비
고용노동비		상용고용인, 임시고용인 등 사양관리 노동력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평가액
차입금이자		실제 지불한 차입금이자(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
토지임차료		임차 사용한 토지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평가액
분뇨처리비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기타비용		축산경영과 관련된 세금, 보험료 등 타 비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
소 계		상기 비목 합계(경영비)
자가노동비		축산 경영에 투입된 자가노동력에 대한 평가액
자본용역비		고정자본용역비(대농구, 영농시설물 자본 등의 평가액에 대한 이자)+유동자본용역비 (유동자본액에 대한 이자)
토지용역비		축산 경영에 소요된 토지자본액에 대한 이자(또는 지대)
비용합계		상기 비용(생산비=경영비+자가노동비+자본·토지용역비)의 합계액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2024.

원자료: 통계청(2023), 『2022년 축산물 생산비통계』.

## (2) 육건 생산비 및 수익성

육건 생산비와 수익성 분석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건농가 현황조사」의 표본인 20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네가지 규모로 구분하여 결과를 집계하였다.

〈표 II-23〉 생산비 및 수익성 분석 농가 사육 현황

(단위: 호, 마리, %)

비목		사육 규모 구분				
		300마리 미만	300~500	500~1,000	1,000마리 이상	합계
표본 농가 분포	호 (구성비)	27 (13.4)	40 (19.8)	81 (40.1)	54 (26.7)	202 (100.0)
실 마릿수	총 사육 마릿수 (구성비)	5,183 (3.4)	15,685 (10.2)	54,344 (35.5)	77,920 (50.9)	151,132 (100.0)
가구당 사육 마릿수		192.0	392.1	670.9	1,443.0	758.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20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육견 마리당 평균 사육비는 평균 167,790원으로 집계되었다.<sup>25)</sup> 사육 규모별로 비교했을 때,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확인되었다. 비용 항목별 비중을 보면, 자가노동비가 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수도광열비는 10.8%, 방역 및 치료비는 5.3%로 나타났다. 사료비 비중(1.6%)이 다른 축종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육견 농가가 주로 잔반을 사료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수거한 잔반을 급여하기 위해 열처리 및 가공 과정이 필요해 수도광열비 비중은 한우나 돼지 등 다른 축종보다 높은 편이었다. 또한, 가축비(종견 구입비 등)의 비중은 종견을 구매한 농가 비율이 21.3%로 낮아 타 축종 대비 낮게 나타났다.

〈표 II-24〉 육견 마리당 사육비

(단위: 원/마리)

비목		사육 규모 구분					평균 구성비(%)
		300마리 미만	300~500	500~1,000	1,000마리 이상		
일반비	가축비(종견구입비 등)	15,784	8,131	4,802	2,535	6,323	3.8
	사료비	6,138	1,406	2,566	2,221	2,722	1.6
	육견 사료	2,358	1	358	81	480	0.3
	부산물	3,780	1,406	2,208	2,140	2,241	1.3

25) 일반비는 67,654원으로 나타났으며, 자가노동비와 자본용역비를 포함한 총비용은 평균 167,790원으로 집계됨

〈표 II-24〉의 계속

(단위: 원/마리)

비목		사육 규모 구분					평균 구성비(%)	
		300마리 미만	300~500	500~1,000	1,000마리 이상			
일반비	수도광열비	32,950	18,195	16,463	13,120	18,116	10.8	
	방역치료비	11,952	7,356	8,173	9,614	8,902	5.3	
	자동차·농구비	13,330	7,672	6,394	4,547	7,081	4.2	
	감가상각비	6,971	4,024	3,357	2,512	3,746	2.2	
	수리유지비	6,359	3,648	3,037	2,035	3,334	2.0	
	영농시설비	13,933	8,484	6,014	4,948	7,277	4.3	
	감가상각비	8,929	4,309	3,563	2,311	4,093	2.4	
	수리유지비	5,003	4,176	2,451	2,637	3,184	1.9	
	기타재료비	2,996	1,312	1,362	1,457	1,596	1.0	
	차입금이자	2,995	2,925	1,607	2,187	2,208	1.3	
	토지임차료	1,444	1,436	1,100	346	1,011	0.6	
	고용노동비	2,222	9,163	3,249	10,322	6,174	3.7	
	분뇨처리비	6,916	2,718	2,892	4,265	3,762	2.2	
	기타비용	5,886	2,760	2,054	1,222	2,484	1.5	
	일반비 소계(A)	116,547	71,558	56,676	56,784	67,654	40.3	
자가노동비	212,319	144,786	69,424	45,871	97,150	57.9		
자본용역비	3,958	2,498	1,914	1,389	2,163	1.3		
토지용역비	1,645	817	769	498	823	0.5		
비용 합계(B)	334,470	219,659	128,782	104,541	167,79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2024.

개고기 생체 1kg당 생산비를 분석한 결과, 1kg 생산에 소요되는 일반비는 1,573원이며, 자가노동비와 자본용역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은 3,902원으로 집계되었다. 육견 사육 농가는 수거한 잔반을 사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평균 부산물(잔반 수거) 수입은 2,874원으로 일반비(1,573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개고기 생체 1kg 생산에 따른 경영비는 -1,301원으로 손실을 보였고, 자가노동비 및 자본용역비를 반영한 생산비는 1,028원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고기 생체 1kg당 생산비용 중 일반비가 전체의 40.3%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축비(3.8%)와 수도광열비(10.8%)가 주요 항목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가노동비가 전체 비용의 5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생산비용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에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육 규모에 따라 비용 구조에 차이가 나타난다. 대규모 사육 농가일수록 일반비와 자가노동비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규모의 경제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자본 용역비와 기타 비용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 비용 절감 대상은 자가노동비임을 알 수 있다.

〈표 II-25〉 개고기 생체 1kg당 생산비

(단위: 원/kg)

비목		사육 규모 구분					평균 구성비(%)	
		300마리 미만	300~500	500~1,000	1,000마리 이상			
일반비	가축비 (종건 구입비 등)	384	191	110	59	147	3.8	
	사료비	149	33	59	52	63	1.6	
	육건 사료	57	0	8	2	11	0.3	
	부산물	92	33	51	50	52	1.3	
	수도광열비	802	427	377	304	421	10.8	
	방역치료비	291	173	187	223	207	5.3	
	자동차·농구비	324	180	146	105	165	4.2	
	감가상각비	170	94	77	58	87	2.2	
	수리유지비	155	86	69	47	78	2	
	영농시설비	339	199	138	115	169	4.3	
	감가상각비	217	101	82	54	95	2.4	
	수리유지비	122	98	56	61	74	1.9	
	기타재료비	73	31	31	34	37	1	
	차입금이자	73	69	37	51	51	1.3	
	토지임차료	35	34	25	8	24	0.6	
	고용노동비	54	215	74	239	144	3.7	
	분뇨처리비	168	64	66	99	87	2.2	
	기타비용	143	65	47	28	58	1.5	
	일반비 소계(A)	2,836	1,680	1,297	1,317	1,573	40.3	

〈표 II-25〉의 계속

(단위: 원/kg)

비목	사육 규모 구분					평균 구성비(%)
	300마리 미만	300~500	500~1,000	1,000마리 이상		
자가노동비	5,166	3,399	1,589	1,064	2,259	57.9
자본용역비	96	59	44	32	50	1.3
토지용역비	40	19	18	12	19	0.5
비용 합계(B)	8,138	5,156	2,947	2,426	3,902	100
부산물(잔반) 수입(C)	2,454	3,098	2,932	2,830	2,874	
경영비(A-C)	381	-1,418	-1,635	-1,512	-1,301	
생산비(B-C)	5,684	2,058	15	-404	1,028	
판매 시 체중(kg)	41.1	42.6	43.7	43.1	43.0	

주: 조사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2024.

육견 마리당 수입은 육견 판매 수익과 부산물(잔반 수거) 수익으로 나뉘며, 평균 총수입은 478,619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육견 판매 수입은 355,021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부산물(잔반 수거) 수입은 123,598원으로 25.8%의 비중을 보였다.

〈표 II-26〉 육견 마리당 총수입

(단위: 원/마리)

비목	사육 규모 구분				
	300마리 미만	300~500	500~1,000	1,000마리 이상	평균
육견 판매 수입	367,746	321,668	358,224	368,560	355,021
부산물 수입 (잔반 수거 수입)	100,874	131,968	128,133	121,956	123,598
계	468,620	453,636	486,357	490,516	478,61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2024.

육견 사육 농가의 수입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익성 분석 결과, 마리당 평균 소득은 410,964원, 순수익은 310,828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비율로 살펴보면, 육견 농가의 소득률은 85.9%, 순수익률은 64.9%로 해당 농경연 보고서에서는 한우나 돼지 등 다른 축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II-27〉 사육규모별 육견 마리당 수익성

(단위: 원/마리, %)

비목	사육 규모 구분				
	300마리 미만	300~500	500~1,000	1,000마리 이상	평균
총수입(A)	468,620	453,636	486,357	490,516	478,619
일반비(B)	116,547	71,558	56,676	56,784	67,654
비용합계(C)	334,470	219,659	128,782	104,541	167,790
소득(A-B)	352,073	382,078	429,681	433,732	410,964
순수익(A-C)	134,150	233,977	357,575	385,975	310,828
소득률((A-B)/A)	75.1	84.2	88.3	88.4	85.9
순수익률(A-C)/A)	28.6	51.6	73.5	78.7	64.9

주: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20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에서 는 개고기 생체 1kg당 생산비와 품종별 출하 체중을 기준으로 육견 농가의 1마리당 순수익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보고서에서는 육견 농가의 1마리당 순수익은 도사견과 황구의 평균 출하 체중(도사견 47.3kg, 황구 24.9kg)에 개고기 1kg당 생산비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육견 농가의 순수익은 310,828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서는 1년 기준 두당 지원금액을 30만원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II-28〉 품종별 육견 마리당 수익성(출하 체중으로 환산)

(단위: 원, kg)

비목	제1안) 품종 구분 (전체를 도사와 황구로 구분하여 출하 체중을 기준으로 산출)			제2안) 품종 구분 (평균을 도사로 가정하고, 출하 체중 적용 황구 수익성 산출)	
	도사	황구	전체	황구	도사(평균)
총수입(A)	486,410	277,154	478,619	277,154	478,619
일반비(B)	68,755	39,176	67,654	39,176	67,654
비용합계(C)	170,521	97,162	167,790	97,162	167,790
소득(A-B)	417,655	237,977	410,964	237,977	410,964
순수익(A-C)	315,889	179,992	310,828	179,992	310,828
※ 평균 출하 체중	43.7	24.9	43.0	24.9	43.0

주: 1. 조사에 응답한 황구 농가수는 총 15호로 그중에서 12호는 도사와 함께 사육하며, 3호는 황구만 사육하는 농가임.

2.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품종별 수익성은 개고기 1kg당 생산비를 기초로 품종별 출하 체중을 이용해 산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2024.

## 2) 개 도축장<sup>26)</sup>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에 참여한 129개의 개 도축장의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61.8세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9개소(3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상권 48개소(37.2%), 전라권 25개소(19.4%), 충청권 7개소(5.4%) 순으로 분포하였다. 응답자의 개 도축업 평균 종사 기간은 19.7년으로 조사되었으며, 15년 미만 종사자의 비율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29〉 개 도축장 응답자 일반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비고
전체		(129)	100.0	
성별	남성	(111)	86.0	
	여성	(18)	14.0	
연령대	60세 미만	(42)	32.6	평균 연령 61.8세
	60~70세 미만	(63)	48.8	
	70세 이상	(24)	18.6	
권역	수도권	(49)	38.0	
	충청권	(7)	5.4	
	경상권	(48)	37.2	
	전라/제주권	(25)	19.4	
개 도축업 종사 기간	15년 미만	(43)	33.3	평균 종사 기간 19.7년
	15~20년 미만	(22)	17.1	
	20~25년 미만	(27)	20.9	
	25년 이상	(36)	27.9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26) 개 도축장 조사는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도축장을 운영 중인 경영주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글로벌리서치에서 진행하였음. 설문조사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25일간 진행되었고, 도축장의 경우, 조사 전 모집단 정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전수) 진행 시 조사원이 동행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에 개 도축장 조사는 표본설계 없이 진행하였으며, 추후 운영신고서를 통해 확인된 목표 모집단 수는 197개였으나, 총 129개의 유효 응답을 수득함

## 가) 개 도축장 시설 현황

### (1) 도축장 및 시설 구조 형태

개 도축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시설을 갖춘 비율은 73.6%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26.4%는 간이 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도축장 시설 구조 유형을 보면, (철골) 샌드위치 판넬 형태가 47.3%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그다음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33.3%, 비닐하우스가 10.1%, 컨테이너 형태가 3.9%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 있는 건축물 및 시설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간이 시설은 (철골) 샌드위치 판넬과 비닐하우스 형태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30〉 개 도축장 형태

(단위: %)

구분	사례 수	일정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	간이 시설
전체	(129)	73.6	26.4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표 II-31〉 개 도축장의 시설구조 형태

(단위: %)

구분	사례 수	철근 콘크리트	(철골) 샌드위치 판넬	벽돌	시멘트 블록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기타
전체	(129)	33.3	47.3	0.8	2.3	10.1	3.9	2.3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2) 도축시설 현황

대부분의 도축장이 도축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 비율은 98.4%에 달했다. 지육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는 82.2%, 냉장창고는 62.8%로 과반수 이상의 도축장이 이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계류장(69.0%), 주차장(66.7%), 사무실(64.3%), 폐수처리장(48.1%), 가공장(27.1%), 폐기물 처리장(20.9%), 기타 시설(8.5% - 사육농장, 창고, 기숙사 등) 순으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용도별 평균 시설 면적을 보면, 계류장이 287.5㎡로 가장 넓었으며, 이어 도축실 70.8㎡, 가공장 58.5㎡, 폐기물 처리장 54.3㎡, 폐수처리장 43.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2〉 용도별 시설 보유 현황 및 시설면적

(단위: %, m<sup>2</sup>)

구분	사례 수	계류장	도축실	냉장 창고	냉동 창고	가공장	폐기물 처리장	폐수 처리장	사무실	주차장	기타
보유 현황	(129)	69.0	98.4	62.8	82.2	27.1	20.9	48.1	64.3	66.7	8.5
시설 면적	(129)	287.5	70.8	15.6	16.4	58.5	54.3	43.8	29.6	254.9	251.6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건농가 현황 조사」

나) 도축실적 현황

(1) 계류 및 도축 현황

개 도축장의 1일 평균 계류 능력은 2021년에 79.9두에서 2022년 80.3두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3년에는 74.6두로 감소하였다. 한편, 일일 평균 도축 능력과 도축 실적은 해마다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며, 도축 능력 대비 도축 실적은 연간 약 30%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II-33〉 1일 평균 계류 및 도축 현황

(단위: 두/일)

구분	사례 수	계류능력			도축능력			도축실적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전체	(129)	79.9	80.3	74.6	26.0	26.3	26.2	8.0	8.1	7.8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건농가 현황 조사」

개 도축장의 1일 평균 가동시간은 약 4시간으로 2021년 이후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평균 가동일수는 도축일 수를 기준으로 연간 약 80%의 가동률(약 290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I-34〉 도축 가동시간 및 가동일수

(단위: 일)

구분	사례 수	1일 평균 가동시간			연평균 가동일수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전체	(129)	4시간 17분	4시간 13분	4시간 02분	290.1	292.5	288.4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건농가 현황 조사」

최근 3년간 도축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자체 구매(판매) 물량이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도축 물량은 약 24%로 집계되었다.

〈표 II-35〉 도축 비율

(단위: %)

구분	사례 수	자체 구매(판매)			임도축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전체	(129)	75.7	75.3	75.7	24.3	24.7	24.3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건농가 현황 조사」

(2) 반입 및 반출 현황

2023년 기준 개 도축장의 반입 두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1,912두로 나타났으며, 반출 두수 역시 전년 대비 3.9% 줄어든 1,865두로 집계되었다.

〈표 II-36〉 연도별 반입 및 반출 두수

(단위: 두)

구분	사례 수	반입 두수			반출 두수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전체	(129)	1,995	1,997	1,912	1,947	1,941	1,865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건농가 현황 조사」

도내·외 반입 및 반출 현황을 보면, 도내 반입 두수는 1,055두였으나 반출 두수는 1,201두로 더 많아 타 지역에서 반입된 물량 일부가 도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37〉 반입 및 반출 지역별 두수 현황

(단위: 두)

구분	사례 수	반입 두수					임도축				
		도내 반입		타 시도 반입		합계	도내 반출		타 시도 반출		합계
		자체 구입	임도축	자체 구입	임도축		자체 구입	임도축	자체 구입	임도축	
전체	(129)	747	308	688	169	1,912	882	319	535	129	1,865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건농가 현황 조사」

### (3) 도축 수수료

2023년 기준 육견의 마리당 도축 수수료는 전년보다 9.4% 상승한 46,094원으로 조사되었으며, 2021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도축장 형태별로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을 갖춘 도축장에서 간이 시설보다 도축 수수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8〉 개 마리당 도축 수수료

(단위: 원/마리)

구분	사례 수	2021	2022	2023
전체	(129)	39,984	42,148	46,094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다) 개 도축장 운영 현황

#### (1) 매출 및 비용 현황

2023년 개 도축장의 총매출은 전년 대비 8.0% 감소한 약 3억 2,604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총비용은 2억 4,962만원, 영업이익은 7,642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II-39〉 연도별 매출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사례 수	2021			2022			2023		
		총매출액	총비용	영업이익	총매출액	총비용	영업이익	총매출액	총비용	영업이익
전체	(129)	31,396	23,928	7,468	32,879	25,102	7,777	32,604	24,962	7,642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매출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지육 판매가 6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도축 수수료는 31.6%, 기타 수익(개소주, 탕약 등 가공 수수료)은 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0〉 주요 매출 항목

(단위: %, 만원)

구분	사례 수	도축 수수료		지육 판매		기타		총매출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전체	(129)	31.6	10,311	65.8	21,453	2.6	841	32,604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2023년 총비용 2억 4,962만원의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시설 운영비가 58.6%(1억 4,626만원)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시설 유지보수비 17.4%(4,343만원), 인건비 10.8%(2,697만원), 폐기물 처리비 4.5%(1,135만원), 기타 비용(운송비, 유류비 등) 4.4%(1,090만원), 금융비 4.3%(1,071만원)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II-41〉 주요 항목별 비용 및 비중

(단위: %, 만원)

구분	사례 수	시설 운영비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폐기물 처리비	금융비	기타	총비용
금액	(129)	14,626	2,697	4,343	1,135	1,071	1,090	24,962
비중		58.6	10.8	17.4	4.5	4.3	4.4	100.0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2) 고용인력 현황

조사에 참여한 도축장의 전체 고용인력은 9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도축장별 평균 고용인력은 0.7명(0명 포함)으로 나타났다. 도축장 중 63.6%는 1인 경영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1명을 고용한 곳은 20.2%, 2명 고용은 7.0%, 3명 고용은 4.7%, 4명 고용은 2.3%, 5명 이상을 고용한 도축장은 2.3%로 조사되었다.

〈표 II-42〉 고용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평균	합계
전체	(129)	63.6	20.2	7.0	4.7	2.3	2.3	0.7	93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3) 유형자산 가치 및 신규 투자 현황

개 도축장이 보유한 부동산 및 설비(장비)의 유형자산 가치를 조사한 결과, 1억원 이하가 2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2~3억원 미만(20.9%), 1~2억원 미만(14.0%), 5억원 이상(13.2%), 4~5억원 미만(12.4%), 3~4억원 미만(11.6%) 순으로 분포하였다.

〈표 II-43〉 유형자산 가치

(단위: %)

구분	사례 수	1억원 이하	1~2억원 미만	2~3억원 미만	3~4억원 미만	4~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모름/무응답
전체	(129)	26.4	14.0	20.9	11.6	12.4	13.2	1.6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건농가 현황 조사」

최근 3년간 주요 항목별 투자 현황을 보면, 도축 설비에 대한 투자가 44.2%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다음으로 시설 현대화 17.8%, 기타(자동차 및 물품 구매 등) 14.7%, 건물 신축 13.2%, 폐기물 처리시설 10.1%, 부지 구입 4.7%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부지 구입이 1억 1,16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물 신축 6,523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3,177만원, 기타 투자(자동차 및 물품 구매 등) 4,286만원, 도축 설비 2,573만원, 시설 현대화 1,638만원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II-44〉 주요 항목별 신규 투자 및 투자 금액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사례 수	부지 구입	건물 신축	도축 설비	시설 현대화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없음
투자 여부	(129)	4.7	13.2	44.2	17.8	10.1	14.7	44.2
투자 금액	(129)	11,667	6,523	2,573	1,638	3,177	4,286	-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건농가 현황 조사」

#### (4) 육건 관련 겸업 현황

도축장 외에 육건 관련 사업의 겸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육건 사육 농가로서 겸업 중인 비율은 41.1%로 나타났다. 가공장을 운영하는 비율은 19.4%, 직영 식당(음식점) 및 기타 업종(건강원 등)은 각각 12.4%로 조사되었다. 도축장 중 육건 관련 사업을 겸업하지 않는 비율은 41.1%로 확인되었다.

〈표 II-45〉 육건 관련 겸업 현황

(단위: %)

구분	사례 수	육건농가	가공장	직영 식당 (음식점)	기타 (건강원 등)	없음
전체	(129)	41.1	19.4	12.4	12.4	41.1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건농가 현황 조사」

### 3) 유통업 현황

개고기 유통업체 현황 조사에 참여한 106개 업체의 응답자 분석 결과, 남성이 75.5%, 여성이 24.5%로 대부분의 경영주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60~70세 미만이 50.0%로, 평균 연령은 61.7세로 고령화된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이 4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통업체의 업종 구성은 개고기 유통이 53.8%, 개 가공식품 유통(건강원 등)이 46.2%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응답자가 육견 사육을 병행하고 있어 평균 신고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개고기 유통 및 판매 경력은 평균 18.7년으로, 15~3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다.

〈표 II-46〉 유통업체 응답자 일반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비고
전체		(106)	100.0	
성별	남성	(80)	75.5	
	여성	(26)	24.5	
연령대	60세 미만	(32)	30.2	평균 연령 61.7세
	60~70세 미만	(53)	50.0	
	70세 이상	(21)	19.8	
권역	수도권	(45)	42.5	
	강원/제주권	(5)	4.7	
	충청권	(15)	14.2	
	경상권	(35)	33.0	
	전라권	(6)	5.7	
업종	개고기 유통	(57)	53.8	
	개 가공식품 유통	(49)	46.2	
개고기 유통·판매 기간	15년 미만	(42)	39.6	평균 종사 기간 18.7년
	15~30년 미만	(44)	41.5	
	30년 이상	(20)	18.9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가) 유통업체 운영 현황

### (1) 매출액 현황

2023년 개고기 유통업체의 총 매출액은 1억 7,671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개고기 판매 매출은 1억 4,367만원(81.3%), 개고기 외 제품 매출은 3,305만원(18.7%)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1분기 총 매출액은 4,105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개고기 매출은 3,386만원(82.5%), 개고기 외 매출은 720만원(17.5%)으로 나타나 2023년과 유사한 매출 비율을 보였다.

〈표 II-47〉 매출액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사례 수	2023년			2024년 1분기		
		개고기	개고기 외	합계	개고기	개고기 외	합계
매출액	(106)	14,367	3,305	17,671	3,386	720	4,105
비중		81.3	18.7	100.0	82.5	17.5	100.0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2023년 기준 유통업체의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률은 24.9%로 확인되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용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은 재료비로 52.1%였으며, 이어 기타비용 7.2%, 세금 및 공과금 6.9%, 임차료 5.8%, 인건비 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8〉 주요 항목별 비용 및 영업이익 비중

(단위: %)

구분	사례 수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기타비용	영업이익
전체	(106)	52.1	3.2	5.8	6.9	7.2	24.9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2) 재료 취급 및 가공 현황

재료비 구성에서는 개고기가 70.9%, 개고기 외 축산물이 29.1%를 차지하였다. 유통업체 106개 중 59개 업체(55.7%)는 지육을 가공하고 있으며, 이 중 개고기 원료 가공식품 비율은 53.4%, 개고기 외 식품 제조 비율은 46.6%로 집계되었다.

〈표 II-49〉 재료 취급 및 재료 취급 후 가공 현황

(단위: %)

구분	사례 수	재료 취급 현황		사례 수	가공 현황	
		개고기	개고기 외 축산물		개고기 원료 가공식품	개고기 외 식품 제조
전체	(106)	70.9	29.1	(59)	53.4	46.6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3) 결제 수단별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중 현금 결제 비중이 69.8%로 가장 높았으며, 카드 결제가 29.7%, 지역화폐 결제가 0.6%를 차지했다. 개 가공식품 유통업체와 개고기 유통 경력 30년 이상 또는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인 업체에서 카드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아 매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50〉 결제 수단별 매출액 비중

(단위: %)

구분	사례 수	카드	현금	지역화폐
전체	(106)	29.7	69.8	0.6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나) 구매 및 판매 현황

(1) 구매 현황 및 구매 경로

2023년 기준 유통업체의 연평균 개고기 구매금액은 1억 5,7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하절기(6~8월, 3개월) 구매금액은 6,265만원, 하절기 외 기간(9개월)은 9,445만원이었다. 하절기의 월평균 구매금액은 2,088만원으로, 하절기 외 기간의 월평균 1,049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51〉 개고기 구매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사례 수	연평균 개고기 구매현황			월평균 개고기 구매현황		
		연간	하절기	하절기 외	연간	하절기	하절기 외
전체	(106)	15,710	6,265	9,445	1,309	2,088	1,049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월평균 구매 주기는 하절기에 10.2회, 하절기 외에는 5.8회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구매량은 하절기 2,061kg, 하절기 외 1,055kg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평균 kg당 구매가격은 하절기 12,111원, 하절기 외 11,465원으로 하절기에 개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II-52〉 개고기 구매 주기, 구매량, 구매금액(유통업체)

(단위: 회/월, kg/월, 원/kg)

구분	사례 수	월평균 구매 주기		월평균 구매량		kg당 구매금액	
		하절기	하절기 외	하절기	하절기 외	하절기	하절기 외
전체	(106)	10.2	5.8	2,061	1,055	12,111	11,465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유통업체의 개고기 주요 구매 경로는 농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비율이 45.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유통업체 간 거래 31.1%, 직접 사육(농장 운영) 및 경매장을 통한 구매가 각각 12.3%, 개인 위탁은 1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53〉 개고기 구매 경로

(단위: %)

구분	사례 수	직접 사육	농장	도축장	유통업체	경매장	개인 위탁
전체	(106)	12.3	45.3	6.6	31.1	12.3	10.4

주: 복수응답 비중임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2) 판매 현황 및 판매 경로

2023년 기준 유통업체의 연평균 개고기 판매금액은 2억 3,186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하절기(6~8월) 판매금액은 9,342만원, 하절기 외(9개월)는 1억 3,844만원으로 확인된다. 하절기의 월평균 판매금액은 3,114만원, 하절기 외에는 1,538만원으로 하절기 판매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4〉 개고기 판매현황

(단위: 만원)

구분	사례 수	연평균 개고기 판매현황			월평균 개고기 판매현황		
		연간	하절기	하절기 외	연간	하절기	하절기 외
전체	(106)	23,186	9,342	13,844	1,932	3,114	1,538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월평균 판매량은 하절기 2,097kg, 하절기 외 1,054kg으로 조사되었으며, 월평균 kg당 판매 가격은 하절기 18,579원, 하절기 외 17,749원으로 하절기에 개고기 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II-55〉 개고기 판매량 및 판매금액

(단위: kg/월, 원/kg)

구분	사례 수	월평균 판매량		kg당 판매금액	
		하절기	하절기 외	하절기	하절기 외
전체	(106)	2,097	1,054	18,579	17,749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4) 음식점 현황

개고기 조리음식점 조사에 참여한 300개 업체의 일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영주 성별은 남성이 26.0%, 여성이 74.0%로 여성 경영주가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60~70세 미만이 50.3%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63.4세로 고령화된 경향을 보였다. 권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개고기 판매 기간은 20.8년으로 조사됐다. 영업장 신고면적은 50~100㎡ 미만이 44.7%로 가장 많았고, 전체 평균 신고면적은 128.5㎡였다. 또한, 영업장의 82.7%가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II-56〉 음식점 응답자 일반 현황

(단위: %)

구분	사례 수	비율	비고	
전체	(300)	100.0		
성별	남성	(78)	26.0	
	여성	(222)	74.0	
연령대	50세 미만	(31)	10.3	평균 연령 63.4세
	50~60세 미만	(41)	13.7	
	60~70세 미만	(151)	50.3	
	70세 이상	(77)	25.7	
권역	수도권	(122)	40.7	
	강원/제주권	(26)	8.7	
	충청권	(56)	18.7	

〈표 II-56〉의 계속

(단위: 개소, %)

구분		사례 수	비율	비고
권역	경상권	(70)	23.3	
	전라권	(26)	8.7	
개고기 판매 기간	10년 미만	(52)	17.3	평균 판매 기간 20.8년
	10~20년 미만	(103)	34.3	
	20~30년 미만	(89)	29.7	
	30년 이상	(56)	18.7	
영업장 신고면적	50㎡ 미만	(35)	11.9	평균 신고면적 128.5㎡
	50~100㎡ 미만	(132)	44.7	
	100~150㎡ 미만	(77)	26.1	
	150㎡ 이상	(51)	17.3	
영업장 입지 유형	도심	(248)	82.7	
	비도심	(52)	17.3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가) 음식점 운영 현황

(1) 매출액 현황

2023년 개고기 조리 음식점의 총 매출액은 2억 447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개고기 매출액은 1억 5,631만원(76.4%), 개고기 외 매출액은 4,816만원(23.6%)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1분기 총 매출액은 5,1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개고기 매출액은 3,649만원(71.0%), 개고기 외 매출액은 1,493만원(29.0%)으로 확인되어 2023년에 비해 개고기 외 매출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 II-57〉 매출액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사례 수	2023년			2024년 1분기		
		개고기	개고기 외	합계	개고기	개고기 외	합계
매출액	(300)	15,631	4,816	20,447	3,649	1,493	5,142
비중		76.4	23.6	100.0	71.0	29.0	100.0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2023년 기준 개고기 조리 음식점의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 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비용 항목별 비중을 보면 식재료비가 4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세금 및 공과금 7.6%, 인건비 7.4%, 기타 비용 5.9%, 임차료 4.7%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II-58〉 주요 항목별 비용 및 영업이익 비중

(단위: %)

구분	사례 수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기타비용	영업이익
전체	(300)	47.8	7.4	4.7	7.6	5.9	26.6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2) 식재료비 및 메뉴 단가 현황

식재료비 중 개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64.3%, 개고기 외 축산물은 20.4%로 나타났다. 영업장 특성별로는 면적이 작을수록, 비도심 지역(58.4%)보다 도심 지역(65.5%)에서 개고기 취급 비중이 높게 조사되었다.

〈표 II-59〉 식재료비 비중

(단위: %)

구분	사례 수	개고기	개고기 외 축산물	기타 식재료
전체	(300)	64.3	20.4	15.4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개고기 메뉴의 평균 가격은 23,19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세부 메뉴별로는 수육(32,874원), 무침(25,745원), 전골(25,417원), 탕(15,035원) 순으로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개고기 외 메뉴의 평균 가격은 21,613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60〉 메뉴별 평균 단가 현황

(단위: 원)

구분	사례 수	개고기 전체	탕	수육	전골	무침	개고기 외
전체	(300)	23,190	15,035	32,874	25,417	25,745	21,613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3) 결제 수단별 매출 현황

개고기 조리 음식점의 전체 매출 중 카드 결제 비율이 88.9%로 가장 높았으며, 현금 결제는 10.4%, 지역화폐 결제는 0.7%로 나타났다. 개고기와 기타 메뉴를 함께 취급하는 음식점은 개고기 단일 메뉴 음식점보다 카드 결제 비율이 높았으며, 단일 메뉴 음식점은 현금 결제 비율(27.2%)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61〉 결제 수단별 매출액 비중

(단위: %)

구분	사례 수	카드	현금	지역화폐
전체	(300)	88.9	10.4	0.7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나) 구매 및 판매 현황

#### (1) 개고기 외 조리·판매 메뉴 재료 현황

개고기 조리 음식점의 개고기 외 조리·판매 메뉴 재료로는 닭이 75.0%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염소(47.7%), 오리(19.0%), 돼지(6.0%), 미꾸라지(5.0%), 기타(4.0%), 소(3.7%) 순으로 조사되었다. 개고기 외 메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3%로, 대부분의 음식점이 다양한 메뉴를 운영 중인 것으로 보였다.

〈표 II-62〉 개고기 외 조리·판매 메뉴 재료 현황

(단위: %)

구분	사례 수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미꾸라지	기타	없음
전체	(300)	3.7	6.0	75.0	19.0	47.7	5.0	4.0	7.3

주: 복수응답 비중임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 (2) 개고기 구매 현황

2023년 기준 개고기 조리 음식점의 연평균 개고기 구매금액은 총 8,113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하절기(6~8월) 구매금액은 3,849만원, 하절기 외(9개월)에는 4,26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하절기의 월평균 구매금액은 1,283만원으로, 하절기 외 기간의 474만원보다 약 3배가량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3〉 개고기 구매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사례 수	연평균 개고기 구매현황			월평균 개고기 구매 현황		
		연간	하절기	하절기 외	연간	하절기	하절기 외
전체	(300)	8,113	3,849	4,264	676	1,283	474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건농가 현황 조사」

월평균 구매 주기는 하절기에 14.7회, 하절기 외에는 7.2회였으며, 월평균 구매량은 하절기 842kg, 하절기 외 316kg으로 확인됐다. 또한, 월평균 kg당 구매금액은 하절기 15,014원, 하절기 외 14,771원으로 하절기 개고기 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64〉 개고기 구매 주기, 구매량, 구매금액(음식점)

(단위: 회/월, kg/월, 원/kg)

구분	사례 수	월평균 구매 주기		월평균 구매량		kg당 구매금액	
		하절기	하절기 외	하절기	하절기 외	하절기	하절기 외
전체	(300)	14.7	7.2	842	316	15,014	14,771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건농가 현황 조사」

개고기 조리 음식점의 주요 개고기 구매처는 상인(유통·판매업자)이 50.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농장 45.0%, 도축장 2.3%, 직접 사육(농장 운영) 2.0%, 기타 0.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65〉 개고기 주 구매처

(단위: %)

구분	사례 수	직접 사육	농장	도축장	상인	기타
전체	(300)	2.0	45.0	2.3	50.3	0.3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4),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건농가 현황 조사」

## 다. 개식용 종식 운영 신고 접수 현황

### 1) 접수 현황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공포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4년 11월 중순 기준으로 총 5,898건의 신고를 받고 이들 모두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은 식품접객업으로 2,352개소가 지자체에 신고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폐업·전업지원 사업의 대상인 농장은 1,537개소, 도축장은 221개소이다.

〈표 II-66〉 업계별 신고 수리건수 및 이행계획서 접수 현황

(단위: 건, 개소)

구분		농장	도축	유통	식품접객
수리 건수	5,898	1,537	221	1,788	2,352
이행계획서	5,898 (100%)	1,537 (100%)	221 (100%)	1,788 (100%)	2,352 (100%)

자료: 업계(농장주, 도축상인,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2024년 11월 중순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2024년 9월)이 발표됨에 따라 2025년 2월까지 이행계획서는 수정될 수 있음.

## 2) 세부 현황

2024년 11월 중순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업종(개사육농장업, 개식용 도축업, 개식용 유통업, 개식용 식품접객업)에 따라 신고 수리와 이행계획서 접수 내용을 취합하여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업종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사육농장의 경우 가장 신고가 많은 행정구역은 경기로 313개소이며 경북은 255개소, 충북이 196개소로 그 뒤를 잇는다. 폐업 예정 수는 이행계획서에 폐업 또는 전업 예정일자를 기입한 업장의 수를 뜻한다. 전체 1,537개소 중 883개소가 폐업 예정 수에 포함되며 이는 전체 농장의 약 57.4%를 차지한다. 현재 평균 사육 마릿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농장 한 곳당 392.4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충북 360.4마리, 충남 344.5마리 순이다. 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2021년부터 2023까지 3년 동안의 연평균 사육 마릿수 역시 경기가 494.0마리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충북 471.8마리, 전남 436.5마리이다. 모든 지역에서 현재 사육 마릿수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의 연평균 사육 마릿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범위는 최소 15.30마리(울산)에서 최대 308.7마리(부산)로 나타난다. 개사육농장의 운영기간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평균적으로 최소 14.8년에서 최대 23.6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농장의 면적에 관해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세종의 개사육농장의 평균 실사육면적은 221.9㎡인 데 비해 울산은 평균 666.4㎡로

세 배 넘게 차이가 난다. 농장 총면적에서는 지역별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한다. 대전에 있는 농장은 평균 3,811.5㎡로 가장 작은 세종(743.2㎡)에 위치한 농장에 비해 다섯 배 이상 넓다. 한편, 서울은 개사육농장 신고 건수가 모두 0으로 현재 서울에서 운영하는 개사육농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67〉 개사육 농장업 세부 통계

(단위: 개소, 년, 마리, ㎡)

개사육농장업							
구분	신고 수	폐업 예정 수	운영기간	현재 사육 마리수	연평균 사육 마리수	실사육면적	농장 총면적
계(평균)	1,537	883	17.8	237.1	334.5	394.6	2037.2
서울	-	-	-	-	-	-	-
부산	9	7	15.4	83.2	391.9	351.4	2,062.2
대구	18	11	17.7	226.7	254.8	261.9	1,897.4
인천	35	15	19.3	124.5	384.9	307.4	2,281.8
광주	9	9	14.8	74.9	131.1	322.1	897.2
대전	19	15	15.9	197.7	289.2	346.7	3,811.5
울산	10	6	17.8	152.5	167.8	666.4	1,309.8
세종	12	11	23.6	195.1	212.6	221.9	743.2
경기	313	183	16.9	392.4	494.0	480.3	2,408.9
강원	87	55	17.1	341.1	378.9	558.1	1,718.4
충북	196	113	15.5	360.4	471.8	456.7	2,841.6
충남	168	109	18.8	344.5	409.6	419.1	2,248.9
전북	127	78	20.8	342.6	427.7	448.4	2,418.4
전남	135	62	18.4	311.5	436.5	591.6	1,967.6
경북	255	118	16.9	235.6	319.8	335.4	1,846.3
경남	102	54	20.0	85.2	193.7	232.2	1,335.1
제주	42	37	15.3	326.2	387.0	313.8	2,807.0

- 주: 1. "신고 수", "폐업 예정 수"는 행정구역별 전체 수를 의미하며 이외에 값은 행정구역별 평균값을 의미함  
 2. 폐업 예정 수는 전업 및 폐업 예정일자를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한 값임  
 3. "운영기간", "현재 사육 마리수", "연평균 사육 마리수", "실사육면적", "농장 총면적"에서 "계(평균)"에 기재된 수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산술평균값임

자료: 업계(농장주, 도축상인,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2024년 11월 중순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2024년 9월)이 발표됨에 따라 2025년 2월까지 이행계획서는 수정될 수 있음

개식용 도축업의 신고 현황은 개사육농장과 비슷하다. 17개 시도에서 도축업을 운영하지 않는 네 개 시도는 서울, 대전, 광주, 세종이다. 다른 13개 시도에서 221개소의 도축장이 신고 접수를 하였고 이들 중 87.8%인 194개소가 폐업 예정 업소에 해당한다. 신고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40개소의 도축장이 신고했으며 경북에서는 28개소, 충남과 경남에서 각각 26개소의 도축장이 신고를 마쳤다. 운영기간은 전남의 도축장들이 평균 23.8년으로 오래되었다. 한편, 전북의 도축장들은 연평균 3,235.8마리를 도축하고 연평균 76,901.0kg을 거래하여 전체 시도 중 가장 큰 규모로 개식용 도축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대 거래 규모와 대조적으로 개고기의 kg당 판매가격은 평균 8,840.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평균 도축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지역은 강원으로 도축당 한 곳에서 연평균 2,275.7마리를 도축한다. 연평균 거래량이 전북 다음으로 많은 곳은 부산(61,561.9kg)과 강원(56,914.3kg) 순이다. 개식용 도축장의 평균 면적이 제일 넓은 지역은 528.8㎡인 강원, 제일 좁은 지역은 30.7㎡인 울산이다.

〈표 II-68〉 개식용 도축업 세부 통계

(단위: 개소, 년, 마리, kg, 원, ㎡)

개식용 도축업							
구분	신고 수	폐업 예정 수	운영기간	연평균 도축 마릿수	연평균 거래량	kg당 판매가격	영업소 면적
계(평균)	221	194	17.0	1,124.8	31,981.41	13,713.8	213.8
서울	-	-	-	-	-	-	-
부산	14	11	21.3	1,371.4	61,561.9	16,595.7	437.3
대구	6	6	12.2	682.8	15,682.5	14,250.0	57.7
인천	10	10	13.5	1,171.2	35,044.5	13,877.8	185.7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16	16	19.8	894.6	24,890.6	13,081.3	30.7
세종	-	-	-	-	-	-	-
경기	40	38	14.1	1,402.9	44,832.9	12,914.5	92.3
강원	7	4	15.7	2,275.7	56,914.3	14,371.4	528.8
충북	8	7	16.3	480.0	16,058.6	14,041.6	109.0
충남	26	21	16.1	621.2	16,613.6	17,206.2	96.9
전북	19	17	19.9	3,235.8	76,901.0	8,840.3	135.7
전남	10	9	23.8	763.0	12,977.8	12,611.1	377.2

〈표 II-68〉의 계속

(단위: 개소, 년, 마리, kg, 원, m<sup>2</sup>)

개식용 도축업							
구분	신고 수	폐업 예정 수	운영기간	연평균 도축마릿수	연평균 거래량	kg당 판매가격	영업소 면적
경북	28	21	18.4	754.0	22,661.1	11,901.8	417.0
경남	26	23	22.0	478.1	14,514.8	14,769.2	162.1
제주	11	11	8.5	491.1	17,104.7	13,818.2	149.4

- 주: 1. “신고 수”, “폐업 예정 수”는 행정구역별 전체 수를 의미하며 이외에 값은 행정구역별 평균값을 의미함  
 2. 폐업 예정 수는 전업 및 폐업 예정일자를 밝히지 않은 건을 제외한 값임  
 3. “운영기간”, “연평균 도축 마릿수”, “연평균 거래량”, “kg당 판매가격”, “영업소 면적”에서 “계(평균)”에 기재된 수는 서울, 광주, 대전,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산술평균값임

자료: 업계(농장주, 도축상인,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2024년 11월 중순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2024년 9월)이 발표됨에 따라 2025년 2월까지 이행계획서는 수정될 수 있음

지자체에 신고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 유통업소는 총 1,788개소이다. 이 중 약 20.4%인 365개소가 폐업 예정 수에 포함되는데 앞선 두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별로 신고 수는 경기도가 391개소, 충남이 257개소, 경남이 178개소 순으로 많다. 제주(9.6년)와 경기(12.4년)를 제외하면 모든 시도의 개식용 유통업소는 평균적으로 최소 16년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평균 거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경북의 유통업소들로 평균 17,338.9kg의 개고기를 거래한다. 다음으로 전북이 15,626.3kg, 제주가 14,186.3kg으로 거래량이 많다. 반대로 거래량이 제일 낮은 지역은 세종(1,004.5kg)인데 이는 경북의 평균 거래량의 약 5.8%에 불과하다. kg당 판매가격은 경기 지역이 평균 80,861.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8,894.4원으로 가장 낮은 광주의 kg당 판매가격보다 약 9.1배 더 비싸다. 유통업소 면적은 서울이 30.2m<sup>2</sup>로 평균 면적이 가장 작고 전남이 317.0m<sup>2</sup>로 가장 크다.

〈표 II-69〉 개식용 유통업 세부 통계

(단위: 개소, 년, kg, 원, m<sup>2</sup>)

개식용 유통업						
구분	신고 수	폐업 예정 수	운영기간	연평균 거래량	kg당 판매가격	영업소 면적
계(평균)	1,788	365	18.2	7,471.6	30453.1	90.2
서울	176	22	17.7	2,788.8	30,943.9	30.2
부산	107	16	18.2	8,587.0	26,355.0	74.8
대구	35	6	19.3	5,784.8	24,561.1	30.8

〈표 II-69〉의 계속

(단위: 개소, 년, kg, 원, m<sup>2</sup>)

개식용 유통업						
구분	신고 수	폐업 예정 수	운영기간	연평균 거래량	kg당 판매가격	영업소 면적
인천	56	11	19.9	2,030.3	21,762.5	29.6
광주	7	2	19.4	7,432.5	8,894.4	24.0
대전	17	11	16.1	8,566.6	21,352.9	96.9
울산	38	16	18.1	9,481.4	17,200.4	46.1
세종	18	1	27.6	1,004.5	23,127.8	36.3
경기	391	78	12.4	11,959.5	80,861.3	123.0
강원	77	10	17.4	2,763.1	28,845.3	52.9
충북	117	17	19.1	10,412.9	45,909.9	268.9
충남	257	24	18.0	2,923.1	29,574.3	56.2
전북	87	29	19.6	15,626.3	18,090.7	94.8
전남	46	11	20.4	3,753.5	62,261.4	317.0
경북	165	48	18.7	17,338.9	32,192.7	149.1
경남	178	50	18.4	2,377.7	32,081.7	58.8
제주	16	13	9.6	14,186.3	13,687.5	44.4

주: 1. "신고 수", "폐업 예정 수"는 행정구역별 전체 수를 의미하며 이외에 같은 행정구역별 평균값을 의미함  
 2. 폐업 예정 수는 전업 및 폐업 예정일자를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한 값임  
 3. "운영기간", "연평균 거래량", "kg당 판매가격", "영업소 면적"에서 "계(평균)"에 기재된 수는 17개 시도의 산술평균값임  
 자료: 업계(농장주, 도축상인,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2024년 11월 중순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2024년 9월)이 발표됨에 따라 2025년 2월까지 이행계획서는 수정될 수 있음

개식용 식품접객업은 네 개의 업종 중 가장 많은 2,352개소의 영업소가 신고했다. 폐업 예정 수에 해당하는 곳은 451개소로 전체 신고 업소 중 19.2%이다. 신고한 식품업소는 경기도에 599개소로 가장 많이 있으며 서울에 303개소, 충남에 270개소가 위치한다. 17개 시도의 식품접객업장의 전체 평균 운영기간은 16.5년이다. 경기도의 개식용 업소는 한 해 평균 7,019.5kg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소비된다. 그러나 이는 식품업소의 개수와 관련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경우 47개의 업소가 운영하여 다른 지역 대비 적은 편인데 연평균 개고기 사용량은 5,783.7kg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이다. 매출과 관련하여 세종과 경기를 포함한 특별시, 광역시의 업소가 연평균 매출액이 다른 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1억 2,114만원으로 가장 낮은 강원도의 5,242만원의 약 2.3배이다.

〈표 11-70〉 개식용 식품접객업 세부 통계

(단위: 개소, 년, kg, 원)

개식용 식품접객업					
구분	신고 수	폐업 예정 수	운영기간	연평균 개고기 사용량	개고기 조리음식 연평균 매출액
계(평균)	2,352	451	16.5	3,867.3	101,086,108.9
서울	303	54	15.5	3,422.8	117,813,597.6
부산	101	41	17.0	5,294.7	109,055,129.9
대구	47	14	17.3	5,346.8	158,100,249.1
인천	115	14	15.4	3,217.9	103,249,101.7
광주	14	3	15.0	3,616.5	110,144,387.3
대전	45	9	16.3	4,410.6	107,679,084.6
울산	47	17	14.5	4,254.1	101,577,255.9
세종	15	3	19.5	2,697.9	111,622,025.1
경기	599	106	13.5	7,019.5	121,139,605.8
강원	144	24	15.9	3,327.5	52,419,108.8
충북	110	2	15.7	2,246.6	92,478,152.0
충남	270	39	15.2	4,260.3	96,387,934.0
전북	97	10	19.6	3,348.5	93,606,135.3
전남	96	6	17.9	2,708.5	80,420,182.1
경북	146	56	18.1	4,205.5	86,670,472.9
경남	156	43	18.9	2,282.5	83,773,285.6
제주	47	10	14.7	5,783.7	92,328,143.9

주: 1. “신고 수”, “폐업 예정 수”는 행정구역별 전체 수를 의미하며 이외에 값은 행정구역별 평균값을 의미함  
 2. 폐업 예정 수는 전업 및 폐업 예정일자를 밝히지 않은 건을 제외한 값임  
 3. “운영기간”, “연평균 개고기 사용량”, “개고기 조리음식 연평균 매출액”에서 “계(평균)”에 기재된 수는 17개 시도의 산술평균 값임

자료: 업계(농장주, 도축상인,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2024년 11월 중순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2024년 9월)이 발표됨에 따라 2025년 2월까지 이행계획서는 수정될 수 있음

## 라. 구조 및 보호 동물 관리 시설 현황

### 1) 잔여견 발생 가능성 검토

유예기간 내에 개사육농장주들이 폐업·전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축되지 않는 잔여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정 시기에 집중된 폐업·전업 예정일, 개고기 소비량의 감

소, 도축장 운영 중단, 잔여건 유기 등의 요인이 잔여건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2024. 6. 20. 기준)」에 따르면, 개사육 농가의 폐업·전업 이행 일자는 유예기간의 종료 시점인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에 편중되어 있다. 육견 농가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빠른 폐업·전업의 이행보다 유예기간 내에 개 사육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98개의 농가 중 신고 수리 사육두수를 작성한 166개의 농가에 대해, 약 70%의 농가들이 2026년 이후에 폐업 또는 전업을 계획하며 이들이 사육하는 마릿수는 전체의 87.4%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처의 3차 및 4차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 다르게 1구간에 집중적으로 폐업 또는 전업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가 예비비가 편성되었다.

한편, 유예기간 초중반에도 잔여건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개식용 수요의 감소 또는 도축장 중단 사례 등으로 도축 규모가 줄어들어 식용견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잔여건이 기존 전망보다 많을 수 있다. 또한 농장주들의 잔여건 유기나 소유권 포기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유예기간 이후에도 잔여건 처리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단, 정부의 지원 규모가 육견 농가의 폐업·전업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2) 동물보호·관리 현황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발표하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센터 운영, 구조 동물의 구조 및 보호와 보호·관리 형태, 정부 및 지자체의 동물 보호·복지 관련 업무 및 세부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2023년 기준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한 동물보호센터는 22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동물병원과 같은 민간 위탁 중심의 동물보호센터는 68.9%(157개소)이며, 시 또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는 31.1%(71개소)이다. 같은 기간 운영인력은 총 984명, 운영비용은 373.9억원, 평균 보호기간은 27.8일이다.

〈표 II-71〉 동물보호센터 현황

(단위: 개소, %, 명, 억원, 일)

구분	운영형태(시설 기준)					운영현황					
	지자체 직영		민간 위탁		합계	증감 (전년비)	운영 인력	증감 (전년비)	운영 비용	증감 (전년비)	평균보호 기간
	개	비율	개	비율							
2021	57	22.4	198	77.6	255	-	933	-	297.4	-	24
2022	64	26.8	175	73.2	239	△6.3	893	△4.3	294.8	△0.9	26
2023	71	31.1	157	68.9	228	△4.8	984	10.2	373.9	26.8	27.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으로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은 총 11만 3,072마리이며 2014년부터 연평균 1.7% 규모로 증가했다. 2014년 이후 개는 매년 구조되거나 보호받는 유실 또는 유기동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표 II-72〉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2014~2023년)

(단위: 마리, %)

구분	개		고양이		기타		합계	
	마릿수	비중	마릿수	비중	마릿수	비중	마릿수	비중
2014	59,180	72.9	20,966	25.8	1,001	1.2	81,147	100.0
2015	59,633	72.7	21,299	25.9	1,150	1.4	82,082	100.0
2016	63,602	70.9	24,912	27.8	1,218	1.4	89,732	100.0
2017	74,337	72.5	27,083	26.4	1,173	1.1	102,593	100.0
2018	91,797	75.8	28,090	23.2	1,190	1.0	121,077	100.0
2019	102,363	75.4	31,946	23.5	1,482	1.1	135,791	100.0
2020	95,261	73.1	33,572	25.7	1,568	1.2	130,401	100.0
2021	84,723	71.6	32,098	27.1	1,452	1.2	118,273	100.0
2022	80,393	70.9	31,525	27.8	1,522	1.3	113,440	100.0
2023	80,467	71.2	30,889	27.3	1,716	1.5	113,072	100.0
연평균 증가율	3.5		4.4		6.2		3.8	

주: 기타 동물은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구조 동물은 반환, 입양, 기증, 자연사, 인도적 처리, 보호 중 등으로 보호·관리받는다. 2023년 기준 자연사(27.6%), 입양(24.2%), 인도적 처리(안락사)(18.0%), 보호중(13.3%),

반환(12.1%), 기증(2.9%) 순으로 보호·관리가 이루어졌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 기증이 16.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보호중(10.6%), 반환(2.9%), 자연사(5.9%), 인도적 처리(1.1%), 입양(0.8%) 순이다.

〈표 II-73〉 보호·관리 형태별 구조 동물 수(2014~2023년)

(단위: 마리, %)

구분	반환	입양	기증	자연사	인도적 처리	보호중	기타	합계
2014	10,581	25,517	821	18,701	18,436	6,094	997	81,147
2015	12,012	26,233	965	18,633	16,421	6,425	1,393	82,082
2016	13,678	27,320	1,433	22,452	17,824	5,575	1,450	89,732
2017	14,914	30,945	1,969	27,844	20,768	4,623	1,530	102,593
2018	15,745	33,422	2,192	28,890	24,509	14,178	2,141	121,077
2019	16,407	35,826	1,925	33,660	29,620	15,960	2,393	135,791
2020	14,841	38,595	1,510	32,674	27,062	13,548	2,171	130,401
2021	14,111	37,988	1,404	30,529	18,604	13,910	1,727	118,273
2022	14,031	31,182	2,375	30,490	19,043	14,157	2,162	113,440
2023	13,628	27,343	3,318	31,238	20,346	15,093	2,106	113,072
연평균 증가율	2.9	0.8	16.8	5.9	1.1	10.6	8.7	3.8

주: 기타 형태는 포획 불가와 방사(예: 고양이) 등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정부 및 지자체는 동물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를 부여한다. 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 여러 직무를 수행한다. 동물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부터 동물학대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 조치,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도살방법 지도,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 관리 및 감독, 맹견 관리, 보호동물 관리와 감독, 동물보호센터와 동물장묘시설 감독,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위생 관련 조치, 보고 및 관련 명령 이행 여부 확인, 명예 동물보호관 지도,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까지 동물보호와 관리의 전 영역에 걸친 중요한 직무가 주어진다. 동물보호관의 구체적인 직무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동물보호관과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구청장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 및 계몽 등을 위해서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을 규정한다.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네 가지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지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동물보호관 직무 수행 지원이다. 2023년에 직전 연도보다 9명(1.2%) 감소한 765명이 동물보호관으로 지정되었고 이와 반대로 명예동물보호관은 직전 연도보다 38명(5.8%) 증가한 644명이 위촉되었다. 두 직책의 인원은 각각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연평균 12.8%, 14.2%씩 증가했다.

〈표 II-74〉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현황(2016~2023년)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동물보호관	328	322	375	408	413	759	774	765	12.8
명예동물보호관	253	295	351	392	517	573	606	644	14.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두 직책의 전체 업무 실적과 활동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2023년 기준으로 동물보호관의 「동물보호법」 위반 처분 실적은 전체 1,146건으로 전년 대비 35건이 줄었으나 2016년 이후 연평균 13.3%씩 증가했다. 세부항목별 실적으로 동물관리 미이행(732건)이 가장 많으며 동물 미등록(81건), 동물 학대(45건), 미등록·미신고·무허가 영업(36건)과 유기(36건) 순으로 뒤따른다.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은 2023년 기준 4,068건으로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19.4%씩 늘어났다. 세부적인 활동은 교육·홍보/상담·지도(2,358건), 보호관 직무 수행 지원(1,285건),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332건), 동물 학대 행위 신고·정보 제공(93건) 순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표 II-75〉 지자체 동물보호관 처분 실적 현황(2016~2023년)

(단위: 건, %)

구분	동물 미등록	동물관리 미이행 <sup>1)</sup>	미등록·미신고· 무허가 영업	동물 학대	유기	기타 <sup>2)</sup>	합계
2016	249	122	58	19	6	23	477
2017	190	189	14	10	8	30	441
2018	131	284	59	28	15	32	549

〈표 II-75〉의 계속

(단위: 건, %)

구분	동물 미등록	동물관리 미이행 <sup>1)</sup>	미등록·미신고· 무허가 영업	동물 학대	유기	기타 <sup>2)</sup>	합계
2019	94	460	119	30	21	84	808
2020	149	609	76	40	20	89	983
2021	125	707	56	63	20	103	1,074
2022	189	718	48	36	24	166	1,181
2023	81	732	36	45	36	216	1,146
연평균 증가율	△14.8	29.2	△6.6	13.1	29.2	37.7	13.3

주: 1) 동물관리 미이행 관련 사항은 ① (맹견) 사람 신체상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남,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 아니함, 소유자 교육 미수료, 소유자 보험 미가입, 출입 금지지역 출입 등, ② (등록 대상 동물) 사람 신체상해, 신고기간 내 분실·변경 미신고, 소유권 이전 미신고, 인식표 미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배설물 비수거 등임

2) 기타는 영업자 기준 미준수 등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표 II-76〉 지자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현황(2016~2023년)

(단위: 건, %)

구분	교육·홍보/ 상담·지도	동물 학대 행위 신고·정보 제공	보호관 직무 수행 지원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합계
2016	723	24	343	87	1,177
2017	691	22	419	94	1,226
2018	2,505	30	630	225	3,390
2019	4,679	22	893	332	5,926
2020	1,920	77	809	93	2,899
2021	1,661	213	971	86	2,931
2022	2,045	98	996	99	3,238
2023	2,358	93	1,285	332	4,068
연평균 증가율	18.4	21.3	20.8	21.1	19.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마. 개식용 관련 여론 현황

본 소절에서는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지원 사업과 관련된 여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와 개식용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로드맵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파악한다.

## 1) 동물복지·개식용 관련 국민 인식 현황

동물복지 및 개식용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실시하였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살펴보았다.<sup>27)</sup> 먼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설문지 응답자들은 동물의 법적 지위 마련, 기본적인 관리 제공 의무화 그리고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 및 권리 박탈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물에게 기본적인 관리 제공을 의무화하는 데 동의한 비율은 91.1%(22년)에서 89.3%(23년)에 달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응답자들은 ‘처벌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이는 43.7%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동물 소유권 제한(17.0%), 교육 및 캠페인 확대(11.2%), 그리고 신고 체계 및 대응 방안 개선(11.1%)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되었다.

동물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4점 만점에 평균 3.55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긍정 응답률은 96.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여성이 97.9%의 동의율을 보이며, 남성(94.4%)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응답자 전원이 동의(100%)했으며, 동의율이 가장 낮게 나온 경상남도에서도 실상 동의율이 93.1%를 기록해 모든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르는 동물의 종류에 따른 동의율은 개를 키우는 응답자가 97.4%로 가장 높았으며, 반려동물 6종 외 동물(95.6%), 고양이(95.3%), 그리고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반려동물 4종(8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다수가 해당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해당 동물을 다시는 사육할 수 없도록 정부가 소유권을 박탈하는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96%에서 98%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의 사육 행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6.2%에서 99%에 달하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

---

27)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매년 실시하나 그 결과가 5~6월경에 공개되어 2024년 결과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음. 또한, 해당 설문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조사이며, 국가승인통계는 아니기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과, 동의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3.38점을 기록했으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94.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동의율이 96.6%로 남성(91.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도시 지역의 동의율이 94.1%, 농어촌 지역이 94.3%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광역시(98.2%), 경상북도(97.9%), 강원도(96.9%)에서 동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북도(87.7%)와 울산광역시(88.9%)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동물 양육자의 동의율은 95.8%, 비양육자의 동의율은 93.1%로 조사되었다. 직업군별로는 판매/영업/서비스직(96.2%)과 가사노동 직업군(98.6%)이 높은 동의율을 보였으며, 생산/기능/노무직(91.2%)과 학생(92.9%)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9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2년간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볼 때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무척이나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77〉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2022	2023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의무화 정도	매우 동의한다	45.5	25.1
	동의하는 편이다	45.6	64.2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7.4	9.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7	1.0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처벌 강화	-	43.7
	동물 소유권 제한	-	17.0
	신고/대응 체계 개선	-	11.1
	교육/캠페인 확대	-	11.2
	동물보호 행정력 강화	-	5.5
	전문 수사 인력 확충	-	5.9
	학대자 심리 치료 의무화	-	5.8
동물학대자 피학대 동물 소유권 박탈 동의 정도	매우 동의한다	73.9	40.2
	동의하는 편이다	24.1	55.8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8	4.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3	0.8

〈표 11-77〉의 계속

(단위: %)

구분		2022	2023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에 대한 동의 정도	매우 동의한다	76.6	59.1
	동의하는 편이다	22.4	37.1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0.9	3.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2	0.4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 명시 동의 정도	매우 동의한다	60.2	44.8
	동의하는 편이다	34.1	49.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6	4.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	1.3

자료: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2022,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아울러 개 식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먹을 의향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 식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정서적인 거부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섭취한 경험이 없는 비율은 94.2%(22년)~94.5%(23년)로, 거의 대부분 섭취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향후 개고기를 섭취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1년 사이 88.6%(22년)에서 93.4%(23년)로 4.8%p 증가하였다.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로는 정서적 거부감이 53.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육 및 도살 과정의 잔혹성(18.4%), 비위생적인 생산 및 유통 과정(8.8%), 사회적 비난(7.1%)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0대가 7.3%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97.6%, 남성의 91.4%가 먹은 적 없다고 응답해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도시 지역 응답자의 94.9%, 농어촌 응답자의 91.6%가 먹은 적 없다고 답해 지역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응답자는 95.0%, 기르지 않는 응답자는 94.1%가 먹은 적 없다고 응답하여 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차이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직업군별로는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 중 12.4%가 취식 경험이 있다고 답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6.7%가 먹은 적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직업군의 응답자 비율(25.5%)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 성별, 지역, 직업군에 따라 개고기 취식 경험이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개고기 섭취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육, 도살, 판매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했으며 정부의 관리 및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개고기의 판매 및 취급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2022년 40.5%에서 2023년 56.5%로 16%p 증가하였다. 아울러 개 식용 목적으로 한 사육·도살·판매 행위 금지에 대한 동의는 2022년 72.8%에서 2023년 82.4%로 9.6%p 증가했다. 한편 도살 및 판매 행위 금지가 가져올 효과로 학대받는 개들이 감소할 것이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표 II-78〉 개 식용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지난 1년간 개고기 취식 경험	있다	5.8	5.5
	없다	94.2	94.5
개고기 미취식 이유	정서적 거부감	-	53.5
	사육/도살 과정이 잔인	-	18.4
	비위생적 생산·유통 과정	-	8.8
	사회의 부정적 시선	-	7.1
	맛이 없어서	-	5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	3.9
향후 개고기 취식 의향	있다	11.4	6.6
	없다	88.6	93.4
식품위생법상 개고기 판매·취급 불가 인지 정도	잘 알고 있다	11.1	17.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4	39.4
	들어본 적 있다	23.8	24.3
	전혀 들어본 적 없다	35.8	19.4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판매 행위 금지 찬성 정도	매우 그렇다	42	45.5
	그렇다	30.8	36.9
	그렇지 않다	21.3	14
	전혀 그렇지 않다	6	3.7
개 식용 목적 도살·판매 행위 금지 효과에 대한 견해	고통받는 개 감소	-	60.9
	동물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	57.2
	개 식용 관련 사회적 갈등 축소	-	45.3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 개선	-	39.8
	공중보건에 도움	-	22.3

〈표 II-78〉의 계속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개 식용 산업 대상 정부 현행법 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견해	매우 그렇다	50.7	-
	그렇다	42.8	-
	그렇지 않다	4.9	-
	전혀 그렇지 않다	1.6	-

자료: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2022,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개고기 섭취 경험과 의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개고기 판매 및 취급 금지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섭취한 경험은 60대가 7.3%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6.3%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취식 경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다만 20대가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로 정서적 거부감은 50대가 6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20~40대는 사육 및 도살 과정의 잔혹성이나 비위생적인 생산·유통 과정을 이유로 든 비중이 더 높았다. 사회적 부정적 시선의 영향을 받는 비율은 60대가 10.3%로 가장 높았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없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는데 다만 20대는 이 경향에서 벗어나 예외적인 결과를 보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고기 판매 및 취급 금지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관련 내용을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판매 행위 금지가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0대가 가장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반면, 개 식용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에 대한 효과는 6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 식용 산업에 대한 정부의 현행법 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20~40대의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중이 50~60대보다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일수록 강력한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 식용 산업과 관련해 정부가 현행 법률을 철저히 집행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3.5%로 나타났다.

〈표 II-79〉 연령별 개 식용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난 1년간 개고기 취식 경험	있다	6.3	2.8	5.6	5.5	7.3
	없다	93.8	97.2	94.4	94.5	92.7
개고기 미취식 이유	정서적 거부감	46	47.7	51.5	60.5	58.8
	사육/도살 과정이 잔인	20	17.8	21.5	16.3	16.9
	비위생적 생산·유통 과정	9.5	11.8	10.9	6.3	6.3
	사회의 부정적 시선	6.7	6	5.2	7.4	10.3
	맛이 없어서	10.5	8.6	4	2.5	1.1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3.8	5.5	4.2	3.6	2.4
향후 개고기 취식 의향	있다	7.1	5	5.1	6.4	9.3
	없다	92.9	95	94.9	93.6	90.7
식품위생법상 개고기 판매·취급 불가 인지 정도	잘 알고 있다	16.7	15.6	15.4	17.5	19.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3.9	38.8	40.2	39.9	42.8
	들어본 적 있다	24.4	22.1	25.9	26.2	22
	전혀 들어본 적 없다	25	23.5	18.5	16.4	15.4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판매 행위 금지 찬성 정도	매우 그렇다	42.9	39.7	49.8	46.7	46.7
	그렇다	34.8	42.7	33.4	38	35.7
	그렇지 않다	17	13.4	13.6	12.6	14.2
	전혀 그렇지 않다	5.4	4.2	3.3	2.8	3.4
개 식용 목적 도살·판매 행위 금지 효과에 대한 견해	고통받는 개 감소	60.5	64.4	62.4	56.7	61.7
	동물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49.4	49.5	57	64.5	61.4
	개 식용 관련 사회적 갈등 축소	41.8	48.5	44.1	41.6	51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 개선	38.3	32.5	39.9	41.1	45.7
	공중보건에 도움	21.1	25.4	23.6	20.4	21.4
개 식용 산업 대상 정부 현행법 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견해	매우 그렇다	51.4	56.6	53	48.4	44.9
	그렇다	42	38.9	42.4	43	47.2
	그렇지 않다	4.9	3.4	3	6.5	6.6
	전혀 그렇지 않다	1.7	1.1	1.6	2.2	1.3

자료: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2022,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한편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n=111)를 대상으로 취식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20.7%)와 ‘맛이 기호에 맞아서’(20.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가족, 친구 등의 권유로’(18.9%), ‘늘 먹던 음식이어서’(17.1%), ‘회식 등 관계 유지를 위하여’(16.2%), ‘호기심 때문에’(4.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식, 모임 등 관계 유지’와 ‘타인의 권유’를 합산하면 35.1%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1순위 응답 기준). 연령별로 살펴보면, ‘회식 등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하여’라는 응답은 50대에서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는 60대(30%)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호기심 때문에’라는 응답은 20대에서 9.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회식 등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하여’라는 응답은 도시 지역(17.6%)에서 농어촌 지역(10.0%)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가족/친구/동료 등의 권유로’라는 응답은 농어촌 지역(35.0%)이 도시 지역(15.4%)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결과는 개고기 취식이 개인적인 기호 외에도 사회적 관계 유지나 타인의 권유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취식 이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 비율이 93.4%로 나타나 전년도(88.6%)에 비해 4.8%p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에서 9.3%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에서는 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10.1%가 ‘먹을 의향이 있다’고 답해 여성(3.0%)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 규모별로는 도시 지역 응답자의 93.8%, 농어촌 응답자의 90.3%가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도시(88.7%)와 농어촌(87.6%)의 비율에 비해 각각 5.1%p, 2.7%p 증가한 수치다.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응답자의 94.7%와 기르지 않는 응답자의 92.7%가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2) 관련 법령 및 로드맵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여론

2023년 6월 대한육견협회는 업계 종사자와 소비자가 고령화되고 개 식용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개 식용 종식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리당 일정 금액의 보상금, 도축 및 유통업체에는 생계안정자금, 음식점에는 전업을 위한 비용 보조 등을 요구하였다.

2023년 9월 20일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과 여론 조사기관 닐슨아이큐코리아가 함께 진행한 ‘2023 개고기 소비 및 태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86.3%는 과거 개 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개 식용이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응답자의 57%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에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의 65%는 개 식용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종식 시기를 ‘2년 이내가 적당하다’고 답했다.<sup>28)</sup>”

그리고 지난 2024년 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sup>29)</sup> 다만, 의결된 법안에는 전업 및 폐업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상, 기준, 절차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법 제정과 관련해 “자본주의 국가에서 종사자들의 직업과 재산을 빼앗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탈하는 의회 폭력이자 만행”이라며 “영업 손실에 대한 기본적인 생계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국회 입법이 돼 종사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규탄<sup>30)</sup>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고 2개월 반이 지난 2024년 3월 26일,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협회 소속 50여 명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육 농가와 유통업자, 소비자를 각각 대표해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sup>31)</sup>했다. 육견협회는 당시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을 침탈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해당 법으로 인해 개 식용 관련 산업 기반이 붕괴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육견협회는 사전 논의와 명확한 보상 기준 없이 법안을 제정한 점 그리고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8) 김지숙 기자, 「국민 57% ‘개 식용 금지법 찬성’…2년 내 종식 적당 의견도 65%」, 한겨레, 2023. 9. 20.,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109313.html](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109313.html), 검색일자: 2025. 1. 20.

29)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1. 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616>, 검색일자: 2025. 1. 20.

30) 광소영 기자, 「2027년부터 개고기 사라진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서울신문, 2024. 1. 9.,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4/01/09/20240109500192>, 검색일자: 2025. 1. 20.

31) 최원정 기자, 「육견협회 “개식용 금지법”이 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연합뉴스, 2024. 3. 26.,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6085800004>, 검색일자: 2025. 1. 20.

이와는 반대로 2024년 6월 여러 동물보호 단체들이 연대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합헌성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에도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상 축산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어, 대한육견협회의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3년간의 유예기간과 전업 및 폐업 지원이 제공되므로 이 법이 재산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sup>32)</sup>을 밝혔다.

그러던 2024년 9월에 이르러 정부가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아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 26일 ‘개식용 종식 로드맵<sup>33)</sup>’을 발표하였으며, 이 로드맵은 업계의 전·폐업을 지원하고, 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한육견협회는 여전히 해당 계획에서 제시된 3년의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판매되는 개들 중 60%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팔리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보상안을 미루다가 지난 9월에서야 발표함으로써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였다.<sup>34)</sup> 이어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도축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이라며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sup>35)</sup>

---

32) 김지숙 기자, 「개식용 종식법이 행복추구권 침해? 육견협회 ‘위헌 주장’ 뜯어보니」, 한겨레, 2024. 6. 21.,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145673.html](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145673.html), 검색일자: 2025. 1. 20.

33)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농림축산식품부, 2024. 9. 26.,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MTcyOS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검색일자: 2025. 1. 20.

34) 조소현 기자, 「전국 식용견 47만마리...2년3개월 안에 ‘제로’ 만든다는 정부」, 더팩트, 2024. 11. 24., <https://news.tf.co.kr/read/life/2154190.htm>, 검색일자: 2025. 1. 20.

35) 조소현 기자, 「전국 식용견 47만마리...2년3개월 안에 ‘제로’ 만든다는 정부」, 더팩트, 2024. 11. 24., <https://news.tf.co.kr/read/life/2154190.htm>, 검색일자: 2025. 1. 20.

## 2. 유사사례 검토

### 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지원금

2019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은 양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가축 전염병이다. ASF 폐업지원 사업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2년간의 영업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0년 11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는 이 사업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제정하여, 지원 대상·기준·상한액 및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ASF 위험 지역 내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농가가 4년간 동일 가축을 재사육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역 내 ASF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 1) 지원대상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자발적으로 돼지 사육을 중단하려는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축산법」 제22조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상적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가축 사육업 등록을 마친 농가만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부임대(임차) 형태의 농가라도 임차인이 직접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폐업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음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해당 축사 및 토지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해 왔는지 여부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축사나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단순 명의 변경 등 사후 거래를 통해 지원금을 노리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원대상 가축인 돼지를 실제로 사육한 이력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되기 직전 1년 이상 돼지를 기르지 않았거나, 이미 축사를 철거·폐

기하고 사실상 사육을 중단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ASF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현재까지' 사육을 해왔던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이미 이전에 폐업을 결정하거나 축사를 없앤 경우에는 지원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지원 정책은 부분 폐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농가가 보유한 여러 동의 축사 중 일부만 철거 또는 폐기하고, 나머지에서 계속 돼지를 사육하는 형태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방역 관점에서 '온전한 폐업'을 통해 ASF 위험 요인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는 방침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전부 폐업(전체 축사 철거·용도 변경)을 신청해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특이사항 중 하나는 임차농에 관한 규정으로, 본인이 소유한 축사가 아닌 타인의 축사를 빌려 사육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 허가·등록이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고, 임대인(소유자)의 폐업 동의를 충족된다면 각 지자체의 판단과 사업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도 세부 해석이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업 취지에 맞게 동일 축사·동일 가축으로 추후 재사육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유권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제한 요건으로는 타 법령에 따른 보상이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즉 FTA 폐업지원 등 다른 국가사업으로 폐업보상을 확정받은 상황이면 중복 보상이 불가능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해 보조금·용자금을 지원받은 후 아직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지원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용자를 전액 상환하여 해당 의무를 해소한다면 다시 지원대상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농가라고 해도, 폐업신고와 함께 축사를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하며, 4년간 동일 축종을 재사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4, 농림축산식품부의 「폐업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에 규정된 내용으로, 만약 4년 이내에 돼지 사육을 재개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사후관리는 ASF 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최소화하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여 다시 돼지를 사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 2) 지원 내용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양돈농가가 자발적으로 폐업하고자 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농가가 최근 1년간 실제로 돼지를 출하·판매한 마릿수와 마리당 순수익액을 기반으로 2년치 영업손실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유형별 기준(일관사육, 번식전문, 비육전문, 종돈장, 돼지인공수정센터 등)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마리당 순수익 단가가 책정되고, 해당 농가의 1년간 출하실적을 그 단가에 곱한 뒤, 최종적으로 2년분을 보상하는 형태다.

이때 연간 출하 마릿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업공고 시 공지된 기준연도의 실제 출하 실적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축사 공사나 소유권이전, 위탁사육 변경, ASF 확산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에 출하 실적을 제대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에 기재된 축사 면적을 활용하여 마릿수를 환산할 수 있다.<sup>36)</sup> 아울러 ASF 발생이나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후보돈이나 자돈 수급에 차질이 생긴 농가 또한 이와 같은 면적 환산 방식을 적용받아, 피해로 인한 출하 감소분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리당 순수익액은 대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연도 직전 5년 중 최고치·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을 산출하여 결정한다. 다만 실제 사업공고 시에는 이미 각 사육 형태별로 확정된 단가가 공지되는 경우가 많아, 농가는 별도의 계산 없이 지자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sup>37)</sup> 한편 농장 내에서 ASF나 구제역이 방역 기준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역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축전염병 발생을 유발하거나 확산시킨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페널티를 부과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36) 예를 들어, 특정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법령·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실제 연간 사육 회전 수를 감안하여 출하 가능 두수를 추정하는 식임

37) 예컨대, 2022년 폐업지원금 고시에서는 일관사육 농가의 경우 마리당 59,016원, 번식전문 농가는 19,710원, 비육전문 농가는 39,306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또는 몇 년 주기로 재산정될 수 있음

〈표 II-80〉 폐업지원금 산출 방법

사육 형태		산출 공식
양돈농가	일관사육	연간 비육돈 출하 마릿수×비육돈 마리당 순수이익×2년
	번식전문	연간 자돈 출하 마릿수×자돈 마리당 순수이익×2년
	비육전문(자가)	연간 비육돈 출하 마릿수×비육돈 마리당 순수이익×2년
	비육전문(위탁)	연간 비육돈 위탁사육 마릿수×비육돈 마리당 순수이익×2년
종돈장	GGP	연간 총출하 마릿수×출하 마리당 순이익×2년
	GP	연간 총출하 마릿수×출하 마리당 순이익×2년
돼지인공수정(AI)센터		연간 총정액 판매 팩수×정액 1팩당 순이익×2년

주: 1. 출하 마릿수(판매 수량)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사육(생산)하여 출하한 마릿수(판매수량)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판매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함  
 2. 연간 마리당 순수이익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연도 직전 5년간의 마리당 순수이익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이익으로 마리당 순수이익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함  
 3. 양돈농가(번식, 비육), 종돈장, 돼지인공수정(AI)센터의 연간 마리당 순수이익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 11. 16.),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020-91호

이렇게 계산된 폐업지원금이 무제한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상한액을 설정해 두어 재정 부담을 균형 있게 관리한다. 지원 상한액 산정의 근거는 「축산법 시행령」 별로 정해진 마릿수 환산 기준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제시하는 사육 면적(2,880㎡)이다. 즉, 2,880㎡를 초과하는 대규모 양돈농가라 할지라도 2,880㎡ 상당의 사육두수·출하 마릿수까지만 지원금 계산에 반영받을 수 있고, 그보다 많은 규모를 사육했던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육 형태별로 사육 면적 대비 환산 마릿수와 마리당 순이익이 서로 다르기에 상한액 역시 사육 형태별로 상이한 금액이 책정된다.

### 3)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양돈농가가 자발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우선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 지원 대상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농가는 공고된 기간 안에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와 방역·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한다. 축사를 여러 곳에 걸쳐 소유하고 있어도, 면적이 가장 넓은 축사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지자체에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류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는 먼저 신청인의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소유권 유지 이

력, 경쟁력 제고 사업 지원 이력, 타 법령 중복 보상 여부 등을 검토한다. 특히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축사를 소유·운영해 왔는지, 해당 기간에 돼지를 정상적으로 사육·출하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사실관계가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 또는 현장조사위원회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축사 규모와 실제 사육 실태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위원회를 통한 재심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예산 규모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폐업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폐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다. 이후 시·도 단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자금 배정을 요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정 가능한 예산을 검토·조정하여 해당 시·도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 실제로 해당 연도에 지원할 농가를 확정짓고, 각 농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발송한다.

결정서를 받은 농가는 본격적으로 돼지 사육을 중단하고, 폐업을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두 도축장이나 가축시장, 중간상인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돼지를 처분하고, 철거하거나 용도 변경할 축사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일부 축사만 철거하는 부분 폐업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가축을 넘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축사를 철거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다면, 해당 사실과 분뇨 처리 등 방역조치 이행 결과를 지자체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지자체는 현장을 확인하여 가축 처분 및 축사 폐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종 검토를 진행한다.

최종 검토 결과 지급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농가가 제공한 계좌에 폐업지원금을 입금한다. 이때 지원 금액은 축종별 마리당 순수익액에 실제 출하 마릿수를 곱한 뒤 2년치로 환산해 산출하되, 2,880㎡ 기준으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액 대상(ASF·구제역 발생) 요건이 있으면 순수익액에 대해 일정 비율이 삭감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이러한 폐업지원금 지급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하며, 자금이 입금된 이후에도 농가는 4년간 동일 가축을 재사육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만약 이 기간 중 다시 양돈을 시작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다.

##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폐업지원

직접피해지원대책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피해를 당한 농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대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며, 주로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한·중국 FTA 발효를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제는 10년, 폐업지원제는 5년(2021년 종료)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농업 부문의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아래에서는 동 사업과 유사한 폐업지원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 1) 지원대상

폐업지원제의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둘째, 해당 품목을 생산해 온 농업인 등이 실제로 철거·폐기를 이행하고 일정한 자격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지원대상 품목은 기본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것 중, 재배·사육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크거나(유·무형 비용 포함), 2년 이상 장기간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품목들이 해당된다. 그 밖에도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별도의 사유로 폐업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품목은 모두 폐업지원제의 대상 품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실 재배 시설 투자비용이 매우 큰 과수나, 장기간 사육해야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축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II-81〉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연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2020	녹두, 밤	돼지고기	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
2021	귀리	품목 없음	청어
2022	품목 없음	품목 없음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2023	생강	품목 없음	품목 없음
2024	녹두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가리비, 전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각 연도

이와 같은 지원대상 품목을 이미 재배·사육하던 농업인 등이라도 누구나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해당 품목을 재배·사육해 온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여야 한다. 즉,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여 이미 관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 등만이 폐업지원제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하려는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면적 기준은 소규모로 산발적인 농업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적 농업활동을 하다가 폐업하게 된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폐업을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장·토지·입목 등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이나 자원을 철거·폐기한 사실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시·군·구에서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결국 폐업지원제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장기간·고비용 특성으로 인해 FTA 이행으로 경영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등이면서, 피해보전직불금 요건과 폐업 이행 절차까지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새롭게 다른 품목이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폐업지원제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2) 지원 내용

경종(과수·원예) 품목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배하던 면적과 최근 5년간의 평균 순이익을 고려하여, 약 3년간의 예상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책정한다. 관할 시·군·구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정된 재배면적에, 해당 작물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적용하여 3년치 수입을 보전함으로써, 이미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농가가 FTA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과수나 원예 작물의 경우 초기 투자와 재배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생산을 중단하는 데서 오는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다. 또, 농가는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작물을 재배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재배면적도 일정 기준(예: 1천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축산 분야는 축종별 특성에 맞춰 폐업지원금을 산정한다. 일반 축종(한우·돼지 등)은 실제 사육·출하 마릿수를, 낙농은 농가별 평균 납유량을, 산란계는 사육 마릿수를, 양봉은 봉군 수와 부산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며, 공통적으로는 최근 5년간의 마리(혹은 리터, kg)당 순수익액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값을 적용한다. 아래 표는 주요 축종별 계산 방식의 예시이다.

〈표 II-82〉 폐업지원금 산출 방법

구분	산출 공식
경종	철거·폐기 면적×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3년
일반 축종 (한우, 돼지 등)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3년
낙농	농가별 평균 납유량×연간 1리터당 순수익액×3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마리당 연평균 순수익액×3년
양봉	봉군 수×봉군당 연평균 부산물 생산량(kg)×부산물 1kg당 순수익액×3년

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발췌

여기서 출하 마릿수나 납유량, 부산물 생산량 등은 농가별로 실제 사육 현황 및 납유실 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시·군·구의 현장 조사와 서류 검증을 거친다. 폐업지원 대상 농가는 축사를 철거하거나 해당 축종의 사육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예야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수 있다. 이는 FTA로 인해 축산물을 생산할수록 더 큰 손실이 예상되는 농가가 빠르게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계 전반의 구조 조정을 유도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3)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상태에서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실제로 그 품목을 재배·사육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그동안 생산시설이나 사육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있고, FTA 이행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재배면적이나 사육 마릿수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은 우선 직접 시설을 철거하거나 가축 등을 처분·폐기하여 생산 활동을 중단한다.

이후 농업인 등은 해당 시·군·구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현장 조사를 요청한다. 시·군·구 담당자는 실제로 재배나 사육에 이용했던 시설과 자원이 완전히 철거·폐기되었는지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서류를 작성·보관한다. 농업인 등은 이 확인서와 함께 폐업지원금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때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열려 철거·폐기 상태나 폐업 지원 사유를 점검하기도 하며, 확인된 결과는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품목별로 피해보전직불금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산정된 순수의액과 농가별 철거 면적·사육 규모 등을 종합해 최종 지원금을 결정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지원 금액을 일부 줄이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최종 확정된 지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를 통해 시·군·구로 내려가며, 시·군·구는 심사를 마친 농가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후 시·군·구는 각 농가에 지원금을 송금한 뒤 그 결과를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정수급이나 서류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철도·도로·항만·하수도·주택건설·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확보하고, 이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해당 법에서는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절차를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의 범위 확정,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수용·보상 절차, 이의신청 및 재결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 1) 지원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보상 대상은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해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을 협의 취득 또는 수용당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틀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 법적으로 권리를 설정해 둔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해당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거나 근로를 하던 사람들, 농지나 축사,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농·축산·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분묘(묘지) 소유자 등이 대표적인 보상 대상이 된다. 이들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본인의 재산을 전부 혹은 일부 협의취득·수용당하거나, 영업공간과 생산수단이 편입되어 지속적인 사업이나 생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므로,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해당 물건 자체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으므로,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토대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보상을 받게 된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의 권리를 가진 자 역시,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실질적으로 훼손되거나 소멸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나 건축물만이 아니라 영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주와 근로자도 중요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이전이 불가피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영업주는 휴업보상이나 폐업보상을 법정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 또한 휴직·실직에 따른 생계 유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정 기간의 임금이나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때 영업주가 적법한 허가·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무를 해왔는지가 보상 여부와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농지나 축사,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농·축산·수산업 종사자 역시 「토지보상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다. 농지에 식재된 농작물은 이전이 어렵고 이미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상태이므로, 수확에 지장이 생기거나 아예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축사를 경영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던 경우에도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이전비는 물론이고 가축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운송비와 사료 공급 문제 등 다양한 손실 항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장 일부 혹은 전부를 잃게 되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보상하게 된다.

분묘(묘지) 소유자 또한 공익사업 대상 지역에 묘가 위치해 있어 이를 이장해야 할 경우, 분묘 이장 비용과 석물이나 비석 이전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해 보상받는다. 분묘가 조성된 지 오래되어 소유자의 확인이 어렵거나, 여러 명이 소유권 혹은 관리권을 주장할 때에는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같이 분묘에 대한 보상은 토지나 건축물 보상만큼이나 민감한 사안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절차적 정당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이장 관련 비용을 책정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보상 제도가 무조건적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던 건축물이나 영업장,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 등은 보상 범위가 제한되거나, 보상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은 이러한 경우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용실태와 투자비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 일정 부분을 고려할 여지를 두고 있기도 하다. 실제 보상 시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행정·감정평가기관의 판단을 거쳐 보상금이 산출되고, 이해관계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결 절차로 넘어가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 2) 지원 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이 편입되거나 사용 제한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영업상의 손실을 적정하게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 금액이 지급되며, 건축물은 이전이 가능하면 이전비용을, 이전 자체가 어렵거나 이전비가 시설물 가치보다 더 클 경우에는 건축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이처럼 적절한 금액 산정은 표준지 공시지가, 거래 사례 비교 등 다양한 평가 방식과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건축물에 함께 설치된 부속설비나 공작물도,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과도하게 드는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거주하던 소유자나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주 정착금 등의 지원을 받는다. 세입자인 경우에도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정상적으로 거주해 왔다는 점이 인정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주거 이전비나 이사비가 지급된다. 실제 소유자가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주정착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법령에 규정된 최소·최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영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와 그 근로자 역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휴업·폐업 보상이나 휴직·실직 보상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적법한 허가·등록을 마친 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강제 이전이나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영업이익 감소분이나 재고자산 손실 등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직·실직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농지나 축사, 양식장 등에서 농업·축산업·어업을 영위하던 이들에게도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농지의 농작물은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확 시기나 성장 정도 등을 감안해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축사나 사육시설은 시설 이전 비용과 가축 운송비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전이 불가하거나 비용이 시설 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시설물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양식장이나 어장에 대해서도 생산량 감소나 양식시설 철거·이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평가 대상으로 인정된다.

분묘(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장에 필요한 비용과 석물·비석 이전을 위한 경비가 포함되어 보상금이 책정된다. 특히 오래된 분묘의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 확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장 과정 전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제 이장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익사업 대상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만 편입되어 남은 잔여지·잔여건물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져 실제 사용이 어려운 상태라면 추가 편입을 신청해 나머지 부분도 함께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잔여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일관성 있게 확보할 수 있고, 소유자는 가치가 훼손된 부분을 포함해 법령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

### 3)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한다. 이후 이 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누락된 점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지구 내 토지와 정착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유자나 권리자가 누구인지, 어떤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와 열람·정정 절차가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마련하여 열람 공고하고, 소유자나 권리자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축물, 영업 손실 등을 평가해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면, 소유자나 권리자는 해당 보상안에 동의하거나 재평가를 요구하여 금액 조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제시된 금액과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시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이 지급되면 소유권 이전이나 부지 인도 절차가 진행되고,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대상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하게 된다.

한편,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보상금과 수용·사용 범위를 결정해 재결서를 통보한다. 사업시행자는 재결 금액을 소유자나 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며, 이 시점부터 해당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점유·사용이 가능해진다. 만약 재결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되기도 한다.

실제 보상금 지급 시점은 협의취득 방식일 때에는 보상 협의가 끝난 직후부터 계약서에 적시된 기간 내가 일반적이고, 수용재결 방식일 때에는 재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정한 기한 이내에 지급되거나 공탁된다. 원칙적으로는 현금 지급을 우선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토보상이나 분양권 등 다른 형태가 적용될 수도 있다.

#### 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거 밀집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민 생활환경 및 상수원 수질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운영 중인 축사는 이전이나 위해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정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시행령 제5조에서는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만약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 비용이 시설물 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축사 이전 보상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보상 산정과 절차는 「토지보상법」의 체계에 따라 진행된다.

##### 1)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지원대상 중 대표적인 예시로는, 먼저 축산농가가 직접 설치·운

영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체적으로 적정 처리하기 위해 분뇨 저장조나 액비화 시설, 퇴비사 등을 갖추거나, 이미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 자원화 가능성을 높이려는 축산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축분뇨가 충분히 발효되어 양질의 퇴비나 액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비를 마련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농업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다음으로, 여러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도 지원대상이 된다. 농협이나 법인, 생산자 단체 등 축산인들이 협력 조직을 구성해 공동으로 퇴비사나 액비화시설을 마련하면, 각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한곳에 모아 처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원화를 실현할 수 있다. 공동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나 액비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살포·운송하기 위한 장비·인프라를 구축할 때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를 원료로 비료나 토양 개량제 등 재활용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사업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가축분뇨를 적극 재활용해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농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도입하거나 개선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축산물 인증(무항생제, 유기축산 등)을 받은 축산농가나 시설 운영자도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친환경 축산을 유지·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철저히 관리·처리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시스템을 구축할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예컨대 스마트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도입하거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액비 살포와 운송, 장비 임대 등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유통센터나 공동살포단도 대표적인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모아 지역 곳곳의 농경지에 적정하게 공급·살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가 자원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러한 조직이 운영비나 장비 보강을 위해 지자체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여러 농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뇨 처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 2) 지원 내용

「가축분뇨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지원 내용으로는 재정적 지원이 있다. 축산농가나 공동자원화시설(농협, 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액비화 시설, 저장조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보수할 때,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용자나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를 원료로 비료나 토양 개량제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단체도,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를 도입하거나 개선할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액비유통센터나 공동살포단과 같이 가축분뇨를 공동 처리·운영하는 조직은 운영비나 장비 구입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지역 내 가축분뇨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 자문이나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구조나 공정을 설계하고, 퇴비·액비 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제공받는다. 또한 생산된 퇴비나 액비의 품질 검사를 비롯해, 살포 시비 처방, 운영 노하우 전수 등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나 사업자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자원화하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화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사업도 지원한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는 가축분뇨 관리 방법, 자원화 시설 운영 방식, 퇴비·액비 활용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농가가 스스로 친환경 축산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의 필요성과 혜택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긍정적 인식 제고와 갈등 완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제품인 퇴비·액비 등이 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마케팅 부문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이나 농협, 대형 유통망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 제품 홍보나 판촉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액비유통센터나 공동살포단 등이 지역 내 농경지에 적정한 시기에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살포 장비나 운송 차량을 확충·보장하는 데에도 지원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제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보호와 농업 생산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한다.

### 3)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가축분뇨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축산농가나 관련 단체·사업자가 가축분뇨 처리·자원화 사업계획을 마련해 관할 시·군·구청(환경·축산 부서 등)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때 사업 계획서에는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장비의 내용, 자금 사용 계획, 기대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이후 지자체에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사업 목적·규모·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조금(또는 용자금) 교부 결정과 함께 사업 추진 범위, 예산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이는 지원받는 측과 지자체가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책임, 예산 관리 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과정이며, 협약 이후 시설·장비 설치나 운영비 사용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교부된다.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는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준공 사진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검증과 점검을 받는다. 이렇게 사후 확인을 통해 실제로 지원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하거나 개선한 시설·장비가 애초에 계획된 용도로 일정 기간 이상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핀다.

#### 마. 조류독감 사전방역 관련 사육제한 제도 및 보상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조류독감’)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농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법 제19조의2에서는 가축의 사육 밀집도가 높아 질병 확산 위험이 큰 지역이나, 철새도래지 인근과 같이 야생 조류를 통한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사육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조치 시행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해당 농가의 경영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서는 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서는 사육제한 보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 산정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제한 보상금 사업 지침(2024~2025)」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 1)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류독감 사전방역 관련 사육제한 보상 대상 중 가장 중요한 집단은 오리 사육농가이다. 특히 「가축 제한 보상금 사업 지침(2024~2025)」에 따르면, 오리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매개체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하거나 과거 조류독감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의 오리 농가, 또는 사육 밀도가 높아 질병 확산 위험이 큰 농가들이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된다. 이들 고위험 농가는 철새 도래 시기(주로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에 일시적 사육제한 조치를 통해 선제적 방역 관리를 받게 된다.

오리 외에도 산란계나 육계와 같은 가금류 농가 중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곳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야생 조류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방형 축사를 운영하거나, 철새 도래지 인근 3km 이내에 위치한 가금 농가들은 필요시 사육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가들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사육제한 대상을 선별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해 이동 제한 명령을 받은 지역 내 가금류 농가도 지원대상이 된다. 인근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방역당국이 일정 반경 내 가금류의 이동과 출하를 제한할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별도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질병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방역을 위한 행정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받은 농가 역시 중요한 지원대상이다. 조류독감 발생 지역 인근이나 역학적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농가에 대해 방역당국이 예방적 차원에서 가금류 살처분을 명령한 경우, 해당 농가는 살처분된 가축의 가치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발적 휴업 또는 일시적 사육 중단에 참여하는 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위험 시기에 오리 등 가금류 농가가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입식을 중단하거나 사육 규모를 축소할 경우,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해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도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 2) 지원 내용

조류독감 사전방역을 위한 가금류 사육제한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재정적 보상이다. 「가축 제한 보상금 사업 지침(2024~2025)」에 따르면,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오리 농가는 기존 사육규모와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사육일수, 사육 마릿수, 표준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가별 보상액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제한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의 80~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입식 지연이나 출하 제한으로 인한 추가 비용(사료비, 인건비 등)도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손실을 최소화한다.

가금류 농가의 방역 시설 개선이나 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사육 제한 조치 이후 재입식을 위해 축사 시설을 개선하거나, 차단 방역 시설을 강화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시설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개방형 축사를 폐쇄형으로 전환하거나, 방역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손실 보상을 넘어, 장기적으로 조류독감 발생 위험을 줄이는 구조적 개선을 유도한다.

사육제한 기간 동안 농가의 소득 다각화나 대체 소득원 발굴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지원도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사육제한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장기적 경영 변화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이나 대체 소득원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오리 사육 농가가 다른 축종으로 전환하거나 농업의 다른 분야로 다각화하는데 필요한 기술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저위험 지역으로 농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철새 도래지 인근이나 가금류 사육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조류독감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농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과 신규 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육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도 제공된다. 갑작스러운 사육제한이나 살처분 조치로 인해 농가주와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상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조류독감 사전방역을 위한 사육제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가 관할 시·군·구의 농축산 부서에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농장 정보, 사육 현황, 제한 조치 내용, 예상 손실액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사육 규모와 수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육 일지, 출하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축 제한 보상금 사업 지침(2024~2025)」에 따르면, 오리 농가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육 실적과 소득 증빙 자료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현장 조사와 서류 심사를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의 실제 사육 상황, 방역 관리 실태, 과거 조류독감 발생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심의한다. 심사 결과 보상 대상으로 선정되면, 농가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후 절차에 따라 보상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상금 청구 시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표준 청구서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항목과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육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추가 발생한 방역 비용이나 가축 관리 비용 등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청구서 제출 이후 지자체는 최종 검토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고, 일반적으로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농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육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과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3개월 이상의 장기 사육제한 조치를 받은 농가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농가의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사육제한 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재입식 지연이나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후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농가는 방역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사육제한 조치 해제 후에도 강화된 방역 관리 의무를 가지며, 정기적인 방역 점검과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정부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정리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과 채무 문제를 해소하고, 재취업·재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폐업부터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핵심 목적이다.

〈표 II-83〉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법조항	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2권(중소벤처기업부 편)」, 2023.

### 1)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크게 경영개선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각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연계적으로 제공된다.

〈표 II-84〉 2024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① 경영개선지원	• 경영위기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단) 경영상태 진단을 통한 재기 진로 결정</li> <li>▪ (경영기본교육) 경영위기 극복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교육</li> </ul>

〈표 II-84〉의 계속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① 경영개선지원	• 경영위기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개선사업지원) '심화교육 → 경영진단 및 컨설팅 → 경영개선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패키지 지원</li> </ul>
② 원스톱폐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예정) 소상공인</li> <li>※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기능, 심리 치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li> <li>▪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3.3㎡당 13만원, 250만원 한도)</li> <li>▪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li> <li>▪ (채무조정신청지원)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li> </ul>
③ 재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li> <li>※ 배우자 참여시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만 지원가능</li> <li>※ 전직장려수당은 배우자 지원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직기초교육) 취업기초교육으로 직무직능 탐색, 이력서·면접노하우 과정 등 운영</li> <li>▪ (전직특화교육) 취업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직무특화 교육</li> <li>▪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 지급(최대 1백만원)</li> </ul>
④ 재창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창업교육)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 실습 과정</li> <li>▪ (재창업사업화) 인큐베이팅 기관을 통한 외식업·e커머스 등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지원(최대 2천만원)</li> </ul>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2023. 12.

먼저, 경영개선지원 대상은 일차적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거나, 최근 3년간 연속으로 감소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개인신용점수(CB)가 779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역시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이처럼 매출·신용·지역적 요인 등을 고려해 폭넓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소상공인은 경영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 기회를 갖게 된다.

다음으로,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사업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을 진행한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소상공인 본인은 물론이고 폐업 소상공인이었던 배우자가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채무조정 지원 분야에서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업종 제한이 있는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지원대상이 인정되며, 폐업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채무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재취업지원은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만 69세 이하인 사업주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로 폐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의 경우 배우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운영 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요건과 지원 제외 업종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취업교육(기초·심화·특화 과정을 선택), 구직활동 지원, 전직장려수당 등의 혜택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창업지원의 핵심 대상은 다시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와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다. 폐업일이 사업 공시에 명시된 기준 시점 이후인 소상공인 중, 향후 사업자등록을 다시 내고 재창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기준, 업종 제한 등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 평가 절차를 거쳐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교육·멘토링과 함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재창업 지원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유망·비과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 전문교육을 제공해 과거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새출발을 돕는 데 있다.

## 2)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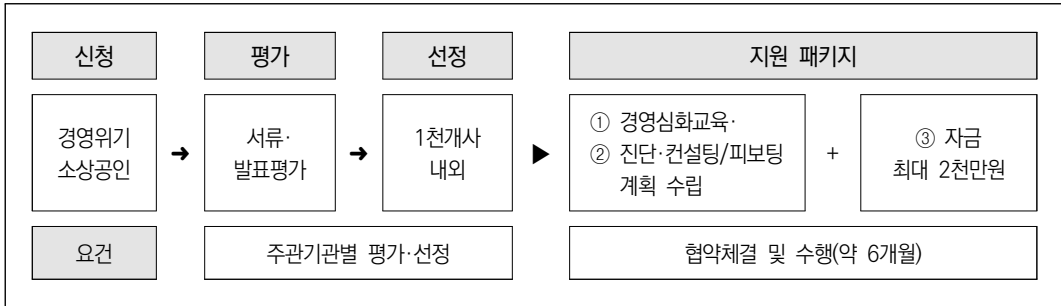
경영개선지원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최근 3년간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직 사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전문가가 해당 사업장을 진단해 문제점을 찾고, 경영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해 마케팅·재무·상권분석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진단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최대 2천만원(정부와 자부담 매칭)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인테리어 개선이나 광고·홍보 활동 등에 활용함으로써 매출을 회복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회를 마련한다.

〈표 II-85〉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사업화 지원금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50%)	소상공인 자부담금(50%)	
	현금(15%)	현물(35%)
총사업비의 50%(20백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15%(6백만원) 이상	총사업비의 35%(14백만원) 이하

주: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설명서\_희망리턴패키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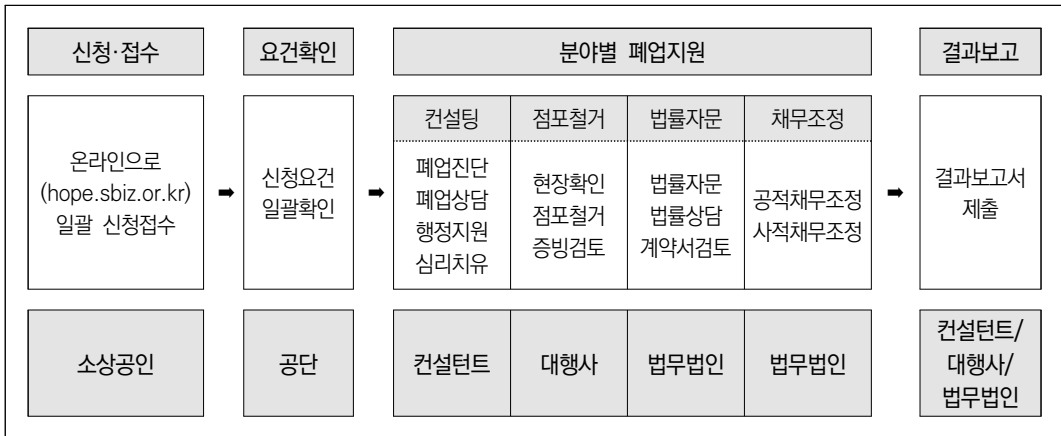
[그림 11-2]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체계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설명서\_희망리턴패키지」, 2023.

원스톱 폐업지원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나 이미 폐업을 진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다.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부동산·직무·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점포철거비를 3.3㎡(1평)당 13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최대 250만원까지 비용을 보조해 준다. 법률자문을 통해 임대차 계약 문제나 채무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개인파산이나 회생 같은 공적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활용한 사적 채무조정과도 연계해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향후 재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그림 11-3]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설명서\_희망리턴패키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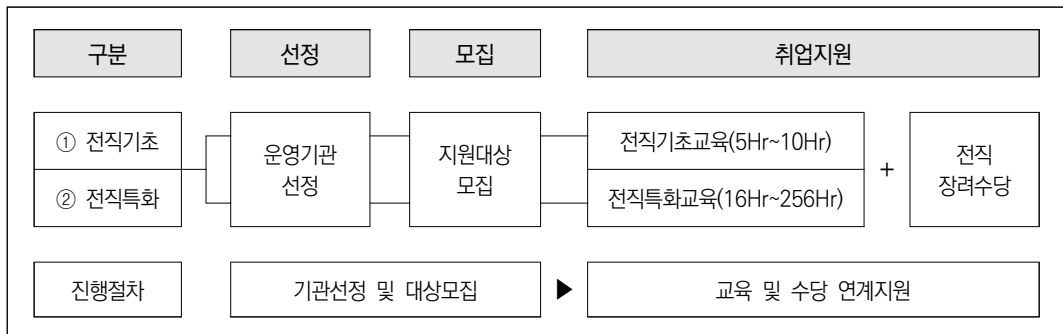
〈표 II-86〉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세부 지원 내용

자격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공고」, 2023.

재취업지원은 만 69세 이하 소상공인과, 기폐업 상태라면 그 배우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기본적인 이력서 작성부터 모의 면접, 취업 정보 제공 등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심화교육과 특화교육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 실제 구직 현장에서 요구되는 스킬을 높인다. 교육 수료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이 지급되어, 구직활동 경비나 생활비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업종 전환이나 직무 변경을 수월하게 시도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다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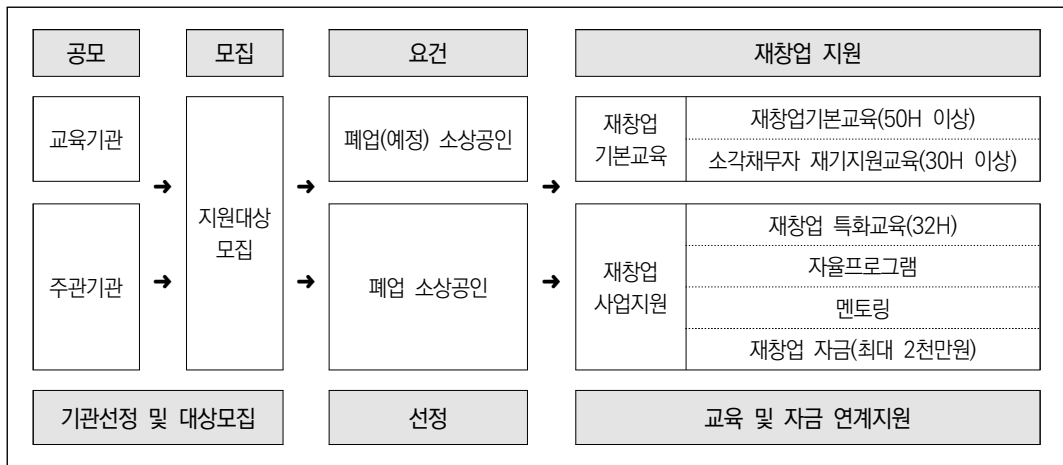
[그림 II-4]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지원절차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설명서\_희망리턴패키지」, 2023.

마지막으로, 재창업지원은 과거의 실패 경험을 딛고 다시 창업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재창업 기본교육 단계에서 업종 동향과 시장 분석, 경영 기초 이론 등을 배우고, 이후 주관기관을 통한 사업화 교육과 멘토링 과정에서 실제 창업 현장에 필요한 운영 노하우를 익힐 수 있다.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점포나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는 최대 2천만원(정부와 자부담 매칭)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e커머스 분야의 경우 최대 1,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등 업종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과거 실패에서 얻은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견실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재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그림 II-5]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지원 체계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설명서\_희망리턴패키지」, 2022.

<표 II-87> 재창업지원 사업화자금 총사업비 구성(예시)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현금	현물
e-커머스	총사업비의 50% 이하	총사업비의 15% 이상	총사업비의 35% 이상
	(예시) 1,300만원	390만원	970만원
그 외 업종	총사업비의 50% 이하	총사업비의 15% 이상	총사업비의 35% 이하
	(예시) 2,000만원	600만원	1,400만원

주: 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함.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설명서\_희망리턴패키지」, 2023.

### 3)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용 누리집(hope.sbiz.or.kr)에서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지원·윈스톱 폐업지원·재취업지원·재창업지원 등 각 프로그램에 따라 선발과 협약 체결, 사업 수행, 그리고 비용 정산과 지급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뒤, 소진공 측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다음, 협약(또는 약정)을 체결하고 각종 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한 뒤 최종 비용 정산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경영개선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국세 신고자료나 신용점수 등을 증빙하여 매출 감소나 저신용 여부를 확인받는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과하면, 소진공과 협약을 체결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과 자부담 비율 등을 확정한다. 이후 경영교육과 컨설팅을 수료하고 점포 리뉴얼이나 광고·홍보 등 사업화 자금 사용 실적을 제출하면, 소진공에서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정부 지원금이 최종 지급된다.

윈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일 혹은 폐업 예정일을 비롯해 임대차계약 현황 등을 제출한 뒤, 점포철거비나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등 필요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무나 부동산, 심리치유 등 전문가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검토하여 맞춤형 조언을 해주고, 점포철거비의 경우 철거가 완료된 뒤 현장 확인을 거쳐 3.3㎡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채무조정 또한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며,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에는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비용 정산을 마무리한다.

재취업지원은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하면, 소진공에서 교육기관을 매칭해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특화교육을 순차적으로 이수하도록 돕는 형태다. 교육 과정이 끝난 뒤 취업에 성공하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여부 및 근속 기간(고용보험 가입) 확인을 거쳐 100만원 한도의 장려수당이 지급된다. 구직활동을 위한 분할지급(40만원 + 60만원) 혹은 취업 완료 시 일괄지급(1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모든 신청과 서류 제출이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재창업지원은 소진공이 선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재창업 교육(이론 및 실습)을 이수한 뒤, 주관기관과 협업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고 멘토링을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최대 2천만원(또는 1,300만원)의 재창업

자금을 정부 지원금과 자부담금으로 매칭해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 종료 시에는 집행 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소진공에 제출하여 적격성을 인정받고 사업화 비용을 지급받는다.

### 3.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가. 관련 법률

##### 1) 폐·전업 지원 근거

「개식용종식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제12조(전업의 지원)에서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폐·전업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 「개식용종식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6조(폐업지원의 대상),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에서는 폐·전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한다.

####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6조(폐업지원의 대상)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하 “폐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2.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 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는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해야 한다.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이하 “전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2.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전업(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이행할 것

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융자에 필요한 담보물을 갖출 것
  - 나. 전업에 필요한 자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
  - 다. 그 밖에 사업 내용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전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전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4. 그 밖에 원활한 전업지원을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신고),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에서는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의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를 규정한다.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신고)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장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2.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 ①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 등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 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 2) 폐·전업 지원금 산정 관련

개사육농장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3. 24.]

개사육농장의 축사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른 허가 혹은 신고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2020. 3. 31.>

1~6, 8~23 생략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제14조(건축신고)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부처는 개사육농장이 「농지법」 제35조 전단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이나, 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경우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원 시 50%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2023. 8. 16.>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나. 국정과제

본 사업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48번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의 이행과제로 추진되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이라는 과제목표와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 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등 ‘동물복지 강화’에 관한 내용이 본 과제에 해당한다.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법정형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을 마련하였다.

### [국정과제]

48번,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 과제목표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 □ 주요내용

-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 \*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법정형 최대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다. 상위 및 관련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2022년 12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후 「개식용종식법」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부처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은 「개식용종식법」 제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사업시행 지침서는 2024년 12월에 공고하였다.

폐업과 전업 지원 내용은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큰 틀에서 기본계획 및 지침서는 이를 따르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동 시행령 제8조 제6항38)에 의거 필요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1) 「동물복지 강화 방안」(2022. 1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1.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2.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3. 동물 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를 3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 [전략 1]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여, 동물학대 방지뿐만 아니라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 영양, 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한다.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복지

---

38)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홍보와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고, 조사 방식과 대상을 개선하며(‘23, 통계청 협업),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전략 2]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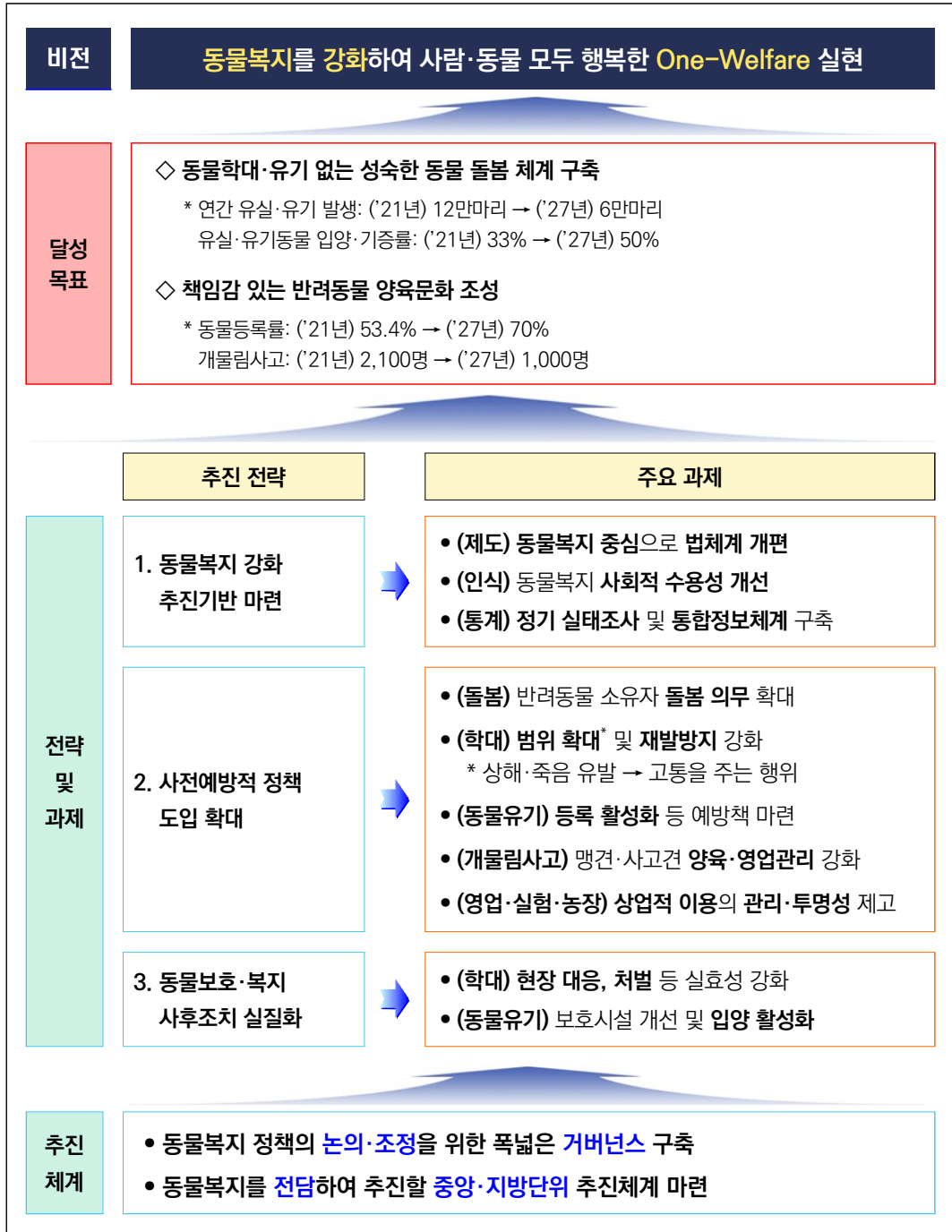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양육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한다.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확대하고,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전략 3] 동물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동물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한다.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23. 4, 법 개정),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한다.

□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

[그림 II-6] 「동물복지 강화 방안」의 비전 및 전략



## 2) 「개식용종식 기본계획」(2024. 9. 농림축산식품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제공’,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과제와 수단을 제시하였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 사육·도살 및 유통·소비 종식을 포함한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이행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개소는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정부는 업계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폐업 시기별로 1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5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할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을 감정평가를 통해 지원하고, 지자체는 시설물 철거를 대행한다. 농업으로 전업할 경우에는 관련 시설 또는 운영 자금을 저리로 용자 지원한다.

둘째, 전·폐업 컨설팅,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종식 이행 점검 등 차질 없는 개식용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약 46.6만마리로 추정되는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와 개체 관리 유도를 통해 체계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육 포기 등으로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과 보호가 지원된다. 또한, 전·폐업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셋째, 개 식용 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개 식용의 상업적 유통망과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과 식문화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또한,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 종료 후(27. 2.)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며,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상위 계획]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2024. 9. 농림축산식품부)

□ 비전

-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 추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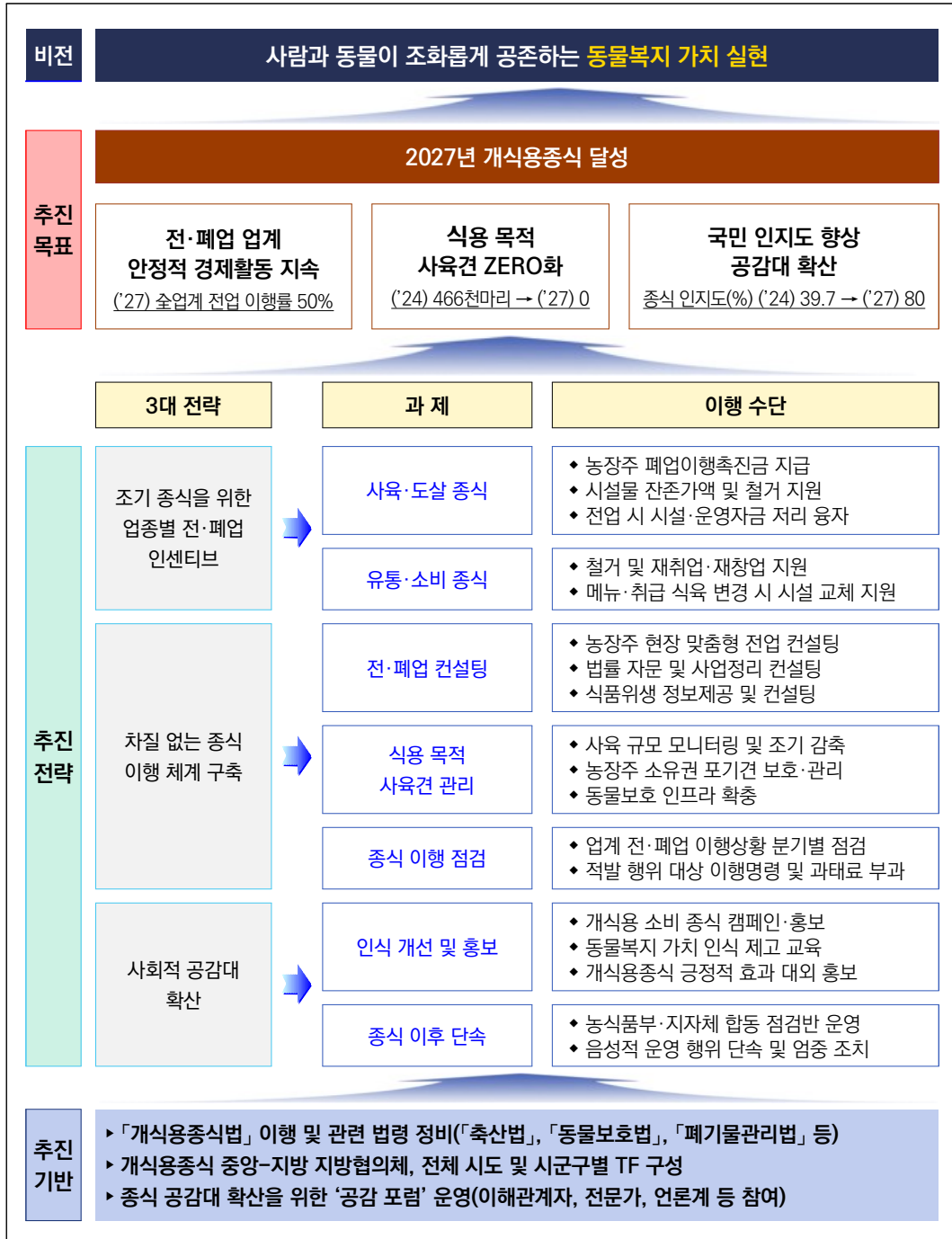
-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

□ 3대 전략 및 이행 과제6

- ①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개 사육·도살 및 유통·소비 종식
- ②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전·폐업 컨설팅, 식용 목적 사육건 관리 및 종식 이행 점검
- ③ 사회적 공감대 확산: 인식 개선 및 홍보, 종식 이후 단속

□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림 11-7]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추진일정

[그림 II-8]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추진 일정

정책과제	일정	주관
<b>1.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b>		
<b>가.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b>	2025~	농식품부
• 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원	2025. 1. ~ 2027. 2.	
•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2025. 1. ~ 2027. 2.	
•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저리융자	2025~	
<b>나.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점객업자 전·폐업 지원</b>	2024~	관계부처
•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2024~	중기부
•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채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2025~	
• 전업 시 시설·물품 교체 지원	2025. 1. ~ 2027. 2.	
<b>2.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b>		
<b>가. 전·폐업 컨설팅</b>	2024 ~	관계부처
• 전업 희망 농장 대상 현장 맞춤형 컨설팅	2024 ~	농식품부
• 전업 업종 관련 식품 위생 정보제공 및 컨설팅	2025 ~ 2027	식약처
• 폐업 소상공인 지원	2024 ~	중기부
<b>나. 식용 목적 사육건 관리</b>	2024 ~	농식품부
• 농장주 사육규모 감축 등 이행 점검	2024. 9. ~ 2027. 2.	
• 소유권 포기건 보호·관리	2024. 9. ~	
•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2024 ~	
<b>다. 종식 이행점검</b>	2024 ~	
• 「개식용종식법」 위반행위 분기별 현장점검	2024 ~ 2027. 2.	
<b>3. 사회적 공감대 확산</b>		
<b>가.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b>	2025 ~	농식품부
• 개식용 소비 종식 캠페인 및 홍보	2025 ~	
• 동물복지 가치 인식 제고 교육	2025 ~	
<b>나. 종식 이후 단속 강화</b>	2027. 2. ~	
• 종식 이후 식용 목적 운영행위 단속 및 조치	2027. 2. ~	

3)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서」  
(2024. 12.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서」는 「개식용종식법」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사업시행을 위한 지침서로서, 이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이다.

주요 내용으로 1.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3. 지원형태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 절차 및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의 역할을 제시한다.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서」(2024.12.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I. 사업 개요

- 목적: 「개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
- 근거법령 및 기본계획
  - 「개 종식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II. 2025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 지원 대상자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자 중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 도축상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제한 사항 제시
- 지원 내용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개사육농장·도축장의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개사육농장주 소유권 포기건의 보호관리 비용
- 지원형태 및 기준: 생략

III.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신청 및 접수단계
- 신청서 확인 및 대상자 선정 단계
- 자금요청 단계
-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 이행점검 단계

별지 서식

##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

### 가. 사업설계 적정성의 쟁점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는 정책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사업의 외형적 구조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특히 개식용 종식과 같이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정책의 경우, 사업 목표의 적절성,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집행 과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사업설계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적절성, 전달체계의 적절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의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추진의 시급성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 동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관련 업계의 전·폐업 지원과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목표가 정부 정책 및 기본계획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과지표가 단순히 '폐업 농가 수'라는 산출지표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적절한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동물복지 강화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적절성 등도 면밀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사업에 대한 설계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 수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혜대상의 명확한 규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현재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758개소의 개사육 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상 선정의 적절성과 함께 향후 개고기 가격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한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추진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 시설물 철거 대행이라는 본 사업의 세 가지 핵심 지원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의 적절성, 그리고 기존 축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달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할 것이다. 이는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수혜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부터 지자체까지 이어지는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혜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신청 방식의 적절성, TF 운영을 통한 현장 지원체계의 효과성, 그리고 지역별 사업 대상 분포를 고려한 인력 운영 방안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또한 각 단계별 실행 절차의 명확성과 구체성,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계,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운영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비용 추정의 쟁점

비용 추정은 정책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예산 규모를 산출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경우, 초기 비용 추계의 정확성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단가의 적절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중장기 재정소요 변동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 사업이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첫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356,238백만원(국비 179,769백만원)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시설 철거비용 증가, 잔여건 관리 비용, 추가 행정비용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 수 증가나 시설 철거비용 상승 등의 변수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수도 있다. 특히 철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잔여건 관리를 위한 보호소 운영이나 입양 지원 등의 부대비용

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원단가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 사육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폐업시기 구간별로 차등 지원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지원단가와 기본 지원단가(30만원) 간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농지법」 위반자의 수가 변동될 경우 평균 지원단가 및 철거비용이 변동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기별 차등 지원이 실제로 조기 폐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지, 지원단가의 차이가 적절한 수준인지도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사업의 전체적인 비용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셋째, 지원 금액의 수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인당 지원금이 농가의 폐업 및 전업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금액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지원금이 과도하거나 부족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자부담 도입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자부담 부과와 그 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때 농가의 실제 피해액과 전업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고려한 적정 지원 수준의 산정이 중요하며, 유사 정책 사례에서의 지원 금액과의 비교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자부담 도입이 사업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 위험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와 농업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원 대상자나 재정 소요가 변동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사업 기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재정 부담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 계획의 적절성도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 농가의 증가로 인한 전업 지원의 실효성 문제, 농업 인구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의 변화 등을 고려한 장기적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후 관리 비용, 추가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 다. 정책성 분석의 쟁점

정책성 분석은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는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사회적 수용성, 정책 효과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이기에 정부의 정책 방향과의 일관성, 이해당사자들의 수용 가능성, 실질적인 정책 효과 등

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해서도 내부여건, 상위·관련 계획과의 관련성, 외부여건, 정책효과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성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내부여건 측면에서는 본 사업과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특히 반려동물 생명보장 및 동물보호 문화 확산이라는 국정과제와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정책적 목표와 현장 상황 간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동물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개식용 종식이라는 정책 목표가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현장의 수용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둘째, 상위·관련 계획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이 주요 쟁점이다. 국정과제, 중앙정부 계획, 지자체 계획과의 연계성과 사업 우선순위 설정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자체 단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될 수 있는지,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의 유사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사업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발굴하고, 우리나라 정책의 효과성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개식용 종식에 성공한 국가들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외부여건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사업 수용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개사육 농장주 및 도축업자들의 사업 수용 정도를 파악하고, 업종 전환에 대한 태도와 준비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장주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이를 위한 지원이 충분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농가, 도축업자, 동물권 단체,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과 동물권 단체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소할 것인지, 지역 사회의 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효과 측면에서는 사업 추진 후 기대되는 효과의 달성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다. 정책 목표와 실제 결과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과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긍정적·부정적 정책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전업 및 폐업 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성과 측정 기준을 설정하여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관련 산업, 사회적 인식 변화 등 간접적인 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

### Ⅲ.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

---

####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 가.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정부가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근본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가 어떠한지 정확히 설정하고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목표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제시된다면, 후속 사업 설계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수단과 예산 투입 규모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목표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범위에서 달성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실질적인 성과 측정과 개선이 가능해진다.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요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즉, 사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해당 문제로 인해 어떤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둘째, 해당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인지 제시해야 하며, 이때 활용 계획이 있는 수단의 효과성 및 적절성 또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수혜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그 대상의 규모나 특징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수치를 활용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무부처가 제시한 이번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지원 사업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 등에 따라 관련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을 통해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이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전·폐업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업계에 대한 보상 문제를 명확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전·폐업 지원을 위한 이행촉진지원금, 시설철거비용,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24년 2월 6일에 공포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법 공포 3년 경과 이후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본 사업의 지원기간 또한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확정되어 있다.

수혜대상의 경우에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 중에서, 이행계획서에 따라 폐업을 완료한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로 구체적이다. 또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사육농장주'에게는 이행촉진지원금, 시설철거비용 및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과 전업을 지원하고, '개식용 도축업자'의 경우 기존의 법에 의거하여 불법성이 명확하기에 이행촉진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산출(output) 지표인 '폐업 지원 농가(육견) 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사업이 '개사육농장주'만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폐업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양적 실적으로서, 해당 사업에서 다루는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의 '전·폐업 지원'을 통해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소'가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원을 통한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의 전·폐업 유도과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기본 목표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를 보다 포괄적이면서 측정 가능한 지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논의는 뒤이어 살펴볼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에서 다룬다.

## 나.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사업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즉, 사업목표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간에 논리적 연계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 설계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최소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지원 사업의 사업목표와 사업내용 간의 논리적 연계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 사업은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종식 이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사육농장주,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시 이행촉진지원금, 폐업 시 시설물 잔존가액 및 시설철거비용 보상, 전업 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저리 용자 지원 등의 농가 상황에 적합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다른 재정사업들과 연계하여 전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사업목표와 연계성을 높이고자 한 측면은 긍정적이다.

또한, 개사육 업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과 대한육견협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 방식과 지원금의 수준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폐업 시기에 따라 사육 마리수당 이행촉진지원금의 지원단가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대상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원단가는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된 개 한 마리당 '순수익액'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사업에서와 같이 조기 폐업 유도를 목적으로 설정된 금액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상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동시에 조기 폐업 유인을 강화하여 사업의 원활한 실행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 폐업시기 구간별 지원단가

폐업시기 구간	2024. 8. 7. ~2025. 2. 6. <sup>1)</sup>	2025. 2. 7. ~2025. 8. 6.	2025. 8. 7. ~2025. 12. 21.	2025. 12. 22. ~2026. 5. 6.	2026. 5. 7. ~2026. 9. 21.	2026. 9. 22. ~2027. 2. 6.
지원단가	60만원	52.5만원	45만원	37.5만원	30만원	22.5만원

주: 1) 「개식용종식법」 공포(2024. 2. 6.) 이후 법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시행(2024. 8. 7.) 이전까지 폐업한 농가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2024. 10.

다만,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개고기에 대한 가격 보상 구조로 인하여 사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무부처의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표 III-1>에서와 같이 평균 무게를 기준으로 마리당 단일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행정적 편의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 측면에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장주들은 상품 가치가 낮은 개체(예를 들어, 평균 무게보다 가벼운 개체)만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개체(예를 들어, 평균 무게보다 무거운 개체)는 비공식적 유통경로를 통해 거래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 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선별적 신고와 암시장 참여 유인을 낮추고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게 구간별 차등화된 단가 책정 또는 월령에 따른 차별적 보상 방식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다. 정부 정책방향,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재정사업은 국가 전체적인 정책방향 및 상위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관련 계획들과도 연계성이 높게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재정사업이 개별 부처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 임의로 추진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전체적인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여러 사업이 존재할 경우, 이들 사업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극대화하면서도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위 계획에 명시된 목표와 방향을 기준으로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해당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추진전략이 정부의 큰 틀 안에서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설정한 정책방향 및 상위 계획과 높은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정부가 설정한 정책방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국정과제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에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 강화’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상위 계획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포한 「개 식용 종식 기

본계획」에 본 사업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계획의 3대 전략과 7대 과제 중 ‘업계 전·폐업 지원’ 추진전략의 세부과제인 ‘사육·도살 종식’과 관련하여, 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전업 시 시설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유도하고, 전·폐업 업계에 대한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은 2024년에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종식 기한(2027년 2월) 내 원활한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수립되었다. 본 사업 또한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제3조(국가 등 책무),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제12조(전업의 지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5 .1. 10.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공식 인정되고, 상위 계획인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본 사업의 정책적 정당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요소다.

아래의 표는 동 사업과 관련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및 행정계획 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정책목표,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 지원내용과 기준, 그리고 정책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페널티 조항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특별법」과 관련 하위 법령 및 행정계획은 공통적으로 ‘생명 존중 및 동물복지 가치 실현을 통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근본적인 입법목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행령은 이러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적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계획」은 개 식용 산업 종식을 위한 정부 정책의 원활한 실행과 업계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해당 정책이 단기간 내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구체화하였다. 한편, 「사업시행지침(안)」은 실제로 현장에서 폐업 또는 전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 지원대상과 자격 요건에 있어서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농장주, 도축업자 및 유통상인, 그리고 식품접객업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특별법」이 규정한 지원대상 중에서 운영 신고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최종적인 지원대상으로 한정하여, 정책 집행의 구체적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이행계획 미준수 시에는 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본계획」은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각각 2024년 5월 7일과 8월 5일까지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폐업 완료자에게 최종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엄격하게 이행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업시행지침(안)」은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하나로 통일(2024년 8월 5일)하고, 농지법 등 타법령 위반 시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지원 내용과 기준에 있어서 「특별법」은 개 식용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전업을 위한 포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정부의 법적 의무로 명시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폐업촉진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외에도 시설 잔존가액 보상, 철거비 지원, 전업을 위한 용자 및 교육, 컨설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지원을 보다 세부화하여 폐업 시점에 따라 차등화된 마리당 이행촉진지원금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구조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사업시행지침(안)」에서는 지원금액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시장가치(무계, 월령 등)를 반영하지 않고 마리당 단일 단가(22.5~60만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잔존가액 지원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 수단과 페널티 조항에 있어서는 「특별법」이 정책 유예기간 이후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정책의 유예기간 내에서도 이행계획 미준수 시 정부가 이행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재 절차를 마련하였다. 「기본계획」은 이행조치명령 불이행 시 시설을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구체적 행정명령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원 배제 규정을 마련하여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업시행지침(안)」 또한 이행계획 미준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고 대상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표 Ⅲ-2〉 사업 관련 법령 및 하위 계획과의 연계성

구분	「특별법」	「시행령」	「기본계획」	「사업시행지침(안)」
입법목적 및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조: 생명 존중 및 동물복지 가치 실현을 통한 조화로운 공존 지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의 안정적 경제활동 지원 및 조기 종식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폐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li> </ul>
지원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조: 식용 목적의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상 대상자 중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li> <li>이행계획 미이행 시 지원 배제 원칙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 신고(2024. 5. 7.까지) 및 이행계획서(2024. 8. 5.까지) 제출자 중 폐업을 완료한 자를 최종 지원</li> <li>분기별 현장 점검으로 준수 여부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기한을 일원화(2024. 8. 5.까지)</li> <li>농지법 등 타법령 위반 시 지원금 감액 또는 미지원 규정 구체화</li> </ul>
지원내용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11·12조: 폐업·전업에 필요한 포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li> </ul>	지원 유형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업축진금, 시설 잔존가액, 철거비</li> <li>전업 용자, 교육, 컨설팅 등</li> </ul>	지원 방식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업 시기별 차등화된 마리당 이행축진지원금 지급 구조 도입</li> </ul>	집행 기준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리당 단일 단가 적용(22.5~60만원)</li> <li>실제 시장가치(무게, 월령 등) 미반영</li> <li>시설물은 감정평가 통한 잔존가액 지원</li> </ul>
이행강제 및 패널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예기간 후)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시 형사 처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예기간 내) 이행계획 미준수 시 이행조치명령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조치명령 불이행 시 시설 폐쇄 명령 가능</li> <li>신고·이행계획서 미제출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계획 미준수 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li> </ul>

자료: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농림부에서 제출한 「기본계획」과 「사업시행지침(안)」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라.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사업 주체인 수행부처는 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 측정과 관리 방안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성과 평가의 기본이 되는 것은 성과지표이다. 이는 사업이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한 평가 결과는 재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적절한 성과지표의 선정은 재정성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성과지표는 단순히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outcome)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여야 하며, 프로그램이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 가치와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 측정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적 평가를 넘어서 프로그램이 창출하는 실질적인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진정한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사업 진행 후 특정 시점에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과 추적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간이 지나야 성과 측정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계획서에는 데이터 수집 주체, 수집 대상, 수집 주기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사업의 성과지표를 '전업·폐업지원 육견 농가 수'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목표치를 200개소로 정했다. 이 지표는 지자체의 신청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산출지표에 불과하다. 성과지표는 사업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정량적 수치여야 하며, 단순한 투입이나 산출이 아닌 본 사업의 목표인 '개식용 종식'에 해당 사업이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표 Ⅲ-3〉 사업의 성과지표

(단위: 개소)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전업·폐업지원 육건 농가 수	200	2026. 1.	지자체 사업 정산 보고서 자료 등 활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차 제출자료」, 2025. 1. 17.

본 사업에서 궁극적인 목표인 ‘개 식용 종식’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전·폐업지원을 받은 육건농가의 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전체 육건농가 대비 전·폐업지원을 받은 농가의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지원사업이 육건농가의 전·폐업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sup>39)</sup>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육건농가에 대한 정확한 모집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무부처의 전수조사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는 지원대상 중 육건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주무부처도 2차 질의응답(2024. 12. 21.)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인정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육건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업자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성과지표 산정이 필요하다.

## 2. 사업설계의 적절성

### 가. 수혜대상의 명확성 및 적합성

사업의 수혜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혜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수혜대상이 불분명하게 설정될수록 재정 투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혜대상이 앞서 검토한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혜대상이 분명하더라도 사업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저하된다.

39) 이외에도, ‘개 식용 종식’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외식업체의 타 가축 비율의 수준을 성과지표로 고려해볼 수 있음. 이는 개 식용이 종식될 경우 기존 개 식용 외식업체에서는 개고기 및 관련 음식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타 가축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관계에서 기인함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6항과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에서, 이행계획서에 따라 폐업을 완료한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로 설정되어 있다.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안)」(2024. 12.)에 따르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2024. 8. 5.까지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한편 사업계획에서는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법에 명시된 자진신고 기간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개 식용 종식 기한으로 삼고 있는 2027년 2월까지 개사육 농장과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농장주들이 이행계획서에 따라 증식 및 입식을 중단하고, 사육견의 개체 관리 현황과 사육 규모를 감축하여 전업 또는 폐업을 이행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이때 이행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아 폐업이나 전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사업계획서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구체화하였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본 사업의 수혜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목표와 비교적 잘 부합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에서 운영신고서를 제출한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로 수혜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사업대상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지원 사업대상과 달리 본 사업의 대상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적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주무부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상 설정과 현황 파악을 위해서 운영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주들에게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과정에서 대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기존의 불법으로 영업하던 농가들 또한 수용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 중에서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업 또는 폐업을 완료한 농가들로만 지원대상을 제한한 것은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개 식용 종식과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수요의 충분성

수혜대상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제 수요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집단이 거의 없는 경우, 행정비용만 소모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사업의 수요 부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는 각각 1,537개소와 221개소로 총 1,758개소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전업 또는 폐업을 완료할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계획하에서 사업에 대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고기 가격 변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 시점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개고기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응하여 기존 수요자들의 반발적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개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개사육 업계는 지원금을 포기하거나 유예하고 개식용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질 수 있다. 반면에, 개고기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보상이 큰 초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수요 집중 현상에 따라 부처에서 제시한 사업 소요 비용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처에서 제시하였던 지원 시점의 균등 배분을 가정한 비용보다 개고기 시장 가격의 변동 추이와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행동 변화를 고려한 탄력적인 예산 운용 계획과 대응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 비사업대상의 수혜 가능성 및 사업대상의 비수혜 가능성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설정된 목표를 적절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누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실제로 사업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자격 기준 설정과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부적격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정확한 식별과 접근성을 높여 모든 적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누수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사업은 수혜대상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수급과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고려하고 있어 사업대상 외의 인원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수혜대상은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전업 및 폐업을 완료한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업자’로 한정된다. 특히,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4년 2월 6일 이후 개식용 관련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추가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지원금 수령 후 개 식용 영업을 재개하거나 확장하는 등의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투기성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2월 6일 기준 직전 1년간(2023년 2월 7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실제 영업 실적이 없거나 이미 폐업·전업한 것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수용이나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 다른 국가사업으로 인한 폐업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 보상을 방지하고 있다.

다만, 본 사업은 일회성 지원 사업으로서, 수혜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필수 서류인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중 일부가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당초 2024년 10월에 공포한 「개 사육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운영신고서는 2024년 5월 7일까지 그리고 이행계획서는 2024년 8월 5일까지 제출한 농가들만을 지원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2차 질의응답에서도 주무부처가 해당 사안을 인지하여,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상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나, 관련 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신고기한이 종료된 경우라도 신고 접수를 허용하여 이행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이후 3차 질의응답(2025. 1. 20.)에서 주무부처가 제시한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안)(2024. 12.)」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2024. 8. 5.까지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일원화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신고서의 기한을 이행계획서의 기한까지 연장시켜 한시적 지원의 시간적 제약하에서 최대한 사업대상의 비수혜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sup>40)</sup>

---

40) 동 사업의 예산의 경우에는 운영신고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수혜대상 수의

### 3. 추진방법의 적절성

#### 가. 사업추진방법 설계의 적정성

사업추진방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과 전달체계가 목표달성과 수혜자 특성에 부합하도록 구조화되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에서 수혜자에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할지 사전에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어 수혜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상 본 사업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 시설물 철거 대행의 세 가지 핵심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사육 마릿수와 폐업 시기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며, 시설물 잔존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실제 사육·도축시설의 가치를 보상한다. 또한, 시설물 철거 대행을 통해 농장주의 추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체계는 개 식용 산업 종식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 농장주의 자산과 생계 전환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특히 폐업 시기별로 차등화된 지원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조기 폐업을 유도하면서도,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보상하고 철거비용까지 지원하여 농장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적용하고 불법시설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책의 형평성도 확보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폐업이 완료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 폐업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지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 연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2024. 12.)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별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단계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폐업 이행 직후 해당 연도 내 보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농장주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폐업 신청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연차별 지원계획을 통해 순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지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어 농장주들의 안정적인 생계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

변화에 따른 비용 추가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파악됨

대체적으로 단발성 현금지원 사업들은 일회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정수급의 위험이 존재한다. 본 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일회성 지원금 수령 후에도 개 식용 관련 사업을 재개할 경우, 지원금이 낭비되고 개 식용 종식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사업은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연 1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폐업 농가의 사업장에 식용견 재사육 불허를 명시한 표지판과 부착물을 설치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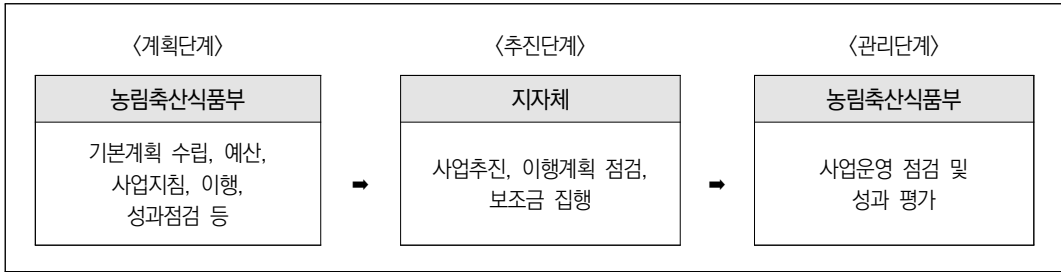
본 사업은 이중보상 방지를 위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폐업보상 수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보상 방지 규정은 사업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다만, 해당 제한은 특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지자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언급이 없기에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사업추진 주체 간 역할 구분의 명확성

본 사업은 집행기구별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 계획 수립, 운영지침 마련, 정책 결정, 예산확보 등 사업을 총괄하고,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보고받은 폐업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의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며, 사업시행 다음 연도 2월까지 최종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시·군·구는 폐업 지원금 지급 전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인과 농장주의 동일성 여부, 잔여건 존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철거대행 업체를 통해 사육 관련 시설을 철거·폐기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또한 폐업지원금 지급 후 4년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입식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집행기구 간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시·군·구의 현장 중심 관리체계와 시·도의 중간 관리 기능, 농식품부의 총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업무 지침과 서식이 마련되어 있어 실무 수행의 일관성과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Ⅲ-1] 사업 집행절차(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업자 전업·폐업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차 제출자료」, 2025. 1. 17.

[그림 Ⅲ-2] 사업 집행절차(교육·홍보 등)

단계	수행주체	주요내용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수립, 세부 사업계획 승인</li> <li>■ 사업시행지침 마련</li> <li>■ 국고보조금 교부 등</li> </ul>
↓		
추진	산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사업계획 수립</li> <li>■ 지원사업 추진, 추진상황 점검</li> <li>■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li> </ul>
↓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점검 및 실적 사업평가</li> <li>■ 국고보조금 정산 승인 등</li> </ul>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차 제출자료」, 2025. 1. 17.

#### 다. 유사제도와외의 정책조합 가능성

추진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최종 단계로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목표 또는 사업대상을 설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유사사업들과 적절한 정책 연계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유사하면서도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상호 결합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사업과 기존의 유사사업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각 사업들은 지원 목적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책 중복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사업이 가진 고유한 정책 목표와 차별화된 수혜자 범위를 고려할 때, 사업 간 중복 지원의 우려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존 사업들과 다음과 같이 연계되어 운영된다. 첫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개 사육 농장주들이 다른 축종으로 전환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흑염소, 양, 한우, 낙농, 양돈 등 다양한 축종에 대해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축종별로 정해진 지원단가를 적용받는다. 이때 고정금리 1~2%의 저리 용자가 제공되며, 자부담은 20% 수준이다. 단, 전환하고자 하는 축종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 여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지침」상 지원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표 III-4〉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축종별 지원단가

(단위: 천원/㎡)

구분	흑염소 양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육계	양계		
						종계	부화장	산란계
지원단가	456	380	380	967	662	680	1,684	1,182
구분	오리			양봉	사슴 (엘크)	말	메추리	토끼
	육용오리	종오리	부화장					
지원단가	662	680	1,684	883	380	648	1,182	7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2024. 10.

둘째, 농업종합자금지원(원예·축산생산업) 사업은 농장주가 원예업 등 농업으로 전업하고자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고정금리 2.0%로, 운영자금은 대출기관이 산출한 1회전 소요자금을 상한으로 고정금리 2.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 여건과 「사업시행지침」상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도축가공업체지원 사업은 도축상인이 타 축종의 도축·가공 시설로 전환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동물복지 지정 도축업의 경우 신축은 최대 50억원, 개보수는 10억원까지 지원되며, 기타 가축 도축업과 식육가공업 등은 업종별로 차등된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2~3%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자부담은 30% 수준이다.

〈표 III-5〉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업종별 지원한도

(단위: 억원)

구분		동물복지 지정 도축업	기타 가축 도축업	기타 가축 식육포장처리업	기타 가축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소규모 도계장
지원 한도	신축	50	20	10	10	5	10
	개보수	10	10	-	-	3	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2024. 10.

이러한 연계 지원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은 시·군·구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각 사업의 시행지침과 절차에 따라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개 식용 종식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타 사업과 연계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시·군·구의 통보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사업의 절차에 따라 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장주와 도축장인들의 원활한 전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사업과 연계된 지원제도들은 개 식용 종식만을 위한 전용 사업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전술한 지원들은 일반 농·축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사업 예산과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계 사업을 통한 지원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전달체계의 적절성

사업에 대한 전달체계의 적절성을 다음 세 가지 핵심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전달체계의 명확성과 구체성에 대해 검토한다. 소관부처에서 최종 수혜대상에 이르기까지의 서비스 전달 과정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각 단계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둘째, 수요자 관점에서의 접근성 평가이다. 수혜대상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현재 계획된 전달방식 외에 수혜자의 편의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은 없는지도 함께 분석한다.

셋째, 집행기구의 수행 역량에 대한 평가이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되므로, 이들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과 인력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집행에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 지원이 적절히 계획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가. 전달체계의 명확성 및 구체성

사업의 전달체계는 추진방법과 동일하게 사업 시행 이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정부 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와 중간기관을 거치게 되며,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체계적인 전달체계의 사전 설계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는 크게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의 단계별 역할로 구분된다. 이에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기관별 업무와 세부 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달체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사업 신청 및 접수 단계

#### 가) 사업 홍보

지자체(시·군·구)는 육견단체 시·군 지부 등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농가의 폐업 및 전업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2025년 폐업이 예정된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절차 등을 포함한 개 식용 증식 관련 지침을 안내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 나) 지원 신청

농장주와 도축상인의 폐업·전업 지원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폐업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을 받고자 하는 농장주는 전체 출하를 완료하여 농장 내 잔여견이 0마리인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도축상인의 경우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폐업 시기에 따라 지원단가가 차등 적용된다. 2024년 8월 7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는 60만원, 2025년 2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는 52.5만원, 2025년 8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45만원, 2025년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는 37.5만원이 지원된다. 법 공포일인 2024년 2월 6일 이후부터 법 시행일인 2024년 8월 7일 이전에 폐업한 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개사육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전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농장주의 경우 연평균 사육 마릿수 증빙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

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출하 마릿수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법률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도축상인은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도축 거래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양측 모두 임대·임차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합법적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제출 시 이미 증빙자료를 제출했거나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추가 제출이 불필요하다.

## 2) 신청서 확인 및 대상자 선정 단계

### 가) 지원금 평가반 구성 및 운영

지자체(시·군·구)는 지원금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농장주와 도축상인의 폐업지원 신청 자격을 서면으로 조사한다.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지원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세부 단계별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접수사항의 확인과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의 적정성을 위해 지원금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다.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개식용업무 담당과장이 맡으며, 반원은 평가반장이 아래의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위촉한다.

#### 〈지원금 평가반 자격 요건〉

- 시·군·구의 개 식용 업무 담당계장
- 축사시설 관계법령 및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부서(건축법)·농지부서(농지법)·환경부서(가축분뇨법) 담당자
-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
-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 학계 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안)」, 2024. 12.

### 나) 지원대상의 폐업지원신청 자격 확인(서면조사)

농장주와 도축상인의 폐업지원신청 자격 확인은 서면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후 신고한 농장주는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영업 사실 확인은 신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통해 이루어진다. 2024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개 식용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나, 같은 날짜 이후 관련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한 경우는 확인 대상이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확정 여부도 검토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이나 개발계획 등으로 이중 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장과 축사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 유지 여부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다.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는 정당한 소유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이는 공부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하되, 필요시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검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고 현황과 지원 여부 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다) 현지조사

지자체는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현지조사 기간을 갖는다. 다만, 신청서 제출이 집중되어 현지조사가 어려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조사는 평가반 또는 시·군·구의 개 식용 종식 업무 담당 공무원이 실시한다. 평가반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수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운영신고서, 그리고 관련 첨부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농장주나 도축상인의 폐업지원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실시했던 서면 조사 사항들이 현장에서도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폐업의 이행 여부도 중요한 조사항목이다.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항목별 이행 상태와 일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농장의 경우 잔여견이 있는지, 도축상인의 경우 실제로 영업을 종료했는지를 사진 촬

영 등을 통해 증빙한다. 폐업지원금의 감액이나 지급배제와 관련된 사항도 점검한다.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는 평가반의 업무담당자나 소관 부서와의 의견 조회를 통해 확인한다. 현지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가에서 잔여전 발생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진다. 이행계획서의 모든 항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정해진 기한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며, 농가의 의지와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폐업신청일 1년 이전부터 증·입식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는 종식 이행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라) 지원규모 결정과 결과 통보

지자체 담당자나 평가반은 앞서 실시한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지원할 항목을 선정하고, 폐업이행 촉진지원금 등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여러 절차를 통해 얻은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에는 서면확인 결과, 현장조사 결과, 그리고 별도로 진행된 감정평가를 통한 시설물 잔존가액 산정 결과가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에 작성하여 문서화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마) 조사 결과 통보 확인과 이의신청

농장주와 도축상인의 조사 결과 통보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장주와 도축상인은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확인한다. 만약 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신청 사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의 신청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신청 방법은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서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 바) 심사위원회 심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농가의 이의신청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시·군·구, 생산자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축산업 관련 기관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 그리고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내용이 사실인지를 전반적으로 심사하며, 특히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 둘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장·토지·시설물 등에 대한 폐업지원금 신청, 셋째, 위원장이 별도로 심사를 의뢰한 사항이다.

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에게 폐업지원금 신청 산정 이의신청 반영 결과서를 통보한다.

## 3) 자금 요청 단계

### 가) 조사 및 심사 결과 시·도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결과를 시·도 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절차에는 지급신청인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이 포함된다.

통보 시에는 지원 폐업지원금 신청내용 확인 결과서를 기반으로 심사 결과서와 엑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통보 시기는 구간에 따라 다른데, 1구간은 구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달 이내인 3월 초까지, 이후에는 분기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1달 이내인 4월, 7월, 10월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마지막 4분기는 예산 집행을 고려하여 10월 말에 마감한다.

### 나) 조사 및 심사 결과 농식품부 통보

시·도지사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심사 결과서를 취합하고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 전체의 심사결과서와 엑셀자료를 작성하여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에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심사 결과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여 검토할 수 있다.

#### 4)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 가) 조사 및 심사결과 시·도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받은 시·도별 심사 결과서와 엑셀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별 지원금 배정액을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심사 결과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여 검토할 수 있다. 산출된 지자체별 배정액은 e나라도움 시스템과 공문 등을 통해 해당 시·도에 통보한다.

##### 나) 현장 확인 및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폐업예정지를 직접 방문하여 최종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이때 폐업예정지의 농장주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폐업지원금 지급농가에 잔여권이 없는지(잔여권 0마리 원칙) 등을 점검한다. 현장 확인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 계획과 당해 연도 배정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대상자들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통보한다.

##### 다) 철거·폐기

지자체(시·군·구)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농장주들의 시설물에 대해 철거 대행업체를 통해 철거 및 폐기를 진행한다. 육견 생산에 사용되던 축사 등 사육 관련 시설은 철거·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증빙자료(사진 등)는 서면으로 보관해야 한다. 다만 축사 등의 시설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폐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지자체는 반드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 라) 폐업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철거와 시설물의 폐기가 완전히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폐업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급한다. 이때 폐업지원금은 농장주에게만 해당되며,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 시기는 농장 및 도축장 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후 2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농가나 도축상인의 이의신청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후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계좌 입금 시에는 축산농가 등이 폐업지원

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에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마) 지급 결과 보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보고받은 폐업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의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또한 사업시행 다음 연도 2월까지 최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이행점검 단계

#### 가) 사후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여 관리한다. 이들은 지원금 수령자가 지원금을 받은 후에 개사육농장주로 다시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사후관리는 농식품부의 개사육농장주 이행 점검 계획에 따른 현장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4년간 지속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폐업지원금 대상이 된 축사와 토지 등 사업장에는 표지판이나 부착물을 설치하여 해당 축사에서 식용견 재사육이 불허된다는 것을 공시해야 한다. 둘째,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입식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4년간 관리해야 한다.

#### 나) 지원금의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첫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지원금이나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급받은 경우로, 이때는 폐업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둘째, 착오 등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이나 시설물 잔존가액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다. 셋째, 폐업한 농가가 폐업지원금이나 시설물 잔존가액

을 지급받은 후에 다시 육건을 사육하는 경우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또한 시·도지사는 부당수령자 현황과 부당수령금 환수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6) 소결

종합해 볼 때,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는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 배정부터 시작하여 지자체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및 시설물 잔존가액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실행 주체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시·군·구와 시·도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후관리 및 환수 체계도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또한 사업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관 부서 및 담당자 지정이 명확히 이루어져 있으며, 현장 확인부터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 더불어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관리책임자 지정과 연 1회 이상의 현장 점검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6〉 개 식용 종식 지자체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시도	시군구	담당분야	담당과명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총괄	축산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농장	축산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도축업	동물방역과
경기도	도청	총괄	동물복지과
경기도	도청	농장	축산정책과
경기도	도청	도축업	동물방역위생과
경상남도	도청	총괄	축산과
경상남도	도청	농장	축산과
경상남도	도청	도축업	동물방역과
경상북도	도청	총괄	동물방역과
경상북도	도청	농장	동물방역과

〈표 Ⅲ-6〉의 계속

시도	시군구	담당분야	담당과명
경상북도	도청	도축업	동물방역과
광주광역시	시청	총괄	농업동물정책과
광주광역시	시청	농장	농업동물정책과
광주광역시	시청	도축업	농업동물정책과
대구광역시	시청	농장	농산유통과
대구광역시	시청	도축업	농산유통과
대전광역시	시청	총괄	농생명정책과
대전광역시	시청	농장	농생명정책과
대전광역시	시청	도축업	농생명정책과
부산광역시	시청	총괄	농축산유통과
부산광역시	시청	농장	농축산유통과
부산광역시	시청	도축업	농축산유통과
서울특별시	시청	총괄	동물보호과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총괄	동물위생방역과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농장	동물위생방역과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도축업	동물위생방역과
울산광역시	시청	총괄	농축산과
울산광역시	시청	농장	농축산과
울산광역시	시청	도축업	농축산과
인천광역시	시청	총괄	농축산과
인천광역시	시청	농장	농축산과
인천광역시	시청	도축업	농축산과
전라남도	도청	총괄	축산정책과
전라남도	도청	농장	축산정책과
전라남도	도청	도축업	동물방역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총괄	동물방역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농장	동물방역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도축업	동물방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총괄	동물방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농장	동물방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도축업	동물방역과

〈표 Ⅲ-6〉의 계속

시도	시군구	담당분야	담당과명
충청남도	도청	총괄	축산과
충청남도	도청	농장	축산과
충청남도	도청	도축업	동물방역위생과
충청북도	도청	총괄	축수산과
충청북도	도청	농장	축수산과
충청북도	도청	도축업	동물방역과

주: 원자료에는 유통업과 식품업도 포함되어 있으나 제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차 질의 응답」, 2025. 1. 17.

### 나. 수혜자 접근 용이성

본 소절에서는 수혜대상자의 관점에서 사업 전달체계가 가진 한계와 제약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수요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장애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무부처는 개사육농장주와 도축업자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해 지자체를 통한 직접 신청 방식을 채택하고, TF 운영을 통한 현장 지원, 홍보 및 교육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본 사업의 주요 대상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할 때, 온라인 신청보다는 지자체를 통한 직접 서류 신청 방식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홍보와 지원 절차 교육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으며, TF를 구성하여 담당 부서 교육과 현장 업무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발급, 시설물 철거 및 폐기 증빙, 사후관리를 위한 각종 서류 준비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현장 지원과 교육을 계획하는 등 수혜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 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임을

고려할 때,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예컨대, 각 신청 단계별 상세 안내자료 제작과 배포, 일대일 맞춤형 서류작성 지원 서비스 도입 등 수혜자의 연령대와 이해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 다. 집행기구의 적절성

사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집행기구가 보유한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와 같은 집행기구의 사업수행 역량이나 가용 자원이 부족할 경우, 수혜자에 대한 적시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집행기구의 인력 구성과 전문성,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물적 기반, 그리고 관련 제도와 규정의 정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현재의 자원 수준이 사업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나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사업의 집행과정은 명확한 업무 지침과 표준화된 서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농장주나 도축상인이 제출하는 폐업지원 신청서부터 시작하여, 시·군·구의 지원금 평가반 구성, 서면조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상세한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주요 서식을 살펴보면, 시·군·구는 「사업시행지침」(2024. 10.) 내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인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신청서」, 「개식용 도축상인 (폐업, 전업)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지원금 평가반의 서면·현장조사, 확인 결과 통보(별지 제4호 서식, 「폐업지원금 등 신청 산정 결과서」), 이의신청 처리(별지 제4-2호 서식, 「폐업지원금 등 신청 산정 이의신청서」), 심사위원회 심의(별지 제4-3호 서식, 「폐업지원금 등 신청 산정 이의신청 반영 결과서」)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처리한다. 시·도는 시·군·구의 심사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 심사 결과서」)으로 취합하여 검토하고, 이를 다시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이처럼 세부적인 업무 지침과 표준화된 서식의 활용은 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집행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지방 실무협의체 회의와 권역별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앙-지방 실무협의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장, 식약처, 17개 시도 담당 부서가 참여한다.<sup>41)</sup> 회의는 대면과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진행되며, 개 식용 종식 관련 주요 동향 공유, 지자체 협조 사항 전달, 시도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다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회의 내용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에 중점을 두고, 중반에는 실태조사와 전업 컨설팅으로, 후반에는 기본계획 설명 등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여 보다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한다.<sup>42)</sup> 개식용종식추진단과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업무 가이드라인 안내,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설명, 전업 컨설팅 안내, 기본계획 설명 등을 진행하며, 이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인 업무 지침을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기능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과 소통 체계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실무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폐업지원금 지급과 사후관리 등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고 실무 수행 역량이 강화되어, 전반적인 사업 수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는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대상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할 때 각 부서의 가용 인력이 적절하게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장 확인과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업무의 특성상, 지역별 개식용 농장 및 도축장의 분포에 따른 적정 인력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시 인력 보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자체별 가용 인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업무 조정이나 추가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1)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9월까지 중앙-지방 실무협의체 회의를 총 11회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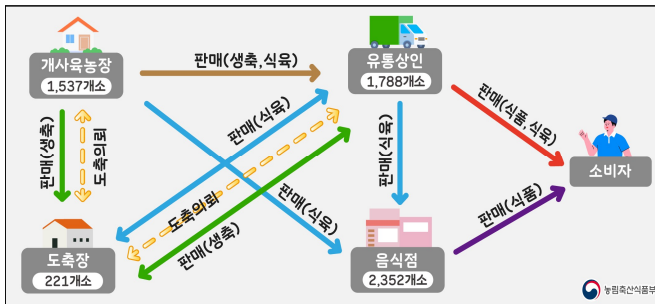
42)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의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함

## IV. 비용 추정

### 1. 비용 추정의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사육농장주(육견농가)와 도축상인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하고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를 제시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장주와 도축상인을 구분하여 폐업 및 전업 내역을 검토하며, 이와 함께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도 포함하여 분석한다. 비용 추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과 「사업시행지침서」(2025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안))의 지원 기준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추가적으로 관련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2024. 2. 7. 중간보고)』 용역 자료와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비용 추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개식용 관련 업계의 구조와 개소수는 부처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그림 IV-1] 개 식용 전체 유통 단계 모식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2024.10. p. 2.

〈업계 개소수〉

(2024. 8. 기준)

구분	개소
개사육농장	1,537
도축상인	221
유통상인	1,788
식품접객업	2,352
전체 업계	5,898

## 2. 부처가 제시한 비용의 개요

### 가. 총사업비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3,56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맡으며, 국비와 지방비는 50:50 비율로 지원하되 행정비용은 국비 100%로 지원한다. 부처는 개사육농장주의 폐·전업 지원을 위해 3,204억원을, 개식용 도축상인의 폐·전업 지원을 위해서는 324억원을, 교육·홍보 등 행정 비용에는 3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예산 중 1,974억원(중앙정부 987억원)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철거·시설물 잔존가액보다 큰 규모를 차지한다. 부처는 이 같은 지원 구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표 IV-1〉 사업대상별 3개년 지원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계
<b>합계</b>		<b>144,058</b>	<b>123,808</b>	<b>88,371</b>	<b>356,237</b>
중앙정부	<b>소계</b>	<b>72,579</b>	<b>62,454</b>	<b>44,735</b>	<b>179,769</b>
	<b>A. 개사육농장주</b>	<b>66,063</b>	<b>55,937</b>	<b>38,219</b>	<b>160,219</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45,563	35,437	17,719	98,719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8,750	18,750	18,750	56,250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개식용 도축상인</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416	5,416	5,416	16,248
	<b>C. 교육·홍보 등</b>	<b>1,100</b>	<b>1,100</b>	<b>1,100</b>	<b>3,300</b>
	지방정부	<b>소계</b>	<b>71,479</b>	<b>61,354</b>	<b>43,635</b>
<b>A. 개사육농장주</b>		<b>66,062</b>	<b>55,937</b>	<b>38,219</b>	<b>160,219</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45,563	35,437	17,719	98,719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8,750	18,750	18,750	56,250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개식용 도축상인</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416	5,416	5,416	16,24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2024. 9. 및 (별첨2)사업설명서\_수정, '연차별 투자계획', 2024. 9.

## 나. 개사육농장주의 폐·전업

### 1) 폐업 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동 사업의 주요 대상인 개사육농장주가 폐업 또는 전업할 경우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중앙정부는 개사육농장주가 폐업할 경우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잔여건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1,602억원을 배정한다. 폐업 시 이행촉진지원금 지급은 1~6구간에 따라 지원단가가 점차 감액되는 구조로 이는 조기 폐업 또는 전업 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先厚後薄 구조). 단, 사육시설이 「가축분뇨법」(분뇨배출시설 미신고) 또는 「건축법」(시설물 무허가·미신고)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IV-2〉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의 지급 방식

폐업 시기	1구간 <sup>1)</sup>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2024. 2. 7. ~2025. 2. 6.	2025. 2. 7. ~2025. 8. 6.	2025. 8. 7. ~2025. 12. 21.	2025. 12. 22. ~2026. 5. 6.	2026. 5. 7. ~2026. 9. 21.	2026. 9. 22. ~2027. 2. 6.
지원기간	2년	1.75년	1.5년	1.25년	1년	0.75년
지원단가	60만원	52.5만원	45만원	37.5만원	30만원	22.5만원

주: 1) 법 공포일(2024. 2. 6.) 이후부터 법 시행일(2024. 8. 7.) 이전에 폐업한 농가 포함

2) 지원단가는 폐업 시기 구간별 지원단가(30만원×지원기간) 차등 적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2024. 10. p. 6.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사육 마릿수와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 조정률의 곱, 즉 사육 마릿수×폐업 시기별 지원단가×조정률로 산출된다. 사육 마릿수는 농장주가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되, 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인 사육면적에 따라 환산한 적정 사육두수 1.2마리/㎡를 상한으로 설정하여 지급한다. 만약 사육시설 면적이 60㎡ 미만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사육시설 신고 면적 기준을 환산한 적정 사육두수를 상한으로 설정하여 지급한다.

지원단가는 폐업시기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며, 폐업일은 전량 출하가 완료된 폐업지원 신청일로 정한다. 「개식용종식법」 공포(2024년 2월 6일) 이후 법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시행(2024년 8월 7일) 이전에 폐업한 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조정률은 농지전용 미신고 등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농장주에 대해 지원금액을 감액하

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부처는 이를 50%로 제시하였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에 위반 또는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위반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폐업 이행으로 활용이 어려워진 개사육 관련 시설물은 잔존가액을 지원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장주는 폐업지원 신청일 이후 시·군·구가 의뢰한 감정평가로 산출된 개 사육시설(건축물, 설비 등)의 잔존가액을 지급받는다. 잔존가액은 「토지보상법」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규정」 등을 준용한 폐업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을 지급한다.

개사육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은 폐업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농장주에게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되, 철거비용은 지자체가 철거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지급한다. 다만, 자력으로 철거를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건축법」상 시설물 무허가·미신고, 「농지법」상 농지전용 미신고,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미신고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고 철거비용은 자부담하게 된다.

## 2) 전업 시 지원사항

농장주가 개 사육업 이외의 농·축산업으로 전업을 희망할 경우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흑염소 등 전환을 희망하는 축종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지침」상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규정된 축종별로 지원단가가 적용되며, 이자율은 고정 금리로 1~2%가 적용되며 자부담은 20%다.

원예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지침」의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시설의 신축·개보수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고정금리 2.0%가 적용되며, 총사업비의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은 고정금리 2.5%로 적용되며, 대출기관이 산출한 1회전 소요자금을 상한으로 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표 IV-3〉 전업 시 축종별 지원단가

(단위: 천원/㎡)

흑염소 양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육계	양계		
					총계	부화장	산란계
456	380	380	967	662	680	1,684	1,182
오리			양봉	사슴 (엘크)	말	메추리	토끼
육용오리	종오리	부화장					
662	680	1,684	883	380	648	1,182	7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증식 기본계획」, 2024. 10.

한편, 농가가 전업할 경우 동 사업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으므로 총사업비 추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가가 폐업 대신 전업을 선택할 경우 기존의 사육 설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철거비는 일부 감소할 수 있겠으나, 지원규모가 큰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전업하더라도 우선 폐업이 이뤄지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총사업비에 소폭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고, 관련 데이터도 확보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전업 농가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 3) 잔여권 관리비용

개사육농장주들이 폐업·전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축되지 않는 잔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농장주들의 잔여권 유거나 소유권 포기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유예기간 이후에도 잔여권 처리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처는 해당 업종의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잔여권 관리비용을 책정하였다.

## 다. 개식용 도축상인의 폐·전업

### 1) 폐업 시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중앙부처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폐·전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 도축상인이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 철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년간 16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군·구가 폐업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도축상인의 시설물 잔존가액은, 폐업 지원 신청

일 이전에 자체 철거 또는 처분으로 인해 시설물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토지보상법」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규정」 등을 준용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잔존가액으로 지급한다.

폐업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은 잔존가액 지원과는 달리 「건축법」상 시설물의 무허가·미신고, 「농지법」상 농지전용 미신고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철거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계약한 용역업체가 대행하므로 철거 대행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력으로 철거를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 2) 전업 시 지원사항

도축상인이 개 이외의 타 축종 도축업으로 전업을 희망할 경우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용자받을 수 있다. 희망 축종 및 업종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지침」상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도축상인은 타 축종 도축을 위한 건축물이나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시 용자받을 수 있다. 업종별 지원한도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전업 시 업종별 지원한도

(단위: 억원)

구분		동물복지 지정	기타 가축	기타 가축	기타 가축	식육즉석판매	소규모
		도축업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가공업	도계장
지원한도	신축	50	20	10	10	5	10
	개보수	10	10	-	-	3	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2024. 10.

## 라.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용역·실태조사 수행 등 행정비용을 국비로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항목은 크게 교육·홍보비, 연구용역비, 일반수용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항목별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홍보비 중 교육비는 지자체 담당자와 교육·소통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등이고, 홍보비는 정책 추진상황 홍보,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다매체(언론, 방송, 현수막 등) 상시 홍보로 사용된다.

둘째, 연구용역비는 정책 추진과 관련된 연구용역, 실태조사 수행 비용 및 농가 전업 지원을 위한 희망농가 축종별 전문기술 교육 및 전업농가 입식 축종에 대한 사육 전반의 현장관리·지도 등 컨설팅비로 사용된다.

셋째, 일반수용비는 육견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다.

### 3. 비용의 추정

이번 소절에서는 부처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총사업비의 각 세부항목별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동 사업은 교육·홍보비를 제외하고, 중앙과 지자체가 50:50의 비율로 사업비를 배정하며, 이하에서는 중앙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각 세부항목별 예산이 도출된 가정과 산식을 점검하고 추정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먼저, 사업대상별로 세부항목별 지원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개사육농장주에게는 총 3,204억원이, 개식용 도축상인에게는 32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동 사업의 교육·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33억원이 책정되어 3개년간 총 3,562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본 검토가 진행되는 2024년 12월에, 본 사업의 2025년 예산(국비 544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었다. 확정된 예산은 개사육농장주 폐·전업 지원에 486억원, 도축상인 폐·전업 지원에 54억원,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에 4억원이다. 그리고 이후 폐업 신청 농가 수가 앞 구간에 몰리면서 2025년 5월, 예산수정안을 검토하여 예비비가 추가 편성되었다.

〈표 IV-5〉 사업대상별 3개년 지원예정액 및 2025년 예산확정액(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A)	2025 (예산)	2025 (예산 수정안)	2026 (B)	2027 (C)	계 (A+B+C)	
합계	144,058	108,426	275,246	123,808	88,371	356,237	
중앙 정부	소계	72,579	54,413	137,823	62,454	44,735	179,769
	A. 개사육농장주	66,063	48,597	132,007	55,937	38,219	160,219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45,563	28,097	84,475	35,437	17,719	98,719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8,750	19,000	46,032	18,750	18,750	56,250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500	1,500	1,750	1,750	5,250

〈표 IV-5〉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2025(A)	2025 (예산)	2025 (예산 수정안)	2026 (B)	2027 (C)	계 (A+B+C)
중앙 정부	B. 개식용 도축상인	5,416	5,416	5,416	5,416	5,416	16,248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416	5,416	5,416	5,416	5,416	16,248
	C. 교육·홍보 등	1,100	400	400	1,100	1,100	3,300
소계		71,479	54,013	137,423	61,353	43,635	176,467
지방 정부	A. 개사육농장주	66,063	48,597	132,007	55,937	38,219	160,219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45,563	28,097	84,475	35,437	17,719	98,719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8,750	19,000	46,032	18,750	18,750	56,250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500	1,500	1,750	1,750	5,250
	B. 개식용 도축상인	5,416	5,416	5,416	5,416	5,416	16,248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416	5,416	5,416	5,416	5,416	16,248

자료: 「2025년 확정 예산 및 면제요구서」, '개식용종식 지원 예비비 세부내역' 참고

본 검토의 총사업비 추정은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으로 구분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사업계획안'은 사업수행주체가 요구한 안이고, '검토안'은 주무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비교해 사업 관련 근거자료들을 활용하여 지원단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재추정한 안이며, '대안'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폐업 1구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여 재추정한 안이다.<sup>43)</sup> 본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연구 기간에 이미 본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등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검토안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 가. 개사육농장주의 폐·전업

####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국비 기준으로 2025년 456억원, 2026년 354억원, 2027년 177억원 등 총 987억원으로 추정하였다.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추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지원 마릿수, ② 개 한 마리당 지원액, ③ 연

43) 검토안에서 연도별 폐업률과 농지법 합법률 등을 사업계획안에 맞추었기 때문에 지원단가가 사업계획안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원단가의 적정성'으로 작성하였음

차별 폐업비율, ④ 합법 농가비율, ⑤ 조정률이다.

부처는 지원 마릿수 45만두를 대상으로, 개 한 마리당 지원액을 30만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각 연도 폐업률을 1년 차인 2025년에 30%, 2·3년 차에 각각 35%를 가정하였는데, 1년 차의 30% 폐업률은 소규모 농가 위주의 폐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3년 차에 비해 적게 집계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농지법」 합법 농가 비율은 50%로 추정하였는데, 「농지법」을 위반한 농가는 지원금 삭감을 위해 50%의 조정률을 적용하였다. 폐업률의 경우,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라 개사육농장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행령 공포(2024년 8월 6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이 가능하므로, 향후 폐업·전업 현황은 변경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에서 언급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추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려해 각 연도의 국비 및 지방비를 합한 1,974억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추정하였다. 2025년의 경우, 합법 농가에 대해 '30만원/두×45만두×30%×1/2(합법, 불법 비율)×3년'을 적용하여 608억원을, 불법 농가에 대해서는 조정률 50%를 적용하여 304억원으로 추정하여 총 911억원을 추산하였다. 2026년의 경우, 합법 농가에 대해 '30만원/두×45만두×35%×1/2×2년'을 적용하여 473억원을, 불법 농가에 대해서는 조정률 50%를 적용하여 236억원으로 추정하여 총 709억원을 추산하였다. 2027년의 경우, 합법 농가에 대해 '30만원/두×45만 두×35%×1/2×1년'을 적용하여 236억원을, 불법 농가에 대해서는 조정률 50%를 적용하여 118억원으로 추정하여 총 354억원을 추산하였다.

#### 가) 지원 대상 마릿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가 제출한 운영신고서의 ① 연평균 사육 마릿수 데이터와 ②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면적 값을 바탕으로, ① 사육 마릿수 503천마리와 ② 배출시설 면적 464천㎡를 기준으로 적정 사육두수를 상한으로 적용하여 사육 마릿수 45만두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23 기타 가축통계」에 따르면 '개 종류별 마릿수'에서 애완종을 제외하고 진돗개와 기타종을 합하면 31만 3,892마리이다. 기타 가축통계 조사에서는 개의 연령별·성별·종류별 마릿수만을 조사할 뿐 사육목적은 조사되지 않아 31만여 두가 식용견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애완종인 경우 식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부처가 제시한 45만두와 크게 차이가 난다.

〈표 IV-6〉 개 종류별 마릿수 현황

(단위: 마리)

구분	애원종	진돗개	기타	계
20년	115,261	19,270	345,219	479,750
21년	140,060	11,283	357,780	509,123
22년	221,953	12,480	317,558	551,991
23년 12월	402,235	30,032	283,860	716,1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 기타 가축통계」 p. 29. 발췌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연평균 사육 마릿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연구진은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부처가 미제출하였고, 비교 가능한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처가 제시한 45만두를 토대로 추계하는 한계가 있다.

#### 나) 마리당 지원액

개 한 마리당 지원액의 경우 대한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순이익을 40만원으로 추산하며, 마리당 200만원(40만원(연소득)×5년)의 지원을 주장<sup>44)</sup>하였으나, 이는 유사사례(아프리카돼지열병)를 비취볼 때 과도한 금액으로 평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연구』(2004) 및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서 제공한 육견 농가 두당 평균 순수익 산출 자료에 따르면, 마리당 순수익은 31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준해 지원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개 한 마리당 지원액 산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6구간의 경우 지원액이 마리당 순수익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어 육견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구간별 시기가 예산 회기와 불일치하여 예산 지급 시기상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3구간 시기는 2025. 8. 7.~2025. 12. 21.이나 2025년 8월 초에 폐업한 개사육농장주에게 지급될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지급이 가능해지므로 농장주의 반발이 우려된다. 따라서 폐업 구간을 예산 순기에 맞춰 조율하거나 조정이 어렵다면 농장주에게 최대한 공지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44) 뉴스1, 「[단독]정부, 개 식용 종식 연구용역 연이어 발주...적정 사육·지원규모 파악」, 2024. 5. 13., <https://news.nate.com/view/20240513n02007>, 검색일자: 2025. 1. 15.

#### 다) 합법 농가 비율

합법 농가 비율 추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는 부족하다. 농가 1,537개소 중 ① 「가축분뇨법」상 합법 농가, ② 「건축법」상 무허가 농가, ③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 대상<sup>45)</sup>이 아닌 시설 농가, ④ 「농지법」 위반 농가(농지전용신고 누락)로 구분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였으나, 부처는 위법 사항을 판단하는 시점을 농장주가 폐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으로 하고 있어 농가가 신청서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 여부 수치 등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농지법」 위반의 경우 행정당국이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사전적으로 파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부처는 밝혔다.<sup>46)</sup>

다만, 2차 질의 및 요구자료 답변(24. 12. 20.)에서 「가축분뇨법」상 합법적으로 신고한 농가는 896개소(58.3%), 3차 질의 및 요구자료 답변(25. 1. 7.)에서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는 427개소로 답변한 바, 「가축분뇨법」 신고 의무가 없는 60㎡ 미만 농가는 214개소로 예측되며, 「건축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가축분뇨법」 위반만으로도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농지법」 위반 사례(농지전용신고 누락)도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검토안에서는 부처가 동 금액 산정 시 적용한 대로 합법 농가의 비율은 50%를 그대로 준용하였다.<sup>47)</sup> 대안에서는 폐업 1구간에서 나타난 합법률이 향후 전 구간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합법률을 96.2%로 사용하였다.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가축분뇨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한 농가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농지법」 합법 농가 비율이 사업계획안에서 가정된 50%보다 많을 경우 필요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농지법」 위반 농가에는 조정률이 적용되므로 각 법령별 위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는 427곳(28%)에 해당하고, 「건축법」 위반 농가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지법」 위반 사례(농지전용신고 누락)도 존

45)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에 의거, 개사육시설의 면적이 60㎡ 이상인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임

46) 「농지법」 제64조(과태료) 2항 1호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개사육농가 상당수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암묵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의 의구심을 가지게 함

47) 폐업이행지원촉진금 수령이 가능한 농가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모두 합법인 경우를 의미함. 이 중에서 100% 촉진금 수령이 가능한 농가는 「농지법」 합법 농가이며, 50%만 수령이 가능한 농가는 「농지법」 불법 농가를 의미함

재하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를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IV-7〉 개사육농장 관련 법령별 위반행위 확인 시 폐업지원 불이익 사항

법령	위반행위	폐업이행 촉진금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비용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장이 무허가 또는 미신고(제11조, 제14조, 제20조)건축물인 경우</li> <li>• 농장이 사용승인(제22조)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li> </ul>	지원 배제	지원	지원 배제
「가축분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제11조제3항 전단)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li> </ul>	지원 배제	지원	지원 배제
「농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장이 농지전용신고(제35조 전단)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li> </ul>	50% 감액	지원	지원 배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2024. 9.)

#### 라) 조정률

「농지법」 위반 농가 비율에 적용되는 조정률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부처에서 제출하지 않아 불충분하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시 농지 부서에서 「농지법」 위반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 귀책 사유가 일부 인정될 수 있다. 위반 농가의 다수가 생계 안정이 필요한 소농으로 분류되며, 「농지법」 위반에 따라 50% 감액 지원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정률을 낮추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를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sup>48)</sup>에 따르면, 1,537개소 중 300두 이하 소농은 999개소로 65%를 차지하며, 300~1,000두의 중농이 457개소(30%), 1,000두를 초과하는 대농이 81개소(5%) 존재한다.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되고 있는바, 사업시행 도중에 조정률 변경 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이를 신뢰한 개사육농가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정률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조정률 산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처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4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2025. 2. 9.

마) 연차별 폐업 비율

연차별 폐업률은 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장주를 대상으로 폐업 이행시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세 차례 실시하였다.

폐업 이행시기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구간별로 지원단가는 차등 적용된다. 구간별 폐업 이행시기가 변동될 경우 예산 추정치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처가 조사한 최신화된 자료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표 IV-8〉 이행계획서상 구간별 개사육 농가 폐업예정 시기

(단위: 가구, %)

구분 (개소)	합계	폐업(100% 감축) 완료 시기						
		1구간 (‘24. 2. 7. ~‘25. 2. 6.)	2구간 (‘25. 2. 7. ~‘25. 8. 6.)	3구간 (‘25. 8. 7. ~‘25. 12. 21.)	4구간 (‘25. 12. 22. ~‘26. 5. 6.)	5구간 (‘26. 5. 7. ~‘26. 9. 21.)	6구간 (‘26. 9. 22. ~‘27. 2. 6.)	
당초 (2024년 8월)	합계	1,537	204	63	56	139	124	951
	전업	662	87	29	19	63	61	403
	폐업	875	117	34	37	76	63	548
	전업률	43.1	5.7	1.9	1.2	4.1	4.0	26.2
	폐업률	56.9	7.6	2.2	2.4	4.9	4.1	35.7
	<b>전·폐업률</b>	<b>100.0</b>	<b>13.3</b>	<b>4.1</b>	<b>3.6</b>	<b>9.0</b>	<b>8.1</b>	<b>61.9</b>
변경 (2024년 12월)	합계	1,537	329	69	59	118	114	848
	(증감)	(-)	(+125)	(+6)	(+3)	(-21)	(-10)	(-103)
	전업	657	144	32	21	49	55	356
	폐업	880	185	37	38	69	59	492
	전업률	42.7	9.4	2.1	1.4	3.2	3.6	23.2
	폐업률	57.3	12.0	2.4	2.5	4.5	3.8	32.0
<b>전·폐업률</b>	<b>100.0</b>	<b>21.4</b>	<b>4.5</b>	<b>3.8</b>	<b>7.7</b>	<b>7.4</b>	<b>55.2</b>	
2차 변경 (2025년 2월)	농가수	1,537	623*	212	61	57	74	510
	(증감)	(-)	(+294)	(+143)	(+2)	(-61)	(-40)	(-338)
	두수	468,229	150,357*	85,889	26,445	18,539	16,996	170,003
	<b>폐업률 (농가수)</b>	<b>100.0</b>	<b>40.5</b>	<b>13.8</b>	<b>4.0</b>	<b>3.7</b>	<b>4.8</b>	<b>33.2</b>
	<b>폐업률 (두수)</b>	<b>100.0</b>	<b>32.1</b>	<b>18.3</b>	<b>5.6</b>	<b>4.0</b>	<b>3.6</b>	<b>36.3</b>

주: 1. 2차 변경자료는 전업률은 미제시되고 폐업률만 제출되고, 사육두수 정보는 최초 제시되었으나,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의 사육두수는 총 468,229두이지만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은 450,000두이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

2. \*는 1구간의 폐업 실적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차 제출자료(2025. 1. 17.)」, 「5차 제출자료(2025. 5. 15.)」를 토대로 연구진 가공

2024년 8월 당초 조사와 12월 변경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폐업 예정 시기에 대한 변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구간인 1년 차<sup>49)</sup> 전·폐업률이 25.9%(1구간 21.4%, 2구간 4.5%)로 당초 조사에서 17.4%로 집계된 것보다 8.5%p 증가한 결과로, 폐업·전업을 희망하는 농가 수가 사업 초기인 1구간에서 특히 증가하였다. 이는 개식용 관련 업종의 추세적 하락이 개사육 농가의 폐업 및 전업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실제 1구간 폐업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2차 이행계획서 변경('25년 2월)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년 차(2025년)인 1~2구간의 전·폐업률은 농가수 기준 54.3%로 24년 12월에 조사한 값(25.9%)보다 28.4%p 증가한 수치이며, 당초 이행계획서 상의 17.4% 및 부처의 사업계획안에 반영된 예상 폐업률 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경우 3차례 제출된 이행계획서상 수치보다 2, 3구간에서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이전 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던 사육두수도 1차년도에 50.4%에 달하고 있어 기본계획 발표 이전의 당초 사업계획 시의 수요 예측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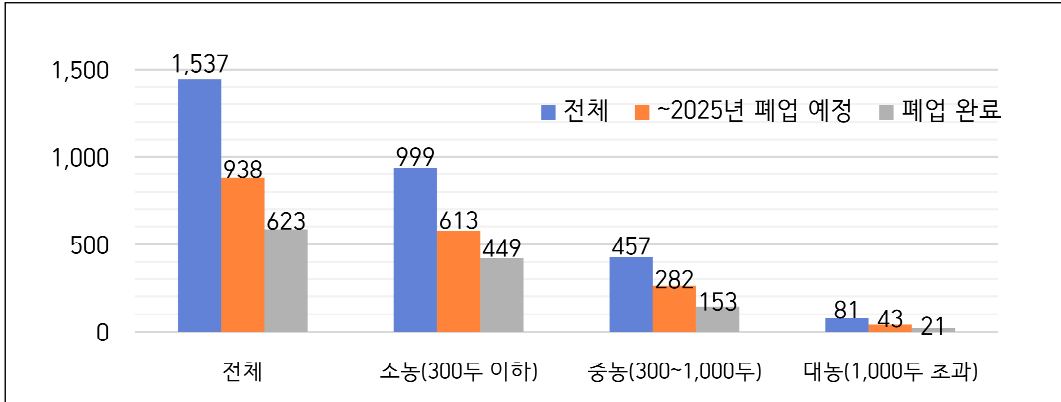
2년 차(2026년)인 3~5구간의 전·폐업률은 12.5%로 '24년 8월(20.7%), '24년 12월(18.9%)보다 감소하여 3~5구간 폐업을 희망한 농장주들이 폐업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고, 3년 차(2027년)인 6구간은 33.2%로 '24년 8월(61.9%), '24년 12월(55.2%)보다 감소하여 당초 대비 28.7%p 감소하였다. 6구간 폐업률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와 비교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농장주들이 조기 폐업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해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49) 부처에 확인한 결과, 2025년은 1~2구간, 2026년은 3~5구간, 2027년은 6구간임

[그림 IV-2] 개사육농장 사육 규모별 폐업 현황

(단위: 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2025. 2. 9.

#### 바) 이행촉진지원금의 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sup>50)</sup>×연평균 사육 마릿수”로 계산되며, 「농지법」 위반 농가인 경우 50% 조정률이 추가 반영된다.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2024. 10.)에 따르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사육 마릿수×폐업 시기별 지원단가×조정률”로 산정되어야 하나, 부처는 구간별 지원대상 사육 마릿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sup>51)</sup> 검토안과 대안 추정 시 부처가 사업계획안에서 적용한 방식(총 지원대상 사육두수(45만두)×농가 폐업률)을 준용하였다.

검토안과 대안의 차이는 「농지법」 합법 농가 비율, 구간별 폐업률을 상이하게 반영하였다는 점에 있다. 합법 농가 비율의 경우 검토안은 사업계획안을 준용하여 50%를 적용하였으나 대안에서는 1구간 폐업 실적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합법률이 96%에 달하였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농가는 당초 예상과 달리 거의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계하였다. 농가 폐업률의 경우 검토안에서는 사업계획안의 연차별 폐업률과 2025년도 정부안을 준용하여 1~2구간 농가 폐업률을 30%, 3~4구간 농가 폐업률을 35%, 5~6구간 농가 폐업률을 35%로 하여 추정하였으나, 대안에서는 2025년 2월 이행계획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예산회기를 고려하여, 1차년도(1~2구간) 폐업률을 54.3%, 2차년도(3~5구간) 폐업률을 12.5%,

50) 지원단가에 폐업구간별 지원액과 지원기간이 반영되어 있음

51) 부처에서 2025년 2월에 제출한 2차 변경 이행계획서에서 구간별 사육두수 정보를 처음 제공하였으나, 지원 대상의 연평균 사육두수가 아닌 실제 사육두수로 확인됨

3차년도(6구간) 폐업률을 33.2%로 하여 추정하였다. 사업계획안과 비교해 보면, 1차년도의 경우 대안은 사업계획안 대비 24.3%p 증가하였고 2차년도의 경우 사업계획안 대비 22.5%p 감소하였다. 3차년도에 대안은 사업계획안 대비 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단가는 검토안과 대안 모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서의 “30만원/두×지원기간” 계산방식을 토대로 한 구간별 단가를 준용하였으며, 사업계획안은 검토안·대안과 비교하여 지원기간이 길게 반영되어 있어 지원단가가 검토안·대안 대비 높게 책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9〉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검토안·대안 설정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지원대상 마릿수	총 45만 두	준용	준용
폐업률	'25년 30%, '26년 35%, '27년 35%	('25년) 30% (1~2구간) * 1구간: 12%, 2구간: 18% (‘26년) 35% (3~4구간) * 3구간: 14%, 4구간: 21% (‘27년) 35% (5~6구간) * 5구간: 14%, 6구간: 21%	('25년) 54.3% (1~2구간) * 1구간: 40.5%, 2구간: 13.8% (‘26년) 12.5% (3~5구간) * 3구간: 4.0%, 4구간: 3.7%, 5구간: 4.8% (‘27년) 33.2% (6구간)
지원단가 (30만원/두 ×지원기간)	'25년 30만원/두×3년 '26년 30만원/두×2년 '27년 30만원/두×1년	*기본계획 준용	
		1구간: 30만원/두×2년 2구간: 30만원/두×1.75년 3구간: 30만원/두×1.5년	4구간: 30만원/두×1.25년 5구간: 30만원/두×1년 6구간: 30만원/두×0.75년
농지법 합법률	50%	준용	96.2% (1구간 실적치)
농지법 위법농가 조정률	50%	준용	준용

자료: 연구진 작성

이상에서 논의한 검토안, 대안의 총사업비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검토안의 경우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3년간 총 1,342억원으로 추정되나, 이는 「사업계획안」상 1,974억원보다 632억원 감소하였다. 1년 차에 합법 농가일 경우 1~2구간에서 375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187억원으로 합계 562억원으로 추산하였고, 2년 차에 합법 농가일 경우 3~4구간에서 319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159억원으로 합계 478억원으로 추산하였으며, 3년 차에 합법 농가일 경우 5~6구간에서 201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100억원으로 합계 301억원으로 추산하였다.

〈표 IV-10〉 연도별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추계(검토안)

(단위: 만원, 만두, %, 백만원)

구분	지원 단가	사육 마릿수	폐업률	합법률	불법 조정률	폐업이행촉진금			계	총계	
						계	합법 농가	불법 농가			
1년차	1구간	60	45	12.0	50	50	24,300	37,463	18,731	56,194	134,156
	2구간	52.5	45	18.0	50	50	31,894				
2년차	3구간	45	45	14.0	50	50	21,263	31,894	15,947	47,841	
	4구간	37.5	45	21.0	50	50	26,578				
3년차	5구간	30	45	14.0	50	50	14,175	20,081	10,041	30,122	
	6구간	22.5	45	21.0	50	50	15,947				

자료: 연구진 계산

대안의 경우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3년간 총 1,927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업계획안」상 1,974억원보다 48억원 감소한 수치이다. 1년 차(2025년)에 합법 농가일 경우 1~2구간에서 1,366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27억원으로 합계 1,393억원으로 추산하였고, 2년 차(2026년)에 합법 농가일 경우 3~5구간에서 200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4억원으로 합계 204억원으로 추산하였으며, 3년 차(2027년)에 합법 농가일 경우 6구간에서 323억원, 불법 농가일 경우 6억원으로 합계 330억원으로 추산하였다.

〈표 IV-11〉 연도별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추계(대안)

(단위: 만원, 만두, %, 백만원)

구분	지원 단가	사육 마릿수	폐업률	합법률	불법 조정률	폐업이행촉진금			계	총계	
						계	합법 농가	불법 농가			
1년차	1구간	60	45	40.5	96.2	50	107,272	136,558	2,698	139,256	192,660
	2구간	52.5	45	13.8	96.2	50	31,984				
2년차	3구간	45	45	4.0	96.2	50	7,946	20,032	396	20,428	
	4구간	37.5	45	3.7	96.2	50	6,126				
	5구간	30	45	4.8	96.2	50	6,356				
3년차	6구간	22.5	45	33.2	96.2	50	32,976	32,338	638	32,976	

자료: 연구진 계산

## 2)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는 농가의 위법 사항에 따라 달리 지원될 예정이다. 철거비는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자부담이 원칙이며, 시설물 잔존가액은 종전 판례에 따라 모든 농가에 지급된다. 잔존가액 지급은 건축·시설물의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권 침해로 간주하는 판례 입장 및 타 보상 사례를 고려할 때, 차등 없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개사육농장주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1,537개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한 농장주만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처는 자진 신고기간을 놓친 농가, 도축상인 대상으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신고기한이 종료된 경우라도 신고 접수를 허용하여 이행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페널티(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식인지, 추가지원(총사업비 증가 부담 요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인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바, 기한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별도 폐업 등 지원은 없으나, 2027년 2월까지 원활한 종식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정도만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IV-12〉 시도별 폐업 완료 시기 분포 현황(2024년 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폐업(100% 감축) 완료 시기					
		1구간 (‘24. 2. 7. ~‘25. 2. 6.)	2구간 (‘25. 2. 7. ~‘25. 8. 6.)	3구간 (‘25. 8. 7. ~‘25. 12. 21.)	4구간 (‘25. 12. 22. ~‘26. 5. 6.)	5구간 (‘26. 5. 7. ~‘26. 9. 21.)	6구간 (‘26. 9. 22. ~‘27. 2. 6.)
합계 (전업)	1,383	329 (144)	68 (32)	59 (21)	118 (49)	114 (55)	849 (356)
경기	313	52	11	13	33	16	188
강원	87	21	3	5	6	8	44
충북	196	50	16	5	9	15	100
충남	168	55	3	8	5	21	76
전북	127	24	5	9	9	7	73
전남	135	51	9	4	9	18	44
경북	255	30	16	9	19	11	170
경남	102	14	2	5	7	11	63

〈표 IV-12〉의 계속

(단위: 개소)

구분	합계	폐업(100% 감축) 완료 시기					
		1구간 (‘24. 2. 7. ~‘25. 2. 6.)	2구간 (‘25. 2. 7. ~‘25. 8. 6.)	3구간 (‘25. 8. 7. ~‘25. 12. 21.)	4구간 (‘25. 12. 22. ~‘26. 5. 6.)	5구간 (‘26. 5. 7. ~‘26. 9. 21.)	6구간 (‘26. 9. 22. ~‘27. 2. 6.)
제주	42	8	1	-	3	1	29
서울	-	-	-	-	-	-	-
부산	9	-	-	1	1	2	5
대구	18	10	-	-	2	2	4
인천	35	1	1	-	3	1	30
광주	9	4	1	-	3	-	1
대전	19	8	-	-	2	-	9
울산	10	-	-	-	3	1	6
세종	12	1	-	-	4	-	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차 제출자료」, 2025. 1. 17.

시설물 잔존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되었다. 농가당 평균 시설물 잔존가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단가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6,100만원으로 계산되었다. 이 금액은 사육설비 1,100만원/호와 건축물 5,000만원/호로 구성된다.

건축물의 경우 일반 건축물은 20%, 간이 양축 시설은 80%의 비율을 반영하여 잔존가액을 산정하였다. 사육설비의 경우 주요 사육설비 조사 항목 중 이전 및 중고 판매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50%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시설물의 실제 사용 가치와 시장 가치를 반영하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부처에서 3차 제출자료에서 산출된 1,151.5만원/호를 내림하지 않고 검토안과 대안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다. 향후 농가별 잔존가액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일반건축물) 150백만원
    - \* 평균규모농가 평가건적 222백만원(사육면적 576㎡, 내용연수 30년, 경과연수 7년)×15/23(평균농가 경과연수 15년 반영) ≃ 150백만원
  - (간이양축시설) 25백만원
    - \* 500㎡(농가 평균시설면적) \* 5만원/㎡(비닐하우스·콘크리트 타설시 감정평가액)
- (산출식) 150백만원\*20%+25백만원\*80%=50백만원

〈표 IV-13〉 사육설비 세부항목당 단가

명칭	신품가(천원)	보유수량	용도	추계(천원)
전기설비(kW당 106천원)	106	10	보일러 및 연계 공사비	1,060
전기스팀보일러	25,000	0.05	스팀가열	1,250
석유스팀보일러	6,000	0.01	스팀가열	60
보온용 탱크(개)	1,000	1	개별보온	1,000
배풍기(600mm)	850	0.02	환풍	17
환풍기(대)	850	0.02	환풍	17
지하수 관정	800	8	인허가 및 개발비용	6,400
물탱크 5톤	850	0.3	용수저장탱크	255
물펌프	450	0.4	용수	180
액상저장탱크	2,500	0.4	사료보관	1,000
원자섭비(비닐하우스)	1,000	5	내외벽 및 철재 개폐기	5,000
액비저장시설(톤)	800	8	퇴비사 침출액 배 보관	6,400
정착조(대)	1,500	0.2	정착조 설비	300
냉온조	1,800	0.2	냉난방	360
힐보로워(10hp)	1,800	0.2	송풍용도(퇴비사)	360
분사노즐 및 탱크	2,500	0.3	액상사료분사	750
분사노즐 프레스시설(대)	2,500	0.3	분뇨청소 및 집하	750
분뇨처리시설	8,000	0.1	분뇨처리	800
운송차량	3,500	0.1	액상사료운송	350
공기콤프레서(10hp)(대)	2,500	0.3	공기압축	750
총액				23,030
감가상각 50% 반영				11,51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차 제출자료」, 2025. 1. 17.

철거비는 합법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육견단체 자체조사를 통해 합법 농가 비율은 40%로 추정되었다. 「건축법」상 시설물이 무허가·미신고된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 미신고된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미신고로 위반이 확인된 농가는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위법 시설의 철거비는 자부담이 원칙이며, 철거·폐쇄 명령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해당 의무자에게 징수한다.

농가 1,537개소 중 합법 농가 비율이 40%라면 철거비 지급 대상 농가는 약 614개소로 추산된다. 대상 농가에 부처에서 제시한 면적당 단가 70,000원/㎡ 및 농가당 평균 배출시설면적 500㎡를 적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철거비를 산출했다. 다만 철거비 지급 대상과 지원금 지급 대상 농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 위법 농가 수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시설물 잔존가액의 경우 기존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폐업한 경우와 기존 시설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전업한 경우가 다르게 측정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자산 가격을 측정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IV-14〉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검토안·대안 설정

		사업계획안	검토안·대안
지원대상	시설물잔존가액	총 1,500 농가	총 1,537 농가
	철거비	총 600 농가 (합법농가 비율 40% 적용)	총 614 농가 (합법농가 비율 40% 적용)
지원단가	시설물잔존가액	6,100만원/호	6151.5만원/호
	철거비	3,500만원/호	준용

자료: 연구진 작성

〈표 IV-15〉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추계 결과(농장주)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계획안(A)				검토안·대안(B)				(B-A)
	2025	2026	2027	계(A)	2025	2026	2027	계(B)	
시설물 잔존가액	30,500	30,500	30,500	91,500	31,516	31,516	31,516	94,548	3,048
철거비	7,000	7,000	7,000	21,000	7,172	7,172	7,172	21,518	518
총계	37,500	37,500	37,500	112,500	38,688	38,688	38,688	116,066	3,566

자료: 연구진 계산

### 3) 잔여권 보호관리비용

개사육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보호전에 소요될 비용 추정의 적정성은 다음과 같다. 1년에 1만두로 예측하고 두당 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잔여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여권(특히 지원받지 못한 농장주 소유의 잔여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라 농장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2025년 2월까지) 수정·보완이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 연차별 소유권 포기권 예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원대상은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 중 불가피하게 잔여권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농장 적발 시, 현행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처가 밝힌 바 있어 잔여권 비용은 부처 의견을 준용하여 비용에 반영하였다.

〈표 IV-16〉 잔여권 관리비용 추계 결과(농장주)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계획안(A)				검토안·대안(B)				(B-A)
	2025	2026	2027	계(A)	2025	2026	2027	계(B)	
잔여권 관리비용	3,500	3,500	3,500	10,500	3,500	3,500	3,500	10,500	-

자료: 연구진 계산

잔여권이 과다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법 농가가 잔여권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가는 최대한 폐업을 늦춰 사육 중인 식용견을 시장에 판매하려고 예상할 수 있으나, 식용견의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마리당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유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 사업의 수혜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개사육 농가의 경우 역시 시장 논리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여 판로가 줄어들면 잔여권을 포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 질의 답변서(25.6.10)에서도 여전히 “지원대상은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 중 불가피하게 잔여권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관련 법령에 따

른 운영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농장 적발 시, 현행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신에서도 「개식용종식법」 실시 이후 발생한 잔여견이 안락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sup>52)</sup>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현재 농장의 실사육 마릿수가 아닌, 농가가 연간 사육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출하 내역 등 거래장부, 입출금 내역 등 증빙)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실사육 마리수가 더 많다면, 폐업과정에서 소유권 포기로 잔여견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모든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 나. 개식용 도축상인의 폐·전업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도축상인 중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과 철거비(3년간 325억원) 지원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기준 시설물 잔존가액과 철거비는 108억 3,200만원으로, 시설물 잔존가액(125개소/3×1억 6,000만원=66억 6,600만원)과 철거비(125개소/3×1억원=41억 6,600만원)를 합산하여 산출되었다.<sup>53)</sup> 개 식용 종식 과정에서 전·폐업이 불가피한 도축상인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철거비용과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된다.

〈표 IV-17〉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추계 결과(도축상인)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계획안(A)				검토안·대안(B)				(B-A)
	2025	2026	2027	계(A)	2025	2026	2027	계(B)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	10,832	10,832	10,832	32,496	10,832	10,832	10,832	32,496	-

자료: 연구진 계산

한편,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에서는 ① 농장주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산정한 금액,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 철거 지원의 의

52) BBC, “South Korea banned dog meat. So what happens to the dogs?,” <https://www.bbc.com/news/articles/c20r7lkel68o>, (검색일자: 2025. 7. 17.)

53) 부처에서 평균규모 도축장을 대상으로 산출한 철거견적은 1.01억원으로 1억원과 차이가 미미하여 최초 요구안의 수치를 준용함

무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② 개식용 도축상인에게는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만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처는 도축상인에게도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2024년 9월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도 의결하였고, 2025년 예산 수립 시 재정당국 협의, 예산국회 심의를 완료하여 사업시행 지침을 통해 집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축상인 철거비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 IV-18〉 도축상인 관계 법령별 위반행위 확인 시 폐업지원 불이익 사항

법령	위반 행위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이 무허가 혹은 미신고(제11조, 제14조, 제20조) 건축물인 경우</li> <li>• 도축장이 사용승인(제22조)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li> </ul>	지원	지원 배제
농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이 농지전용신고(제35조 전단)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li> </ul>	지원	지원 배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2024. 9.)

#### 다.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용역·실태조사 수행 등 행정비용은 연간 4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비용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비용(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홍보비용은 정책 추진 상황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매체(언론·방송·현수막 등) 비용 1억 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연구조사비는 ‘2건×8,500만원(용역 기간 10개월, 연구원 6명)’으로 국비 100%로 책정되었고, 컨설팅 비용은 희망 농가의 전업 지원을 위해 축종별 전문 기술 교육과 현장 관리·지도 비용 6,000만원이 추산된다. 특히 컨설팅 비용의 경우 ‘30회(4개 주요 축종×7개 권역)×200만원(강사 수당, 대관료, 교재 제작비 등)’으로 국비 100%로 지원된다. 일반수용비는 이해관계자(육견단체·동물보호단체) 협의 및 의견수렴 비용(1,000만원)이 ‘50회×20만원(대여료·인쇄비 등)’으로 국비 100%로 산출되었다.

〈표 IV-19〉 행정비용 관련 사업계획서와 이후 제출자료 비교

(단위: 백만원)

행정비용	사업계획서				부처 자료 <sup>1)</sup>			
	2025	2026	2027	소계	2025	2026	2027	소계
소계	1,100	1,100	1,100	3,300	400	400	400	1,200
교육홍보비(1식)	320	320	320	960				
연구용역비(1식)	260	260	260	780				
감정평가비(1식)	500	500	500	1,500				
수용비(1식)	10	10	10	30				
업무추진비(1식)	10	10	10	30				
교육비					40	40	40	120
홍보비					120	120	120	360
연구조사비					170	170	170	510
컨설팅비					60	60	60	180
일반수용비					10	10	10	30

주: 1) 주무부처 사업설명회 자료

〈표 IV-20〉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계획안(A)				검토안·대안(B)				(B-A)
	2025	2026	2027	계(A)	2025	2026	2027	계(B)	
교육·홍보 등 행정비용	1,100	1,100	1,100	3,300	400	400	400	1,200	△2,100

자료: 연구진 계산

## 4. 비용 추정 결과

### 가. 총사업비 종합

이상의 부처가 제시한 총사업비 개요를 바탕으로 비용 추정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처가 제시한 당초 사업계획안은 356,237백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연구진이 검토한 추계(검토안, 대안)에서 검토안에서는 294,418백만원으로 조정되어 총 61,819백만원이 감소하고, 대안에서는 352,922백만원으로 3,315백만원 감소하였다.

검토안 기준으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개사육농장주 부문에서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

197,438백만원에서 134,156백만원으로 63,282백만원 감소했고, 철거·시설물 잔존가액은 112,500백만원에서 116,066백만원으로 3,566백만원 증가했다. 반면 잔여건 관리비용은 10,500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개식용 도축상인 관련 비용(철거·시설)은 지원단가가 사업계획안과 검토안에서 모두 32,496백만원으로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홍보 비용은 3,300백만원에서 1,200백만원으로 2,100백만원 감소하며 전체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대안에서는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 197,438백만원에서 192,660백만원으로 사업계획안 대비 4,778백만원 감소하였고 그 외 세부항목은 검토안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사업계획안보다 검토안의 규모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총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대안의 경우 사업계획안과 비교하여 지원단가 감소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감소로 작용하였으나, 「농지법」 합법 농가 비율 증가와 폐업률 1구간 확대 등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1구간 폐업률 실적이 높게 나타나 검토안의 3배 이상으로 폐업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2025년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2026~ 2027년의 경우 조기 폐업에 따른 폐업률 감소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안보다 적은 규모로 추계되었다.

〈표 IV-21〉 비용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A)	검토안		대안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b>합계</b>	<b>356,237</b>	<b>294,418</b>	<b>△61,819</b>	<b>352,922</b>	<b>△3,315</b>
<b>A. 개사육농장주</b>	<b>320,438</b>	<b>260,722</b>	<b>△59,716</b>	<b>319,226</b>	<b>△1,212</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197,438	134,156	△63,282	192,660	△4,778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12,500	116,066	3,566	116,066	3,566
3. 잔여건 관리비용	10,500	10,500	-	10,500	-
<b>B. 개식용 도축상인</b>	<b>32,496</b>	<b>32,496</b>	<b>-</b>	<b>32,496</b>	<b>-</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32,496	32,496	-	32,496	-
<b>C. 교육·홍보 등</b>	<b>3,300</b>	<b>1,200</b>	<b>△2,100</b>	<b>1,200</b>	<b>△2,100</b>

자료: 연구진 작성

총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나눈 결과는 <표 IV-22>과 같다.

<표 IV-22> 국비·지방비 비용 추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A)	검토안		대안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b>합계</b>	<b>356,237</b>	<b>294,418</b>	<b>△61,819</b>	<b>352,922</b>	<b>△3,315</b>	
중앙정부	<b>소계</b>	<b>179,769</b>	<b>147,809</b>	<b>△31,960</b>	<b>177,061</b>	<b>△2,708</b>
	<b>A. 개사육농장주</b>	<b>160,219</b>	<b>130,361</b>	<b>△29,858</b>	<b>159,613</b>	<b>△606</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98,719	67,078	△31,641	96,330	△2,389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6,250	58,033	1,783	58,033	1,783
	3. 잔여건 관리비용	5,250	5,250	-	5,250	-
	<b>B. 개식용 도축상인</b>	<b>16,248</b>	<b>16,248</b>	<b>-</b>	<b>16,248</b>	<b>-</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6,248	16,248	-	16,248	-
	<b>C. 교육·홍보 등</b>	<b>3,300</b>	<b>1,200</b>	<b>△2,100</b>	<b>1,200</b>	<b>△2,100</b>
	지방정부	<b>소계</b>	<b>176,467</b>	<b>146,609</b>	<b>△29,858</b>	<b>175,861</b>
<b>A. 개사육농장주</b>		<b>160,219</b>	<b>130,361</b>	<b>△29,858</b>	<b>159,613</b>	<b>△606</b>
1. 폐업이행촉진지원금		98,719	67,078	△31,641	96,330	△2,389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56,250	58,033	1,783	58,033	1,783
3. 잔여건 관리비용		5,250	5,250	-	5,250	-
<b>B. 개식용 도축업자</b>		<b>16,248</b>	<b>16,248</b>	<b>-</b>	<b>16,248</b>	<b>-</b>
1.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6,248	16,248	-	16,248	-

자료: 연구진 작성

지금까지 추정한 비용 산출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IV-23>과 <표 IV-24>와 같다.

<표 IV-23> 연도별 비용 추정 결과(검토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계	
<b>합계</b>	<b>109,614</b>	<b>101,260</b>	<b>83,542</b>	<b>294,418</b>	
중앙정부	<b>소계</b>	<b>55,007</b>	<b>50,830</b>	<b>41,971</b>	<b>147,809</b>
	<b>A. 개사육농장주</b>	<b>49,191</b>	<b>45,014</b>	<b>36,155</b>	<b>130,361</b>
	1. 이행촉진지원금	28,097	23,920	15,061	67,078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9,344	19,344	19,344	58,033
	2-1. 시설물 잔존가액	15,758	15,758	15,758	47,274
	2-2. 철거비	3,586	3,586	3,586	10,759

〈표 IV-23〉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계
중앙정부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개식용 도축업자</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	5,416	5,416	5,416	16,248
	<b>C. 교육·홍보 등</b>	<b>400</b>	<b>400</b>	<b>400</b>	<b>1,200</b>
<b>소계</b>		<b>54,607</b>	<b>50,430</b>	<b>41,571</b>	<b>146,609</b>
지방정부	<b>A. 개사육농장주</b>	<b>49,191</b>	<b>45,014</b>	<b>36,155</b>	<b>130,361</b>
	1. 이행촉진지원금	28,097	23,920	15,061	67,078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9,344	19,344	19,344	58,033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개식용 도축업자</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	5,416	5,416	5,416	16,248

자료: 연구진 작성

〈표 IV-24〉 연도별 비용 추정 결과(대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계
<b>합계</b>		<b>192,676</b>	<b>73,848</b>	<b>86,396</b>	<b>352,922</b>
중앙정부	<b>소계</b>	<b>96,538</b>	<b>37,124</b>	<b>43,398</b>	<b>177,061</b>
	<b>A. 개사육농장주</b>	<b>90,722</b>	<b>31,308</b>	<b>37,582</b>	<b>159,613</b>
	1. 이행촉진지원금	69,628	10,214	16,488	96,330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9,344	19,344	19,344	58,033
	2-1. 시설물 잔존가액	15,758	15,758	15,758	47,274
	2-2. 철거비	3,586	3,586	3,586	10,759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개식용 도축업자</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	5,416	5,416	5,416	16,248
	<b>C. 교육·홍보 등</b>	<b>400</b>	<b>400</b>	<b>400</b>	<b>1,200</b>
지방정부	<b>소계</b>	<b>96,138</b>	<b>36,724</b>	<b>42,998</b>	<b>175,861</b>
	<b>A. 개사육농장주</b>	<b>90,722</b>	<b>31,308</b>	<b>37,582</b>	<b>159,613</b>
	1. 이행촉진지원금	69,628	10,214	16,488	96,330
	2. 철거·시설물 잔존가액	19,344	19,344	19,344	58,033
	3. 잔여건 관리비용	1,750	1,750	1,750	5,250
	<b>B. 개식용 도축업자</b>	<b>5,416</b>	<b>5,416</b>	<b>5,416</b>	<b>16,248</b>
	1. 철거·시설	5,416	5,416	5,416	16,248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비용 변동 가능성

지원금이나 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 전업 의사를 표명하는 농가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수요보다 많은 농가가 전업 희망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농가의 폐업·전업 의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 차등 구조로 인해 초기 연도에 예산 집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초기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경우, 후속 연도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기적으로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추가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1구간 경과 결과를 토대로 「농지법」 위반 농가 비율이 적을수록, 사업 초기에 폐업이 집중될수록 총사업비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동 사업이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가 잘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다만, 총사업비 변동이 크다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비 산정 등 예산의 배정 및 집행 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 개사육농장주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는 2027년 2월 이후 개식용 관련 업은 불법으로 명확해지기에 이에 대한 보복 소비로 인하여 개고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도리어 맨 마지막 연차에 미소진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게 되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각기 다른 추정의 경우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령을 위반했을 때 페널티가 크지 않다면 6구간에 위치한 합법 및 불법 농가들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암시장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사업만 보았을 때는 비용을 줄이는 요인이지만, 사업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법」, 「건축법」,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에 대한 실제 수가 과소 집계될 경우,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위법 시설물은 철거 비용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해 실제 필요한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위법 농가의 정확한 규모와 처리 비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은 비용 추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법 시설물 관련 데이터를 보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예산 추정이 필요하다.

#### 다. 주요 모수에 대한 검토

경제학 모형에 따른 최적 결정 이론(Optimal Decision Rule)에 따라 이론적으로 도축업자들이 해당 제도를 언제 이용할지를 예측하고자 한다. 먼저  $R$ 은 해당 업자가 식당이나 도축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1년 동안 발생하는 순수익(운영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값)으로 정의된다.  $\pi$ 은 정부의 법안이 도입되어 단속이 시작되는 4년 차 이후의 적발 확률이며, 도축업자가 개 사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위반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 혹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P$ 는 이와 같은 적발 시 부과되는 제재 수준 혹은 페널티 금액이다.  $B_1, B_2, B_3$  각각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폐업 보상금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제도의 조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B_1 > B_2 > B_3$ 의 관계가 성립된다. 예를 들어, 실제 제도 설계상 1년 차 폐업 보상금은 60만원, 2년 차는 40만원, 3년 차는 20만원 수준으로 계단식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eta \in (0, 1)$ 은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discount factor)로, 수익이 미래에 발생할수록 현재가치로 환산되는 금액은 작아짐을 의미한다.

이때 크게 3가지 전략( $V_A, V_B, V_C$ )을 도축업자는 취할 수 있다.<sup>54)</sup> 도축업자가 제도 시행 초기인 1년 차에 바로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 이로 인해 얻게 되는 현재가치는 단순히 폐업 보상금  $V_A = B_1$ 이다. 반면, 만약 동일 업자가 폐업을 유예하고 3년간 운영한 후에 폐업을 선택한다면, 그동안의 누적 기대수익은  $R(1 + \beta + \beta^2)$ 가 되며, 3년 차 시점에 지급받는 보상금  $\beta^3 B_3$ 로 할인된다. 따라서, 도축업자가 1년 차에 폐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B_1 > R(1 + \beta + \beta^2) + \beta^3 B_3$ . 이는 즉, 현재 받는 보상이 3년간의 운영 수익과 3년 차 보상의 현재가치를 합한 것보다 클 경우, 조기 폐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도축업자가 3년간 개사육종업을 유지한 뒤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전략을 고려한다. 이 경우의 현재가치는 운영에 따른 수익  $R(1 + \beta + \beta^2)$ 과 함께, 3년 차에 수령하는 보상금  $B_3$ 의 현재가치  $\beta^3 B_3$ 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_B = R(1 + \beta + \beta^2) + \beta^3 B_3$ . 이 전략의 유효성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첫째, 이는 1년 차 폐업(전략 1)

54) 물론, 도축업자가 2년 차에 폐업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고, 이 역시 게임의 해로 도출이 가능함. 하지만, 본고에서는 문제의 단순화를 위해 이는 고려하지 않으려고 함

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이 전략이 향후에도 식당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보다 유리해야 한다. 즉, 4년 차 이후에도 운영을 지속할 경우의 현재가치(전략 3)보다 커야 한다.

전략 3은 도축업자가 보상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개사육종 식당이나 도축장을 계속 운영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현재가치는 초기 3년 동안의 수익에 더해, 4년 차 이후 매년 동일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나, 적발 확률  $\pi$ 과 이에 따른 페널티  $P$ 를 감안한 기대수익으로 조정되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_C = R(1 + \beta + \beta^2 + \beta^3) + \beta^4 \left( \frac{R - \pi P}{1 - \beta} \right).$$

이 전략이 유리하게 되기 위한 조건은, 앞서 전략 2(3년 후 폐업)의 현재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도축업자가 4년 차 이후에도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단속 강화, 위반사업장 공표 등의 조치를 통해 단속 확률( $\pi$ )을 높여  $V_C$ 의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페널티( $P$ )가 높아질 경우 순이익이 크게 줄어  $V_C$  기대수익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B_1, B_2, B_3$  차등 폭을 키워 1년 차 조기 폐업을 유도할 경우 도축업자가 제도 활용 쪽으로 기울게 될 수도 있다.

---

## V. 정책성 분석

---

###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정책적 분석은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중 계량화가 곤란하지만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정책성 분석의 평가항목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① 사업추진 여건, ② 정책효과, ③ 사업별도평가항목(선택적)으로 분류한다.

사업추진 여건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과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으로 구성되며,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은 상위 계획 반영 여부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은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평가한다.

정책효과는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선택), 사업특화항목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주무부처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검토해야 한다.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재원조달 위험성 또는 문화재 가치 등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별도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정책성 분석의 중분류 및 세부평가항목은 <표 V-1>과 같다.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안(요구안)의 규모와 비용이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정책성 분석 중 정책효과와 관련된 항목은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는 '사업추진여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책효과'와 '사업별도평가항목'은 포함하지 않았다.

〈표 V-1〉 정책성 분석의 세부평가항목

중분류	세부평가항목	수행 여부
사업추진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li> <li>•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li> </ul>	검토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효과</li> <li>• 생활여건 영향</li> <li>• 환경성 평가</li> <li>• 안전성 평가(선택)</li> <li>• 사업특화항목</li> </ul>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생략 가능
사업별도평가항목 (선택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조달 위험성</li> <li>• 문화재 가치</li> </ul>	미포함

자료: 「에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별표 3]을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 2. 사업추진 여건

### 가. 내부여건

#### 1) 개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 나 국민들의 요구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추진 주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내부여건에서는 해당 사업의 상위 및 관련계획 반영 여부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검토, 사업의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한다.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는 해당 사업이 추진 주체에 의하여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해당 사업이 정책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기존에 수립된 장기계획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책방향이 선회함으로써 유효성이 낮아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와 더불어 해당 사업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정책목표(방향)가 개별 사업의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반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점에는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 변화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존재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해당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 반영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의 준비 정도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성은 없다. 상시적인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의 준비 정도가 내부여건 평가의 큰 요인이 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준비 정도를 별도로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라는 상시적인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사업의 준비 정도가 내부여건 진단의 큰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 건축 등 사업의 내용이 특수할 경우, 건립 후의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준비 정도를 내부여건에 포함할 수 있다.

## 2) 검토 결과

내부여건 검토 결과, 상위 계획인 2024년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서는 각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방향과의 일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중앙-지방 실무협의체(월 1회)와 권역별 설명회(분기별)가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작동하고 있으며, 정책 시행 초기부터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며, 지방정부(지자체)는 농가 현황 조사, 전업 컨설팅, 잔여견 보호 등 실질적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방정부의 참여가 미진할 경우 사업 추진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약 3,000억 원의 재정 투자가 계획되었으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재정 자립도가 부족한 지자체의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별 개 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논의, 지원 및 주기적 이행 점검을 위한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권역별 설명회(11회 정례회의, 3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부처가 협력체계 구축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나. 외부여건

### 1) 개요

사업추진 주체가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연할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고, 결국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여건에는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공간적 영향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태도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이익집단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사업에 대한 태도 및 갈등 여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사업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해당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면 지역주민 모두가 사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반대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다. 나아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민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민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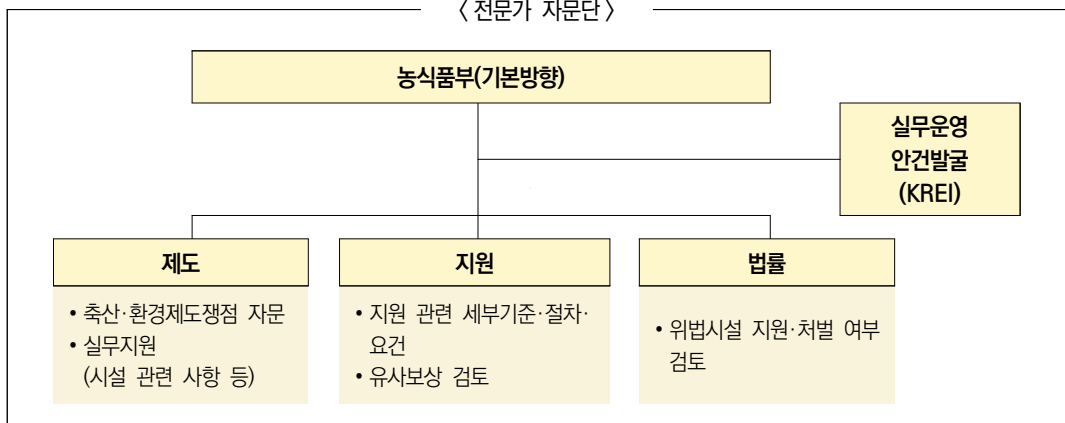
사업의 추진에 대한 선호도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의 검토 시에는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검토 결과

외부여건 검토 결과,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1년 12월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하여 육견업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법률, 갈등관리, 식품), 정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원회 내에 국민인식조사 소위원회(2022년 1월부터) 및 개식용 종식 합의문 작성 소위원회(2022년 4월부터)가 별도로 구성되었다. 특히 중앙부처는 제도(축산환경제도), 지원, 법

를에 대해 유선, 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자문단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외부여  
 건 개선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V-1]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자료



농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연령과 업력이 높아 전업 또는 폐업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55) 농가의 평균 연령은 64.3세, 평균 종사 기간은 17.6년으로, 사업을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폐업 희망 비율은 56.3%, 전업 희망 비율은 43.7%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농가가 폐업 또는 전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는 사업에 반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V-2〉 수해집단의 인구 및 사회적 특성

구분	개사육농장주	도축상인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경영주 평균나이	64.3세	61.9세	62.9세	61.8세
평균종사 기간	17.6년	26.4년	18.1년	15.8년
폐업희망 비율	56.3%	77.5%	20.6%	19.1%
전업희망 비율	43.7%	22.5%	79.4%	80.9%
겸업 비율	21.0%	66.9%	90.9%	91.8%

자료: 2차 부처 제출 자료

55) 업력이 높을 경우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따라, 오히려 직업 이동성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함. 본 보고서에서는 개사육 시장 산업에서 업력이 높아 더 이상 해당 업종에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령이 높은 사업주가 많다는 의미로 서술함

농가 분류와 지원 형평성 문제로 인한 농가의 반발 가능성도 예상된다. 합법 농가와 불법 농가 간 지원 차등 지급으로 인해 반발 심화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불법 농가에 대해 지원이 차등 지급되거나 제외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비 매칭 부담이 큰 지자체에 추가적인 지원책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또한, 합법 농가와 불법 농가 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 기구 및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농가,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지방비 매칭 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 VI.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 1. 종합결론

정부의 개 식용 종식 정책 추진으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제정·공포되었고, 2027년까지 모든 개 사육농장과 도축업의 폐업 또는 업종 전환이 법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농가와 업자의 원활한 생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부처는 해당 업자들의 조기 폐업 유도와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필수 정책 수단으로,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지원대상의 정의, 지원 항목의 구성 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된다. 지원대상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 사육농장주, 도살업자, 유통업자 등이며,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 철거 및 잔존가액 보상, 잔여건 보호·관리비, 전업 컨설팅 및 홍보·교육이 포함된다. 특히, 사업은 재정적 보상뿐만 아니라 업종 전환을 위한 비재정적 지원도 포괄하고 있어 정책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사업 추진체계는 중앙정부가 제도 설계 및 예산 확보를 맡고, 지방정부가 현장 이행과 점검을 담당하는 구조이나, 50%의 지방비 매칭 부담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조기 폐업 농가의 집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차별 예산 배분의 탄력적 조정과 조기 소진 시 추가 재정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잔여건 처리 문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의 이탈 가능성, 이행계획 심의의 공정성과 일관성 확보, 중복 수급 방지 대책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가 남아 있다.

비용 측면에서 총사업비 규모는 약 2,944억원(검토안 기준) 및 3,529억원(대안 기준)으로 재산정되었는데, 이는 당초 부처 계획안 대비 약 33억~618억원 감소한 수치이다. 총사업비 규모 감소의 주요 요인은 총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에 영

향을 미치는 지원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나, 대안의 경우는 「농지법」 합법 농가 비율 증가와 폐업률 1구간 확대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한 것이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처 계획안과 비교해 총사업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농가의 폐업·전업 의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 역시 내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027년 2월 이후 개식용 관련 업은 불법으로 명확해지기에 이에 대한 보복 소비로 인하여 개고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도리어 맨 마지막 연차에 미소진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게 되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비용 추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법 시설물 관련 데이터를 보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다 정확한 예산 추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정책적 타당성이 높고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사업 추진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목표 연도까지 원활히 개 식용 종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총사업비는 최신 이행계획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 2. 정책제언

사업 추진상 유의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유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 중 교육·홍보 등을 제외한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는 구조에서 일부 지방의 소극적 참여는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조기 폐업 증가에 대응한 예산 집행의 탄력성 확보가 요구된다. 예상보다 많은 농가가 1년 차에 폐업을 이행함에 따라 연도별 예산 배분의 탄력적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1년 차에 지원 수요가 집중될 경우 당초 계획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부족 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매 분기별로 폐업 신청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연차별 소요 예산을 재예측하는 등 선제 대응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세 번째로, 잔여견에 대한 보호 및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남은 개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유기견 보호센터 확충, 민간 입양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농장주들이 잔여견을 임의로 유기하거나 도살하지 않도록 엄격한 모니터링과 지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등 현행 법령에 따라 무허가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위법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네 번째로, 사업 추진 전반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미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예상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예컨대, 보상수준에 대한 불만, 지역사회 반발 등의 이슈에 대해 공개 토론회나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민 대상 홍보도 중요하다. 개 식용 종식의 윤리적 의의와 정책 효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언론·방송 및 SNS 등을 통해 성공적인 폐업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반려문화 정착과 동물복지 향상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홍보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폐업 농가의 지속가능한 생계 전환을 위해 맞춤형 전업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예산에 전업 컨설팅 비용을 책정하여 전문기술 교육, 현장 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이를 내실화하여 희망 전업 분야에 대한 기술교육, 창업자금 연계, 판로 개척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 지역 농가의 경우 대체 소득원 발굴이 어려운 만큼,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례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을 전파해야 한다. 아울러 폐업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가 일정 기간 해당 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컨설팅이나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권고한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2022. 12.  
\_\_\_\_\_,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22. 12.  
\_\_\_\_\_, 「총사업비관리지침」, 2022. 12.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각 연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국 육견농가 현황 조사」, 2024.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서」, 2024. 12.  
\_\_\_\_\_, 「가축 제한 보상금 사업 지침(2024~2025)」, 2024.  
\_\_\_\_\_,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중간보고, 2024. 7. 24.  
\_\_\_\_\_,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2024. 9.  
\_\_\_\_\_, 「동물복지 강화 방안」, 2022. 12.  
\_\_\_\_\_,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각 연도.  
\_\_\_\_\_,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020-91호, 2020. 11. 16.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각 연도.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2023. 12.  
\_\_\_\_\_, 「사업설명서\_희망리턴패키지」, 202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4-35호, 2024. 7. 10.  
이형주, 「개식용 관련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환경법과 정책』, 30, 2022, pp. 91~116.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공고」, 2023.  
\_\_\_\_\_,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2권(중소벤처기업부 편)』, 2023.  
통계청, 『2022년 축산물생산비 통계』, 2023.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2024.

###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5. 1. 10.  
미국 연방의회,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6720/text>, 검색일자: 2024. 7. 8.  
홍콩 법령정보,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67>, 검색일자: 2024. 7. 8.

###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2025. 2. 9.  
\_\_\_\_\_,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2024. 1. 9.  
\_\_\_\_\_, 「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2024. 9. 26.

### 〈기사〉

- 뉴스1, 「[단독]정부, 개 식용 종식 연구용역 연이어 발주...적정 사육·지원규모 파악」, 2024. 5. 13.,  
<https://news.nate.com/view/20240513n02007>, 검색일자: 2025. 1. 15.
- 더팩트, 「전국 식용견 47만마리...2년3개월 안에 '제로' 만든다는 정부」, 2024. 11. 24., <https://news.tf.co.kr/read/life/2154190.htm>, 검색일자: 2025. 1. 20.
- 서울신문, 「2027년부터 개고기 사라진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2024. 1. 9.,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4/01/09/20240109500192>, 검색일자: 2025. 1. 20.
- 연합뉴스, 「육견협회 “개식용 금지법'이 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2024. 3. 26,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6085800004>, 검색일자: 2025. 1. 20.
- 한겨레, 「개식용 종식법이 행복추구권 침해? 육견협회 '위헌 주장' 뜯어보니」, 2024. 6. 21.,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145673.html](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145673.html), 검색일자: 2025. 1. 20.
- \_\_\_\_\_, 「국민 57% '개 식용 금지법 찬성'...2년 내 종식 적당 의견도 65%」, 2023. 9. 20.,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109313.html](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109313.html), 검색일자: 2025. 1. 20.
- BBC, “South Korea banned dog meat. So what happens to the dogs?,” <https://www.bbc.com/news/articles/c20r7lkel68o>, 검색일자: 25. 7. 17.

## 부록 조사의뢰 공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나라



기획재정부

### 기 획 재 정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요청(조세연)

2024년도 제2차 면제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오니, 수행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도 제2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요청 목록(조세연). 끝.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법사에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총사업비관리과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주무관	유승우	담당실사과	진급	2024. 8. 28.	
협조자		장	김경구		
시행	담당실사과-798	(2024. 8. 28.)	집수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 <a href="http://www.noef.go.kr">http://www.noef.go.kr</a>
전화번호	044-216-6413	팩스번호	044-216-6413	/ <a href="mailto:yswoo04@mail.go.kr">yswoo04@mail.go.kr</a>	/ 비공개(5)